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추정곤란 항목에 대한 추계모형 개발

2016. 12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추정곤란 항목에 대한 추계모형 개발』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용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 전문연구원

허윤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 전문연구원

이순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 전문연구원

김상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 연구원

허현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 연구원

노지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 연구원

2016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 형 수

요 약

Ⅰ. 서론

□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추정곤란을 이유로 조세지출 규모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조세지출 항목의 추계 모형과 시산결과를 제시하는 데 있음

- ○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추정 곤란을 이유로 조세지출 규모를 제시하지 않은 항목은 총 26개로 파악됨
- ○ 각 항목별로 가용 자료를 검토하고 동일한 감면 방법을 적용하는 타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전망방법을 고려하여 추정방법을 제시함

□ 본 연구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지침에 따른 구조(효과성 분석, 타당성 분석,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로 작성되기 어려워 1) 추정곤란 항목의 현황 검토, 2)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규모 추정방법 검토, 3) 시산 가능한 항목의 조세지출 규모 추정 결과 제시, 4) 연구의 한계 및 개선방안 제시의 순서로 구성함

Ⅱ. 조세지출 추정곤란 항목 현황

□ 2016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26개 조세지출 규모 추정곤란 항목들의 추정곤란 사유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 1) 면세사업자는 신고 의무 없음(9개)
- ○ 2) 경제주체의 행위 변화 추정 곤란(3개)
- ○ 3) 이자·배당 지급 명세서상 추출 불가(2개)
- ○ 4) 대부분 소득세 신고 대상 아님(1개)
- ○ 5) 개별사업자별 접대비 지출액 및 한도액 상이(1개)
- ○ 6) 별도의 자료 관리 없음(1개)
- ○ 7) ’15년 신설(9개)

□ 감면방법별 항목 수를 살펴보면 면세 10개, 과세이연 9개, 손금산입 5개, 비과세 3개, 세액감면 2개, 세액공제 2개, 중과배제 2개, 세액환급 1개, 저율분리과세 1개로 나타남

○ 면세의 경우 특정 용역과 재화의 시장 규모 및 부가가치율 추정이 쉽지 않아 추정곤란 항목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 과세이연의 경우 과세이연 대상에 대한 추정(과세 개시 시점 파악)뿐만 아니라 해당 납세자의 실효세율 측정이 필요해 추정곤란 항목으로 분류된 것으로 판단됨

□ 추정곤란 항목의 추정을 위해 투입되는 시간 및 노력과 추정으로 인한 실익(추정한 조세지출 규모의 크기 등)을 비교하여 후자가 클 경우 추정을 실시해야 하지만 추정 전에는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추정기법과 행정 자료 구축에 일정 수준의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호주의 최신 조세지출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조세지출 항목 수 대비 추정곤란 항목 수의 비율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다음으로 낮은 수준(9.8%)으로 나타남

Ⅲ. 추정곤란 항목 조세지출 규모 추계 및 전망 방법 개관

□ 조세지출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세지출 규모의 산정방식은 직전 연도, 당해 연도, 다음 연도에 따라 구분됨

○ 직전 연도 조세지출 규모는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조세감면신고 금액 기준으로 작성되지만 신고 의무가 없는 조세감면의 경우 관련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추정함

- 과세이연의 경우 기한이 법조문에 명시된 경우 이자상당 금액으로 추정하고,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박명호 외(200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과세이연대상 금액에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취급하는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삼을 수 있으나 과대 추정의 문제가 있어 개선 여지가 있음

○ 당해 연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상반기까지 신고된 조세감면액을 과거 상반기 실적과 비교해 진도비를 통해 잠정 금액을 추정하고 있음

○ 다음 연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과거 실적, 경제지표 및 세목별 탄성치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는 것으로 파악됨

○ 조세지출 규모 산정의 개략적인 방법은 조세지출예산서에 제시하고 있으나 항목별로 구체적인 조세지출 규모 산정방식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은 세수손실법, 세수증대법, 직접지출등가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납세자들의 행태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감면조항의 미적용 시 세수와 적용 시 세수의 차이로 계산하는 세수손실법을 기본방식으로 사용함

□ 부가가치세 면세의 경우 경제사회 통계자료를 통해 추정한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의 시장 규모를 매출세액 과세표준(TBS_t)으로 가정하고 이에 근접 업종의 부가가치율(v_t)과 부가가치세율(τ_t)을 곱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함

○ $TE_t = (TBS_t - TBI_t) \times \tau_t = TBS_t \times v_t \times \tau_t$

- TE_t 면세의 조세지출 규모, TBS_t 매출세액 과세표준, TBI_t 매입세액 과세표준, τ_t 부가가치세 세율, v_t 부가가치율

□ 과세이연의 경우 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과세이연 대상 금액의 이자상당액의 세후 현재가치를 조세지출 규모로 추정하고(방식 1),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세이연 시작 시점에서 과세이연 대상 금액에 기업의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조세지출 규모에서 같은 연도에 과세이연 종료 기업의 세부담 증가 규모를 차감하여 추정(방식 2)함

○ 방식 1: $NTE = A\tau\left[1 - \frac{1}{N}\left(\frac{1}{1+(1-\tau)i}\right)^{M+N}\frac{(1+(1-\tau)i)^{N-1}}{(1-\tau)i}\right]$

- 여기서 NTE는 순조세지출 규모, A 과세이연 대상 금액, τ 한계세율, i 이자율, M 거치기간, N 균등 분할 환입기간을 나타냄

○ 방식 2: $\widetilde{NTE} = \sum_{i=1}^{K} A_i\zeta_i - \sum_{j=1}^{L} I_j\rho_j$

- 여기서 $\widetilde{NTE}$는 순조세지출 규모, A_i $i-$기업의 과세이연 대상금액, ζ_i $i-$기업의 실효세율, I_j $j-$기업의 익금산입 금액, ρ_j $j-$기업의 실효세율, K 과세이연이 시작되는 기업 수, L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기업 수

□ 손금산입 방식 조세지출의 경우 손금산입 금액에 해당 기업의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추정하거나 각 기업별 손금산입 금액에 따른 산출세액 변화분을 합하여 추정함

□ 비과세 방식 조세지출은 비과세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하였을 때 산출세액 변화분으로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고, 저율·분리과세의 경우 기본세율 적용, 종합소득 합산과세 시 세부담과의 비교를 통해 추정함

□ 세액감면, 세액공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액감면율,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세액 환급은 환급대상 세액을 조세지출 규모로 추정함

Ⅳ. 추정 및 전망결과

□ 추정곤란 항목으로 제시된 26개 항목 중 14개 항목에 대해 시산 가능한데 14개 항목의 조세지출 규모의 합계는 2015년 1조 5,160억원, 2016년 1조 2,137억원, 2017년 1조 5,557억원 수준으로 나타남

○ 국민주택 및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공동주택 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 평가 적용특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순으로 추정된 조세지출 규모가 크게 나타남

□ 14개 항목의 추정 결과를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에 반영한 결과 상속증여세의 조세지출 규모가 50~93% 수준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며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1% 이하로 증가하여 큰 변화가 없음

□ 14개 항목의 추정 결과를 반영할 경우 국세감면율은 2015년 14.66%, 2016년 13.95%, 2017년 13.76%로 나타나며 기존 발표된 국세감면율보다 소폭 높게 나타남

○ 국세감면율 증가에 따른 우려가 생길 수 있으므로 향후 3~5년간 14개 항목을 반영한 경우와 반영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 국세감면액과 국세감면율을 함께 병기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 있음

Ⅴ. 결론

□ 현재 가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곤란 항목 26개 중 14개 항목의 조세지출 규모 추정 결과를 제시함

-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재화와 용역의 경우 경제사회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의 전체 시장 규모에 대한 추정의 한계나 국세통계연보의 대분류 수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활용했다는 한계가 있었음
- ○ 과세이연 등 간접방식의 조세지원의 경우 이론적 추정방법은 제시하였으나 실증적 검토가 미흡한 점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국세청에서 관리해야 하는 납세서식 자료 중 일부는 DB화되어 있지 않아 조세지출 규모 산정 과정에 활용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추정곤란 조세지출 항목들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일차적인 연구를 수행했으나 국가재정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정가능 항목들의 추정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목 차

Ⅰ. 서 론 ····· 21

Ⅱ. 조세지출 추정곤란 항목 현황 ····· 27

1. 추정곤란 사유 ····· 29
2. 추정곤란 항목의 세목별 및 감면 방법별 분포 ····· 31
3. 추정곤란 항목 수의 국제비교 ····· 35

Ⅲ. 추정곤란 항목 조세지출 규모 추계 및 전망방법 개관 ····· 37

1. 현행 조세지출 규모 산정방법 ····· 39
2. 추정곤란 항목들의 조세지출 규모 추계방법 ····· 40

가. 기본적인 조세지출 규모 추계방법 ····· 40

나. 감면방법별 추계방법 ····· 41

(1) 부가가치세 면세 ····· 42

(2) 과세이연 ····· 45

(3) 손금산입 ····· 49

(4) 비과세 등 여타 감면 방법 ····· 51

Ⅳ. 추정 및 전망결과 ····· 57

1. 추정곤란 항목의 시산결과 ····· 59
2. 국세감면액 시계열의 비교 가능성 ····· 62

Ⅴ. 결론 ····· 65

<부 록> 개별 항목별 추정모형 및 시산결과 ····· 69

A.1.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다목, 라목) ····· 71

A.2. 경영회생 농지 매매 양도세 환급(「조특법」 제70조의2) ····· 84

A.3.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7조의6) ····· 101

A.4.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조특법」 제101조) ····· 116

A.5.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04조의19) ···· 142

A.6. 공장 · 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 152

A.7. 농 · 어업 대행용역의 부가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 168

A.8.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181

A.9.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 추정(「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 제4의3) ····· 220

A.10.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의4호) ····· 254

A.11.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의5호) ····· 269

A.12.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의 제1항 제10호) ··· 282

A.13.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의 제1항 제11호) ····· 310

A.14.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 321

A.15. 금 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2조의4, 조특법 시행령 제117조의4) ····· 331

A.16.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조특법」 제136조 제3항, 「조특법」 시행령 제130조) ·· 351

A.17. 비거주자 등의 정기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조특법」 제21조의2) ·· 382

A.18~26. 2016년 조세지출예산서상 2015년 신설항목 중 추정곤란항목 중 추정곤란 ··· 408

표 목 차

<표 Ⅱ-1> 추정곤란 조세지출 항목 및 사유 ····· 29
<표 Ⅱ-2> 소득세 조세지출 추정곤란 항목들의 감면방법 ····· 32
<표 Ⅱ-3> 법인세 조세지출 추정곤란 항목들의 감면방법 ····· 32
<표 Ⅱ-4> 부가가치세 조세지출 추정곤란 항목들의 감면방법 ····· 33
<표 Ⅱ-5> 상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조세지출 추정곤란 항목들의 감면방법 ····· 34
<표 Ⅱ-6> 해외 주요국과의 추정곤란 항목 수 비교 ····· 36

<표 Ⅲ-1> 부가가치세 면세 추정곤란 항목들의 조세지출 규모 추정방법 개관 ····· 43
<표 Ⅲ-2> 과세이연 방식 조세지원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추정방법 개요 ····· 47
<표 Ⅲ-3> 손금산입 방식 조세지원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추정방법 개요 ····· 50
<표 Ⅲ-4> 비과세 등 여타 방식 조세지원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추정방법 개요 ····· 53

<표 Ⅳ-1> 2016년 조세지출예산서상 추정곤란 항목 세목별 시산 결과 ····· 61
<표 Ⅳ-2> 추정곤란 항목 신규추정 결과 반영 전후 세목별 변화 ····· 62
<표 Ⅳ-3> 국세감면율 비교 ····· 63

<부표 A.1-1> 농가경제조사 표본농가 중 겸업농가 및 과세대상 겸업소득 농가 비중 ··· 78
<부표 A.1-2> ’06~’15년 농가 수 및 증감률 ····· 79
<부표 A.1-3> 국세통계연보 자료의 귀속연도별 소득구간 ····· 80
<부표 A.1-4> ’09~’14년 귀속연도 기준 소득구간별 평균 실효세율 ····· 81
<부표 A.1-5> ’09~’15년 조세지출 규모 잠정치 추정 ····· 81
<부표 A.1-6> ’16년 및 ’17년 농가 수 추정 ····· 82
<부표 A.1-7> 추정결과 ····· 82

<부표 A.2-1>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및 환매에 대한 연도별 총규모 ····· 94
<부표 A.2-2> 매각 연도별 환매 결과 ····· 95
<부표 A.2-3> 2015년도 환매 규모 ····· 97

<부표 A.2-4> 2016년도 환매 규모('16.10.20 기준) ····· 97
<부표 A.2-5> 추정결과 ····· 99

<부표 A.3-1>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연혁 ·· 103
<부표 A.3-2> 국세청 요청 자료 ····· 104
<부표 A.3-3>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투자 수입 현황 ····· 107
<부표 A.3-4> 국내 투자 부동산투자집합지구(펀드) 운용 내역 ····· 108
<부표 A.3-5> 조특법 제87조의6 조세지출 규모 추정 방법(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A)만 있는 경우) ····· 111
<부표 A.3-6> 조특법 제87조의6 조세지출 규모 추정방법(다른 금융소득(B)이 있는 경우) ····· 114
<부표 A.3-7> 조특법 제87조의6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규모 ····· 115

<부표 A.4-1>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117
<부표 A.4-2> 할증률 ····· 118
<부표 A.4-3> 연도별 유가증권으로 인한 1인당 상속세 결정현황 ····· 121
<부표 A.4-4>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 결정 현황 ····· 122
<부표 A.4-5> 연도별 유가증권으로 인한 증여세액 현황 ····· 124
<부표 A.4-6> 증여재산가액 규모별 유가증권에 대한 증여세 결정 현황 ····· 125
<부표 A.4-7> 상속세(2015년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조세지출규모 ····· 128
<부표 A.4-8> 증여세(2015년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조세지출규모 ····· 129
<부표 A.4-9>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조세지출금액 전망치 추정모형 흐름도 ····· 130
<부표 A.4-10> 상속세 회귀분석 결과 ····· 133
<부표 A.4-11> 증여세 회귀분석 결과 ····· 134
<부표 A.4-12> 2015~2017년 상속·증여세 산출세액 전망(회귀모형) ····· 136
<부표 A.4-13> 2015~2017년 상속·증여세 산출세액 전망(기하평균 탄성치) ····· 138
<부표 A.4-14>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조세지출규모 전망치 ····· 139
<부표 A.4-15> 추계방법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조세지출규모 전망치 ····· 140

<부표 A.5-1>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연혁 ····· 144
<부표 A.5-2> 국세청 요청 자료 ····· 145
<부표 A.5-3>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종합합산 토지분) ····· 148
<부표 A.5-4>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규모 추정 ··· 149

<부표 A.6-1>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수혜자 ····· 152
<부표 A.6-2>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관련 신고 서식 ····· 154
<부표 A.6-3> 공장 · 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 연혁 ··· 155
<부표 A.6-4> 부가가치세 요청 자료 ····· 156
<부표 A.6-5>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월별 공급 가액 요청 자료 ····· 157
<부표 A.6-6> 일반과세자/간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사업 부분 ····· 158
<부표 A.6-7> 2015년 국세통계연보 부가가치율 현황(음식업) ····· 161
<부표 A.6-8>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 161
<부표 A.6-9> 추정모형1 ····· 161
<부표 A.6-10> 추정모형2 ····· 162
<부표 A.6-11> 연도별 간이과세자(음식점업) 부가가치율 ····· 162
<부표 A.6-12> 국세통계연보 음식업 부가가치율 ····· 162
<부표 A.6-13> 초 · 중 ·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 ····· 163
<부표 A.6-14> 초 · 중 ·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 ····· 164
<부표 A.6-15>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 추정 비교 ····· 164
<부표 A.6-16> 2016년, 2017년 학생 수 추정 ····· 165
<부표 A.6-17> 급식 비율 ····· 166
<부표 A.6-18> 연도별 1인당 급식비 ····· 166
<부표 A.6-19> 초 · 중 ·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급식 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 추정 ····· 167

<부표 A.7-1> 농 · 임 · 어업 부가가치세 업종코드의 종류 ····· 170
<부표 A.7-2> 농림부 제공 영농도우미 실집행 현황 ····· 171
<부표 A.7-3> 어업회사법인의 매출액 세부현황('14년 기준) ····· 172

<부표 A.7-4> 농・임・어업 분야 법인사업자의 연도별 부가가치율 ····· 173
<부표 A.7-5> 영농조합법인의 매출액 현황 자료 ····· 173
<부표 A.7-6> 농업회사법인의 매출액 현황 자료 ····· 173
<부표 A.7-7> 영어조합법인의 매출액 현황 자료 ····· 174
<부표 A.7-8> 어업회사법인의 매출액 현황 자료 ····· 175
<부표 A.7-9> 영농조합법인의 부가가치세 면제규모 추정 결과 ····· 176
<부표 A.7-10> 농업회사법인의 부가가치세 면제규모 추정 결과 ····· 177
<부표 A.7-11> 영어조합법인의 부가가치세 면제규모 추정 결과 ····· 177
<부표 A.7-12> 어업회사법인의 부가가치세 면제규모 추정 결과 ····· 178
<부표 A.7-13> 대행용역 관련 법인별 조세지출 규모 추정결과 ····· 178
<부표 A.7-14> 대행용역 관련 조세지출 규모 추정결과 ····· 179

<부표 A.8-1> 국민주택 공급 등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사례 ····· 188
<부표 A.8-2> 주요 연혁 ····· 189
<부표 A.8-3> 최초 도입 당시의 법규정 내역과 도입 당시 제정・개정이유 ····· 189
<부표 A.8-4> 통계자료: 최근 10년간(05~14년) 주택건설실적(인허가실적 기준) ····· 191
<부표 A.8-5>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부가가치세 업종코드 ····· 192
<부표 A.8-6> 산업연관표 실측치 기준연도별 산업분류 ····· 204
<부표 A.8-7> 회귀분석을 통하여 수정된 파라미터(fitted value) ····· 205
<부표 A.8-8> 연도별 소형주택비율(fitted value) ····· 207
<부표 A.8-9> 전국 주택총조사에 의한 소형주택 비중 ····· 208
<부표 A.8-10> 소비지출 ····· 209
<부표 A.8-11> 투자지출(주거용 건물투자) ····· 210
<부표 A.8-12> 투자지출(설비투자) ····· 211
<부표 A.8-13> 중간투입(과세) ····· 212
<부표 A.8-14> 추정된 이론적 부가가치세 과세베이스 ····· 212
<부표 A.8-15>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규모 ··· 214
<부표 A.8-16> 부가가치세 전체 탈루 규모 대비 국민주택건설 관련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 215
<부표 A.8-17> 회귀분석에 이용한 자료 ····· 217

<부표 A.8-18> 회귀분석 결과 ····· 217
<부표 A.8-19> 회귀분석에 의한 2016년도와 2017년도 전망치 ····· 218
<부표 A.8-20>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 추이 ····· 218

<부표 A.9-1> 공동주택 관리방법별 과・면세 ····· 221
<부표 A.9-2> 관리방법에 따른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 현황 ····· 222
<부표 A.9-3> '기타' 세대를 제외한 관리방법에 따른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 비율 223
<부표 A.9-4>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내역 ····· 224
<부표 A.9-5> '국민주택' 및 조세지출 대상 '국민주택 외'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 관리비 내역별 부가가치세 과・면세 현황 ····· 225
<부표 A.9-6>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부가가치세 업종코드 ··· 229
<부표 A.9-7> 규모 추정에 이용한 통계자료 ····· 229
<부표 A.9-8> 연도별 공동주택 세대수 현황 ····· 231
<부표 A.9-9> 위탁관리 공동주택 세대수 비중 ····· 232
<부표 A.9-10> 지역별 위탁관리 공동주택 세대수 비중 ····· 232
<부표 A.9-11> 전체 공동주택에서 조세지출대상 규모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 233
<부표 A.9-12> 2013년 지역별 공동주택 전용면적별 세대수 현황 ····· 234
<부표 A.9-13> 전체 공동주택 중 85㎡ 초과~135㎡ 이하가 차지하는 세대수 비중 ··· 234
<부표 A.9-14> 전체 공동주택에서 조세지출대상 규모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 235
<부표 A.9-15> 전체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85㎡ 이하)가 차지하는 세대수 비중 ·· 236
<부표 A.9-16> 지역별 주거전용면적 1㎡당 관리비 ····· 237
<부표 A.9-17> 2012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세 규모 ··· 238
<부표 A.9-18> 2013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세 규모 ··· 239
<부표 A.9-19> 2014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세 규모 ··· 239
<부표 A.9-20> 2015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세 규모 ··· 240
<부표 A.9-21> 2016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세 규모 ··· 240
<부표 A.9-22> 2017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세 규모 ··· 241
<부표 A.9-23>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수 비중 ····· 242
<부표 A.9-24> 연도별 지역별 국민주택 규모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규모 ····· 242
<부표 A.9-25> 서비스업 부가가치율 ····· 243

<부표 A.9-26> 2012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 (85㎡ 초과~135㎡ 이하) ····· 244
<부표 A.9-27> 2013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 (85㎡ 초과~135㎡ 이하) ····· 244
<부표 A.9-28> 2014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 (85㎡ 초과~135㎡ 이하) ····· 245
<부표 A.9-29> 2015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 (85㎡ 초과~135㎡ 이하) ····· 246
<부표 A.9-30> 2016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 (85㎡ 초과~135㎡ 이하) ····· 246
<부표 A.9-31> 2017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 (85㎡ 초과~135㎡ 이하) ····· 247
<부표 A.9-32> 2012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85㎡ 이하) ·· 248
<부표 A.9-33> 2013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85㎡ 이하) ·· 248
<부표 A.9-34> 2014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85㎡ 이하) ·· 249
<부표 A.9-35> 2015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85㎡ 이하) ·· 250
<부표 A.9-36> 2016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85㎡ 이하) ·· 250
<부표 A.9-37> 2017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85㎡ 이하) ·· 251
<부표 A.9-38> 연도별 조세지출 추정 규모 추이 ····· 251
<부표 A.9-39> 향후 규모추정에 필요한 자료 구조 ····· 252

<부표 A.10-1> 2012~2015년 노인복지주택 분양현황 ····· 257
<부표 A.10-2> 국민주택규모 기준 노인복지주택현황 ····· 258
<부표 A.10-3> 지역별・연도별 1㎡당 월평균 면세대상 관리비 ····· 260
<부표 A.10-4> 노인복지시설의 면세대상 관리비 및 조세지출 규모 ····· 262
<부표 A.10-5> 노인복지주택 관리비 중 면세대상 매출액 과세표준 추정치 ····· 263
<부표 A.10-6> 각 시설별 감면규모 추정결과 ····· 264
<부표 A.10-7> 전용면적 85㎡이하 노인복지주택의 총면적 전망 ····· 265
<부표 A.10-8> 지역별・연도별 관리비 항목의 연평균 증가율 ····· 267
<부표 A.10-9> 2016 및 2017년도 조세지출 전망치 ····· 268
<부표 A.10-10> 조세지출 전망결과 요약 ····· 268

<부표 A.11-1> 영구임대주택 난방방식 현황: 2016년 11월 말 기준 ····· 271
<부표 A.11-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 272
<부표 A.11-3> 2015년 영구임대주택 현황 ····· 273
<부표 A.11-4> 지역별 1㎡당 월평균 난방비 ····· 275
<부표 A.11-5> 감면규모 추정결과 ····· 276
<부표 A.11-6> 단지별 감면규모 추정결과 ····· 276
<부표 A.11-7> 2015~2017년도 입주 영구임대주택 단지 현황 ····· 280
<부표 A.11-8> 2015~2017년 입주 영구임대주택 단지 조세감면규모 ····· 280
<부표 A.11-9> 2016년 및 2017년 조세지출 규모 전망결과 ····· 281

<부표 A.1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병 치료제 범위 ····· 283
<부표 A.12-2>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혜 병목 변천 ····· 284
<부표 A.12-3> 희귀병 치료제 관련 업종 코드 ····· 285
<부표 A.12-4> 희귀 난치성 질환자 약품 매출액 자료 개요 ····· 286
<부표 A.12-5> 고쉐병 원내외 비중 추이 ····· 287
<부표 A.12-6> 고쉐병 주요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 288
<부표 A.12-7> 근이영양증 원내외 비중 추이 ····· 289
<부표 A.12-8> 근이영양증 주요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 289
<부표 A.12-9> 림프절증식증 원내외 비중 추이 ····· 290
<부표 A.12-10> 림프절증식증 주요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 290
<부표 A.12-11> 뮤코다당증 원내외 비중 추이 ····· 292
<부표 A.12-12> 뮤코다당증 주요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 292
<부표 A.12-13> 부신이영양증 원내외 비중 추이 ····· 293
<부표 A.12-14> 부신이영양증 주요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 294
<부표 A.12-15> 삼킴곤란 원내외 비중 추이 ····· 295
<부표 A.12-16> 삼킴곤란 주요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 295
<부표 A.12-17> 신종인플루엔자 원내외 비중 추이 ····· 296
<부표 A.12-18> 신종인플루엔자 주요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 297
<부표 A.12-19> 야간헤모글로빈뇨 원내외 비중 추이 ····· 298
<부표 A.12-20> 야간헤모글로빈뇨 주요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 298
<부표 A.12-21> 윌슨병 원내외 비중 추이 ····· 299

<부표 A.12-22> 윌슨병 주요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 300
<부표 A.12-23> 타이로신혈증 원내외 비중 추이 ····· 301
<부표 A.12-24> 타이로신혈증 주요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 301
<부표 A.12-25> 혈우병 원내외 비중 추이 ····· 303
<부표 A.12-26> 혈우병 주요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 303
<부표 A.12-27> 후천성면역결핍증 원내외 비중 추이 ····· 304
<부표 A.12-28> 후천성면역결핍증 주요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 304
<부표 A.12-29>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조세지출 실적 추정 ···· 307
<부표 A.12-30>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조세지출 규모 전망 ···· 308

<부표 A.13-1> 조세특례제한법상 변천 ····· 311
<부표 A.13-2>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규모 ····· 311
<부표 A.13-3> 영유아용 조제분유 및 기저귀 관련 업종 코드 ····· 312
<부표 A.13-4> 조제분유 품목별 소매점 매출액 ····· 313
<부표 A.13-5> 2016년 연령별 조제분유 섭취율 및 아동 1명당 월평균 구입비용 ····· 315
<부표 A.13-6> 연령별 조제분유 소비규모 및 전체 시장규모 추정결과 ····· 315
<부표 A.13-7> 개별 업체의 영유아용 기저귀 관련 자료 ····· 316
<부표 A.13-8> 2016년 연령별 일회용 기저귀 사용률 및 아동 1명당 월평균 구입비용 ··· 317
<부표 A.13-9 연령별 일회용 기저귀 소비규모 및 전체 시장규모 추정결과 ····· 317
<부표 A.13-10> 영유아 조제분유 및 기저귀 부가가치세 면세의 조세지출 규모 추정치 ··· 319
<부표 A.13-11> 영유아 조제분유 및 기저귀 부가가치세 면세의 조세지출 규모 전망 ··· 319

<부표 A.14-1> 목재펠릿 생산기업 현황: 2015년 기준 ····· 323
<부표 A.14-2>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현황: 2015년 기준 ····· 324
<부표 A.14-3> 용도별 목재펠릿 소비량 ····· 324
<부표 A.14-4> ’15년도 국내 생산업체의 부가가치세 감면규모 추정결과 ····· 326
<부표 A.14-5> 2015년도 해외 수입물량의 부가가치세 감면추정규모 ····· 327
<부표 A.14-6> 2011년 이후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의 조세지출 규모 ····· 329
<부표 A.14-7> 2015년 이후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판매금액 및 수입금액 추정치 ·· 329
<부표 A.14-8> 2015년 이후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의 조세지출 규모 전망치 ·· 330

<부표 A.15-1>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변천과정 ····· 334
<부표 A.15-2> 금 스크랩(scrap) 관련 수출입실적 ····· 336
<부표 A.15-3> 연도별 금 가격 추이 ····· 337
<부표 A.15-4>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의 수출입실적 ····· 338
<부표 A.15-5> 연도별 동 스크랩(scrap) 유통가격 ····· 338
<부표 A.15-6> 2017년 비철금속(구리) 가격 전망 ····· 339
<부표 A.15-7> 철 스크랩(scrap) 관련 수출입실적 ····· 340
<부표 A.15-8> 철 스크랩(scrap) 현황 ····· 341
<부표 A.15-9> 철 스크랩(scrap) 용도별 수급 ····· 341
<부표 A.15-10> 지역별 고철(철 스크랩) 가격현황 ····· 342
<부표 A.15-1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통해 국고에 납부된 부가가치세액 ··· 344

<부표 A.15-12> 금, 구리 스크랩 가격 증감률(2016년 기준) ····· 345
<부표 A.15-13> 금, 구리 스크랩 수입량 연평균 증감률(2013~2015) ····· 345
<부표 A.15-14> 금,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조세지출규모 (2017년 전망) ····· 346
<부표 A.15-15> 철 스크랩 산업의 철 스크랩 공급으로 인한 이론적 산출세액 ····· 347
<부표 A.15-16> 구리 스크랩 등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지출규모 규모 ··· 348

<부표 A.16-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변천과정 ····· 354
<부표 A.16-2> 연도별 접대비 신고 현황 ····· 357
<부표 A.16-3> 수입금액규모별 매출액 및 접대비 현황(귀속연도 기준) ····· 358
<부표 A.16-4> 접대비 손금산입액 계산구조 ····· 360
<부표 A.16-5> 문화접대비 추가손금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 시산(2014년 기준) ····· 361
<부표 A.16-6> 문화접대비 지출 추가 손금산입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 추정식 ····· 361
<부표 A.16-7> 문화접대비 조세지출금액 규모 추정 흐름도(귀속연도 2014년 기준) ··· 362
<부표 A.16-8> 문화접대비 지출 기업 특징 ····· 364
<부표 A.16-9> 연도별・수입금액규모별 문화접대비 지출액 현황 ····· 365
<부표 A.16-10> 문화접대비 지출 추가 손금산입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법인세 실효세율) ····· 368

<부표 A.16-11> 문화접대비 지출 추가 손금산입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산출세액 변화분) ····· 368
<부표 A.16-12> 연도별・수입금액 규모별 문화접대비 조세지출규모 현황 ····· 369
<부표 A.16-13> 수입금액 규모별 문화접대비 조세지출규모 전망치(2015년도) ····· 372
<부표 A.16-14> 수입금액 규모별 문화접대비 조세지출규모 전망치(2016년도): 법인세 실효세율 ····· 374
<부표 A.16-15> 수입금액 규모별 문화접대비 조세지출규모 전망치(2016년도): 산출세액 변화분 ····· 375
<부표 A.16-16> 수입금액 규모별 문화접대비 조세지출규모 전망치(2017년도): 법인세 실효세율 ····· 376
<부표 A.16-17> 수입금액 규모별 문화접대비 조세지출규모 전망치(2017년도): 산출세액 변화분 ····· 377
<부표 A.16-18>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로 인한 조세지출규모 ····· 378

<부표 A.17-1> 외화자금 조달수단별 이자소득세 부과 여부(2012년 6월 말 현재) ··· 383
<부표 A.17-2> 비거주자의 외화예금 총수신 규모(말잔) ····· 389
<부표 A.17-3> 이자소득세율 추이 ····· 390
<부표 A.17-4>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자료 불제공 사유 ····· 391
<부표 A.17-5> 비거주자 외화예금 추이 (말잔) ····· 392
<부표 A.17-6> 외화정기예금이자율(우리은행기준) ····· 393
<부표 A.17-7> 연도별 비거주자의 외화예금 은행 총수신 규모 ····· 395
<부표 A.17-8> 연평균 비거주자 외화정기예금 이자율(우리은행) ····· 396
<부표 A.17-9> 2012년 4월말 현재 비거주자별 외화예금 구조 ····· 397
<부표 A.17-10> 비거주자의 정기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규모 추정 결과(평잔) ····· 398
<부표 A.17-11> 비거주자의 정기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규모 추정 결과(말잔) ····· 398
<부표 A.17-12> 비거주자 외화예금 예금은행 총수신(평잔) 회귀분석 결과 ····· 401
<부표 A.17-13> 비거주자 외화예금 예금은행 총수신(말잔) 회귀분석 결과 ····· 402
<부표 A.17-14> 회귀분석에 의한 비거주자 외화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규모 추정 결과(평잔) ····· 402

<부표 A.17-15> 회귀분석에 의한 비거주자 외화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규모 추정 결과(말잔) ····· 403
<부표 A.17-16> 추정규모 비교 ····· 404
<부표 A.17-17> 2016년, 2017년도 전망치 ····· 404
<부표 A.17-18> 회귀분석에 의한 비거주자 외화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규모 추정 결과(평잔) ····· 405
<부표 A.17-19> 회귀분석에 의한 비거주자 외화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규모 추정 결과(말잔) ····· 405
<부표 A.17-20> 연도별 조세지출 추정 규모 추이 ····· 405

<부표 A.18~26-1> 2015년 조세지출 신설제도 감면방법 ····· 409
<부표 A.18~26-2> 2016년 조세지출예산서상 2015년 신설항목 중 추정곤란항목 실적치 파악 여부 요약 ····· 411
<부표 A.18~26-3> 기업활력법 공표사항 ····· 413
<부표 A.18~26-4> 2015년 조세지출 신설제도 중 직접감면 항목 ····· 416
<부표 A.18~26-5> 2015년 조세지출 신설제도 감면방법 ····· 417
<부표 A.18~26-6> 통계추출 가능서식: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 417
<부표 A.18~26-7> 2015년 조세지출 신설제도 감면방법 ····· 418
<부표 A.18~26-8> 2015년 조세지출 신설제도 조세지출규모 추정 ····· 421

그 림 목 차

[부도 A.4-1] 유가증권 연도별 상속재산가액 추이 ····· 120
[부도 A.4-2] 유가증권 연도별 증여재산가액 추이 ····· 124
[부도 A.4-3] 상속세수 모형 추계 검정 ····· 131
[부도 A.4-4] 증여세수 모형 추계 검정(모형 1) ····· 131
[부도 A.4-5] 증여세수 모형 추계 검정(모형 9) ····· 132

[부도 A.8-1] 국민주택 건설 및 주택건설용역에 대한 조세지출 추정 규모 추이 ····· 215

[부도 A.15-1] 연도별 금 및 동스크랩 가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로 인한 부가가치세수실적 추이 비교 ····· 344

[부도 A.16-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귀속연도 2016년 기준) ····· 352
[부도 A.16-2]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체계 변천과정(귀속연도) ····· 353
[부도 A.16-3] 수입금액 규모별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귀속연도 2013년) ····· 357

[부도 A.17-1] 수시입출식예금과 교역규모와의 관계 ····· 386
[부도 A.17-2] 개인예금과 여행지급과의 관계 ····· 386
[부도 A.17-3] 외화예금 비중과 환율과의 관계 ····· 387
[부도 A.17-4] 정기예금과 내외금리차와의 관계 ····· 387
[부도 A.17-5] 우리나라 은행의 외화예금 구조(2012.4월말) ····· 388
[부도 A.17-6] 비거주자 외화예금 월별 추이(2013.1~2016.6) ····· 389
[부도 A.17-7] 비거주자 외화예금 연도별 추이(1992~2015) ····· 390

Ⅰ. 서 론



Ⅰ. 서 론

□ 2013년 조세지출 자체평가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3단계 조세특례 성과평가체계가 구축되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1단계: 조세지출 규모 300억원 이상의 신규제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 2단계: 조세지출 규모 300억원 미만의 신규제도 도입 건의와 기존 제도에 대한 소관부처 자체평가 시행 및 전문기관의 확인·점검

○ 3단계: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 중 조세지출 규모 300억원 이상인 제도들에 대한 의무심층평가 및 이외의 항목들에 대한 임의심층평가

- 임의심층평가의 대상은 분야별 일괄 평가가 필요한 사항,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기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선정

□ 이처럼 3단계로 구성된 조세특례 성과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중 하나는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 규모 추정치의 정확도 제고이지만 일부 항목들은 추정곤란한 사유를 적시하고 그 규모가 누락되어 있음

○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조세지출 규모의 추정곤란으로 인해 그 규모가 누락되어 있는 항목들은 총 26개로 파악됨

○ 연도별 추정곤란 항목(개)은 2013년 25개에서 2015년 20개로 감소추이를 보였으나 2016년 26개로 증가

- 2015년말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신설 등으로 추정곤란 항목들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조세지출 규모가 추정되지 않고 있는 총 26개 항목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정 가능성을 타진하고 추계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2016년 1월에 개최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

○ 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선언적 규정이지만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의 한도를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감면율의 한도를 보다 정

확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 규모 추계의 정밀도를 제고할 필요

- 조세지출 규모가 발표되고 있는 항목들의 조세지출 규모 추정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추정되지 않고 있는 항목들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

○ 국회, 언론, 연구기관 등에서도 감면규모 추정이 곤란한 제도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및 연구를 통해 납세서식자료 등 제도적 보완 또는 추계모형 개발을 추진할 필요

□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 시점의 전년도 실적은 신고서식으로부터 집계하더라도 당해 연도와 다음연도의 항목별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익년도에 실적치와 비교검토를 통해 추정방법 고도화 작업을 수행할 필요

○ 항목별 조세지출 규모가 가용하더라도 현재 문헌상 찾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1998년 자료이며 최근 도입된 제도의 경우 조세지출 규모가 추정되고 있어도 시계열이 짧기 때문에 강건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이러한 제약조건하에서 추정곤란 항목과 동일한 감면방법을 적용하는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전망방법을 고려하여 미확정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 추정방법을 개발

□ 추계모형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종을 대표하는 협회나 이익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규모 등의 통계자료의 활용이 필요할 수 있고 개발된 모형을 향후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모형에 투입되는 자료의 가용성 이외에 다음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계획

○ 모형 운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급적 간략한 형태

- 모형의 유용성이 동일하다면 운용부담이 적은 형태의 모형을 제안

○ 감면방법의 차이가 잘 반영되고 가능하면 국세청의 실적치를 파악하여 모형의 전망치와 비교할 수 있도록 납세서식의 활용을 높일 필요

○ 현실적으로 가용한 자료의 부재로 인해 적절한 모형의 개발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함

□ 본 과제의 보고서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지침에 따라 '효과성-타당성-종합평가 및 개선방안'의 기본 구조로 작성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하고자 함

○ 먼저 제II장에서 추정곤란 항목들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추정곤란 사유, 추정곤란 항목의 세목별 및 감면방법별 분포, 그리고 우리나라 추정곤란 항목 수의 전체 조세지출 항목 수 대비 비율의 국제비교 등을 통해서 추정곤란 항목의 현황을 파악함

○ 제III장에서는 추정곤란 항목들의 조세지출 규모 산정방법을 감면방법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현재 26개 추정곤란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고 과세이연, 손금산입, 비과세 등 기타 감면방법을 반영한 추정모형을 설명하고자 함

○ 제IV장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추정모형을 활용하여 시산 가능한 항목들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 및 전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 각 항목별 가용자료, 추정모형 및 추정결과 등은 부록에 상세히 수록함

○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연구를 마치고자 함

Ⅱ. 조세지출 추정곤란 항목 현황



Ⅱ. 조세지출 추정곤란 항목 현황

1. 추정곤란 사유

□ 2016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나타난 26개의 조세지출 규모 추정곤란 항목들과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표 Ⅱ-1> 참조)

○ 26개 추정곤란 항목 중 9개 항목은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들로 해당 면세사업자는 면세대상 경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어서 국세청 신고자료상에서 파악하기 어려움

- 9개 부가가치세 면제항목은 <표 Ⅱ-1>의 6번~14번 항목들임

○ <표 Ⅱ-1>의 18번~26번의 9개 항목들은 2015년 새로 도입되어 현재 추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 경제주체의 행위 변화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료관리가 없거나 개별 납세자의 신고서식에서 추출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등의 사유로 8개 항목들이 추정 곤란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1> 추정곤란 조세지출 항목 및 사유

연번	법률	조문	조세지출 항목	추정곤란 사유
1	소득	12 2(다),(라)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	대부분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님
2	조특	70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경제주체의 행위 변화 추정곤란
3	조특	87의6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이자·배당 지급 명세서상 추출불가
4	조특	101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별도의 자료관리 없음
5	조특	104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경제주체의 행위 변화 추정곤란
6	조특	106①2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 없음
7	조특	106①3	농·어업경영 및 농·어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 없음

<표 Ⅱ-1>의 계속

연번	법률	조문	조세지출 항목	추정곤란 사유
8	조특	106①4	국민주택 및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 없음
9	조특	106①4의2, 4의3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 없음
10	조특	106①4의4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 없음
11	조특	106①4의5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 없음
12	조특	106①10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 없음
13	조특	106①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 없음
14	조특	106①12	임산물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 없음
15	조특	122의4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경제주체의 행위 변화 추정곤란
16	조특	136③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개별사업자별 접대비 지출액 및 한도액 상이
17	조특	21의2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이자·배당 지급 명세서상 추출불가
18	조특	39	자회사 매각을 위한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15년 신설>
19	조특	97의7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개인소유 토지 양도세 과세특례	<15년 신설>
20	조특	121의25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조세특례	<15년 신설>
21	조특	121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15년 신설>
22	조특	121의27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15년 신설>
23	조특	121의28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15년 신설>
24	조특	121의2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15년 신설>
25	조특	121의30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15년 신설>
26	조특	121의3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15년 신설>

2. 추정곤란 항목의 세목별 및 감면 방법별 분포

□ 2016년 조세지출예산서에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지 못하고 있는 항목들은 총 26개이지만 하나의 항목에 두 개 세목 이상의 조세지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인해 총 31개 항목으로 나타남

○ 소득세 조세지출 8개, 법인세 조세지출 10개, 부가가치세 면제 10개, 상속증여세 조세지출 2개, 종합부동산세 조세지출 1개 항목으로 나타남

○ 소득세 조세지출의 경우 2015년 신설된 제도는 3개이고 나머지 5개는 기 시행중인 제도임

○ 법인세 조세지출의 경우 2015년 신설된 제도가 총 8개이고 그 이전에 기 시행중인 제도 중에서 추정곤란 항목으로 분류된 제도는 2개임

-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공통 적용됨

○ 부가가치세 조세지출의 경우 2015년 신설된 제도가 1개이고 나머지 9개는 이전에 도입된 제도임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와 함께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5년 신설되어 2016년 시행

○ 상속증여세 조세지출은 2015년 신설 1건과 기존 1건 총 2건임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 자회사 주주에게 증여세 비과세(조특 121의27) 조항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법인세 과세특례와 함께 규정

○ 종합부동산세 조세지출은 2015년 이전 도입되어 시행된 제도들임

□ 소득세 조세지출 중 추정곤란 항목 8개는 비과세, 세액환급, 저율·분리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과세이연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음

○ 비과세 2건, 세액감면 2건, 세액환급 1건, 저율·분리과세 1건, 세액공제 1건, 과세이연 1건

<표 Ⅱ-2> 소득세 조세지출 추정곤란 항목들의 감면방법

연번	조세특례 내용	감면 방법
1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	비과세
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세액환급
3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저율·분리과세
15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
17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비과세
19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개인소유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신설)	세액감면
23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신설)	개인 주주: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25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신설)	지배주주: 과세이연(기간미확정)

주: 연번은 <표 II-1>의 항목별 번호임

□ 법인세 조세지출 중 추정곤란 항목 10개는 세액공제, 손금산입, 과세이연의 감면방법으로 지원

- ○ 가장 많이 사용된 감면방법은 과세이연으로서 기간 확정 6건, 기간 미확정 2건으로 나타남
- ○ 손금산입의 경우도 5건의 조세특례에 활용되고 있음
- ○ 이외에 세액공제 1건으로 나타남

<표 Ⅱ-3> 법인세 조세지출 추정곤란 항목들의 감면방법

연번	조세특례 내용	감면 방법
15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
16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손금산입
18	자회사 매각을 위한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신설)	모: 손금산입, 자: 과세이연(기간 확정)
20	수협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례(신설)	과세이연(기간 미확정)

<표 Ⅱ-3>의 계속

연번	조세특례 내용	감면 방법
2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신설)	과세이연(기간 확정)
22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신설)	모: 손금산입 자: 과세이연(기간 확정)
23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신설)	수증법인: 과세이연(기간 확정) 법인주주: 손금산입
24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신설)	면제법인: 과세이연(기간 확정) 금융기관: 손금산입
25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신설)	과세이연(기간 미확정)
26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신설)	과세이연(기간 확정)

주: 연번은 <표 II-1>의 항목별 번호임

□ 부가가치세 조세지출은 10건 모두 면세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음

<표 Ⅱ-4> 부가가치세 조세지출 추정곤란 항목들의 감면방법

연번	조세특례 내용	감면 방법
6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
7	농·어업경영 및 농·어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
8	국민주택 및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
9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
10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
11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
12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
13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
14	임산물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
20	수협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신설)	면세

주: 연번은 <표 II-1>의 항목별 번호임

□ 이외의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조세지출 추정곤란 항목의 경우 중과세 배제와 비과세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표 Ⅱ-5> 상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조세지출 추정곤란 항목들의 감면방법

연번	조세특례 내용	감면 방법
4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증세 할증평가 배제
5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종부세)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22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신설)	자회사 주주: 증여세 비과세

주: 연번은 <표 II-1>의 항목별 번호임

□ 이상에서 살펴본 추정곤란 항목들의 감면방법을 살펴보면, 면세(10), 과세이연(9), 손금산입(5), 비과세(3), 세액감면(2), 세액공제(2), 중과배제(2), 세액환급(1), 저율분리과세(1)의 순서로 나타남

○ 면세의 경우 특정한 용역과 재화의 시장규모와 부가가치율 추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추정곤란 항목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국세청 자료를 통해 면세 재화와 용역의 시장규모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부가가치율의 경우 유사한 품목군 또는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현행 국세통계연보에서 찾을 수 있는 수준보다는 세분된 형태로 파악하는 행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면세 재화와 용역의 시장규모의 추정이 쉽지 않은 작업이기는 하지만 가용한 경제사회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노력도 필요

○ 과세이연의 경우 과세이연 기간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과세이연 대상에 대한 추정뿐만 아니라 해당 납세자의 실효세율 측정이 필요함

- 과세이연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납세자의 과세이연 종료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과세개시 시점을 파악해야 하나 많은 행정비용이 유발되고 체계적인 행정자료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추정곤란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외의 감면방법들의 경우 해당 요건에 대한 향후 전망치를 작성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지만 납세자료를 활용하여 최소한 실적치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함

- 실적치 파악과 함께 해당 제도의 수혜자 그룹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들을 생성할 수 있도록 납세신고서식 관련 여타 항목들에 대한 정보도 함께 관리되어야 함

- 추가적인 수혜자 정보는 여타 경제사회 통계자료와 연계하여 향후 전망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임

□ 추정곤란 항목들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인은 일정한 행정비용을 감수하고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의 크기임에는 틀림없으나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해 보지 않고서는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상당한 수준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한 결과, 해당 추정곤란 항목의 조세지출 규모가 그러한 노력을 투입할 만큼 크지 않은 경우 실익이 없을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사전적으로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다 정확한 조세지출 규모 추정을 위한 기법과 이에 필요한 행정자료 구축에 일정 수준의 재원을 투입할 필요

3. 추정곤란 항목 수의 국제비교

□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추정곤란 항목 수가 전체 조세지출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로 미국과 프랑스 다음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2016년 현재 230개 항목의 조세지출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며 34개의 경과규정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총 264개 조세지출 항목이 있으며, 이 중 26개 항목이 추정곤란으로 조세지출예산서에 나타남

□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호주의 최신 조세지출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조세지출 항목 수 대비 추정곤란 항목 수의 비율을 측정한 결과, 미국은 1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경우 2025년까지 조세지출 항목별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미국의 조세지출 규모 추정방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아서 연방정부의 조세지출제도가 169개로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정곤란 항목도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의 경우 449개의 조세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조세지출 항목의 규모를 추정하고 있고 전체의 9.6%에 해당하는 43개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만 추정곤란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이외에 영국이 전체 조세지출 제도의 18.5% 수준인 34개 항목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지 않고 있으며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의 경우 추정곤란 항목의 비율이 각각 26.4%, 35.3%, 43.1%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Ⅱ-6> 해외 주요국과의 추정곤란 항목 수 비교

(단위: 개, %)

국 가	한 국	미 국	캐나다	영 국	아일랜드	프랑스	호 주
조세지출 항목 수 (A)	264	169	208	184	170	449	290
추정곤란 항목 수 (B)	26	1	55	34	60	43	125
비율 (B/A×100)	9.8	0.6	26.4	18.5	35.3	9.6	43.1

주: 1. 미국의 경우 2016~2025년도의 수치가 모두 0인 항목을 추정곤란으로 파악
2. 미국 이외의 국가의 추정곤란 항목 수는 각국의 조세지출보고서에 추정곤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자료: 미국: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ISCAL YEAR 2017 Analytical Perspectives, 2016
영국: HM Revenue & Customs, United Kindom, Estimated cost of tax reliefs, expenditures, & allowances, 2015.12
캐나다: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Tax Expenditures and Evaluations, 2016.
아일랜드: Department of Finance, Ireland, Report on tax expenditures, 2015
한국: 기획재정부, 『2016 조세지출예산서』, 2015.
프랑스: République Française, PLF pour 2016: Evaluations des Voies et Moyens, 2015.
호주: The Treasury, Australia, Tax Expenditure Statement 2015, 2016.

Ⅲ. 추정곤란 항목 조세지출 규모 추계 및 전망방법 개관



Ⅲ. 추정곤란 항목 조세지출 규모 추계 및 전망방법 개관

1. 현행 조세지출 규모 산정방법[1)]

□ 조세지출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세지출 규모의 산정방식은 시점에 따라 구분되며 직전연도 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 있음

○ 직전연도 조세지출의 규모는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조세감면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지만 신고의무가 없는 소득세 비과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조세감면의 경우 관계부처, 농협 등 관련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추정

- 자료 수집 등의 합리적 추정이 어려운 경우 '추정곤란'으로 표시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 일정 기간의 과세이연을 의미하는 간접감면의 경우에는 이자상당 금액으로 조세지출 금액을 추정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이는 과세이연의 기한이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 가능함

- 과세이연의 기한이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대상금액만 확정할 수 있으면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이자상당 금액을 조세지출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과세이연의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이연 대상금액을 확정할 수 있더라도 해당 과세이연 대상금액의 이자상당 금액은 무한히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박명호 외(2008)은 과세이연 대상금액에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 실질적 감면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박명호 외(2008)의 제안은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으나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해당 조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시작하는 납세자들에 대한 처리는 우선 박명호 외(2008)에서처럼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 실질적 감면과 동

1) 현행 조세지출의 규모 산정방법은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5에서 인용

일하게 취급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과세이연이 종료되어 과세대상 소득으로 환입되어 증가하는 세액을 차감하여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순조세지출 규모를 실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과세이연 종료에 따라 추가적으로 징수되는 세수실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박명호 외(2008)에서 제시한 방안은 조세지출 규모를 과대 추정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보완될 필요

□ 당해 연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상반기까지 신고된 조세감면액을 과거 상반기까지의 실적과 비교하여 진도비를 고려하여 잠정금액을 추정하고 있음

○ 신고서상에서 파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방법임

□ 다음연도 조세지출 규모는 과거 실적, 경제지표 및 세목별 탄성치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방식으로 조세지출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는 개략적인 설명은 매해 발간되는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항목별 조세지출 규모 산정방식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비록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추정곤란 항목들이지만 기존 추정항목들의 보다 자세한 추정방법에 관한 정보는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2. 추정곤란 항목들의 조세지출 규모 추계방법

가. 기본적인 조세지출 규모 추계방법

□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세수손실법, 세수증대법, 직접지출등가법이 있으며 현행 조세지출 규모 추정은 세수손실법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세수손실법은 감면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의 세수규모와 감면조항을 적용한 경우의 세수규모의 차이로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납세자의 조세감면 요구 액수와 동일함

- 납세자가 성실히 신고했다고 가정할 경우 신고서상의 해당 조항 조세감면 요구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조세지출 규모가 됨
- 측정상의 간편함이 장점이지만 특정 지원제도가 없을 경우 납세자는 다른 제도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조세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조세지출 규모로 보기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납세자의 이러한 행위는 사전에 예상하거나 사후적으로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세수손실법으로 조세지출 규모를 산정하고 있음

○ 세수증대법은 특정 조세지원제도의 폐지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세수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조세지출 규모로 볼 수 있지만 측정하기 매우 어려움
- 세수증대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행태변화와 조세지출 제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직접지출등가법은 조세지출 제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재정지출로 달성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예산규모를 조세지출 규모로 산정하는 방식임
- 예산 사업과의 비교목적으로는 적합한 방식이나 조세지출의 정책목표를 수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 추정곤란 항목을 추정함에 있어서 세수증대법이나 직접지출등가법을 적용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세수손실법을 기본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함

○ 현재 추정곤란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항목들은 수혜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납세서식에서도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므로 해당 납세자들의 행태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나. 감면방법별 추계방법

□ 기본적으로 세수손실법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감면방법별 특성을 반영하여 추정곤란 항목들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1)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의 매출세액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과세표준을 추정하고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를 해당 조세지출 규모로 산정

○ 해당 재화와 용역의 생산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율을 사전에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이는 매출세액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곱한 결과와 동일함

○ 다시 말해, $TE_t = (TBS_t - TBI_t) \times \tau_t = TBS_t \times v_t \times \tau_t$

- TE_t 면세의 조세지출 규모, TBS_t 매출세액 과세표준, TBI_t 매입세액 과세표준, τ_t 부가가치세 세율, v_t 부가가치율

□ 매출세액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와 용역의 시장규모로 측정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과세표준은 중간투입 규모를 파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입세액 과세표준을 측정하는 것은 매출세액 과세표준을 측정하는 것보다 어려움

○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 과세표준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384개 기본부문 정도이나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은 매우 좁게 설정된 특정 재화와 용역인 경우가 대부분임

○ 예를 들어, 희귀난치성 치료제, 조제분유, 영유아용 기저귀,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용역 등 대부분의 추정곤란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의 투입산출관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찾을 수 없음

□ 이러한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의 시장규모를 여타 경제사회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국세통계연보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근사치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됨

○ <표 II-4>에 제시된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에 대한 조세지원 규모의 추정을 위해서 아래의 표에 제시된 방법으로 해당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함

<표 Ⅲ-1> 부가가치세 면세 추정곤란 항목들의 조세지출 규모 추정방법 개관

연번	조세특례 내용	조세지출 규모 추정 방법
6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급식 실시현황의 급식 경비, 급식비율, 1인당 급식비 (통계청 e-나라지표) -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수 전망(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공장, 대학교 등의 급식관련 시장규모 파악 불가 - 국세통계연보 음식점업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율 적용 - 부록 A.6 참조
7	농·어업경영 및 농·어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영농조합법인의 위탁영농 매출액, 농업회사법인의 위탁영농 매출액, 영업조합법인의 기타 매출액, 어업회사법인의 기타 매출액(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 - 국세통계연보 농림어업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율 적용 - 부록 A.7 참조
8	국민주택 및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면세소비지출비율, 면세소비 및 투자의 중간투입률, 면세소비생산 및 면세투자 생산을 위한 면세중간투입비율,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 등(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국민계정) - 소형주택 건설비율(통계청 전국인구주택총조사) -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면세규모 추정 - 부록 A.8 참조
9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지역별 공동주택 현황, 지역별 위탁관리공동주택의 제곱미터당 관리비 현황(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지역별 공동주택의 관리방법별 세대수, 전용면적별 세대수(국토부 통계누리 공동주택현황) - 국세통계연보 서비스업 일반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가중평균 부가가치율 적용 - 부록 A.9 참조
10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노인복지시설 현황(보건복지부) - 노인복지시설 공급업체 개별 협조자료, 각 회사 홈페이지 제공 건축물 대장, - 관리비 정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국세통계연보 서비스업 부가가치율 적용 - 부록 A.10 참조

<표 Ⅲ-1>의 계속

연번	조세특례 내용	조세지출 규모 추정 방법
11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영구임대주택 난방방식별 단지, 세대수 비율, 주거전용면적(마이홈포털,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자료, 각 지자체 홈페이지) - 면적별 영구임대주택 현황(국통부 공공임대주택현황) - 난방비(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국세통계연보 전기·가스·수도업 부가가치율 적용 - 부록 A.11. 참조
12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희귀난치성 질환별 원내외 처방건수, 약품 매출액 합계, 총투여일수 등(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세통계연보 소매업(일반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가중평균) 부가가치율 - 부록 A.12 참조
13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0~4세 인구추계(통계청) - 조제분유 섭취율, 1인당 평균 조제분유 구입비용, 일회용 기저귀 사용률, 1인당 평균 기저귀 구입비용(복지부 연구용역과제 설문조사 결과) - 부록 A.13 참조
14	임산물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목재펠릿 생산현황(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 관세율(관세청) - 국세통계연보 제조업(일반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가중평균)부가가치율 - 부록 A.14 참조
20	수협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신설)	- 수협은행의 지점 및 출장소 수(수협 홈페이지) - 농협은행의 지점 및 출장소 수(농협 홈페이지) - 부록 A.18~26

주: 연번은 <표 II-1>의 항목별 번호임

(2) 과세이연

□ (방식 1) 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과세이연의 경우 과세이연 대상금액의 이자상당액의 세후 현재가치를 조세지출 규모로 산정함

○ 예를 들어, 「조특법」 제39조에 따른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에서처럼, 채무감소 발생한 자회사의 경우 해당 채무면제 이익을 사업연도 포함 4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익금산입하도록 법에 과세이연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순조세지출 규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NTE = A\tau\left[1-\frac{1}{N}\left(\frac{1}{1+(1-\tau)i}\right)^{M+N}\frac{(1+(1-\tau)i)^{N-1}}{(1-\tau)i}\right]$$

- 여기서 NTE는 순조세지출 규모, A 과세이연 대상 금액, τ 한계세율, i 이자율, M 거치기간, N 균등 분할 환입기간을 나타냄
- 과세이연 대상금액을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부담 경감효과에서 M년의 거치기간 이후 N년의 기간 동안 균등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세부담 증가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순조세지출 규모를 산정

○ 과세이연 대상금액은 개별 기업들의 의사결정사항으로 납세신고서 이외의 자료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청의 해당 자료의 전산화 및 가용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조특법」 제121조의 26~31에 신설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세제지원의 경우에도 과세이연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제시한 순조세지출 규모 산정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 과세이연 대상금액(A)의 확정은 개별 기업들의 납세서식에서 확인할 필요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에서 개별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의 개요는 파악할 수 있으나 과세이연 대상금액을 파악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음
- 과세이연 대상금액과 해당 기업의 한계세율 등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추정곤란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함

□ (방식 2) 과세이연 기간이 확정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시작 시점에서 해당 과세이연 대상금액을 그 기업의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산정하여 해당 기업들의 조세지출 규모를 합산하고 같은 연도에 과세이연 종료 요건을 갖춘 기업들의 세부담 증가 규모를 합산금액을 차감하여 동 제도의 해당

연도 경제 전체 조세지출 규모를 산정

○ 이 경우 거치기간에 제한이 없고 해당 자산의 매각 등 소정의 요건이 갖춰진 시점에서 과세대상 소득이 되므로 특정 시점의 조세지출 규모는 해당 시점에서 과세이연이 시작된 기업들의 조세지출 규모 합계에서 그 시점에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기업들의 세부담 증가규모 합계액을 차감하여 일종의 순조세지출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임

○ 과세이연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순조세지출 규모를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조세지출 규모를 측정했으나 개별 기업의 영속성과 과세이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산 매각 등 소정의 행위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산입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

○ 과세이연이 시작되는 K개의 기업과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L개의 기업이 있는 경우 조세지출 규모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widetilde{NTE} = \sum_{i=1}^{K} A_i \zeta_i - \sum_{j=1}^{L} I_j \rho_j$$

- 여기서 $\widetilde{NTE}$는 순조세지출 규모, A_i $i-$기업의 과세이연 대상금액, ζ_i $i-$기업의 실효세율, I_j $j-$기업의 익금산입 금액, ρ_j $j-$기업의 실효세율

○ 과세이연 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 과세연도마다 K개의 과세이연 시작 기업들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금액과 실효세율 및 L개의 과세이연 종료 기업들에 대한 익금산입 금액과 실효세율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서 생성하고 관리해야 함

- 공개된 기업재무자료나 여타 경제사회변수를 통해서 이러한 세무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며, 국세청에서 해당 자료를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조세지원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추정불가로 분류됨

□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이연 방식의 조세지원 제도들의 조세지출 규모 추정 가능성은 다음의 표에 요약되어 있음

<표 Ⅲ-2> 과세이연 방식 조세지원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추정방법 개요

연번	조세특례 내용	감면 방법	조세지출 규모 산정방식 개요
18	자회사 매각을 위한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신설)	자회사: 과세이연(기간확정)	-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방식 1)에 따라 산정 - 자회사의 채무면제이익은 납세서식(재무구조개선계획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법인양도양수(청산)계획서, 채무인수변제명세서), 분할익금산입 조정명세서)을 활용하여 산정 - 여타 경제사회변수 등으로 추정곤란
20	수협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례(신설)	과세이연(기간미확정)	- 물적 분할된 자산의 양도차익은 해당 자산 매각시(공적자금 상환 목적 제외) - (방식 2)에 따라 산정 - 분할된 자산의 양도차익은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자산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 을)를 활용하여 산정 - 여타 경제사회변수 등으로 추정곤란
2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신설)	과세이연(기간확정)	-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방식 1)에 따라 산정 -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채무상환 예정서,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 납부 조정명세서를 이용하여 과세이연 대상금액 산정 필요 - 여타 경제사회변수 등으로 추정곤란
22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신설)	자회사: 과세이연(기간확정)	-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방식 1)에 따라 산정 -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법인양도양수 계획서, 채무인수변제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이용하여 과세이연 대상금액 산정 필요 - 여타 경제사회변수 등으로 추정곤란
23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신설)	수증법인: 과세이연(기간확정)	-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방식 1)에 따라 산정

<표 Ⅲ-2>의 계속

연번	조세특례 내용	감면 방법	조세지출 규모 산정방식 개요
			-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이용하여 수증자산이익 산정 필요 - 여타 경제사회변수 등으로 추정곤란
24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신설)	면제법인: 과세이연(기간확정)	-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방식 1)에 따라 산정 -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채무면제명세서를 이용하여 채무면제이익 확정 필요 - 여타 경제사회변수 등으로 추정곤란
25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신설)	개인지배주주: 소득세 과세이연(기간미확정)	-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 - (방식 2)에 따라 산정 -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기업교환계약서, 주식등양도양수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를 이용하여 양도차익 확정 - 여타 경제사회변수 등으로 추정곤란
		법인지배주주: 법인세 과세이연(기간미확정)	-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 - (방식 2)에 따라 산정 -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기업교환계약서, 주식등양도양수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를 이용하여 양도차익 확정 - 여타 경제사회변수 등으로 추정곤란
26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신설)	과세이연(기간확정)	-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방식 1)에 따라 산정 -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를 이용하여 자산양도차익 확정 필요 - 여타 경제사회변수 등으로 추정곤란

주: 연번은 <표 II-1>의 항목별 번호임

(3) 손금산입

□ 손금산입에 의한 조세지원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손금산입 금액에 해당 기업의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거나 손금산입 금액에 따른 산출세액의 변화분으로 산정하고 여러 기업들이 해당할 경우 각 기업들의 조세지출규모를 합산함

○ 손금산입 항목의 조세지출 규모는 기본적으로 개별 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별 납세자의 정보보호 또는 여타 이유에 의해서 개별 납세자료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 또는 수입금액 구간별로 해당 기업들의 실효세율과 손금산입 금액을 집계하여 계산할 수 있음

- 손금산입에 따른 산출세액 변화분을 개별 기업별로 산정할 수 있을 경우 보다 정확한 세부담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음
- 관측되는 실효세율은 이미 손금산입을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반영된 것이어서 정확한 조세지출 규모로 보기 어려움

○ 손금산입 규모도 경제사회 변수들에 의해서 추정될 수 없으므로 국세청의 개별 납세자료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활용하여야 함

□ 손금산입 관련 납세서식 자료 중에서 일부 항목들은 DB화되어 있지 않아서 추정상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확인된 대표적 사례는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임

○ 「조특법」 제136조 제3항의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의 경우 문화접대비 한도액 정보를 담고 있는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은 DB화되어 있지 않아서 개별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로 인한 추가 손금산입 금액의 추정이 필요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접대비조정명세서(2)가 DB화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사업자의 문화접대비 지출현황 파악이 어려움

○ 국세통계연보에도 접대비 관련 통계자료만 제공되고 문화접대비 신고현황은 제공되지 않음

□ 앞에서 살펴본 5개 손금산입 항목들의 추정방법은 다음 표에 요약되어 있음

<표 Ⅲ-3> 손금산입 방식 조세지원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추정방법 개요

연번	조세특례 내용	감면 방법	조세지출 규모 산정방식 개요
16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손금산입	- 법인사업자에 한해서 추정 * 문화접대비 한도액 관련 납세정보가 DB화되어 있지 않아서 차감접대비 해당 금액, 일반접대비 한도액, 일반접대비 사이에 가능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추정 * 산출세액 변화분 기준과 실효세율 적용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산출세액 조세지출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남 * 부록 A.16 참조 -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련 납세정보가 가용하지 않으며 여타 사회경제변수로 추정불가
18	자회사 매각을 위한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신설)	모회사: 손금산입	-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법인양도양수(청산)계획서, 채무인수변제명세서, 세액감면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모회사의 손금산입금액 산정 필요 - 여타 경제사회변수로 추정곤란
22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신설)	모회사: 손금산입	-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법인양도양수 계획서, 채무인수변제명세서, 세액감면신청서를 이용하여 모회사의 손금산입금액 산정 필요 - 여타 경제사회변수 등으로 추정곤란
23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신설)	법인주주: 손금산입	-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자산증여계약서, 채무상환(예정) 명세서를 통한 증여재산가액 손금산입규모 산정 필요 - 여타 경제사회변수 등으로 추정곤란
24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신설)	금융기관: 손금산입	-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채무면제명세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채무면제금액 손금산입 규모 산정 필요 - 여타 경제사회변수 등으로 추정곤란

주: 연번은 <표 II-1>의 항목별 번호임

(4) 비과세 등 여타 감면 방법

□ 비과세 방식에 따른 조세지원 제도는 해당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비과세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변화분을 측정하고 조세지출 규모로 산정할 필요

- ○ 비과세 소득이 배제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측정된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지출 규모를 다소 과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 개인별 산출세액의 변화를 측정
- ○ 개별 납세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과세표준 구간별 실효세율이 가용한 경우 대안적으로 비과세 소득규모에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 감소규모를 근사적으로 추정함
- ○ 추정곤란 항목 중 비과세 방식에 따른 조세지원제도는 비과세 소득과 해당 비과세 소득이 발생한 개별 납세자의 세부담 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경우이어서 여러 경제사회적 변수를 통해 추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 저율·분리과세의 경우 소정의 낮은 세율 대신 기본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세부담 차이와 비교함으로써 조세지출 규모를 산정할 수 있음

- ○ 금융소득의 경우 저율 분리과세에 의한 조세지원제도가 다수 시행되고 있으므로 기본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금융종합과세의 세부담과의 차이를 조세지출 규모로 산정함

□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액감면율을 적용하여 조세지출 규모로 산출

- ○ 특정 세액감면제도의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의 산출세액 합계에 단일 감면세율을 적용
- ○ 요건별로 감면세율이 다른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의 산출세액의 합계에 요건별 감면세율을 적용한 후 해당 금액을 합산

□ 세액환급은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대상 세액을 조세지출 규모로 산정함

□ 세액공제의 경우 투자 등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제행위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산정함

○ 세액공제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나 개별 납세자료가 가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함

-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나 개별 납세자료의 부재로 이를 감안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산정할 수 없음

○ 세액공제의 베이스가 되는 특정한 경제행위를 납세서식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제사회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나 신뢰도는 높지 않음

○ 특히 법인세 관련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장부상 투자대용지표로 삼을 수 있는 적절한 지표의 발굴이 어려운 상황이며 개별 기업의 재무여건 및 세부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거시경제변수를 활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음

□ 비과세 등 여타 감면방법에 따른 추정곤란 항목의 추정방법은 아래의 표에 요약되어 있음

<표 Ⅲ-4> 비과세 등 여타 방식 조세지원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추정방법 개요

연번	조세특례 내용	감면 방법	조세지출 규모 산정방식 개요
1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	비과세	- 대부분의 농어민이 비과세를 적용받아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움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의 농외소득 자료와 농업총조사의 농가 수 및 증감률을 이용하여 농가의 부업소득 규모의 분포를 형성하고 소득구간별 부업소득의 비과세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를 실효세율 적용 방식으로 산출 - 전통주 및 민속주 제조에 따른 부업소득과 축산에 따른 부업소득은 관련 자료의 미비로 추정곤란 - 부록 A.1 참조
17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비과세	-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비거주자의 외화예금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임 - 국세청 납세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18번 항목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난에 'PU'로 표기된 신고서 금액의 합계가 조세지출 규모로 판단됨 -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해당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음 - 한국은행의 비거주자 외화예금 연도별 말잔 총액과 시중은행의 정기외화예금 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을 시도 - 부록 A.17 참조
22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신설)	자회사 주주: 증여세 비과세	-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법인양도양수계획서, 채무인수변제명세서 세액감면신청서를 이용하여 증여소득 산정 필요 - 여타 경제사회변수로 추정곤란

<표 Ⅲ-4>의 계속

연번	조세특례 내용	감면 방법	조세지출 규모 산정방식 개요
15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	- 개별 기업의 수입금액 증가분을 추정해야 하는데 경제사회통계로는 한계가 있음 - Thomson Reuters, GFMS Gold Survey 2016, 관세청 무역통계, 스크랩워치, 조달청 자료, 한국철강협회의 철강통계연보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나 성공적인 추정결과를 찾지 못함 - 부록 A.15 참고
19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개인소유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신설)	세액감면	-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서, 기업형 임대사업자 증빙서류 등을 이용하여 적격 여부 확인 필요 - 양도소득세액 산출 후 10% 세액감면율 적용 - 경제사회변수를 이용하여 추정곤란
23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신설)	개인 주주: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자산증여계약서, 채무상환(예정) 명세서를 통한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필요 - 양도차익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 여타 경제사회변수 등으로 추정곤란
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세액환급	-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를 이용하여 실적치 집계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농지은행의 설문조사, 연도별 환매규모 등 여타 변수를 통해 전망 방법을 모색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함 - 농지은행의 환매자 정보, 국세청의 양도세 납부 여부 및 연도별 환급실적 등을 이용하여 보다 개선된 추정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농지은행과 국세청 사이의 직접적 협업이 필요함 - 부록 A.2 참고

<표 Ⅲ-4>의 계속

연번	조세특례 내용	감면 방법	조세지출 규모 산정방식 개요
3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저율·분리과세	- 국세청 요청자료(<부표 A.3-2>)가 가용한 경우,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의 경우 각각 조세지출 규모를 제시 - 국세청, 국토부, 리츠정보시스템, 리츠협회 등 다양한 기관들에서 동 제도의 활용실적이 없다고 함 - 조세지출 규모는 실적 없음 '0'으로 제시 - 부록 A.3 참조
4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증세 할증평가 배제	-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추정에 활용되어야 할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 여부는 일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이 작성한 결정 결의서에서 확인가능하고 PDF 형태로 보관되고 있어서 향후 전산화할 필요 - 재산가액 규모별 유가증권 상속증여 사례의 할증평가 배제 여부, 평가가액, 납부할 세액 등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협조 받아 과거 실적 추정 - 다음연도 전망을 위해 회귀분석모형, 5년 기하평균 탄성치, 유가증권에 대한 탄성치 등 여러 방법으로 수행했으나 전망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음 - 가장 단순한 5년 기하평균 탄성치를 이용할 것을 제안 - 부록 A.4 참조
5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종부세)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 주택신축용토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취합한 자료를 국세청에 요청했으나 아직 협조되지 않고 있음 - 국세청 자료 협조가 어려울 경우 조세지출 규모 추정곤란 - 주택건설 인허가통계 등 여타 경제사회변수의 활용을 모색했으나 건설업자가 소유한 주택신축용토지 포함 부동산 자산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를 파악할 수 없음

주: 연번은 <표 II-1>의 항목별 번호임

Ⅳ. 추정 및 전망결과



Ⅳ. 추정 및 전망결과

1. 추정곤란 항목의 시산결과

□ 총 26개의 추정곤란 항목 중에서 시산 가능한 항목은 14개 항목으로 나타남

○ 소득세 3개 항목, 법인세 1개 항목, 상속증여세 1개 항목, 부가가치세 9개 항목의 시산결과를 제시함

○ 소득세 시산 가능항목 중에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민속주 및 전통주 부업소득과 축산부업소득을 제외한 일부만 추정가능 했음

○ 법인세 시산 가능항목인 문화접대 손금산입 특례의 조세지출 규모도 소득세분은 산정하지 못함

○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경우 회귀분석을 포함한 세 가지 방식 모두 유사한 전망결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전망결과의 강건성을 일정부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9건의 조세지출 규모를 경제사회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여 제시함

-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경우 가용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초중등(특수학교 포함) 급식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를 추정했음

○ 각 항목별 추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 추정곤란 항목으로 분류되던 14개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2015년 1조 5,160억원, 2016년 1조 2,137억원, 2017년 1조 5,557억원 수준으로 나타남

○ 국민주택 및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산업연관 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했으며 2015년 8,930억원 규모의 가장 큰 조세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신규 추정항목들의 조세지출 규모가 약 3천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은 주택건설실적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2015년 1,930억원 수준으로 나타나며 신규 추정 항목들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조세특례제도로 나타남

○ 이외에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 평가 적용특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4개 항목의 신규추정 결과를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에 반영한 결과, 상속증여세의 조세지출 규모가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규모 대비 50~93%에 달하는 수준으로 가장 크게 증가

○ 부가가치세의 조세지출 규모는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2015년 이후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보다 약 11.1~16.6% 정도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조세지출 규모 증가는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 규모의 1% 이하로 증가하며 큰 변화가 없음

<표 Ⅳ-1> 2016년 조세지출예산서상 추정곤란 항목 세목별 시산 결과

(단위: 억원)

세목	연번	구분	2015	2016 (전망)	2017 (전망)
소득세	1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	1,631.00	1,952.00	1,917.00
	3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0	0	0
	17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50.00	39.00	39.00
		소 계	**1,681.00**	**1,991.00**	**1,956.00**
법인세	16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1)]	11.80	13.40	13.60
		소 계	**11.80**	**13.40**	**13.60**
상속·증여세	4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2)]	649.4	718.9	796.4
		소 계	**649.4**	**718.9**	**796.4**
부가가치세	6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3)]	1,341.88	1,288.91	1,296.35
	7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6.80	20.91	26.29
	8	국민주택 및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8,930.00	5,753.00	8,915.00
	9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930.50	1,770.40	1,923.10
	10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16	1.32	1.48
	11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0.92	0.96	0.99
	12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54.59	56.31	58.65
	13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474.00	420.80	415.10
	14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67.60	101.40	153.70
		소 계	**12,817.45**	**9,414.01**	**12,790.66**
합 계			**15,159.65**	**12,137.31**	**15,556.66**

주: 1) 산출세액 변화분

2) 유가증권에 대한 5년 기하평균 탄성치

3) 초증고(특수학교 포함) 급식용역에 대한 사업자(간이·법인·일반)별 부가가치율 적용 규모 추정치의 평균

1. 2015년 신설항목, (조특70의2) 경영회생 농지 매매 양도세 환급, (조특104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122의4)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외

<표 Ⅳ-2> 추정곤란 항목 신규추정 결과 반영 전후 세목별 변화

(단위: 억원)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2015	예산서상	196,896.00	63,790.00	1,294.00	77,266.00
	14개 신규추정	1,681.00	11.80	649.40	12,817.45
	합계	198,577.00 (0.9% 증가)	63,801.80 (0.02% 증가)	1,943.40 (50.2% 증가)	90,083.45 (16.6% 증가)
2016	예산서상	198,973.00	66,010.00	772	85,095.00
	4개 신규추정	1,991.00	13.40	718.90	9,414.01
	합계	200,964.00 (1.0% 증가)	66,023.40 (0.02% 증가)	1,490.90 (93.1% 증가)	94,509.01 (11.1% 증가)
2017	예산서상	202,442.00	66,830.00	938	85,261.00
	4개 신규추정	1,956.00	13.60	796.40	12,790.66
	합계	204,398.00 (1.0% 증가)	66,843.60 (0.02% 증가)	1,734.40 (84.9% 증가)	98,051.66 (15.0% 증가)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6.9

2. 국세감면액 시계열의 비교 가능성

□ 14개 신규추정 항목의 추정결과를 반영하여 국세감면율을 다시 계산하면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발표된 국세감면율 수준보다 0.35~0.56%포인트 정도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지출예산서상의 국세감면율은 2015년 14.1%, 2016년 13.6%, 2017년 13.3% 수준으로 발표됐음

○ 14개 신규추정 항목의 추정결과를 반영하면 국세감면율은 2015년 14.66%, 2016년 13.95%, 2017년 13.76%로 나타나며 기존 발표된 국세감면율보다 소폭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국세감면율의 확대는 기존에도 발생하고 있었으나 추정하지 못했던 것이므로 보다 개선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국세감면율이 상향조정된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조세지출예산서에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항목 중 추정곤란 항목의 수가 상대적으로 여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적다는 점도 홍보할 필요

- <표 Ⅱ-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항목 수(경과규정 포함 264개) 대비 추정곤란 항목 수의 비율은 9.8%이나 향후 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 국세감면율 증가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 중 하나로 향후 3~5년간 두 가지 국세감면액과 국세감면율을 함께 병기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표 Ⅳ-3> 국세감면율 비교

(단위: 억원, %)

구분		2015	2016 (전망)	2017 (전망)
▪ 신규추정 항목 반영 후		374,177	377,214	385,943
- 국세감면액(A)		359,017	365,077	370,386
- 신규추정 항목		15,160	12,137	15,557
▪ 국세수입총액(B)		2,178,851	2,327,390	2,418,439
▪ 국세감면율[A/(A+B)]	추정곤란 반영 전	14.10	13.60	13.30
	추정곤란 반영 후	14.66	13.95	13.76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6.9

V. 결 론



Ⅴ. 결 론

□ 현재 가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지출 항목들 중 그 규모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지 못하고 있는 26개 항목들에 대한 개별 항목별 검토와 함께 14개 항목에 대한 시산 결과를 제시했음

○ 과세이연 방식의 조세지원제도의 경우 과세이연 대상금액은 세법상 요건을 갖춘 개별 납세자의 행동에 기초하고 있어서 경제사회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음

○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추정을 위해서는 개별 납세자료에 대한 보다 폭 넓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추정곤란 항목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재화와 용역의 시장규모를 다양한 경제사회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하나의 제도에서 설정하고 있는 여러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의 일부라도 추정하고자 시도했으며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됨

○ 아쉬운 점은 일부 제도의 경우 해당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의 전체 시장규모를 명확히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 또한 해당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잘 부합하는 부가가치율을 설정하지 못하고 국세통계연보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의 대분류 수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비록 과세이연 등 간접방식의 조세지원의 조세지출 규모의 추정방법은 이론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증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점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국세청에서 관리해야 하는 납세서식자료 중 일부는 DB화되어 있지 않아서 해마다 조세지출 규모 산정과정에 활용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함

○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이러한 귀중한 자료를 DB화하지 않음에 따라 개별 납세서식에서 찾을 수 있는 일부 변수들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전망방법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유용성을 검증하기 어려움

○ 향후 기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나은 조세지출 규모 추정방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난관들을 축소해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는 추정곤란 조세지출 항목들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일차적인 연구를 수행했으나 국가재정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정가능 항목들의 추정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향후 추진되어야 할 중요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함

〈부록〉 개별 항목별 추정모형 및 시산결과



<부록> 개별 항목별 추정모형 및 시산결과

A.1.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다목, 라목)

1. 제도 개요 및 연혁

가. 개요

(1) 농가부업소득의 정의[2)]

□ 농가부업소득은 「소득세법」(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득으로서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고공품[3)]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함

- ○ 축산부업인 경우에는 법 소정규모 이내이면 금액의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하나, 그 이외의 부업소득은 소득금액이 연 3천만원 이하를 한도로 비과세함
- ○ 이러한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도입목적

□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로 농가의 소득안정 기반 구축

(3) 주요 내용

□ 농·어민의 농가부업소득 및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

2) 출처: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3588(국세청 용어사전)(검색일: 2016. 11. 2.)

3) 짚이나 풀줄기로 만든 가마니, 새끼, 멍석과 같은 수공품

○ (농가부업소득의 범위[4]) ①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5]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의미함

-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별표 1] <개정 2012.2.2.>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 제1항 제1호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5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6]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산양	300마리	
면양	300마리	
토끼	5,000마리	
닭	15,000마리	
오리	15,000마리	
양봉	100군	

-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의미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의미

○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의미

○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을 의미

---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5) (김성수 사무관에게 조문 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 목록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부업으로 명시한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만을 부업의 범위로 보아도 무방함

6) 이유 직후로서 임신 또는 비육단계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소

○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7]) 법 제12조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밖의 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것을 의미함

- 1.「주세법」 제3조 제1호의 2에 따른 전통주
  - 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나.「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의미)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 2. 관광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주류(1991년 6월 30일 이전에 추천한 것에 한함)
- 3. 종전의「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1999년 2월 5일 이전에 허가한 것에 한함)

(4) 조세지출규모

□ 동 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조세지출 규모는 추정곤란한 것으로 조세지출예산서에 나타남

○ 대부분의 농·어민이 비과세 적용을 받아 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므로 농가부업소득 자료수집 곤란

7)「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

(5) 변천과정

시행연도	주요 변경사항
1996	- 소득세법 전면 개정 ·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 이하인 소득
2004	- 내용 추가 · (제3의2호)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것
2009	- 비과세 소득수준 증액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이하 → 연 1천800만원 이하인 소득
2010	- 소득세법 제12조 개정 · 제3호 → 제2호 다목 · 제3의2호 → 제2호 라목
2012	- 비과세 소득수준 증액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800만원 이하 → 연 2천만원 이하인 소득
2016	- 비과세 소득수준 증액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연 2천만원 이하 → 연 3천만원이하인 소득

자료: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접속일자 2016.11.14

2. 국세청 자료 현황

□ 국세청의 해당 항목 관련 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경우 농가부업소득이 비과세 규모를 초과하는 가구만 제출하므로 부업소득 전액이 비과세(연 2천만원 이하의 부업소득)인 농가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조세지출 규모가 과소 추정될 수 있음

○ 덧붙여, 작물재배업의 경우 2014년도까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기에 농가부업소득 규모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과세 규모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국세청에 해당 항목 관련 세금 규모가 신고되어 집계되지 않음

- 고소득 작물재배업자는 2013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소득세 과세

<2013년도 세법개정안 내용>

②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소득법 §12, §19①1)

현 행	개 정 안
□ 사업소득의 범위 ○ 제조업 ○ 어업, 축산업 ○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농업	○ 일정 수입금액*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포함 * 시행령으로 규정(예: 10억원)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

<개정이유> 여타 과세대상 소득과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10억원 이하의 수입을 창출하는 작물재배업의 경우 여전히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서 관련 세금 규모가 신고되어 집계되지 않음

○ 따라서 국세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체 농가의 부업소득 규모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

□ 전통주의 경우 국세청의 주세 자료를 이용하는 방안 존재

○ 농림부 전통주 담당자에 따르면 해당 부처에서도 국세통계연보의 주세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함

- 국세통계연보 주세 부분 중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주류별·지역별 출고 현황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한 전통주의 출고 시 가격

○ 한계점

- 전통주에 대한 비과세 소득 규모인 연 1천200만원 이하 여부는 국세청 주세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없으므로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전통주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 산출 불가
- 국세청 주세 담당자에 따르면 주세 관련 국세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양조장의 전통주 제조 소득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함

· 주세 과세를 위해 확보한 양조장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소득세 자료를 추출해야 하는 작업으로서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불가능

3. 기타 경제사회통계 자료 현황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농가경제조사의 농외소득 부분 이용 가능성

○ 농가경제조사의 결과를 수록한 보고서 「농가경제통계」

- 조사대상 농가 수: 전국 2,600표본농가(2015년도 기준)
  · 가구원 2인 이상 2,500농가, 1인단독 100농가
- 조사대상 농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 1,000㎡(10a)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연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 하고 있는 가구
  · 조사기준 시점 현재 시가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 외국인 가구, 비혈연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상시고용인 5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농, 농업시험장, 학교, 종교단체 및 법인 등

- 조사항목: 가구원현황, 작물재배현황, 가축사육현황 및 구입·판매 내역, 농업총수입, 농업외수입, 이전수입, 비경상수입, 농업지출, 농업외지출, 가계지출, 농업노동 투입내역
  · 농업외소득: 농가가 농업외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성과로서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을 합산한 금액
    * 겸업소득: 농가가 농업외의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으로서 임업 및 어업, 제조업, 건설업, 기타겸업수입 등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잔액
    * 사업외소득: 농가가 사업외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으로서 농가 가구원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노임, 급료 등의 소득과 그 외 임대료, 배당이자 등을 모두 합산한 것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잔액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축동향 자료

○ 가축동향 조사목적: 가축의 사육규모별 가구 수와 성 및 연령별 마릿수를 파악하여 축산정책 수립과 축산부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전수조사: 조사기준일 현재 시·도별 일정규모 이상 가축(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을 사육하고 있는 가구

- 닭은 시·도 구분없이 용도별 3,000마리 이상 사육농가를 전수조사함('06부터)
- 오리는 시·도 구분없이 용도별 2,000마리 이상 사육농가를 전수조사함('11부터)

- 표본조사: 표본조사구에서 조사기준일 현재 가축(한우, 육우, 젖소, 돼지)을 사육하고 있거나, 지난 3개월간 가축을 사육하였던 가구

○ 이용 가능 항목

- '사육규모별 가구 수' 항목을 가지고 농가경제조사의 축산업 가구 소득과 연계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도출하는 방안

○ 한계점

- 가축동향 자료의 경우 농가부업규모 축산을 영위하는 가구 수 및 가축 마릿수에 대한 정보만 존재하고 해당 농가 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어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지출 규모 도출 불가
  - 덧붙여, 농가부업규모 축산 대상가축 중 산양 및 면양, 토끼, 양봉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자료 이용에 한계 존재
  - 한 가구에서 여러 종류의 가축을 소유하여 축산업을 영위할 때 가구 수가 중복되어 조세지출 규모가 과대 추정될 수 있음

4. 추정모형 검토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농가경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시도

○ '09 이후 잠정치 추정 방법

- 농가경제조사의 표본농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잠정치 추정
- 농가경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겸업소득은 겸업농가에서만 창출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전업농가로 집계된 농가에서도 창출되고 있는 소득으로서 '농가부업소득'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부표 A.1-1> 농가경제조사 표본농가 중 겸업농가 및 과세대상 겸업소득 농가 비중

(단위: 호수, %)

해당연도		연 1,800만원 이하인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연 2,000만원 이하인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표본농가 수		2,652	2,649	2,637	2,674	2,347	2,600	2,600
겸업 소득 > 0	해당 농가 수	1,655	1,511	1,436	1,375	1,296	1,569	1,534
	비율	62.4	57.0	54.5	51.4	55.2	60.3	59
비과세 소득 수준 이상	해당 농가 수	147	169	166	161	123	141	134
	비율	5.5	6.4	6.3	6.0	5.2	5.4	5.2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김미복 · 김수석, 2011) 내용 업데이트

○ 농가경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수혜 농가의 전체 농가소득을 기준으로 어떤 소득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각 소득구간별 평균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 잠정치를 추정할 수 있음

- 소득구간별 평균 실효세율은 연도별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산출
  - 소득구간별 평균 실효세율: 소득구간별 평균 산출세액/소득구간별 평균 종합소득금액 × 100
- 농가경제조사는 전체 농가에 대한 자료가 아닌 표본농가에 대한 데이터이므로 해당 표본농가를 통해 도출한 소득구간별 평균 조세지출 규모를 국내 전체 부업소득 창출 농가에 적용하는 방안 고려
  - 표본 데이터를 국내 전체 농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 각 소득구간별 해당 표본농가의 평균 조세지출 규모 × 국내 전체 농가 중 해당 소득구간에 속하는 부업소득 창출 농가 수
    * 연도별 국내 전체 농가 중 부업소득 창출 농가 수: 연도별 통계청 농업총조사의 전체 농가 수 × 농가경제조사를 통해 알아낸 각 연도별 겸업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농가 비중
- 농가경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겸업소득 및 농가소득의 경우 과세표준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농가경제조사 자체적으로 농가수입 및 지출을 집계하여 도출해낸 값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등의 추가적인 작업 불필요

- 이렇게 추정한 조세지출 규모의 경우 농가부업규모 축산업 소득 및 전통주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가 포함되지 않은 값으로서 해당 조세지출 항목의 최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음

○ '16년부터 비과세 상한 소득이 연 3,000만원으로 바뀌므로 '16년 및 '17년 전망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15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활용하되 비과세 상한 소득을 연 3,000만원으로 가정하여 조세지출 규모 추정

- '15년 조세지출 규모 잠정치를 계산하는 방법과 같이 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수혜 농가의 전체 농가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확인하고, 각 소득구간별 평균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16년 및 '17년 조세지출 규모 전망치를 추정

5. 추정결과

□ 농가경제조사의 겸업소득 규모 및 통계청 농업총조사의 전체 농가 수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지출 규모 추정

○ 통계청 제공 국내 총농가 수는 아래와 같으며 최근 3년간 감소폭이 커지고 있음

<부표 A.1-2> '06~'15년 농가 수 및 증감률

(단위: 천호,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1,245	1,231	1,212	1,195	1,177	1,163	1,151	1,142	1,121	1,089
증감률	-	-1.12	-1.54	-1.4	-1.51	-1.19	-1.03	-0.78	-1.84	-2.85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 농가경제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도별 겸업소득이 있는 농가의 농가부업소득 조세지출 규모를 계산

○ 겸업소득이 있는 표본농가의 소득구간별 평균 조세지출 규모를 계산한 후 그 값에 소득구간별 전국 부업소득 창출 농가 수를 곱하여 전체 조세지출 규모 산출

- 소득구간별 전국 겸업소득 창출 농가 수는 농업총조사에서 제공한 연도별 전체 농가 수에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통해 구한 연도별 겸업소득이 있는 농가 비중을 곱하여 이용

○ 해당 농가의 농가소득을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 도출

- 농가경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 시 전업 또는 겸업 여부와 상관없이 겸업소득이 창출되므로 겸업소득을 농가부업소득으로 보아도 무방함
- 실효세율은 귀속연도 기준으로 국세통계연보의 소득구간별 산출세액 및 종합소득금액을 이용하여 계산
  - 2012년도 귀속소득 자료부터 소득구간 변화
- 조세지출 규모 산정 시 동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 명시되어 있는 연도별 부업소득의 면세 소득 규모 상한액을 고려함

○ <부표 A.1-3>에 따르면 2012년도부터 2014년도 사이에 조세지출 규모의 변동폭이 큼

- 2012년도에 조세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해당연도부터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상한액이 1,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아졌기 때문
- 2013~14년도의 경우 농가경제조사의 표본 수가 큰 폭으로 변한 것이 조세지출 규모 증감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
  - 농가경제조사는 2014년도부터 표본을 새롭게 구성하여 조사하고 있음

<부표 A.1-3> 국세통계연보 자료의 귀속연도별 소득구간

	2009~11년도 자료 기준	**2012~14년도 자료 기준**
연도별 소득구간 분류 기준	0 이하	0 이하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3.5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8천만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2억원 이하
	5억원 이하	3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부표 A.1-4> '09~'14년 귀속연도 기준 소득구간별 평균 실효세율

(단위: %)

	'09~'11 기준	2009년	2010년	2011년	'12~'14 기준	2012년	2013년	2014년
소득구간	1천만 이하	1.85	1.88	1.87	1천만 이하	1.92	1.98	2.78
	2천만 이하	3.36	3.36	3.31	2천만 이하	3.34	3.38	4.31
	4천만 이하	6.37	6.28	6.21	3.5천만 이하	5.71	6.26	7.41
	6천만 이하	9.27	8.81	8.92	4천만 이하	7.05	7.69	9.18
	8천만 이하	11.80	11.24	11.02	6천만 이하	8.32	8.65	10.36
	1억 이하	14.31	13.67	13.31	8천만 이하	10.71	10.87	12.89
	2억 이하	19.73	19.18	18.82	1억 이하	13.05	13.06	15.09
	3억 이하	25.59	25.26	25.06	2억 이하	18.60	18.65	20.74
	5억 이하	28.35	28.19	28.13	3억 이하	24.92	25.19	27.52
	10억 이하	30.74	30.70	30.67	5억 이하	28.33	28.64	30.92
	10억 초과	33.27	33.32	33.04	10억 이하	31.94	32.18	33.64
	-				10억 초과	35.63	35.62	36.34

주: 소득구간별 평균 실효세율: 소득구간별 평균 산출세액/소득구간별 평균 종합소득금액 × 100
자료: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계산

<부표 A.1-5> '09~'15년 조세지출 규모 잠정치 추정

(단위: 천호, 호, 억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농가 수 (천호)	1,195	1,177	1,163	1,151	1,142	1,121	1,089
농가경제조사 전체 표본 수 (호)	2,652	2,649	2,637	2,674	2,347	2,600	2,600
표본 중 겸업소득이 있는 농가 수 (호)	1,655	1,511	1,436	1,375	1,296	1,569	1,534
조세지출 규모 잠정치 (억원)	1,487	1,432	1,394	1,574	1,427	1,751	1,631
증감률 (%)	-	-3.70	-2.65	12.91	-9.34	22.70	-6.85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및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계산

○ 2016~17년도 조세지출 규모 전망치의 경우 2015년도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하였음

- ‘16년 및 ‘17년의 전체 농가 수는 통계청 농업총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체 농가 수 자료에 최근 3년간 전체 농가 수 증감률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도출
  - 최근 3년간 증감률의 평균값: -1.82%

<부표 A.1-6> ’16년 및 ’17년 농가 수 추정

(단위: 천호)

	2016년도	2017년도
예상 전체 농가 수	1,069	1,050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를 이용하여 계산

○ ‘16년 및 ‘17년의 예상 전체 농가 수를 이용하여 잠정치 및 전망치 추정

<부표 A.1-7> 추정결과

(단위: 억원)

		2015년 잠정치	2016년 전망치	2017년 전망치
조세지출 규모	겸업소득	1,631	1,952	1,917
	축산소득	0(추정불가)	0(추정불가)	0(추정불가)
	전통주	0(추정불가)	0(추정불가)	0(추정불가)
	합계	1,631	1,952	1,917

주: 1. ’16년 이후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소득 상한액이 연 2천만원 → 3천만원으로 증액됨
2. 부업소득 규모의 축산업 및 전통주 제조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6. 문제점

□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내 겸업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도출한 결과는 축산업 농가부업소득 규모와 전통주 농가부업소득 규모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서 해당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가 과소 추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참고문헌

김미복 · 김수석, 『농업부문 조세체계와 개선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11.

박명호 · 김우철 · 전병힐, 『조세지출규모의 추정방법 및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방법』, 한국조세연구원, 2008.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 연도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A.2. 경영회생 농지 매매 양도세 환급(「조특법」 제70조의2)

1. 제도 개요 및 연혁

가. 도입목적

□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 유도

□ 매입농지 등은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하고,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안정성 도모

나. 정책대상자

(1) 지원대상자

□ ① 일반 농업경영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라 한다)

○ 재해피해율이 50% 이상 또는 부채가 3천만원 이상

-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한해·수해·풍해 등 농업재해로 연농가 피해율 50% 이상
- 부채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발생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농업경영체의 현재 부채(대출잔액 및 이자)에서 현금, 예·적금 등 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정. 다만,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의 부채 중 자연재해로 인한 부채 및 대환대출한 부채는 포함하되, 동 기간 중 상환한 부채는 제외
  - 금융거래확인서 및 고객종합상세정보 또는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징구하여 예·적금 등 금융자산을 파악
  - 농가 피해율은 「농어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의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상의 피해율을 말함

○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

- 부채비율 산정 시 자산은 농지, 농업용시설 및 임야 등 농업경영체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포함
  - 지방세 납세증명서, 의료보험료 산정자료 등을 징구하여 보유 자산 확인

□ ②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

○ '일반 농업경영체' 요건을 모두 충족하되, 환매가능성 평가지표가 100% 이상이고, 시설·축산부문 농업소득이 총농업소득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 환매가능성 평가지표 = 〔(연간 농업소득) * 7년 / 부채〕 * 100
  - 인삼 등 매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작목의 소득은 7년간 실제 소득 기준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동일 주소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기준으로 부채, 소득 및 자산규모 파악
    * 신청인이 자산 및 부채 보유 현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때는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

(2) 지원제외자

□ ① 최근 2년 동안 세대원의 소유 농지 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영체.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하여 휴경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포함

□ ② 사업신청년도 1월 1일 현재 71세 이상인 자. 다만, 영농승계자가 있는 자는 71세 이상인 자도 지원가능

<영농승계자의 요건>

○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군복무,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자 포함)

○ 직계비속으로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와 농업계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업계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③ 농가세대원 중 주생계수단이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에 의존하여 농업외소득이 당해 농가소득의 50% 이상인 농업경영체

○ 농업외소득은 국세청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증명원 등

을 징구하여 확인

○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을 합산한 소득

□ ④ 2주택 이상, 상가, 골프 또는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 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 자녀교육·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 소유가 된 경우에는 2주택으로 보지 않음

○ 지방세 납세증명서, 의료보험료 산정자료 등을 징구하여 보유 자산 확인

□ ⑤ 사치, 도박 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우려의 부채가 있는 농업경영체

□ ⑥ 지원한도 내에서 소유농지 등을 공사에 매도시 매매대금으로 부채전액 상환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ⅰ) 자산을 매각하여 잔여 부채를 전부 상환한 경우

○ ⅱ)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5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 부채를 농림수산사업인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하는 경우

- 농업경영회생자금: 3년거치 7년 상환, 연 3%
- 중장기 저리 정책자금은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하지 않아도 됨

<농업경영회생자금과 연계지원 업무처리 요령>

1. 농업경영회생자금과 연계지원 가능성 판단

가. 부채 상환율 산정

① 감정평가대상자 선정 후 매입대상 농지 감정평가 추진

② 감정평가서를 제출받기 전, 통보된 감정평가가격(또는 탁상감정가격)을 기초로 부채상환 비율(농지매입금액/지원대상 농가부채) 산정

※ 부채의 50% 미만 또는 80% 이상 상환 가능 시는 해당 규정 적용

나. 대위변제할 대출금 결정

①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전액 상환은 어려우나, 부채의 50% 이상 상환이 가능할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및 고객종합 상세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채권자, 부채용도·금리·대출기간·대출잔액(원금 및 이자)·담보방식 등 부채 상세내역을 정리

② 대위변제할 대출금 결정

- 대위변제 필수 부채: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근저당권 해지를 위한 농지담보 대출금, 농신보 보증 대출금중 안분상환 요구액

* 농신보 보증 대출금이 연체된 경우 대위변제할 금액에서 ⅰ)매매농지에 근저당 설정된 대출금이 있으면 당해 대출금이 우선 변제되고 ⅱ) 잔액은 일반 대출금과 농신보 보증대출금 간 안분하여 대위변제됨

- 대출금중 용도가 농업용이 아닌 부채
  * 가계자금, 신용카드 대금 등은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이 아님
  ※ 매매대상 농지에 가압류 등 권리제한사항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매입할 수 있는 농지가 줄어들 수 있음에 유의

다. 농업경영회생자금과 연계 지원 가능성 판단

① 대위변제할 대출금 외 잔여 부채가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부채 여부 확인

② 잔여 부채가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지원대상이 되는 부채로 판단될 경우 잔여부채를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하는 조건으로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 나, 다 과정을 위해 관련 농협과 협의하여 판단

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확인서 교부

○ 잔여부채를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하는 조건으로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확인서"(별지 제8-1호 서식)를 교부하고, 동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농협에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신청을 하도록 안내

3. 농지매매계약 체결 등

○ 농지매매대금으로 대위변제하고 남은 잔여부채에 대해 농협에서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 결정이 확정되면 감정평가서 접수 등 신속히 농지매매계약 체결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조치

○ iii)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5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부채가 중장기 저리 정책자금으로 회생이 가능하다고 지사장이 판단한 경우

- 중장기 저리정책자금이란 이자율 3% 이하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정책자금

○ iv)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8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 농지가 있거나, 잔여부채의 규모, 상환조건 등 고려 시 상환에 어려움이 없어 지사장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 부채전액 상환 가능 여부 등 결정 시 농가부채에서 다음 금융자산 및 부채는 차감
  · 현금, 예·적금 등 금융자산액
  · 사업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발생된 부채(단, 3개월 이전 부채 중 자연재해, 대환대출로 인한 부채는 포함하되, 동 기간 중 상환한 부채는 제외)

□ ⑦ 사업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농지매매사업(과원매매사업 포함) 지원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⑧「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⑨ 사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농업경영체

□ ⑩ 기타 사유로 공사 지사심의회 또는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농업경영체

다. 수혜내용

□ 연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가는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후 경영회생 도모

□ 매입농지 등은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하고, 그 기간 동안 환매권을 부여하여 경영의 지속성·안정성 보장

□ 지원농가에 대해서는 교육·지도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건실한 농업경영 유도

□ 매입대상 농지

○ 매입대상 농지는 다음과 같음

- ⅰ) 지원대상자 또는 배우자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ⅱ)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최근 3년 이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 간이퇴비사 등 부속시설이 설치된 농지 포함
  - 과수목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환매 포기 시 공사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이전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만 당해 농지매입

○ 환매기간 내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의 해당 부지로 사용되는 농지

□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

○ 매입대상 농업용시설은 다음과 같음

- ⅰ) 지원대상자 또는 배우자 소유의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시설
- ⅱ)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최근 3년 이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소유의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시설
  - ㉮ 환매기간 내에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시설
  - ㉯ 농지와 농업용시설의 소유주가 동일하고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시설
  - ㉰ 축사 1,000㎡,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3,000㎡, 버섯재배사 500㎡ 이상인 시설

□ 매입제외 농지 등

○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농지 등

○ ② 개발용도로 지정된 영농규모화사업 <별표3> '농지은행사업 제외농지'의 지역·지구·구역·단지안의 농지 등

- 지사장은 매입대상 농지를 확정하기 전에 관할 시·군의 도시·건설·도로 등 개발사업 관련부서의 도면 등을 열람하여 대상 농지가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에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③ 영농규모화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의 농지매매사업자금·구입자금(농협구입자금 포함) 지원을 받아 매입한 농지 또는 간척분양받은 농지. 단, 지원일로부터 8년이 경과되고 원리금 상환이 완료된 농지는 매입 가능

○ ④ 재해 등으로 인한 형질 변경이 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등

○ ⑤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철거 또는 이전이 어려운 지장물이 있는 농지

- 묘지가 있는 농지는 감정평가서에 묘지면적을 감안하여 가격조정을 하고, 환매 포기 시 제3매입자의 이장 요구가 있을 경우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명시하면 매입 가능
- 국가기간시설 등으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영농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감정평가서에 지상권·지역권을 반영하여 가격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가능

○ 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아 매매가 제한된 농지

○ ⑦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농지일 경우 영농을 위한 출입허가가 안된 농지

○ ⑧ 국고 등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농업용시설로서「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시설이나 융자금 상환중인 시설

○ ⑨ 지원대상자 주소지 시·군이나 연접 시·군 외의 지역에 소재한 농지 등

○ ⑩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60,000원/㎡을 초과하는 농지

□ 농업경영체별 매입대상 및 방법

○ ① 일반 농업경영체

- 매입대상: 농지. 다만, 농지매매대금으로 부채전액 상환이 어려워 추가 매입대상이 필요하다고 지사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농업용시설 부지로 사용되는 농지 매입 가능
- 농지 매입방법
  - 과수원을 매입할 경우 과수목은 평가에서 제외

    ※ 환매 포기 시 공사에 과수목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이전하기로 특약하여 매입
  - 간이 퇴비사 등 기타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부속시설이 설치된 농지는 환매포기 때에는 동 부지 위 부속시설을 무상으로 공사에 양도하거나 철거하기로 특약을 하고 매입
- 농업용시설 부지 매입방법
  - 환매포기 때에는 동 부지 위 농업용시설을 무상으로 공사에 양도하거나 철거하기로 특약을 하고 철거보증을 한 경우만 매입
  - 농업용시설은 환매기간 내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철거보증은 철거비용의 110%을 채권최고액으로 농업인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별지 제21호 서식, 비용은 농업인 부담)이나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징구. 단, 철거가 필요없거나 환매포기 시 매도가능 등 농지관리기금 손실이 없다고 지사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철거보증 생략 가능

○ ② 시설 또는 축산업 농업경영체

- 매입대상: 농업용시설 해당 부지(축사의 가축운동장 포함)로 사용되는 농지 및 당해 농업용시설. 다만, 부채전액 상환이 어려워 추가 매입대상이 필요하다고 지사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농지도 매입 가능
- 농업용시설 및 해당 부지 매입 방법: 시설 개보수 의무 및 비용부담에 동의하는 경우 매입
- 농지는 일반 농업경영체 매입방법과 동일

□ 매입한도

○ 소유 농지 등의 매입가액이 해당 농가부채 1배 한도 내에서 매입하되,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필지(시설)별 매입에 따라 농지가액(감정평가액 기준)이 부채금액의 1배 초과 시, 부채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신청자와 매입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합의가격까지 매입 가능

- 1.1배 초과 시 매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안되면 매입대상에서 제외
- 농가부채는 사업 신청 시 산정된 부채이며, 동 부채 중 매매계약 시까지 상환된 부채가 있으면 차감하고, 동 부채에서 발생된 이자는 포함

□ 조세지출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망)	2017년 (전망)
소득세	추정곤란(신설)	0.04	-	-

주: 향후 환매권 행사 농업인의 수와 조세지출 규모 등을 추정곤란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라. 제도연혁

시행연도	주요 변경사항
2014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70의2) · ①「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

시행연도	주요 변경사항
	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 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 등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95조제4항 및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 등의 취득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환매한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접속일자: 2016.11.15.)

마. 관련제도

□ 종합소득산출세액 기준 세율 적용

○ 「소득세법」 제55조 참고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69) 준용

○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거주자(한국농어촌공사·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경작)에게 양도소득세 100% 감면

- 단 감면한도는 연간 1억원
-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

○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할 시 연간 1억원까지 양도세가 면제되어 추후 환매 시에 면제된 양도세는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환매 농가 중 해당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인 경우 양도세 환급 규모 추정 시 해당 농가의 양도세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함

2. 국세청 자료 현황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 2 제1항에 따른 [별지 제51호의3서식]) 이용 가능

○ 2015년도 실적치의 경우 위의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 2015년도 기준 국세청에 해당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건수는 2건이고 환급금액은 총 400만원임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유선상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15년도 환매 농가의 양도세 환급신청액은 1억 9,500만원으로서, 국세청에 집계된 환급금액과 큰 차이가 존재하여 농어촌공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정확한 이유 파악 불가

3. 기타 경제사회통계 자료 현황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제공 자료

○ 2014년도부터 2016년도(일부)까지 각각의 개인에게 지급된 경영회생지원 금액 확인 가능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비하여 데이터 구축 기간이 짧으며 농지은행의 매입가격 정보만 있을 뿐 환매 여부, 양도세 면제대상 여부, 양도세 납부대상자라면 양도세로 납부한 금액 등 조세지출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정보 부재

- 해당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조세지출규모 관련 필수 정보 부재로 해당 자료는 규모 추정 시 이용 불가능

□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자료

○ 2015년도 양도소득세 납부 현황 조사

- 조사목적: 양도소득세 납부 현황 조사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수혜자 중 환매자 관리를 통하여 해당 사업의 효율적 운영 도모
- 조사기간: 2016.3.28. ~ 2016.4.6.
- 조사인원: 215명(2015년 환매농가는 총 220명)

- 조사방법: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해당 지역 소속 환매자들에게 유선상 조사
- 조사내용: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납부금액, 환급신청 여부, 환매자금마련 방법, 환매농지 처분 여부 및 매도 계획 등
- (농지은행의 의견) 환매자들이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불분명하고, 농지은행 측에서는 양도세 환급 신청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유선상 조사를 수행하였으나 조사 결과 신뢰성이 낮아 추후 국세청과 협업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싶음
-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

구 분	계	납부	미납	잘모름	무응답
인원	215	28	180	3	0
비율	100.0	13.0	85.6	1.4	0.0

  - '15년 환매 농가 중 양도소득세 납부 농가는 28농가(13.0%)
    * 국세청에 제출된 2015년도 환급신청서는 2건
  -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액 : 총 195,749천원(평균 7,529천원)
    *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적힌 2015년도에 국세청에서 환급해 준 양도소득세는 400만원
- 2015년도 환매 농지 보유 및 매각 결과
  - 환매 농가 중 환매 농지를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 농가는 150농가(71.8%), 전부매각 32농가(15.3%), 일부매각 27농가(12.9%) 순
  - 매각 농가 중 3월 이내 매각한 농가는 48농가(80.0%), 3~6월 이내 2농가(3.3%), 6개월 경과 후 매각 10농가(16.7%)
  - 향후 매각계획에 대해서는 계획 없음 135농가(71.1%), 있다 23농가(12.1%), 모르겠다 5농가(16.8%) 순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환매 현황('16.10.20 기준)

<부표 A.2-1>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및 환매에 대한 연도별 총규모

(단위: 명, 백만원)

농지은행이 매입			환매			
연도	인원	금액	연도	인원	환매한 토지의 매입액	환매액
총계	8,373	2,139,613	총계	1,110	232,502	257,658
2006	185	42,200	2006	133	23,897	28,564
2007	444	95,285	2007	157	27,561	31,238

<부표 A.2-1>의 계속

농지은행이 매입			환매			
연도	인원	금액	연도	인원	환매한 토지의 매입액	환매액
2008	493	119,500	2008	136	27,275	30,513
2009	639	169,995	2009	178	40,340	44,917
2010	1,148	240,000	2010	190	32,374	35,754
2011	978	240,000	2011	116	26,257	28,692
2012	1,009	260,000	2012	109	28,709	30,675
2013	1021	256,473	2013	44	11,506	12,278
2014	928	260,000	2014	31	9,814	10,206
2015	898	259,561	2015	16	4,769	4,821
2016	630	196,599	2016	-	-	-

자료: 농지은행 협조자료

<부표 A.2-2> 매각 연도별 환매 결과

(단위: 명, 백만원, %)

농지은행에 매각			환매				
연도	인원	금액	연도	인원	환매한 토지의 매입액	비중	환매액
2006	185	42,200	소계	133	23,897	56.63	28,564
			2008	5	870	2.06	1,007
			2009	1	268	0.64	273
			2010	9	1,601	3.79	1,738
			2011	19	2,751	6.52	3,033
			2012	4	728	1.73	808
			2013	7	1,430	3.39	1,668
			2014	12	1,300	3.08	1,543
			2015	4	459	1.09	577
			2016	72	14,491	34.34	17,917
			미환매	52	18,303	43.37	-
2007	444	95,285	소계	157	27,561	28.92	31,238
			2008	6	1,743	1.83	1,973
			2009	4	501	0.53	516
			2010	10	1,381	1.45	1,468
			2011	6	1,319	1.38	1,437
			2012	40	6,318	6.63	6,932
			2013	17	2,540	2.67	2,739
			2014	23	3,791	3.98	4,407
			2015	22	4,294	4.51	5,098
			2016	29	5,673	5.95	6,667
			미환매	287	67,724	71.08	-
2008	493	119,500	소계	136	27,275	22.82	30,513
			2008	2	501	0.42	636
			2009	2	321	0.27	322
			2010	3	517	0.43	524
			2011	6	888	0.74	945

<부표 A.2-2>의 계속

농지은행에 매각			환매				
연도	인원	금액	연도	인원	환매한 토지의 매입액	비중	환매액
			2012	13	2,362	1.98	2,519
			2013	37	6,405	5.36	7,048
			2014	17	3,586	3	4,050
			2015	19	4,461	3.73	5,056
			2016	37	8,234	6.89	9,413
			미환매	357	92,225	77.18	-
			소계	178	40,340	23.73	44,917
			2010	8	1,206	0.71	1,223
			2011	8	1,116	0.66	1,165
			2012	13	2,791	1.64	2,974
2009	639	169,995	2013	21	7,844	4.61	8,481
			2014	47	9,439	5.55	10,417
			2015	29	7,107	4.18	8,292
			2016	52	10,837	6.37	12,364
			미환매	461	129,655	76.27	-
			소계	190	32,374	13.49	35,754
			2011	5	508	0.21	518
			2012	16	3,299	1.37	3,465
			2013	17	3,138	1.31	3,395
2010	1,148	240,000	2014	32	5,444	2.27	5,948
			2015	60	9,390	3.91	10,292
			2016	60	10,596	4.42	12,137
			미환매	958	207,626	86.51	-
			소계	116	26,257	10.94	28,692
			2011	1	154	0.06	154
			2012	4	883	0.37	909
			2013	21	4,347	1.81	4,636
2011	978	240,000	2014	16	2,774	1.16	2,988
			2015	28	7,714	3.21	8,481
			2016	46	10,385	4.33	11,524
			미환매	862	213,743	89.06	-
			소계	109	28,709	11.04	30,675
			2012	2	296	0.11	299
			2013	11	2,762	1.06	2,815
2012	1,009	260,000	2014	15	3,166	1.22	3,300
			2015	32	10,107	3.89	10,825
			2016	49	12,377	4.76	13,438
			미환매	900	231,291	88.96	-
			소계	44	11,506	4.49	12,278
			2013	1	778	0.3	783
			2014	3	903	0.35	928
2013	1,021	256,473	2015	13	3,477	1.36	3,696
			2016	27	6,349	2.48	6,871
			미환매	977	244,967	95.51	-

<부표 A.2-2>의 계속

농지은행에 매각			환매				
연도	인원	금액	연도	인원	환매한 토지의 매입액	비중	환매액
2014	928	260,000	소계	31	9,814	3.77	10,206
			2015	10	3,430	1.32	3,523
			2016	21	6,384	2.46	6,682
			미환매	897	250,186	96.23	-
2015	898	259,561	소계	16	4,769	1.84	4,821
			2015	3	490	0.19	494
			2016	13	4,279	1.65	4,327
			미환매	882	254,792	98.16	-

자료: 농지은행 협조자료

○ '15년 이후 조세지출 규모 추정을 위한 '15~'16년도 환매 정보

<부표 A.2-3> 2015년도 환매 규모

(단위: 명, 백만원)

매도연도	환매인원	환매한 토지의 매입액	환매액
2006	4	459	577
2007	22	4,294	5,098
2008	19	4,461	5,056
2009	29	7,107	8,292
2010	60	9,390	10,292
2011	28	7,714	8,481
2012	32	10,107	10,825
2013	13	3,477	3,696
2014	10	3,430	3,523
2015	3	490	494
합계	220	50,929	56,334

자료: 농지은행 협조자료

<부표 A.2-4> 2016년도 환매 규모('16.10.20 기준)

(단위: 명, 백만원)

매도연도	환매인원	환매한 토지의 매입액	환매액
2006	72	14,491	17,917
2007	29	5,673	6,667
2008	37	8,234	9,413
2009	52	10,837	12,364
2010	60	10,596	12,137
2011	46	10,385	11,524
2012	49	12,377	13,438
2013	27	6,349	6,871
2014	21	6,384	6,682
2015	13	4,279	4,327
합계	393	85,326	97,013

자료: 농지은행 협조자료

□ 한국농어촌공사에 구축되어 있는 환매자 개인정보를 국세청에 전달하여 양도세 납부 여부를 파악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국세청의 자료협조가 연내에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국세청 부납과 조사관에 따르면 환매자의 개인정보 및 환매년도, 양도년도 정보가 있다면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나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작업으로서 올해 안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함

- 12월 5일 농지은행 담당자에게 환매년도 및 양도년도 정보를 보완하여 환매자 개인정보를 구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내년 초에 국세청과 협업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직접 국세청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겠다고 하였음

○ 이러한 작업을 통해 관련 데이터가 구축되어 환매자가 양도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농지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사업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동시에 보다 신뢰도 높은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추정모형 검토

□ 농지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환매자 정보를 바탕으로 국세청의 양도세 납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면 조세지출 규모 추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농지매입사업에 참여한 수혜자들의 환매 여부 및 환매 시기 등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환매 여부 및 환매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규모 산출이 가능한 단순 추정을 수행할 수 없음

○ 환매 연도와 양도세 환급 연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며 이 역시 예측이 어려워 조세지출 규모 추정 시 추정치의 신뢰도를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환매자의 양도세 납부 관련 국세청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면 경영회생지원 사업 시행 이후 연도별 환매자의 토지 매각 시 양도세 납부 여부 및 규모를 확인하여 환매 기준 연도별 양도세 환급 가능액 변화 추이를 검토한 후 다음연도 환매자 수 및 환급 가능액을 추정하여 상대적으로 신뢰도 높은 전망치를 도출할 수 있음

5. 추정결과

<부표 A.2-5> 추정결과

(단위: 억원)

	2015년 실적치	2016년 전망치	2017년 전망치
조세지출 규모	0.04	0(추정 불가)	0(추정 불가)

주: '17 조세지출예산서에 2015년도 실적치가 기재되어 있음

6. 문제점

□ 경영회생지원 사업 참여자의 양도세 납부 관련 데이터의 부재로 조세지출 규모 추정이 어려움

○ 농지은행과 국세청의 협업으로 환매자의 양도세 납부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용한다면 양도세 환급 신청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만을 활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조세지출 규모 전망치를 도출할 수 있음

- 환매자 정보를 바탕으로 양도세 납부 여부 및 연도별 환급 가능액을 확인함으로써 양도세 환급대상인 환매자들에게 환급 신청을 장려하여 경영회생지원 사업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연도별로 보다 정확한 조세지출 규모를 도출할 수 있음

참고문헌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2011.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A.3.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7조의6)

1. 제도 개요 및 연혁

가. 제도 개요

□ 근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6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함

□ 도입 목적[8)]

○ 수익률 확보로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기업형 임대주택관리업 육성 및 임대주택시장 안정화

□ 수혜자

○ 취득당시 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수익증권)을 액면가액 합계액 5천만원, 2억원 이하 보유하여 배당소득을 받은 거주자

□ 수혜 내용

○ (저율 과세) 액면가액 합계액 5천만원 이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5% 소득세율 적용

○ (분리과세 특례) 액면가액 합계액 2억원 이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배제

8)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82

□ 조세특례 신고 관련 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2서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에는 배당받는 개인의 소유집합투자증권 수, 액면가액 합계액, 배당소득세를 기재하여야 함

□ 추정곤란 사유

○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의하면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상 자료 추출이 불가하여 추정곤란'으로 제시함

□ 일몰기한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6에 의하면 일몰연도는 2016년임

- 시행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으나 2016년 조세지출 자체평가 기획재정부 검토 의견에 의하면 일몰 연장이 예상됨

나. 제도 연혁

□ 제도 도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6은 2011. 5. 19 신설 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2서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는 2011. 8. 3 신설됨

□ 제도 변경 사항

○ 2011년 신설 이후 <부표 A.3-1>와 같이 저율과세, 분리과세 특례 적용 대상의 변동, 일몰기한의 연장이 있었음

○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실적이 없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에 특례 적용 대상을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이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으로 확대함

○ 비과세 감면 정비 및 다른 금융상품과의 균형을 위해 2014년에 현재와 같은 형태로 특례 적용 대상을 변경함

<부표 A.3-1>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연혁

연도	내용	
2011	일몰 기한	2014년
	저율 과세	액면가액 합계액 1억원 이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5% 소득세율 적용
	분리과세 특례	액면가액 합계액 1억원 초과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배제
2013	저율 과세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이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5% 소득세율 적용
	분리과세 특례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초과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배제
2014	일몰 기한	2014년→2016년으로 연장
	저율 과세	액면가액 합계액 5천만원 이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5% 소득세율 적용
	분리과세 특례	액면가액 합계액 2억원 이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배제

2. 국세청 자료 현황

가. 국세청 요청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2서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므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배당소득에 관한 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자료 요청함

○ 배당소득에 관한 정보 외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여부(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초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조세지출 규모가 추정 가능하므로 배당소득 외의 금융소득(기타 금융소득)에 대한 정보와 과세표준에 관한 정보도 추가로 요청함

<부표 A.3-2> 국세청 요청 자료

금융소득 규모별	기타금융 소득[1] 규모별	종합소득 과세표준 규모별	액면가액 합계액 5천만원 이하				액면가액 합계액 2억원 이하			
			인원	배당 소득[2]	기타 금융 소득	금융 소득	인원	배당 소득[2]	기타 금융 소득	금융 소득
2천만원 이하	-	-								
2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2천만원 이하								
		4.6천만원 이하								
		8.8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소계								
	2천만원 초과	1.2천만원 이하								
		4.6천만원 이하								
		8.8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소계								
계	-	-								

주: 1) 기타금융소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
2) 배당소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배당소득

나. 국세청 자료 수집 현황

□ 2016년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시 2014년, 2015년 해당 조세지출을 '실적 없음'으로 기획재정부에 보고함

3. 기타 경제사회 통계자료 현황

가. 국토교통부 조세지출평가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6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한 경우 배당을 받는 개인에 관한 과세상의 혜택인데 국토교통부 조세지출평가서에서

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부동산투자회사 중에서도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내용만 제시함

○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나뉨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며 특히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부동산에 투자한다[9]는 성격상 「조특법」 제87조의6와 동법 시행령 제81조의3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취득 당시 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 2013년 국토교통부 조세지출평가서

○ 자기관리리츠의 자본금, 자산 총액, 개인 주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자기관리리츠에서 임대주택 투자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시하지 않아 자기관리리츠에 투자한 주주가 「조특법」 제87조의6의 수혜대상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 2016년 국토교통부 조세지출평가서

○ '임대주택에 투자한 리츠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설립'을 이유로 조세지출 실적을 제시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리츠 자산관리회사 및 자기관리리츠 명단을 제시함

-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자기관리리츠 중 임대주택 투자 실적이 있는 경우는 없어 「조특법」 제87조의6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고, 2016년 11월 국토부 담당자를 통해서도 변동사항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함
- 제시한 내용 중 자산관리회사는 「조특법」 제87조의6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해당하지 않음

9)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참조

나.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자료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조직도 확인 결과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에서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인가·등록[10] 업무를 담당함

- 부동산투자회사 인가 또는 등록 신청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인가 또는 등록 신청한 부동산투자회사의 목록은 확인 가능하지만 개별 부동산투자회사가 「조특법」 제87조의6과 관련한 부동산투자회사인지 여부, 각 부동산투자회사 개별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내용은 확인이 어려움

□ 리츠정보시스템(http://reits.molit.go.kr)

○ 리츠정보시스템을 통해 2016. 4월 말 현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8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90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33개 총 131개 운영중임을 확인함

□ 한국리츠협회(http://www.kareit.or.kr)

○ 한국리츠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6. 8. 31. 기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2016년 국토교통부 조세지출평가서에서 제출한 것과 같이 8개임

○ 「조특법」 제87조의6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해당 여부(임대주택 투자), 개별 주주 배당소득 등에 관한 정보는 통합된 자료로는 확인이 어려움

○ 개별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에서 자산의 구성 현황, 소유 부동산별 임대현황, 투자자산별 수입 금액 등을 확인 가능함

- 8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검토 결과, 대체로 호텔과 상가 등 상업용 건물 임대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를 통해 수입을 얻고 있고 「조특법」 제87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3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회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10)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영업인가)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영업 인가를 받아야 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등록)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등록해야 함

<부표 A.3-3>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투자 수입 현황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투자 수입		
	임대	매매	부동산개발사업 등
광희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없음	없음	주택 분양
㈜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상업 빌딩	없음	주택 분양
㈜아벤트리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상업 빌딩	없음	배당, 주차장
더블에셋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택[1)]	없음	주택 분양
㈜경인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일반 숙박시설	없음	주택 분양
㈜퍼스티지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없음	없음	호텔, 오피스텔 분양
㈜모두투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호텔	없음	없음
㈜엠디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2)]	쇼핑몰	없음	없음

주: 1) 주택 임대료 수입은 전체 수입의 10%에 해당함
2) ㈜엠디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는 없으나 영업인가 공고 확인 결과 사업 개요에 '쇼핑몰 매입 후 임대 운용'을 기재함

자료: 한국리츠협회(http://www.kareit.or.kr/)에 공시된 개별 부동산투자회사의 가장 최근의 결산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조특법」 제87조의6의 요건에 부합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현재 없고 따라서 요건이 부합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받는 거주자도 없어 「조특법」 제87조6의 조세지출 실적은 없음

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관련 자료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11)]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제182조[1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집합투자기구 등록 담당

- 금융위원회 조직도 확인 결과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에서 집합투자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확인 결과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 사모펀드팀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관리를 담당함
- 금융위원회 확인 결과 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 관련 통계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함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에서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으로 구분함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참조

□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집합투자업자의 일반현황(임직원 현황), 재무현황(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주용경영지표(수익성)에 관한 정보 확인 가능함

□ 금융감독원 집합투자기구 공시(http://fines.fss.or.kr)

○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을 말함

○ 집합투자기구 공시에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에 관한 영업보고서,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가 공시되어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3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는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의한 분류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주식, 채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을 사용하여야 함[13]

○ 집합투자기구 공시의 결산보고서-자산운용보고서에 '부동산'이 포함된 내역을 확인하였으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자료는 없음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http://dis.kofia.or.kr)

○ 펀드수익률 비교 공시 탭을 활용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를 검색함

○ 국내투자형/부동산형에 해당하는 부동산펀드 검색 결과 4건이 검색됨

- 부동산형은 개발형, 임대형, 대출형, 리츠, 기타로 구분되는데 임대형 3건, 대출형은 1건 검색됨
- 투자설명서, 최근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펀드가 임대주택에 투자한 실적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임대주택 투자 실적이 없음

<부표 A.3-4> 국내 투자 부동산투자집합지구(펀드) 운용 내역

펀드명	유형	운용 내역	참고
골든브릿지 Wm경매부동산 1	임대형	상업빌딩 매각	
하나티마크그랜드종류형 부동산투자신탁 1 Class A	임대형	호텔 임대	가입자격 제한 없음

13)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는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를 포함하여야 함

<부표 A.3-4>의 계속

펀드명	유형	운용 내역	참고
하나티마크그랜드종류형 부동산투자신탁 1 Class F	임대형	호텔 임대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 또는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하나티마크그랜드종류형 부동산투자신탁 1(운용)	임대형	호텔 임대	
PAM부동산 3	대출형	도시개발사업 대출	

자료: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 투자설명서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4. 추정모형 검토

가. 국세청 자료 수집 가능한 경우

□ 국세청 자료가 수집 가능한 경우 저율과세(집합투자증권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분리과세 특례(2억원 이하인 경우)로 나누어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음

□ (저율과세) 집합투자증권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14%(「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가 아닌 「조특법」 제87조의6에 따라 5%의 저율로 과세됨

○ 저율과세 적용으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6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와 적용될 경우의 차이인 '배당소득×9%'로 계산됨

- 조세지출 규모=배당소득×14%-배당소득×5%=배당소득×9%

□ (금융소득 분리 과세특례) 「조특법」 제87조의6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배제됨

○ 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산출세액은 비교과세방법에 따라 ①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과 ②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함[14]

14) 국세청, 「2016년(2015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2016, p.139.

- ①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금융소득-2,000)*+금융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6~38%)+2,000×원천징수세율(14%, 단, 고배당기업주식배당은 9%)

  * Gross-up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Gross-up금액을 가산한 금액

- ②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14%, 단, 비영업대금이익 25%, 고배당기업주식배당 9%)+(금융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 분리과세 특례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에서 배제될 경우의 조세지출 규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6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와 적용될 경우의 차이로 계산되는데 구체적인 예시는 <부표 A.3-5>와 <부표 A.3-6>으로 정리함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A)만 존재하는 경우

○ <부표 A.3-5>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A)만 존재할 경우의 조세지출 규모 계산방법에 대해 정리한 내용임

○ case 1의 경우 집합투자증권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종합과세 대상 아님)로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5%로 낮아진 만큼 조세지출 규모가 계산됨

○ case 2, case 3은 집합투자증권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로 「조특법」 제87조의6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종합과세 대상이어서 비교과세방법에 따라 ① 기본세율 과세와 ② 원천징수세율 과세 중 큰 금액이 세액으로 되나 「조특법」 제87조의6에 따라 5% 저율과세, 종합과세 적용 배제가 되어 5%세율로 분리과세됨

○ case 4의 경우 집합투자증권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이고,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종합과세 대상 아님)로 「조특법」 제87조의6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율이 14%로 변화 없어 이 경우 조세지출은 없음

○ case 5, case 6은 집합투자증권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이고,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조특법」 제87조의6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종합과세 대상이어서 비교과세방법에 따라 ① 기본세율 과세와 ② 원천징수세율 과세 중 큰 금액이 세액으로 되나 「조특법」 제87조의6에 따라 종합과세 적용 배제가 되어 원천징수세율인 14% 세율로 분리과세됨

<부표 A.3-5> 조특법 제87조의6 조세지출 규모 추정 방법(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A)만 있는 경우)

구분	집합투자증권 액면가액합계액	배당소득(A) 규모		조특법 87조의6 적용하지 않을 경우		조특법 87조의6 적용할 경우		조세지출 규모
				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case 1	5천만원 이하	A≤2,000만원		A*0.14	대상 아님	A*0.05		A*0.09
case 2		A>2,000만원	① 기본세율 과세 (A>3,200만원)		(A-2,000)*기본세율+ 2,000*0.14	A*0.05	적용 배제	A*(기본세율-0.05)-2,000 (기본세율-0.14)
case 3			② 원천징수세율 과세 (2,000만원<A≤3,200만원)		A*0.14	A*0.05	적용 배제	A*0.09
case 4	2억원 이하	A≤2,000만원		A*0.14	대상 아님	A*0.14		-
case 5		A>2,000만원	① 기본세율 과세 (A>3,200만원)		(A-2,000)*기본세율+ 2,000*0.14	A*0.14	적용 배제	A*(기본세율-0.14)-2,000 (기본세율-0.14)
case 6			② 원천징수세율 과세 (2,000만원<A≤3,200만원)		A*0.14	A*0.14	적용 배제	-

주: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14%가 아닌 경우(예: 비영업대금이익, 고배당기업주식배당)는 없다고 가정함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 종합소득공제를 포함하여야 하나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생략함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A)외에 금융소득(B)도 존재하는 경우

○ <부표 A.3-6>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A)외에 금융소득(B)도 존재하는 경우의 조세지출 규모 계산방법에 대해 정리한 내용임

○ case 1의 경우 집합투자증권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종합과세 대상 아님)로 부동산집합투자지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A)의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5%로 낮아진 만큼 조세지출 규모가 계산됨

○ case 2, case 3은 집합투자증권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조특법」 제87조의6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종합과세 대상이어서 비교과세방법에 따라 ① 기본세율 과세와 ② 원천징수세율 과세 중 큰 금액이 세액으로 되나 「조특법」 제87조의6에 따라 저율과세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을 제외할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가 되어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가 되는 효과를 얻게 됨

○ case 4, case 5는 집합투자증권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조특법」 제87조의6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종합과세 대상이어서 비교과세방법에 따라 ① 기본세율 과세와 ② 원천징수세율 과세 중 큰 금액이 세액으로 되나 「조특법」 제87조의6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은 저율과세와, 종합과세 대상 일부가 제외되는 효과를 얻게 됨

○ case 6의 경우 집합투자증권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이고,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종합과세 대상 아님)로 「조특법」 제87조의6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율이 14%로 변화 없어 이 경우 조세지출은 없음

○ case 7, case 8은 집합투자증권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이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조특법」 제87조의6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종합과세 대상이어서 비교과세방법에 따라 ① 기본세율 과세와 ② 원천징수세율 과세 중 큰 금액이 세액으로 되나 「조특법」 제87조의6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지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을 제외할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가 되어 분리과세가 되는 효과를 얻게 됨

○ case 9, case 10은 집합투자증권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이고, 금융소득

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조특법」 제87조의6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종합과세 대상이어서 비교과세방법에 따라 ① 기본세율 과세와 ② 원천징수세율 과세 중 큰 금액이 세액으로 되나 「조특법」 제87조의6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지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얻게 됨

□ 금융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부표 A.3-5>와 <부표 A.3-6>에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만을 예로 제시하였으나 금융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도 과세표준에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을 포함하여 앞의 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음

- 다만 과세표준의 변동에 의해 적용되는 기본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세지출 규모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함

□ 현재는 「조특법」 제87조의6과 관련한 조세지출 실적이 없어 제시한 조세지출 규모 계산 방법은 활용이 불가능하지만 향후 실적이 발생할 경우 제시한 내용을 활용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계산할 수 있음

<부표 A.3-6> 조특법 제87조의6 조세지출 규모 추정방법(다른 금융소득(B)이 있는 경우)

구분	집합투자증권 액면가액합계액	배당소득(A) 규모		조특법 규정 없을 경우		조특법 규정 있을 경우		조세지출 규모
				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case1	5천만원 이하	A+B≤2,000만원		A*0.14+B*0.14		A*0.05+B*0.14		A*0.09
case2		A+B>2,000만원 (B≤2,000)	① 기본세율 과세		(A+B-2,000)*기본세율+2,000*0.14	A*0.05+B*0.14	적용 배제	A*(기본세율-0.05)+(B-2,000)(기본세율-0.14)
case3			② 원천징수세율 과세		(A+B)*0.14	A*0.05+B*0.14	적용 배제	A*0.09
case4		A+B>2,000만원 (B>2,000)	① 기본세율 과세		(A+B-2,000)*기본세율1+2,000*0.14	A*0.05	(B-2,000)*기본세율2+2,000*0.14	A*(기본세율1-0.05)+(B-2,000)*(기본세율1-기본세율2)
case5			② 원천징수세율 과세		(A+B)*0.14	A*0.05	B*0.14	A*0.09
case6	2억원 이하	A+B≤2,000만원		A*0.14+B*0.14		A*0.14+B*0.14		
case7		A+B>2,000만원 (B≤2,000)	① 기본세율 과세		(A+B-2,000)*기본세율+2,000*0.14	A*0.14+B*0.14	적용 배제	(A+B-2,000)(기본세율-0.14)
case8			② 원천징수세율 과세		(A+B)*0.14	A*0.14+B*0.14	적용 배제	
case9		A+B>2,000만원 (B>2,000)	① 기본세율 과세		(A+B-2,000)*기본세율1+2,000*0.14	A*0.14	(B-2,000)*기본세율2+2,000*0.14	A*(기본세율1-0.14)+(B-2,000)*(기본세율1-기본세율2)
case10			② 원천징수세율 과세		(A+B)*0.14	A*0.14	B*0.14	

주: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14%가 아닌 경우(예: 비영업대금이익, 고배당기업주식배당)는 없다고 가정함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 종합소득공제를 포함하여야 하나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생략함

5. 추정 결과

□ 국세청 확인 결과 2014년, 2015년 실적 없음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료 수집 결과 「조특법」 제87조의6의 적용 대상이 되는(취득당시 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투자회사가 2016년 11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조특법」 제87조의6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투자회사가 없으므로 이에 투자하여 배당받은 개인도 없어 2016년 조세지출 실적도 없을 것으로 추정됨

□ 2017년 조세지출 규모 추정을 위해서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조특법」 제87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3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로는 확인이 어려움

○ 다만,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기존 투자 내용을 살펴봤을 때 2017년에도 크게 변동 사항이 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조세지출 규모를 0으로 추정함

<부표 A.3-7> 조특법 제87조의6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연도	2015년(실적)	2016년(잠정)	2017년(추정)
조세지출 규모	0	0	0

A.4.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조특법」 제101조)

1. 제도 개요 및 연혁

가. 도입목적[15]

□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2005.1.1.부터 한시적으로 할증평가를 제외하도록 함

○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자산가치보다 높은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며 지분율이 높을수록 경영권프리미엄(지배가치)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업 경영권의 세대 이전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적정하게 과세하기 위하여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가액을 가산하여 평가하고 있음

나. 주요 내용[16]

□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면제

○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17][18]

---

15) 국세청, 『2005년 개정세법 해설』. 2005.
16) 국세청, 『2016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2016.3, pp.63~66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18) 2009년 2월 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판정이 곤란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 중소기업으로 개정하였으며,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1) 주식 · 출자지분의 평가

□ 상속 ·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 등(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원칙적인 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음

- ○ 상장주식(코스닥 포함):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간(총4개월)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 불문) 평균액
- ○ 비상장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부표 A.4-1>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구분	1주당 평가액
부동산 과다법인[1)]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6
부동산 과다법인이 아닌 법인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6

주: 1) 자산총액에 대한 부동산과 부동산권리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2) 주식 등 할증평가[19)]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 출자지분은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함

가) 할증평가 대상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해당되며, 기업공개 준비 중이거나 거래소에 상장 신청한 주식 및 상장주식 중 증자로 취득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도 할증평가대상에 포함

나) 최대주주 판단

□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함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다) 할증평가액 산정

□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시가 등 주식평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 15%)를 가산함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함

최대주주 주식의 평가액 = (시가·보충적 평가가액) × (1 + 할증률)

<부표 A.4-2> 할증률

구분	대기업 주식	중소기업 주식	
지분율 50% 이하	20% 할증	10% 할증	'17.12.31까지는 할증적용 배제
지분율 50% 초과	30% 할증	15% 할증	

다. 변천과정

□ 본 규정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성 지원을 위하여 2004년 12월 31일 법 개정 시 신설되었으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었음

□ 5차례에 걸쳐 일몰 연장

○ 2006.12.31.→ 2009.12.31. → 2010.12.31. → 2012.12.31. → 2014.12.31.→ 2017.12.31.

2. 국세청 자료 현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필요한 "주식 등 특례신청서"와 같은 별도의 서식은 존재하지 않음

가. 관련 서식

(1) 상속세

□ [별지 제9호서식] 상속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 [별지 제9호서식 부표1]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 ○ ② 재산종류, ④ 수량(면적), ⑤ 가액

□ [별지 제9호서식 부표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 ⑨ 종류, ⑪ 수량(면적), ⑫ 단가, ⑬ 평가가액, ⑭ 평가기준
- ○ 상속재산종류가 주식(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상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명칭 및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2) 증여세

□ [별지 제10호서식]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 ○ ⑩ 종류, ⑫ 수량(면적), ⑬ 단가, ⑭ 가액

□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 ② 재산종류, ④ 수량(면적), ⑤ 단가, ⑥ 평가가액, ⑦ 평가기준
  - 증여재산 증빙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 ○ 증여재산종류가 주식(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의 ③소재지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명칭 및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나. 국세청 관련 데이터 보유 현황

□ 관련 정보는 담당 세무서 조사관이 작성한 결정 결의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관련 자료는 PDF 형태로 보관되어 있으므로 일일이 검토하여 동 제도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함
- ○ 2014년 기준 상속·증여재산가액 중 "유가증권"을 상속·증여한 사례를 추출한

후 담당 세무서에 기 요청자료(중소기업 할증평가 배제 여부, 평가가액, 납부할 세액 등)에 대한 제공을 요청하여 제공받음

○ 당초에는 개별 자료 형태로 요청하였으나 국세청에서는 재산가액 규모별로 제공

3. 기타 경제사회 통계자료 현황

가. 상속세

□ 유가증권에 대한 1인당 상속재산가액은 2007년 이후로 2010년까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그 이후로는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부도 A.4-1] 유가증권 연도별 상속재산가액 추이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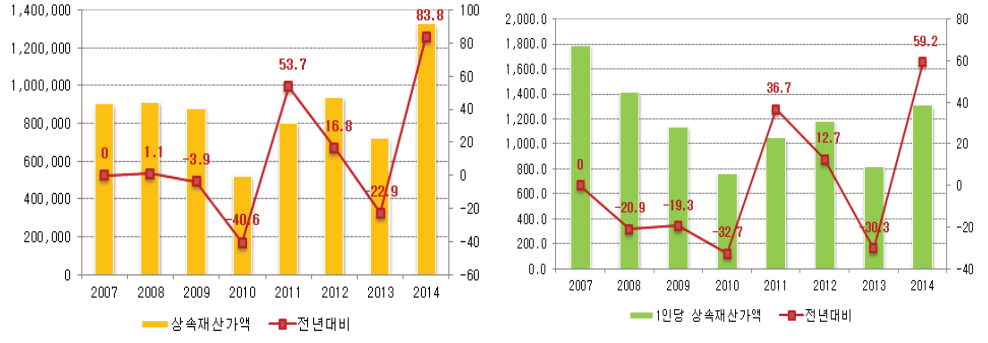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은 2014년 기준 약 5,201.5억원이며, 1인당 상속세 산출세액은 약 16억 5,000만원임

<부표 A.4-3> 연도별 유가증권으로 인한 1인당 상속세 결정현황

(단위: 백만원)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	
	전체	1인당
2007	374,834.5	2,035.1
2008	366,630.8	1,673.2
2009	353,980.0	1,338.6
2010	203,661.8	947.9
2011	317,779.1	1,245.1
2012	381,474.8	1,720.0
2013	271,362.4	953.2
2014	520,159.8	1,650.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상속재산가액 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비중은 인원 30.4%, 금액 84.1%으로 나타났으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8%에 달하고 있음

○ 2014년 기준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1인당 유가증권금액이 약 36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 구간의 실효세율은 42.2%임

<부표 A.4-4>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 결정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합계	1억 이하	3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30억 이하	30억 초과
2007	유가증권	인원	506.0	10.0	6.0	4.0	41.0	261.0	184.0
		금액	905,222	25	36	308	6,121	88,714	810,018
		1인당	1,789.0	2.5	6.0	77.0	149.3	339.9	4,402.3
	전체 평균 실효세율		38.5	12.6	12.5	15.4	16.3	23.6	43.6
	1인당 상속세액		687.9	0.3	0.8	11.8	24.3	80.1	1,917.8
2008	유가증권	인원	647	6	11	6	49	355	220
		금액	915,197	60	677	268	10,772	93,426	809,994
		1인당	1,414.5	10.0	61.5	44.7	219.8	263.2	3,681.8
	전체 평균 실효세율		35.9	13.4	13.1	16.2	16.6	23.3	42.3
	1인당 상속세액		507.8	1.3	8.1	7.2	36.6	61.4	1,558.7
2009	유가증권	인원	771	2	11	15	64	416	263
		금액	879,869	-	95	960	9,279	107,885	761,650
		1인당	1,141.2	-	8.6	64.0	145.0	259.3	2,896.0
	전체 평균 실효세율		36.9	9.8	12.1	15.1	16.5	23.5	42.9
	1인당 상속세액		421.6	-	1.0	9.7	23.9	61.1	1,243.0
2010	유가증권	인원	681	2	15	9	63	384	208
		금액	522,991	-	789	78	5,223	97,182	419,719
		1인당	768.0	-	52.6	8.7	82.9	253.1	2,017.9
	전체 평균 실효세율		34.7	9.1	10.3	14.7	16.7	22.0	43.2
	1인당 상속세액		266.6	-	5.4	1.3	13.9	55.7	871.7

<부표 A.4-4>의 계속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합계	1억 이하	3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30억 이하	30억 초과
2011	유가증권	인원	766	3	16	17	82	397	251
		금액	804,001	2	397	494	8,195	113,727	681,186
		1인당	1,049.6	0.7	24.8	29.1	99.9	286.5	2,713.9
	전체 평균 실효세율		35.7	10.1	12.0	15.0	16.2	23.3	42.5
	1인당 상속세액		374.7	0.1	3.0	4.4	16.2	66.7	1,154.7
2012	유가증권	인원	794	3	22	12	99	442	216
		금액	939,080	96	974	138	9,114	115,583	813,175
		1인당	1,182.7	32.0	44.3	11.5	92.1	261.5	3,764.7
	전체 실효세율		36.1	10.0	11.8	14.9	16.4	23.3	43.4
	1인당 상속세액		427.2	3.2	5.2	1.7	15.1	60.9	1,633.8
2013	유가증권	인원	878	2	19	22	78	482	275
		금액	723,952	3	862	858	9,427	159,979	552,823
		1인당	824.5	1.5	45.4	39.0	120.9	331.9	2,010.3
	전체 평균 실효세율		34.2	10.1	11.8	15.0	16.6	23.4	42.0
	1인당 상속세액		282.2	0.2	5.4	5.8	20.1	77.7	844.0
2014	유가증권	인원	1,014	3	18	17	103	565	308
		금액	1,330,593	5	437	1,396	14,116	195,650	1,118,989
		1인당	1,312.2	1.7	24.3	82.1	137.0	346.3	3,633.1
	전체 평균 실효세율		34.6	10.2	12.3	14.8	16.4	23.4	42.2
	1인당 상속세액		453.7	0.2	3.0	12.2	22.5	80.9	1,532.1

주: 평균 실효세율 = 산출세액/과세표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나. 증여세

□ 유가증권에 대한 1인당 증여재산가액은 2007년 이후로 2011년까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그 이후로는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부도 A.4-2] 유가증권 연도별 증여재산가액 추이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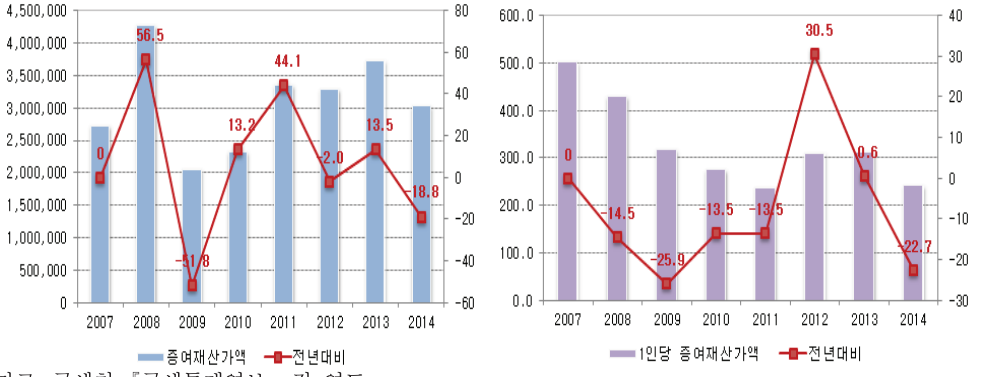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은 2014년 기준 약 8,293.7억원이며, 1인당 증여세 산출세액은 약 32억 5,400만원임

<부표 A.4-5> 연도별 유가증권으로 인한 증여세액 현황

(단위: 백만원)

	유가증권에 대한 증여세액	
	전체	1인당
2007	987,122.3	5,317.0
2008	1,468,220.9	3,077.9
2009	669,821.4	5,015.1
2010	698,109.3	2,719.8
2011	837,635.3	3,582.5
2012	1,006,888.6	3,405.8
2013	1,176,699.5	4,020.3
2014	829,369.9	3,253.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증여재산가액 규모별 유가증권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증여재산가액 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비중은 인원 1.1%, 금액 29.1%으로 나타났으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4%로 가장 크게 나타났음

<부표 A.4-6> 증여재산가액 규모별 유가증권에 대한 증여세 결정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증여재산가액 규모별			소계	1억 이하	3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30억 이하	30억 초과
2007	유가증권	인원	5,430	3,165	965	421	401	315	163
		금액	2,736,405	81,146	147,092	141,918	232,173	379,379	1,754,697
		1인당	503.9	25.6	152.4	337.1	579.0	1,204.4	10,765.0
	전체 평균 실효세율		25.3	10.1	13.1	16.9	20.6	29.3	44.3
	1인당 증여세액		127.7	2.6	20.0	57.0	119.0	353.0	4,765.4
2008	유가증권	인원	9,943	3,100	1,883	1,047	1,676	1,884	353
		금액	4,282,675	86,675	253,155	240,940	502,957	967,725	2,231,223
		1인당	430.7	28.0	134.4	230.1	300.1	513.7	6,320.7
	전체 평균 실효세율		28.5	10.1	13.4	17.2	21.1	29.9	44.3
	1인당 증여세액		122.7	2.8	18.1	39.7	63.4	153.5	2,800.5
2009	유가증권	인원	6,465	3,391	1,444	634	615	280	101
		금액	2,062,120	91,093	181,990	161,851	264,294	338,678	1,024,214
		1인당	319.0	26.9	126.0	255.3	429.7	1,209.6	10,140.7
	전체 평균 실효세율		24.6	10.1	13.3	17.1	20.7	29.0	44.5
	1인당 증여세액		78.3	2.7	16.8	43.7	89.0	350.7	4,512.2
2010	유가증권	인원	8,461	3,888	2,262	872	850	412	177
		금액	2,334,728	114,784	263,973	203,062	320,653	561,980	870,276
		1인당	275.9	29.5	116.7	232.9	377.2	1,364.0	4,916.8
	전체 평균 실효세율		24.6	10.1	13.3	17.1	20.7	29.0	44.5
	1인당 증여세액		67.8	3.0	15.5	39.9	78.1	395.5	2,187.8

<부표 A.4-6>의 계속

증여재산가액 규모별			소계	1억 이하	3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30억 이하	30억 초과
2011	유가증권	인원	14,107	9,784	1,905	725	791	713	189
		금액	3,365,383	187,601	272,872	220,235	428,034	964,792	1,291,849
		1인당	238.6	19.2	143.2	303.8	541.1	1,353.1	6,835.2
	전체 평균 실효세율		24.9	10.1	13.4	17.4	20.6	28.6	44.0
	1인당 증여세액		59.4	1.9	19.1	53.0	111.3	386.8	3,010.4
2012	유가증권	인원	10,595	5,792	2,090	846	916	759	192
		금액	3,298,223	153,539	291,133	248,997	455,640	915,558	1,233,356
		1인당	311.3	26.5	139.3	294.3	497.4	1,206.3	6,423.7
	전체 평균 실효세율		26.0	10.2	13.5	17.4	20.7	28.4	45.0
	1인당 증여세액		80.8	2.7	18.8	51.4	103.1	342.1	2,887.7
2013	유가증권	인원	11,955	6,615	2,502	950	991	690	207
		금액	3,743,565	182,159	343,898	272,394	479,786	840,720	1,624,608
		1인당	313.1	27.5	137.4	286.7	484.1	1,218.4	7,848.3
	전체 평균 실효세율		27.2	10.1	13.5	17.5	20.7	28.6	44.6
	1인당 증여세액		85.0	2.8	18.5	50.1	100.0	349.0	3,500.0
2014	유가증권	인원	12,554	7,118	2,740	850	1,001	706	139
		금액	3,038,775	237,416	397,138	267,076	513,283	740,910	882,952
		1인당	242.1	33.4	144.9	314.2	512.8	1,049.4	6,352.2
	전체 평균 실효세율		29.8	10.3	13.4	17.5	20.8	28.8	43.6
	1인당 증여세액		72.0	3.4	19.5	55.0	106.7	302.5	2,766.6

주: 평균 실효세율 = 산출세액/과세표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추정모형 검토

□ 조세지출예산서상 추정곤란 사유

○ 감면대상인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추정곤란

□ 조세지출예산서상 추정곤란 사유 검토결과

○ 관련 정보는 담당 세무서 조사관이 작성한 "결정결의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자별로 PDF 형태로 보관되어 있어, 국세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음

가. 조세지출규모 실적치 추정 모형

조세지출규모 =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로 인하여 감소하는 재산가액 × 실효세율 =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유가증권 평가가액 × 할증률(10%, 15%) × 실효세율

○ 실효세율: 재산가액 규모별 산출세액 합계액의 과세표준 합계액 대비 비율

(1) 2015년 실적치

□ 2016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조세지출규모는 할증률에 따라 상속세 약 175억~263억원, 증여세 약 344억~516억원으로 추정되었음

<부표 A.4-7> 상속세(2015년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조세지출규모

(단위: 명, 백만원, %)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별	인원	상속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평균 실효세율 (B)	할증평가 배제로 감소하는 상속재산가액 (C) = (A) × 할증률		조세지출규모 (D) = (C) × (B)		
		유가증권 (A)	유가증권 외					할증률 (10%)	할증률 (15%)	할증률 (10%)	할증률 (15%)	평균
1억 이하	1	157	-263	-111	-	-	-	15.7	23.55	-	-	-
3억 이하	4	46	181	743	389	43	11.0	4.6	6.9	0.5	0.8	0.65
5억 이하	4	261	1,327	1,724	65	7	10.0	26.1	39.2	2.6	3.9	3.25
10억 이하	143	50,693	50,007	102,890	3,727	585	15.7	5,069.3	7,604.0	795.9	1,193.8	994.85
30억 이하	169	91,356	173,737	288,012	69,683	16,025	23.0	9,135.6	13,703.4	2,101.2	3,151.8	2626.5
30억 초과	91	332,457	476,607	924,482	555,685	244,278	44.0	33,245.7	49,868.6	14,628.1	21,942.2	18285.15
총합계	**412**	**474,970**	**701,597**	**1,317,739**	**629,549**	**260,938**	**41.4**	**47,497.0**	**71,245.5**	**17,528.3**	**26,292.4**	**21,910.35**

주: 1. 평균 실효세율 = 산출세액/과세표준
2. 조세지출규모 = 할증평가 배제로 감소하는 상속재산가액 × 실효세율

<부표 A.4-8> 증여세(2015년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조세지출규모

(단위: 명, 백만원, %)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	인원	증여재산가액		과세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평균 실효세율 (B)	할증평가 배제로 감소하는 증여재산가액 (C) = (A) × 할증률		조세지출규모 (D) = (C) × (B)		
		유가증권 (A)	유가증권 외					할증률 (10%)	할증률 (15%)	할증률 (10%)	할증률 (15%)	평균
1억 이하	3,268	140,898	1,128	141,986	86,791	8,723	10.1	14,089.80	21,134.70	1,416.11	2,124.16	1,770.14
3억 이하	1,861	287,072	2,748	289,556	202,508	27,848	13.8	28,707.20	43,060.80	3,947.69	5,921.53	4,934.61
5억 이하	577	194,999	2,278	196,400	132,299	23,129	17.5	19,499.90	29,249.90	3,409.04	5,113.58	4,261.31
10억 이하	486	271,395	3,237	273,050	186,016	39,027	21.0	27,139.50	40,709.30	5,693.99	8,541.00	7,117.50
30억 이하	166	209,118	5,385	212,323	266,789	70,341	26.4	20,911.80	31,367.70	5,513.56	8,270.34	6,891.95
30억 초과	51	320,427	9,127	329,200	505,474	227,784	45.1	32,042.70	48,064.10	14,439.54	21,659.34	18,049.44
총합계	**6,409**	**1,423,909**	**23,904**	**1,442,515**	**1,379,878**	**396,851**	**28.8**	**142,390.90**	**213,586.40**	**34,419.93**	**51,629.94**	**43,024.94**

주: 1. 평균 실효세율 = 산출세액/과세표준
2. 조세지출규모 = 할증평가 배제로 감소하는 증여재산가액 × 실효세율

(2) 다음 연도 추정치

가) 연도별 상속·증여세 세수전망치를 이용하는 방법

□ 상속·증여세 회귀모형 또는 5년 기하평균 탄성치를 이용하여 상속·증여세 산출세액을 전망하고, 2015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에 대한 조세특례규모(실적치)가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하여 2016년과 2017년도를 전망하고자 함

- ○ 다만,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현황을 2015년 기준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았으나 2015년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현황 및 유가증권에 대한 통계는 2016년 12월 말에 공표될 예정임
- ○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 산출세액을 전망하고, 3년 평균 상속·증여세수에서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증여세수가 차지하는 비중(2012~2014년 실적치)을 이용하여 유가증권에 대한 산출세액을 전망함
- ○ 또한 2015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에 대한 조세특례규모(실적치)가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과 2017년 동일하다고 가정함

<부표 A.4-9>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조세지출금액 전망치 추정모형 흐름도

단계 1	상속·증여세 회귀분석 결과에 따른 연도별 상속·증여세 세수전망 (2015~2017년)	회귀분석 5년 기하평균 탄성치
단계 2	2015~2017년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증여세수 전망 = 2015~2017년 상속·증여세 세수전망 × 3년 평균 상속·증여세수에서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증여세수가 차지하는 비중(2012~2014년 실적치)	
단계 3	2015년 기준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증여세수(전망치)에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조세지출규모(실적치)가 차지하는 비중 계산	
단계 4	2016년과 2017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조세지출규모 전망치 계산 2016년과 2017년 상속·증여세수 전망치 × 2015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조세지출규모가 차지하는 비중(2016년과 2017년 동일하다고 가정)	

① 상속·증여세 회귀분석 결과에 따른 연도별 상속·증여세 세수전망

[단계 1] 상속·증여세 회귀모형으로 연도별 상속·증여세 세수전망(2015~2017년)

□ 상속·증여세 세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은 Ordinary Least Squares을 활용하였으며, 명목GDP 이외에 전년도 명목GDP, 지가지수 및 시가총액, 상속세 신고인원을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나, 유의하지 않거나 R-squared가 감소하여 상속세는 모형(1), 증여세는 모형 (1)과 모형(9)를 채택하여 세수를 전망함

○ <부표 A.4-10>, <부표 A.4-11> 모형(1) 상속·증여세수 회귀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명목GDP가 증가할수록 상속·증여세수는 증가하며, 명목GDP에 대한 상속·증여세수의 탄력성은 각각 1.870, 1.667임

○ 오차항의 자기상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Cochrane-Orcutt 방법을 사용해 본 결과는 모형 (2)의 결과와 같음

[부도 A.4-3] 상속세수 모형 추계 검정

Dependent Variable: LN_IT
Method: Least Squares
Date: 12/12/16 Time: 18:27
Sample: 1980 2014
Included observations: 35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C	-17.62033	1.101428	-15.99771	0.0000
LN_GDP_2010	1.869999	0.092569	20.20116	0.0000
D9799	-0.413925	0.228330	-1.812835	0.0796
D0014	-1.191055	0.211908	-5.620611	0.0000

R-squared	0.968580	Mean dependent var	5.822166
Adjusted R-squared	0.965539	S.D. dependent var	1.651947
S.E. of regression	0.306661	Akaike info criterion	0.581064
Sum squared resid	2.915275	Schwarz criterion	0.758818
Log likelihood	-6.168627	Hannan-Quinn criter.	0.642425
F-statistic	318.5427	Durbin-Watson stat	1.770285
Prob(F-statistic)	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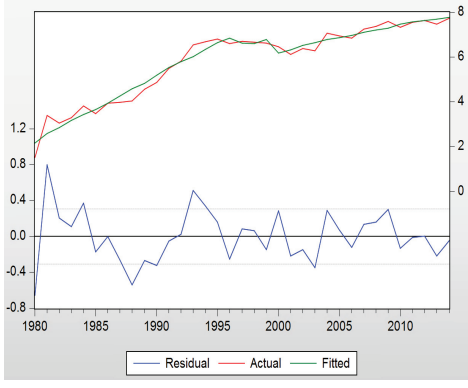

[부도 A.4-4] 증여세수 모형 추계 검정(모형 1)

Dependent Variable: LN_ET
Method: Least Squares
Date: 12/12/16 Time: 18:28
Sample: 1980 2014
Included observations: 35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C	-15.07554	1.029876	-14.63821	0.0000
LN_GDP_2010	1.666963	0.086555	19.25893	0.0000
D9799	-0.086733	0.213497	-0.406247	0.6874
D0014	0.047338	0.198142	0.238909	0.8127

R-squared	0.979108	Mean dependent var	6.321181
Adjusted R-squared	0.977086	S.D. dependent var	1.894263
S.E. of regression	0.286740	Akaike info criterion	0.446726
Sum squared resid	2.548806	Schwarz criterion	0.624480
Log likelihood	-3.817696	Hannan-Quinn criter.	0.508086
F-statistic	484.2767	Durbin-Watson stat	1.385170
Prob(F-statistic)	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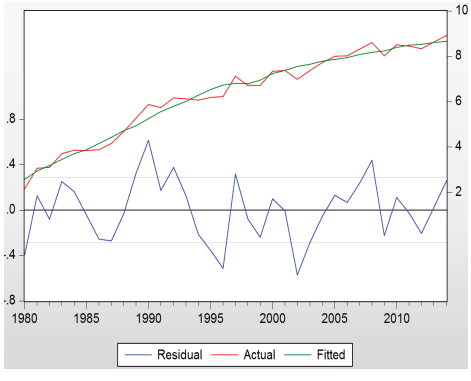

[부도 A.4-5] 증여세수 모형 추계 검정(모형 9)

Dependent Variable: LN_ET
Method: Least Squares
Date: 12/15/16 Time: 19:37
Sample (adjusted): 1987 2014
Included observations: 28 after adjustments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C	-10.10255	1.583346	-6.380506	0.0000
LN_GDP_2010_1	0.506161	0.222848	2.271324	0.0333
LN_LAND_INDEX	1.740213	0.377193	4.613593	0.0001
LN_STOCK	0.329034	0.149561	2.199994	0.0386
D9799	0.771649	0.221997	3.475952	0.0021
D0014	1.018827	0.238173	4.277673	0.0003

R-squared	0.979032	Mean dependent var	7.057005
Adjusted R-squared	0.974267	S.D. dependent var	1.272867
S.E. of regression	0.204188	Akaike info criterion	-0.152139
Sum squared resid	0.917242	Schwarz criterion	0.133333
Log likelihood	8.129952	Hannan-Quinn criter.	-0.064868
F-statistic	205.4447	Durbin-Watson stat	2.357490
Prob(F-statistic)	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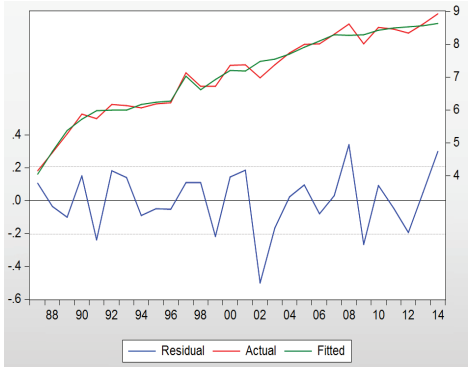

<부표 A.4-10> 상속세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모형(9)	모형(10)
	ln(상속세수)	ln(상속세수)	ln(상속세수)	ln(상속세수)	ln(상속세수)	ln(상속세수)	ln(상속세수)	ln(상속세수)	ln(상속세수)	ln(상속세수)
ln(명목GDP)	1.870***	1.762***	2.279	2.443			1.973***		2.089***	1.973***
	(0.0926)	(0.0981)	(1.783)	(1.834)			(0.242)		(0.262)	[0.242]
ln(전년도명목GDP)			-0.498	-0.729	1.738***					
			(1.753)	(1.832)	(0.0934)					
ln(신고인원)				0.0905						
				(0.176)						
D_{9799}	-0.414*	-0.325	-0.295	-0.23	-0.456**	0.281	-0.448*	1.033***	-0.583**	-0.448*
	(0.228)	(0.220)	(0.252)	(0.285)	(0.221)	(0.271)	(0.234)	(0.317)	(0.261)	[0.234]
D_{0014}	-1.191***	-1.030***	-1.017***	-0.922***	-1.146***	-0.2	-1.365***	0.559**	-1.444***	-1.365***
	(0.212)	(0.213)	(0.233)	(0.300)	(0.212)	(0.281)	(0.273)	(0.238)	(0.280)	[0.273]
ln(지가지수)						3.158***	0.346	2.858***	0.421	0.346
						(0.684)	(0.441)	(0.620)	(0.443)	[0.441]
ln(시가총액)						0.141				
						(0.127)				
ln(종합주가지수)								0.348	-0.2	
								(0.312)	(0.176)	
상수항	-17.62***	-16.29***	-16.59***	-16.49***	-15.73***	-8.739***	-20.41***	-8.740***	-20.85***	-20.41***
	(1.101)	(1.176)	(1.283)	(1.313)	(1.105)	(2.090)	(1.830)	(2.074)	(1.860)	[1.830]
관측치	35	34	34	34	34	19	28	28	28	28
R-squared	0.969	0.964	0.968	0.968	0.966	0.856	0.954	0.832	0.957	0.954

주: 1. D_{9799}는 1997~1999년의 세율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더미변수임
2. D_{0014}는 2000년 이후 세율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 더미변수임
3. *** p<0.01, ** p<0.05, * p<0.1
4. ( ) 안은 Standard errors임

<부표 A.4-11> 증여세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모형 (9)	모형 (10)
	ln(증여세수)	ln(증여세수)	ln(증여세수)	ln(증여세수)	ln(증여세수)	ln(증여세수)	ln(증여세수)	ln(증여세수)	ln(증여세수)	ln(증여세수)
ln(명목GDP)	1.667***	1.478***	2.36	2.714			0.698***		0.506**	0.698***
	(0.0866)	(0.137)	(1.773)	(1.829)			(0.222)		(0.223]	[0.222]
ln(전년도명목GDP)			-0.74	-1.107	1.577***					
			(1.743)	(1.803)	(0.0931)					
ln(신고인원)				0.168						
				(0.198)						
D_{9799}	-0.0867	0.222	0.0178	0.0174	-0.149	0.935***	0.549**	1.163***	0.772***	0.549**
	(0.213)	(0.253)	(0.251)	(0.252)	(0.220)	(0.300)	(0.213)	(0.152)	(0.222)	[0.213]
D_{0014}	0.0473	0.422	0.179	0.0631	0.0463	1.219***	0.889***	1.504***	1.019***	0.889***
	(0.198)	(0.281)	(0.231)	(0.269)	(0.211)	(0.311)	(0.249)	(0.114)	(0.238)	[0.249]
ln(지가지수)						3.821***	1.864***	2.330***	1.740***	1.864***
						(0.758)	(0.403)	(0.297)	(0.377)	[0.403]
ln(시가총액)						0.0499				
						(0.141)				
ln(종합주가지수)								0.462***	0.329**	
								(0.150)	(0.150)	
상수항	-15.08***	-12.80***	-14.61***	-16.24***	-13.72***	-10.92***	-10.83***	-7.167***	-10.10***	-10.83***
	(1.030)	(1.653)	(1.275)	(2.304)	(1.101)	(2.316)	(1.672)	(0.994)	(1.583]	[1.672]
관측치	35	34	34	34	34	19	28	28	28	28
R-squared	0.979	0.945	0.978	0.978	0.976	0.924	0.974	0.974	0.979	0.974

주: 1. D_{9799}는 1997~1999년의 세율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더미변수임
2. D_{0014}는 2000년 이후 세율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 더미변수임
3. *** p<0.01, ** p<0.05, * p<0.1
4. ( ) 안은 Standard errors임

[단계 2~4] 2016년과 2017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조세지출규모 전망치 계산

□ (단계1) <부표 A.4-1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형 1)의 경우에는 2016년 상속세와 증여세 산출세액 전망치는 각각 약 2조 7,716억원, 약 6조 6,823억원이며, 2017년 전망치는 각각 약 2조 9,772억원, 약 7조 1,223억원임

○ (모형 9)의 증여세 산출세액 전망치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약 6조 3,005억원 6조 4,237억원임

- (모형 9)의 경우 명목 GDP는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전망치를 이용하고, 지가지수와 종합주가지수는 2017년의 경우 2016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 (단계2) 2012~2014년 상속·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증여세 산출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3년 평균은 각각 19.0%, 18.9%임

□ (단계3) 상속·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증여세 산출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하여 2015년 상속증여세 산출세액 전망치에서 도출한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증여세 산출세액은 각각 4,891.9억원, 1조 1,826.4억원임

○ 2015년 기준 유가증권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조세지출규모(실적치)가 차지하는 비중 계산 결과, 각각 4.3%, 3.5%임

□ (단계4) <부표 A.4-12>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16년과 2017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조세지출규모는 (모형 1)의 경우 약 731.0억원과 780.9억원으로 추계되었음

○ (모형 9)를 이용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지출규모는 2016년과 2017년 701.5억원과 727.0억원으로 추계되었음

<부표 A.4-12> 2015~2017년 상속·증여세 산출세액 전망(회귀모형)

(단위: 억원, %)

		2015 (실적)	2016 (전망)		2017 (전망)	
명목GDP		15,585,916	16,212,5312)		16,844,8192)	
상속·증여세	상속세	25,747.0	27,716.4		29,772.0	
	증여세	62,573.6	모형 1	모형 9	모형 1	모형 9
			66,823.1	63,005.0	71,223.7	64,237.0
	합계	88,320.6	94,539.6	90,721.4	100,995.7	94,009.0
상속세 대비 유가증권 산출세액이 차지하는 비중 3년 평균 (2012~2014)	상속세	19.0%				
	증여세	18.9%				
	합계	18.0%				
유가증권에 대한 산출세액 (전망) (A)	상속세	4,891.9	5,266.1		5,656.7	
	증여세	11,826.4	모형 1	모형 9	모형 1	모형 9
			12,629.6	11,907.9	13,461.3	12,140.8
	합계	15,897.7	17,895.7	17,174.1	19,118.0	17,797.5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조세지출규모 (B)	상속세	219.1[1)]	235.9		253.4	
	증여세	430.2[1)]	모형 1	모형 9	모형 1	모형 9
			459.4	433.2	489.7	441.6
	상속·증여세	**649.4[1)]**	731.0	701.5	780.9	727.0
유가증권 중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조세지출규모 비중 (2015년 기준) (B)/(A+B)	상속세	4.3%				
	증여세	3.5%				
	합계	3.9%				

주: 1) 할증률 10%와 15% 실적에 대한 단순평균임
2) GDP는 2016년과 2017년 전망치, 지가지수와 종합주가지수는 2017년 경우 2016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3) 모형1: log(명목GDP) 모형 9: log(명목GDP), log(지가지수), log(종합주가지수)

자료: 전망치: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국세청 협조자료

② 상속·증여세 5년 기하평균 탄성치를 이용한 연도별 상속·증여세 세수전망

□ (단계1) <부표 A.4-1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16년 상속·증여세 산출세액 전망치는 각각 약 2조 6,678억원, 약 9조 548억원이며, 2017년 상속·증여세 산출세액 전망치는 각각 약 2조 8,748억원, 약 9조 8,388억원임

□ (단계2) 2012~2014년 상속·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증여세 산출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3년 평균은 각각 19.0%, 18.9%임

□ (단계3) 상속·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증여세 산출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하여 2015년 상속증여세 산출세액 전망치에서 도출한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증여세 산출세액은 각각 4,695.1억원, 1조 5,717.8억원임

○ 2015년 기준 유가증권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조세지출규모(실적치)가 차지하는 비중 계산 결과, 각각 4.5%, 2.7%임

□ (단계4) <부표 A.4-1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16년과 2017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조세지출규모는 약 704.9억원, 약 763.9억원으로 전망되었음

<부표 A.4-13> 2015~2017년 상속·증여세 산출세액 전망(기하평균 탄성치)

(단위: 억원, %)

		2015 (실적)	2016 (전망)	2017 (전망)
명목GDP성장률		4.9%	4.0%[2]	3.9[2]
5년 기하평균 탄성치 (2005~2014)	상속세	1.99		
	증여세	2.22		
	합계	2.07		
상속·증여세 (전망)	상속세	24,711	26,678	28,748
	증여세	83,163	90,548	98,388
	합계	107,874	117,226	127,136
상속세 대비 유가증권 산출세액이 차지하는 비중 3년 평균 (2012~2014)	상속세	19.0%		
	증여세	18.9%		
	합계	18.0%		
유가증권에 대한 산출세액 (전망) (A)	상속세	4,695.09	5,068.82	5,462.12
	증여세	15,717.81	17,113.57	18,595.33
	합계	19,417.32	21,100.68	22,884.48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조세지출규모 (B)	상속세	219.1[1]	236.5	254.9
	증여세	430.2[1]	468.4	509
	상속·증여세	**649.4[1]**	**704.9**	**763.9**
유가증권 중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조세지출규모 비중 (2015년 기준) (B)/(A+B)	상속세	4.5%		
	증여세	2.7%		
	합계	3.2%		

주: 1)할증률 10%와 15% 실적에 대한 단순평균임
2) 전망치
자료: 전망치: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청,『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국세청 협조자료

나)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 · 증여세액 탄성치를 이용하는 방법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서 재산가액 종류별로 제공되는 유가증권에 대한 통계는 2005년 이후로 생산되어 표본 수가 적어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 · 증여세액 회귀분석은 실시하지 못함

○ 이에 따른 대안으로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 · 증여세액 5년 기하 평균탄성치를 이용하여 2016년과 2017년 전망치를 산출함

□ <부표 A.4-14>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16년과 2017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조세지출규모는 할증률에 따라 약 718억~796억원으로 전망되었음

<부표 A.4-14>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조세지출규모 전망치

(단위: 억원, %)

연도		2015년(실적)[1)]	2016년(전망)	2017(전망)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219.1[1)]	261.2	310.1
	증여세	430.2[1)]	457.7	486.3
	상속 · 증여세	**649.4[1)]**	**718.9**	**796.4**
경상성장률		4.9%	4.0%[2)]	3.9%[2)]
5년 기하평균 탄성치	상속세	4.8		
	증여세	1.6		

주: 1) 할증률 10%와 15% 실적에 대한 단순평균임
2) 전망치
자료: 전망치: 국회예산정책처

5. 추정 결과

□ <부표 A.4-15> 추계방법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조세지출규모 전망치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5년 실적치는 649.4억원이며, 2016년과 2017년 전망치는 약 719억~729억원, 약 772억~796억원으로 추계되었음

<부표 A.4-15> 추계방법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조세지출규모 전망치

(단위: 억원, %)

		2015[1] (실적)	2016 (전망)		2017 (전망)	
회귀모형[2]	상속세	219.1[1]	235.9		253.4	
	증여세	430.2[1]	모형1	모형9	모형1	모형9
			459.4	433.2	489.7	441.6
	상속·증여세	**649.4[1]**	**731.0**	**701.5**	**780.9**	**727.0**
5년 기하평균 탄성치	상속세	219.1[1]	236.5		254.9	
	증여세	430.2[1]	468.4		509	
	상속·증여세	**649.4[1]**	**704.9**		**763.9**	
유가증권에 대한 5년 기하평균 탄성치	상속세	219.1[1]	261.2		310.1	
	증여세	430.2[1]	457.7		486.3	
	상속·증여세	**649.4[1]**	**718.9**		**796.4**	

주: 1) 할증률 10%와 15% 실적에 대한 단순평균임
2) 상속·증여세수 추계: (모형1) log(명목GDP) (모형9) log(명목GDP), log(지가지수), log(종합주가지수)

6. 문제점

□ 납세자 정보보호를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재산가액 규모별로 데이터를 제공받아 평균 실효세율을 이용하여 추정을 수행한 바, 정교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또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이 달라지나 동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조세지출규모는 범위로 추계됨

□ 납세협력비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관련 정보는 담당 세무서 조사관이 작성한 결정 결의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관련 자료는 PDF 형태로 보관되어 있으므로 일일이 검토하여 동 제도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는바, 동 정보를 수집하는 데 일선 세무서 담당자의 자료 협조에 어려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필요한 "주식 등 특례신청서"와 같은 별도의 서식을 통하여 신청하게 하며, 관련 자료가 DB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국세청, 『2005년 개정세법 해설』, 2005.

_____,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_____, 『법인세 신고안내』, 각 연도.

_____, 『2016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2016.3.

재정경제부, 『2007년 간추린 개정세법』, 2008.7.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삼일아이닷컴(http://www.samili.com)

A.5.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04조의19)

1. 제도 개요 및 연혁

가. 제도 개요

□ 근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19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도입 목적[20]

○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 수혜자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21]을 받을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를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건설사업자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22]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법인

20)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82

21) 「주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단독주택은 30호(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0호), 공동주택은 30세대(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참조

22)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법」 제1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9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참조

□ 수혜 내용[23]:

○ 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미포함

□ 조세특례 신고 관련 서식

○ 「조특법」 제104조의 19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 토지 보유현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 16서식]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통해 신고하여야 함[24]

-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 신고서에는 납세 의무자의 정보와 해당되는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지목, 면적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추정곤란 사유

○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추정곤란 사유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사업 계획의 승인 신청은 당사자의 결정에 따르므로 추정곤란'으로 제시

□ 일몰기한

○ 제도 신설 당시부터 일몰기한이 정해지지 않음

나. 제도 연혁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 특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로 2008. 12. 26. 신설됨

□ 2010년에는 수혜자 범위를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법인까지 확대하였고, 2013년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취득 후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경우까지 요건을 확대하였음

23)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82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표 A.5-1>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연혁

연도	내용
2008	신설(조특법 104조의19)
2010	수혜자 범위 확대(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법인 추가)
2013	주택건설사업자 지위 요건 확대 (토지 취득 후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 지위 취득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6서식]은 2009. 4. 7. 신설됨

○ 서식은 2013. 2. 23. 한 차례 개정되었으나 ① 신고구분(추가/제외) 항목만 추가되었음

2. 국세청 자료 현황

가. 국세청 요청 자료

□ 주택건설사업자는 「조특법」 제104조의19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8 제1항에 따라 주택신축용 토지 보유현황을 '주택신축용토지 합산 배제(변동) 신고서'에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 추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 주택건설사업자가 신고한 주택신축용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 내역을 취합한 자료를 <부표 A.5-2>과 같은 양식으로 요청함

○ 종합부동산세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해당연도(t, t+1, t+2, t+3, t+4)의 공시지가 확인을 위해 주택신축용토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함

○ 조세지출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에 합산 배제되는 주택신축용 토지 외에 다른 토지의 소유 정보 즉, 종합합산 토지분의 과세표준(또는 적용 세율)도 함께 요청함

○ 「조특법」 제104조의19는 토지 취득 후 5년간 적용되므로 단년도 정보가 아닌 다년도 정보를 요청함

- 신고구분(최초, 제외년도)을 통해 적용 기간 확인(1년~5년)함

<부표 A.5-2> 국세청 요청 자료

대상자	신고구분	소재지	취득일	지목	면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적용 세율)				
						종합합산 토지분				
						t	t+1	t+2	t+3	t+4
A										
B										
…										

나. 국세청 자료 수집 현황

□ 기존 자료 요청 진행 상황

○ 연구 기간과 종부세 납부 기간이 겹쳐 연구 기간 중 국세청의 자료 제공 협조에 어려움이 있었음

- 신고 대상(신축용 토지)에 관한 자료(대상자, 소재지, 취득일, 지목, 면적), 대상자의 과세표준(적용 세율)에 관한 자료의 추출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연구 기간 이후에 이루어졌고 자료를 추출하더라도 대상이 많아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받음

○ 조특법 제104조의19 제3조에 따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당한 사례도 있는지 추가로 요청하였으나 제공 어렵다는 답변 받음

□ 국세청 보유 자료 활용의 한계

○ 국세청에서는 해당 연도에 신고한 신축용 토지에 대한 자료만 관리하고 있어 해당 연도 이전에 신고한 토지의 경우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해당 연도 이전에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아직 사업계획 승인 전이라면 조특법 제104조의19 대상에 포함됨
- 해당 연도에 신고한 신축용 토지에 대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추정할 경우 이전에 신고한 토지는 당해 조세지출 규모로 포함되지 않아 실제 조세지출 규모보다 과소 추정될 수 있음

○ 국세청에서는 대상 토지를 주소로만 관리하고 있어(과세 대상에서 제외할지 판단 기준으로만 활용함) 토지의 가액에 관한 자료는 제공할 수 없음

- 토지의 소재지와 지목을 통해 추가로 연도별 공시지가 확인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대상이 많아 건별로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음

3. 기타 경제사회 통계자료 현황

가. 2016년 국토교통부 조세지출 평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에서 작성 제출

□ 「조특법」 제104조의19의 정책 대상자를 주택건설사업자, 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구분하여 제시함

- ○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법인은 포함하지 않음
- ○ 제시한 내용은 정책 대상자에 관한 것으로 이 중 실제 수혜자의 규모에 대한 통계 자료는 제시하지 않음

□ 해당 조세지출 항목의 기대효과로 주택건설사업자인 A사, B사의 조세감면 효과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함

- ○ 국토교통부 담당자 확인 결과 해당 내용은 한국주택협회에서 제출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함
- ○ 한국주택협회 담당자 확인 결과 회원사의 협조를 받아 개별 회원사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이라고 함
  - 한국주택협회에서는 개별 회원사의 종부세 납부 현황에 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함

나. 주택건설 인·허가 통계

□ 자료 개요

- ○ 자료 출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http://www.eais.go.kr/)
- ○ 통계 연도: 2010. 1.~2016. 9.
- ○ 통계 주기: 월별/연도별
- ○ 작성 대상[25)]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대장과 사업계획승인대장의 허가, 착공, 준공 현황

25) 국토교통부, 『2015년 건축통계집』, 2016, p.5.

○ 포함 내용

- 건축주(개인, 일반법인, 주택조합, 주택업체, LH,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기타)별 용도에 따른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허가 동수[26], 연면적[27]에 관한 자료 포함하고 있음

□ 자료 활용 시 한계

○ 「조특법」 제104조의19의 수혜대상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자료가 아님

- 주택건설 인·허가 통계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건축법」상 건축허가(신고) 받은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고 있음
- 특히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가 아닌 이미 승인을 '받은' 통계에 관한 자료임
- 「조특법」 제104조의19의 조세지출 규모 추정을 위해서는 공시지가 즉, 대지면적과 위치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데 주택건설 인·허가 통계는 건축 인허가 동수, 연면적 자료만을 포함하고 있음

다. 주택사업자단체(협회)

□ 「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28]에 따라 협회[29]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전년도 영업실적(대지면적 포함)과 해당 연도의 영업계획(대지면적, 사업 위치, 착공·준공 예정일 포함)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별 사업자의 영업계획에 관한 정보는 협회에서 제공이 어려움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영업실적·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확인 결과 사업 대상 대지면적에 관한 정보만 있어 영업계획에 관한 통합 자료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적용 세율에 관한 정보가 없어 조세지출 규모 추정이 어려움

---

26) 층 대표 용도 방식으로 집계
27) (용도별) 층 면적의 합
28)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법」 제6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참조
29)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4. 추정모형 검토

가. 국세청 자료 수집 가능한 경우

□ 국세청 자료 수집이 가능한 경우 각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주택건설신축용 토지의 소재지와 지목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함

□ 주택건설사업자의 과세표준에 관한 정보를 통해 연도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율을 도출해야 함

○ 종합부동산세율은 개별 주택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부표 A.5-3>과 같이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 개별 주택사업자별로, 연도별로 각각 적용 세율을 도출해야 함

<부표 A.5-3>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종합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원 이하	0.75	-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5억원 초과	2.0	3,375만원

자료: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흐름도
(http://www.nts.go.kr/tax/tax_10.asp?cinfo_key=MINF54201009261447 50&menu_a=1000&menu_b=100&menu_c=201&flag=10)

□ 개별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주택 신축용 토지의 공시지가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바탕으로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함

○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주택 신축용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경우와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라 합산 배제되는 경우의 차이를 통해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해야 함

○ 조특법 제104조의19를 적용하더라도 같은 과세표준 구간 내에 존재하여 적용세율이 바뀌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하고 추정함

<부표 A.5-4>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규모 추정

대상자	t년			t+1년			t+2년			t+3년			t+4년		
	공시지가	세율[1)]	조세지출 규모	공시지가	세율	조세지출 규모	공시지가	세율	조세지출 규모	공시지가	세율	조세지출 규모	공시지가	세율	조세지출 규모
A															
B															
C															
…															
합계															

주: 1) ① 대상자별로 과세표준이 상이하므로 조세지출 규모 추정을 위해 적용하는 세율도 상이하며, 대상자가 보유하는 토지 규모도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 대상자라 하더라도 연도별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
② 「조특법」 제104조의19를 적용하더라도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다(적용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하고 추정함

나. 국세청 자료 수집 불가능한 경우

□ 현재 활용 가능한 자료로는 '주택건설 인허가 통계 자료'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은 한계점이 많아 적용이 어려움

○ 자료의 포괄 대상 조정의 문제

- 주택건설 인·허가 통계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건축법」상 건축허가(신고) 받은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고 있어 조특법 제104조의19의 대상이 아닌 「건축법」상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여야 함
- 주택건설 인·허가 통계는 「조특법」 제104조의19의 요건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가 아닌 이미 승인을 '받은' 통계에 관한 자료여서 포괄하는 대상이 다르며 토지 취득 후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음

○ 대지면적 추정의 문제

- 현재 자료에서는 주택건설 인·허가 면적이 동수, 연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인·허가된 주택의 대지면적 추정이 필요함
- 대지면적 추정을 위해서는 용적률(=(연면적/대지면적)×100)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용적률이 용도지역별로 상이하고 지역의 조례에 의해 결정되어 적용에 한계가 있음[30)]

○ 대지가격 추정의 문제

- 주택건설 인·허가 통계 자료에서 지역별로 인·허가 통계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지역별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공시지가는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용도, 소재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히 평균치를 적용할 경우 추정한 값의 오차가 커질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 감면 규모 추정의 문제

- 추정을 통해 대상이 되는 대지면적과 공시지가를 도출하더라도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개별 기업별로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적용이 어려움

5. 추정 결과

□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어 해당 조세지출 항목의 추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규모 추정을 위해서는 국세청 보유 자료 외에도 대상 토지 각각의 연도별 공시지가, 해당 기간 동안 주택건설사업자 각각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적용 세율) 자료, 적용 대상 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건수가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움

6. 문제점

□ 국세청 자료 외의 자료로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 보았으나 한계점이 많아 추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검토된 자료 중 관련성이 가장 높은 주택건설 인·허가 통계의 경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조특법」 제104조의19의 대상과 자료 포괄 대상이 상이하고, 대지면적이나 대지가격에 대한 정보도 추가적인 가정을 통해 도출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대한 정보도 없어 추정이 어려움

○ 주택건설 인·허가 통계는 일반법인, 주택조합, 주택업체는 포함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포함하지 않아 이 자료를 활용할 경우 조세지출 규모가 과소 추정될 수도 있음

30)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참조

참고문헌

대한민국정부,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6.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http://www.eai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국세청(http://www.nts.go.kr)

A.6. 공장 · 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1. 제도 개요 및 연혁

가. 제도 개요

□ 근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장 · 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도입 목적[31]

○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급식의 저렴한 제공 유도

□ 수혜자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수혜자는 사업장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와 위탁경영(학교에 한함)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 <부표 A.6-1>와 같음

<부표 A.6-1>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수혜자

구분	수혜자
직접 경영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32]의 사업장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운송사업)
	학교(초 · 중 · 고등학교, 대학 등)
위탁 경영	학교 위탁급식경영 사업자

31)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82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참조

□ 수혜 내용

○ 수혜 대상 사업장의 급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부가가치세 면제) 신고 관련 서식

○ (구내 식당 직접 경영의 경우) 사업장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본 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사업과 관련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구내식당과 관련한 면세사업의 수입금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함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사업과 관련한 부분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구내식당의 면세사업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학교 위탁급식경영 사업자가 겸영사업자인 경우) 학교 위탁급식영영 사업자가 과세대상 위탁급식사업도 겸영할 경우 과세대상 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사업과 관련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면세대상 사업의 수입금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함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사업과 관련한 부분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구내식당의 면세사업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조특법 시행규칙」 제106조 제13항에 따라 학교 위탁급식 공급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학교 위탁급식경영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사업자현황신고서'**에 수입금액, 적격증명 수취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함

- 「조특법 시행규칙」 제106조 제13항에 따라 학교 위탁급식 공급업자는 사업자현황을 신고할 때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부표 A.6-2>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관련 신고 서식

대상		관련 신고 서식
직접 경영	공장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33]** - 면세사업 수입금액: 구내식당업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면세사업 등)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불공제매입세액)
	광산	
	건설사업현장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	
	학교	
위탁 경영	학교 위탁급식경영(겸영)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면세사업 수입금액(해당 항목과 관련 없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음)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면세사업 등)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불공제매입세액)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34] - 업체명, 공급 학교명, 월별 공급가액
	학교 위탁급식경영(면세)	**사업자현황신고[35]** - 수입금액(해당 항목과 관련 없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음) - 적격증명 수취금액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 - 업체명, 공급 학교명, 월별 공급가액

□ 추정곤란 사유

○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곤란 사유로 '면세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금액을 파악·관리하기 곤란'을 제시

○ 국세청 부가가치세 담당자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함

- 특히 신고 서식에 업종 코드가 음영으로 처리되어 있어 사업자가 기재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국세청에서는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DB로 구축해 두지 않아 자료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함

□ 일몰기한: 2018년 12월 31일

3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3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의2 서식]
35)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나. 제도 연혁

□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로 1982. 12. 21 신설됨

□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위탁급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1999. 4. 30 도입됨

○ 관련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의2서식]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로 1999. 9. 30 도입

□ 일몰 도래 시기에 계속해서 일몰 연장되어 현재 일몰기한이 2018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부표 A.6-3>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 연혁

연도	내용
1982	신설(조감법 제74조 제1항 제5호)
1998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 개정(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1999	학교 위탁급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가
2000	일몰 연장(2000년 → 2003년)
2003	일몰 연장(2003년 → 2006년)
2006	일몰 연장(2006년 → 2009년)
2010	일몰 연장(2009년 → 2012년)
2013	일몰 연장(2012년 → 2015년)
2015	일몰 연장(2015년 → 2018년)

2. 국세청 자료 현황

가. 국세청 요청 자료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수입 금액 중 '기관구내식당업' 관련 자료를 다음 <부표 A.6-4>의 양식으로 요청함

○ 면세 수입 금액 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부가가치액이 계산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을 검토해봤을 때 코드 번호로 추출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요청 자료에서는 제외하였음

○ 면세 수입 금액에 관한 자료만 있을 경우 부가가치액을 계산하기 어려우나 국세통계연보의 부가가치율 현황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을 참고하여 부가가치액을 추정함

<부표 A.6-4> 부가가치세 요청 자료

업태명	중분류명	세분류명	세세분류명	코드 번호	연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합계		1기		2기		합계	
						인원	면세수입 금액[1]	인원	면세수입 금액	인원	면세수입 금액	인원	면세수입 금액[2]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기관구내 식당업	기관구내 식당업	552109									

주: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면세사업 수입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❸ 면세수입금액

□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월별 공급 가액 취합 자료를 <부표 A.6-5>의 양식으로 요청함

○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사업자 현황 신고 시에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한 자료 취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자료를 요청함

- 다만,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표 A.6-4>에서 요청한 자료에 포함될 수 있어 중복성 제거를 위해 과세사업 겸영 여부를 표시하여 제공할 것을 요청함

<부표 A.6-5>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월별 공급 가액 요청 자료

위탁급식 공급업자	겸영 여부[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1월	12월	계
A															
B															
C															
…															
계															

주: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겸영 여부

나. 국세청 자료 수집 현황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수입금액 중 '기관구내식당업' 관련 자료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자료 요청 결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에 대한 추출이 불가하다는 답변 받음

-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 추출 시 업태, 종목에 부여된 코드번호를 활용해야 함

<부표 A.6-6> 일반과세자/간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사업 부분

<table>
<tr><th>서식명</th><th>신고 내용 및 작성 방법</th></tr>
<tr><td>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td><td>□ 신고 내용
<table><tr><td rowspan="5">면세사업
수입금액</td><td colspan="2">업 태</td><td>종 목</td><td colspan="6">코 드 번 호</td><td>금 액</td></tr><tr><td>(78)</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79)</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80)</td><td>수입금액 제외</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 colspan="2"></td><td colspan="2">(81)합 계</td><td colspan="6"></td></tr></table>
□ 작성 방법
(78)·(7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0):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81):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td></tr>
<tr><td>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td><td>□ 신고 내용
<table><tr><td colspan="8">❸ 면세수입금액</td></tr><tr><td colspan="2">업 태</td><td>종 목</td><td colspan="5">업 종 코 드</td><td>금 액</td></tr><tr><td>(33)</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34)</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35)</td><td>수입금액 제외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36)</td><td>합 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 작성 방법
(33)·(34):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5): 면세수입금액 중 종합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등)을 적습니다.</td></tr>
</table>

○ <부표 A.6-6>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면세사업 수입금액 부분에 코드번호 부분이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어 해당 분류 코드를 납세

자가 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기입하지 않은 부분은 국세청에서 전산화하여 자료로 관리하지 않음

○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개별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있더라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임

□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월별 공급 가액 자료

○ 국세청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 자료 요청 결과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월별 공급 가액 자료는 국세청에서 통합해서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 받음

-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월별 공급 가액을 포함하고 있는 위탁급식공급가액 증명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의2 서식)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행정비용이 과다하여 국세청에서 관리하지는 않음

3. 기타 경제사회 통계자료 현황

가. 2015년 교육부 조세지출평가서

□ 2015년 교육부 조세지출평가서에서는 교육부 관련 수혜자인 학교에 한정해서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여 제시함

○ 조세감면액=부가가치세(연간 학교급식 소요경비×10%)×소비자물가 상승률('14년 1.3%)으로 계산함

□ 교육부 조세지출평가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연간 학교급식 소요경비'의 10%로 계산하였는데 부가가치액의 10%가 아닌 전체 소요경비의 10%로 계산하여 실제보다 조세지출 규모를 과다 추정하였다고 판단됨

나. 학교급식 실시 현황

□ 학교급식 실시 현황

○ 자료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학교급식실시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43)

○ 자료 기간: 2011년~2015년

○ 대상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 포함 내용: 급식학교 수, 급식학생 수, 운영 형태[36](직영/위탁), 급식경비 등

□ 학교급식경비 현황 자료는「조특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수혜대상 중 대학 등은 포함되지 않은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한정되는 자료임
○ 급식경비 현황을 통해 전체 규모가 확인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율(10%)를 반영하여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한정된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할 수는 있음

다. 도소매업 조사보고서

□ 도소매업 조사보고서(통계청)[37]
○ 조사 목적: 전국의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1년간의 경영실태 및 구조변화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수립 및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기간: 매년 1. 1 ~ 12. 31.
○ 조사대상 및 범위: 한국표준사업분류의 대분류 G(도매 및 소매업), I(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104,091개 사업체
○ 주요 조사항목: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영업비용, 건물연면적 등
○ 도소매업 조사보고서 활용의 한계점
- 도소매업 조사보고서에 '숙박 및 음식점업 - 구내 식당업' 관련 매출액 자료가 있으나 '2014년 기준 서비스업부문 조사지침서'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구내식당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업체의 매출액으로「조특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수혜자(구내식당업을 주사업으로 하지 않음)와 관련된 내용이 아님
- 자료의 매출액은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계를 추정해서 제시하여 실제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조사표 중 부사업과 관련한 매출액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사업 관련 매출액은 따로 수집하여 관리하지 않으며 통계 표본의 일관성 유지(주사업과 부사업의 변동 등 확인)를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함

36) 2015년 학교급식 실시 현황에 따르면 전체 학교 중 직영급식은 97.7%, 위탁급식은 2.3%의 비율로 나타남
37) 구체적인 통계 설명은 http://meta.narastat.kr/metasvc/index.do?orgId=101&confmNo=101026&kosisYn=Y 참조

4. 추정모형 검토

가. 국세청 자료 수집 가능한 경우

□ 국세청 요청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 다음 <부표 A.6-9>와 같은 수식을 통해 조세지출규모 추정이 가능함

○ 부가가치율은 국세통계연보의 음식업 부가가치율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음식점업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을 활용할 수 있음

<부표 A.6-7> 2015년 국세통계연보 부가가치율 현황(음식업)

(단위: %)

구분	2014년 제1기	2014년 제2기
법인 사업자	39.4	38.6
일반 사업자	25.6	25.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부표 A.6-8>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위: %)

구분	부가가치율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3.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 구내식당업의 경우 일반적인 음식업 사업자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낮을 것으로 가정하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추정이라고 판단됨

<부표 A.6-9> 추정모형1

구분	추정 모형
겸영 사업자분(A)	(면세사업 수입금액)×부가가치율×부가가치세율(10%)
학교 위탁급식 공급업자분(B)	(위탁급식 공급가액)×부가가치율×부가가치세율(10%)
중복 제거분(C)	겸영 사업자이면서 학교 위탁급식 공급업자인 경우의 중복 계산분
계	A+B-C

나. 국세청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 국세청 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 현재 확보한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의 급식경비 자료만으로 일부 수혜 대상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해야 함

○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부표 A.6-10>과 같이 총학교급식경비에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부표 A.6-10> 추정모형2

구분	추정모형
학교 급식	(총학교급식경비)×부가가치율×부가가치세율(10%)

○ 학교급식의 경우 부가가치율은 국세통계연보의 '음식업 부가가치율'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음식점업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을 활용할 수 있음

- 학교급식은 일반적인 음식업 사업자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낮을 것으로 보이나 참고할 수 있는 부가가치율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하여 규모를 추정함
- 음식점업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부표 A.6-11>과 같이 귀속연도 기준으로 2008~2012년까지는 30%였으나 2013년 이후에는 10%로 변경되었음

<부표 A.6-11> 연도별 간이과세자(음식점업) 부가가치율

(단위: %)

2008년 귀속	2009년 귀속	2010년 귀속	2011년 귀속	2012년 귀속	2013년 이후
30	30	30	30	30	10

자료: 국세청(http://www.nts.go.kr/tax/tax_04.asp?cinfo_key=MINF76201007261518 27&menu_a=400&menu_b=100&menu_c=400&flag=04)

- 연도별 국세통계연보의 부가가치율 현황 자료에 의하면 음식업 부가가치율은 <부표 A.6-12>와 같이 법인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부표 A.6-12> 국세통계연보 음식업 부가가치율

(단위: %)

구분	'11/1	'11/2	'12/1	'12/2	'13/1	'13/2	'14/1	'14/2	'15/1	'15/2
법인 사업자	38.9	38.3	38.7	38.4	39.5	39.2	39.4	38.6	34	35
일반 사업자	24	22.1	23.2	23.1	22.2	24.7	25.6	25.4	26.9	27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2015년

5. 추정 결과

가. 2011년~2015년 실적 추정

□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만을 대상으로 2011년~2015년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 <부표 A.6-13>, <부표 A.6-14>와 같음

○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의 급식경비를 총매출금액으로 가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음식점업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을 활용하여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의 급식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를 추정한 결과는 <부표 A.6-13>과 같음

- 부가가치율을 2011년-2012년에는 30%로, 2013년-2015년에는 10%로 적용함

<부표 A.6-13>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급식경비(A)	49373.48	53025.5	56502.23	56013.19	56341.91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율(B)	30%	30%	10%	10%	10%
부가가치세율(C)	10%	10%	10%	10%	10%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 추정 (A×B×C)	1481.20	1590.77	565.02	560.13	563.42

○ 연도별 국세통계연보의 부가가치율을 활용하여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의 급식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를 추정한 결과는 <부표 A.6-14>와 같음

- 국세통계연보에는 시기별로는 1기, 2기로 사업자별로 법인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율을 제시하고 있으나 급식경비는 연도별 자료만 제공하고 있어 1기와 2기의 부가가치율의 평균을 해당 연도의 부가가치율로 가정하고 계산함

- 조세지출의 대상자의 법인 사업자, 일반 사업자 비중에 관한 자료가 없어 전

체를 법인사업자로 볼 경우와 일반사업자로 볼 경우의 계산된 값을 통해 실제 값은 그 범위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함

<부표 A.6-14>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급식경비(A)		49373.48	53025.5	56502.23	56013.19	56341.91
부가가치율	법인 사업자(B1)	38.6%	38.6%	39.4%	39%	34.5%
	일반 사업자(B2)	23.1%	23.2%	23.5%	25.5%	26.95%
부가가치세율(C)		10%	10%	10%	10%	10%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 추정	A×B1×C	1905.816	2046.784	2226.188	2184.514	1943.796
	A×B2×C	1140.527	1230.192	1327.802	1428.336	1518.414

○ 부가가치율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추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도 <부표 A.6-15>와 같이 차이가 있음

<부표 A.6-15>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 추정 비교

(단위: 억원)

기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율	1481.20	1590.77	565.02	560.13	563.42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율	1905.816	2046.784	2226.188	2184.514	1943.796
일반 사업자 부가가치율	1140.527	1230.192	1327.802	1428.336	1518.414

나. 2016년, 2017년 전망치

□ 2016년, 2017년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 추정

○ 전체 급식경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급식 대상 학생 수와 급식의 질이라고 할 수 있음

○ 급식대상 학생 수와 급식의 질에 대한 추정을 통해 2016년, 2017년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 추정

□ 급식 대상 학생 수에 대한 추정

○ 급식 대상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전망치를 통해 도출될 수 있음

- 2016년 학생 수는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index)를 통해 수집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의 수를 통해 도출함
- 2017년 학생 수는 중간 이탈, 투입 인원이 없다고 가정하고 2016년 학생 수에서 국가통계포털의 성·연령별 추계인구[38]를 통해 확인한 자료를 참고로 2017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9세 인구 수(650,167명)를 빼고 2017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7세 인구 수(440,989명)를 합하여 추정함

<부표 A.6-16> 2016년, 2017년 학생 수 추정

(단위: 명)

구분		2016년 학생 수	2017년 학생 수
전체		5,908,292	5,699,114[1)]
초등학교		2,672,843	
중학교		1,457,490	
고등학교	소계	1,752,457	
	일반고	1,256,108	
	특수목적고	67,607	
	특성화고	290,632	
	자율고	138,110	
특수학교		25,502	

주: 1) 2016년 대상 학생 수(5,908,292)-2017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수(650,167)+2017년 3월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 수(440,989)=5,699,114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index)

- 전체 학생 중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의 비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2015년에는 99.9%에 이르고 있어 2016년과 2017년에도 최소한 2015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가정함

○ <부표 A.6-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6년, 2017년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 수는 5,900천명, 5,691천명으로 추정됨

38)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전국)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

<부표 A.6-17> 급식비율

(단위: 천명,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추정)	2017년 (추정)
학생수	7,017	6,742	6,517	6,334	6,151	5,908	5,699
급식학생 수[1)]	6,967	6,710	6,482	6,318	6,142	**5,900**	**5,691**
급식비율(%)	99.3	99.5	99.5	99.7	99.9	99.9	99.9

주: 1) 2015년 교육부 조세지출평가서에서 제시한 내용과 차이가 있으나 통계청 e-나라지표의 학교 급식실시현황(자료 원출처: 교육부) 자료의 정확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활용함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학교급식실시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43)
연도별 자료를 정리함

○ 1인당 연간 급식비 또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양 중심의 확대 정책'에서 '질 중심의 내실화 정책'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e-나라지표, 학교급식 실시현황)되므로 1인당 연간 급식비도 최소한 2015년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임

- 1인당 연간 급식비를 2015년 수준인 917,307.1원으로 가정하고 총급식경비를 추정하면 다음 <부표 A.6-18>과 같이 2016년은 약 5조 4,118억원, 2017년은 약 5조 2,202억원으로 추정됨

<부표 A.6-18> 연도별 1인당 급식비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급식 학생 수 (천명)	6,967	6,710	6,482	6,318	6,142	5,900	5,691
급식경비 (억원)	49,373.48	53,025.5	56,502.23	56,013.19	56,341.91	**54,117.88**	**52,201.88**
1인당 급식비 (원)	708,669.4	791,728.8	871,675.4	886,562.2	917,307.1	917,307.1	917,307.1

□ 추정한 2016년, 2017년 급식경비값을 바탕으로 2015년 실적 추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2016년과 2017년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면 다음 <부표 A.6-19>와 같음

<부표 A.6-19>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급식 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 추정

(단위: 억원)

기준 \ 연도		2015년 (실적 추정)	2016년 (추정)	2017년 (추정)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율[1)]	10%	563.42	541.18	522.02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율[2)]	34.5%	1943.80	1867.07	2035.87
일반 사업자 부가가치율[3)]	26.95%	1518.41	1458.48	1331.15

주: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음식점업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2) 2016년의 부가가치율에 대한 자료가 없어 가장 최근의 값인 2015년 부가가치율을 적용함
3) 2016년의 부가가치율에 대한 자료가 없어 가장 최근의 값인 2015년 부가가치율을 적용함

6. 문제점

□ 초·중·고등학교 외 대학,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자료 확보가 어려움

○ 초·중·고등학교 외 수혜자의 경우 구내식당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대상이 되므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취합된 자료가 없음

○ 국세청 자료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별 사업장의 구내식당 관련 매출액, 비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어려움

A.7. 농 · 어업 대행용역의 부가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1. 제도 개요 및 연혁

가. 도입목적

□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어업법인의 부담경감을 통해 경영수지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나. 정책대상자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2016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라 조특령§106③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어업회사법인도 정책대상자에 포함

다. 수혜내용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조특령§106③)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의미함

□ 조세지출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망)	2017년 (전망)
부가 가치세	-	-	-	-	-	-	-	-	7[39]

주: 추정곤란사유: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금액을 파악·관리하기 곤란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라. 제도연혁

시행연도	주요 변경사항
1999	-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의 면제 항목 신설(조특법§106) ·(제1항 제3호)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2003년 12월 31일
2004	- 일몰기한 연장: 2003년 12월 31일 → 2006년 12월 31일
2007	- 일몰기한 연장: 2006년 12월 31일 → 2009년 12월 31일
2010	- 일몰기한 연장: 2009년 12월 31일 → 2012년 12월 31일
2013	- 일몰기한 연장: 2012년 12월 31일 → 2015년 12월 31일
2016	- 일몰기한 연장: 2015년 12월 31일 → 2018년 12월 31일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접속일자 2016.11.15.

2. 국세청 자료 현황

□ 해당 항목 관련 부가세 업종코드의 범위가 너무 넓어 본 세제혜택 대상자만을 추출하기 어려움

□ 농·임·어업의 경우 하나의 업체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주된 업무는 해당 조세지출 항목에 연관된 세세분류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조세지출 항목과 연관된 세세분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 존재

39)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 담당자에 따르면 해당 조세지출 규모는 해수부 건의서에 적힌 예상 감면액 9억원에 3/4을 곱하여 반올림한 수치임. 하지만 해수부가 제출한 예상 감면액 9억원은 어업회사법인의 어작업대행용역에 대한 것만을 고려한 수치로서 해당 항목 전체의 조세지출 규모로서 적절치 않음.

<부표 A.7-1> 농·임·어업 부가가치세 업종코드의 종류

귀속	업종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15	01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농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2015	011001	농업, 임업 및 어업	농업	채소, 화훼, 종묘, 과실 및 기타 작물재배업	채소, 화훼, 종묘, 과실 및 기타 작물재배업
2015	012101	농업, 임업 및 어업	농업	소사육업	젖소사육업, 육우사육업
2015	012102	농업, 임업 및 어업	농업	기타축산업	말 및 양 사육업
2015	012103	농업, 임업 및 어업	농업	기타축산업	그 외 기타축산업
2015	012201	농업, 임업 및 어업	농업	양돈업	양돈업
2015	012202	농업, 임업 및 어업	농업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양계업
2015	012203	농업, 임업 및 어업	농업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2015	012204	농업, 임업 및 어업	농업	기타축산업	그 외 기타 축산업
2015	014300	농업, 임업 및 어업	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축산 관련 서비스업
2015	015000	농업, 임업 및 어업	농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2015	020100	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영림업	임업용 종묘 생산업, 육림업, 임산물 채취업
2015	020200	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벌목업	벌목업
2015	020300	농업, 임업 및 어업	임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2015	051101	농업, 임업 및 어업	어업	해면어업	원양어업, 연근해어업
2015	051102	농업, 임업 및 어업	어업	해면어업	원양어업, 연근해어업
2015	051103	농업, 임업 및 어업	어업	해면어업	원양어업, 연근해어업
2015	051104	농업, 임업 및 어업	어업	해면어업	원양어업, 연근해어업

<부표 A.7-1>의 계속

귀속	업종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15	051200	농업, 임업 및 어업	어업	내수면어업	내수면어업
2015	052101	농업, 임업 및 어업	어업	양식어업	해면양식어업
2015	052102	농업, 임업 및 어업	어업	양식어업	해면양식어업
2015	052103	농업, 임업 및 어업	어업	양식어업	내수면양식어업
2015	052104	농업, 임업 및 어업	어업	양식어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2015	052200	농업, 임업 및 어업	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자료: 국세청 제공 2015 귀속 기준경비율 자료를 편집하여 활용

3. 기타 경제사회통계 자료 현황

<부표 A.7-2> 농림부 제공 영농도우미 실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영농도우미 지원금	4,772	4,958	6,231	6,061	5,879
영농도우미 자부담금	2,045	2,125	2,670	2,598	2,520
합계	6,817	7,083	8,901	8,659	8,399

자료: 농림부 협조자료

○ 국가지원금과 농업인 자부담금의 비율은 7:3

○ 해당 데이터는 농업작업 대행용역 규모의 일부로서 해당 항목의 조세지출 규모를 최저치(minimum)로 추정할 때 이용 가능

- 영농도우미 사업은 해당 조세지출 항목의 수혜 부분인 농·어업작업 대행용역 중에서도 농업작업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

□ 통계청 제공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

○ 2001년도부터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 실시

- 2007년도 자료부터 온라인 공개
- 사업체 수, 출자자 수, 출자금, 정부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판매(수입)액, 매출액 및 영업이익 규모별 법인 수 등의 조사 항목이 존재

○ 어업회사법인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건의한 2016년도 해수부 건의서에서 예상감면액 산출을 위한 세수추계 시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의 매출액 자료를 이용

<부표 A.7-3> 어업회사법인의 매출액 세부현황('14년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매출액	어업생산 수입계	어업생산 외 수입계			
				가공	유통	기타
금액	1,504	225	1,279	476	586	217

- 해수부의 건의서에서 활용한 어작업 대행용역 규모 파악방법
  - 어작업 대행용역: 108백만원 = 217백만원 × 50%
  - 부가가치세: 9.8백만원 = (108백만원 / 1.1) × 10%
  - 최종감면액: 911백만원(9.8백만원 × 93개소 = 911백만원)
    * '16년 해수부 건의서에 따르면 어작업 대행용역의 규모 산출 시 매출액 중 기타의 50%를 어작업 대행용역 규모로 추정하였으나 근거가 부족하여 합리적 추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 하지만 대안의 부재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매출액 중 기타 항목의 50%를 어작업 대행용역 규모로 가정하여 조세지출 규모 도출

4. 추정모형 검토

□ 통계청 제공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계산

○ 2015년도 기준 농·임·어업 분야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부가가치 규모 계산

- 부가가치율에 의한 면세금액 계산방법
  - 면세금액 = 수입금액 × 부가가치율 × 0.1

<부표 A.7-4> 농·임·어업 분야 법인사업자의 연도별 부가가치율

(단위: %)

귀속연도	농·임·어업 분야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율
2010	9.57
2011	11.08
2012	13.63
2013	11.08
2014	3.73
2015	8.32

<부표 A.7-5> 영농조합법인의 매출액 현황 자료

(단위: 개, 백만원)

해당 연도	법인 수	농업생산이외 사업수입					
		합계	가공판매	유통판매	농업 서비스	위탁영농	기타
2010	6,849	6,472,794	1,926,845	2,854,207	201,195	48,115	1,490,547
2011	7,640	6,727,879	2,301,138	3,442,813	177,383	52,527	806,545
2012	8,872	7,610,781	2,451,991	3,876,856	191,330	67,243	1,090,604
2013	9,651	8,115,776	2,909,459	4,138,422	148,152	91,499	919,743
2014	10,262	8,362,603	2,862,023	4,220,054	187,510	92,962	1,093,016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

○ 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한 농업작업 대행용역 및 면제된 부가가치세 파악

- 위탁영농 수입에 농·임·어업 분야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 규모 추정
  - 대행용역 부가가치 규모: 약 3,467백만원 = 92,962백만원× 0.0373
- '14 기준 면제금액: 약 347백만원 = 3,467백만원 × 10%

<부표 A.7-6> 농업회사법인의 매출액 현황 자료

(단위: 개, 백만원)

해당 연도	법인 수	농업생산이외 사업수입					
		합계	가공판매	유통판매	농업 서비스	위탁영농	기타
2010	1,512	3,104,444	1,019,261	1,755,573	61,988	16,612	267,622
2011	2,052	3,893,122	1,173,405	2,291,023	44,448	10,904	384,246
2012	2,875	5,425,282	1,764,992	3,001,385	73,055	56,109	585,850
2013	3,682	7,008,563	2,403,514	3,750,376	109,734	78,495	744,939
2014	4,781	9,432,780	3,379,560	4,872,392	56,406	43,983	1,124,422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

○ 농업회사법인이 제공한 농업작업 대행용역 및 면제된 부가가치세 파악

- 위탁영농 수입에 농·임·어업 분야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 규모 추정
  - 대행용역 부가가치 규모: 약 1,641백만원 = 43,983백만원× 0.0373
- '14년 기준 면제금액: 약 164백만원 = 1,641백만원 × 10%

<부표 A.7-7> 영어조합법인의 매출액 현황 자료

(단위: 개, 백만원)

해당 연도	법인 수	어업생산이외 사업수입				
		합계	가공판매	유통판매	어업서비스	기타
2010	687	539,143	210,507	311,209	2,004	15,423
2011	728	719,989	283,148	424,023	2,627	10,191
2012	832	894,419	365,990	498,588	632	29,209
2013	867	966,718	340,122	593,407	1,548	31,641
2014	945	1,126,269	394,218	697,066	2,081	32,904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

○ 영어조합법인이 제공한 어업작업 대행용역 및 면제된 부가가치세 파악

- 어업작업 대행용역 규모를 기타 금액의 50%로 추정하여 '14년 기준 16,452백만원
  - 통계청 산업통계과 담당자에게 '어업서비스' 항목에 대행용역 규모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기타' 항목의 수치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2015년 자료부터 농림부와 해수부에서 관련 데이터를 작성 예정이므로 해당 부처와 논의하여 보다 구체적인 대행용역 규모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 '14년 기준 16,452백만원에 농·임·어업 분야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 규모 추정
  - 대행용역 부가가치 규모: 약 614백만원 = 16,452백만원× 0.0373
- '14년 기준 면제금액: 약 61백만원 = 614백만원 × 10%

<부표 A.7-8> 어업회사법인의 매출액 현황 자료

(단위: 개, 백만원)

해당 연도	법인 수	어업생산이외 사업수입				
		합계	가공판매	유통판매	어업서비스	기타
2010	11	927	113	243	0	571
2011	23	13,536	9,009	4,527	0	0
2012	36	31,828	10,806	13,354	0	7,668
2013	64	74,983	19,074	31,955	0	23,954
2014	93	119,027	44,325	54,519	0	20,183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

○ 어업회사법인이 제공한 어업작업 대행용역 및 면제된 부가가치세 파악

- 어업작업 대행용역 규모를 기타 금액의 50%로 추정하여 '14년 기준 약 10,092백만원
  - 통계청 산업통계과 담당자에게 '어업서비스' 항목에 대행용역 규모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기타' 항목의 수치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2015년 자료부터 농림부와 해수부에서 관련 데이터 작성 예정이므로 해당 부처와 논의하여 보다 구체적인 대행용역 규모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 '14년 기준 약 10,092백만원에 농·임·어업 분야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 규모 추정
  - 대행용역 부가가치 규모: 약 376백만원 = 10,092백만원× 0.0373
- '14년 기준 면제금액: 약 38백만원 = 376백만원 × 10%

5. 추정결과

□ 법인 종류별 부가가치세 면제규모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영농조합, 농업회사, 영어조합, 어업회사법인 각각의 부가세 면제규모를 추정하여 아래의 표에 정리

○ 2016년도 세법개정안 내용에 따라 해당 제도의 수혜자 범위에 어업회사법인이 추가됨

<2016년도 세법개정안 내용 일부>

(6) 어작업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추가(조특령 §106③)

현 행	개 정 안
□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대상자	□ 적용대상 추가
○ 영어조합법인	○ (좌 동)
<추 가>	○ **어업회사법인**

<개정이유>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6년 이후의 실적치 및 추정치를 산출함에 있어 어업회사법인 자료를 추가하여 활용해야 함

○ 부가가치 규모 도출을 위해 이용한 위탁영농 규모 및 기타 항목의 50% 규모의 '15년 이후 추정치의 경우 '10년부터 '14년 자료의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하여 적용함

- <부표 A.7-12> 어업회사법인의 부가가치세 면제규모 추정의 경우 '11년의 데이터가 부재하여 '12년부터 '14년 자료의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하여 적용함

○ 아래 부표의 증감률은 면제 금액의 증감률을 의미하며 연도별 부가가치율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

- 특히 '14년 면제금액의 경우 '13년과 비교하여 1/3 정도의 큰 폭으로 하락하는데 이는 부가가치율이 11.08('13년 기준)에서 3.73('14년 기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줌

○ '15년 이후의 면제금액은 '15년 기준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부가가치 규모를 활용하여 산출됨

<부표 A.7-9> 영농조합법인의 부가가치세 면제규모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

해당연도	위탁영농	부가가치 규모 (부가가치율 적용)	면제금액	증감률
2010	48,115	4,605	460	-
2011	52,527	5,820	582	26.40

<부표 A.7-9>의 계속

해당연도	위탁영농	부가가치 규모 (부가가치율 적용)	면제금액	증감률
2012	67,243	9,165	917	57.48
2013	91,499	10,138	1,014	10.61
2014	92,962	3,467	347	-65.80
위탁영농 규모 추정				
2015	109,602	9,119	912	162.98
2016	129,221	10,751	1,075	17.90
2017	152,352	12,676	1,268	17.90

주: 1. 위탁영농 규모 추정의 경우 연평균 17.90% 증가율 적용
2. '15 기준 부가가치율 적용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계산

<부표 A.7-10> 농업회사법인의 부가가치세 면제규모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

해당연도	위탁영농	부가가치 규모 (부가가치율 적용)	면제금액	증감률
2010	16,612	1,590	159	-
2011	10,904	1,208	121	-24.00
2012	56,109	7,648	765	533.00
2013	78,495	8,697	870	13.72
2014	43,983	1,641	164	-81.14
위탁영농 규모 추정				
2015	56,105	4,668	467	184.63
2016	71,567	5,954	595	27.56
2017	91,291	7,595	760	27.56

주: 1. 위탁영농 규모 추정의 경우 연평균 27.56% 증가율 적용
2. '15 기준 부가가치율 적용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계산

<부표 A.7-11> 영어조합법인의 부가가치세 면제규모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

해당연도	기타 금액의 50%	부가가치 규모 (부가가치율 적용)	면제금액	증감률
2010	7,712	738	74	-
2011	5,096	565	56	-23.49
2012	14,605	1,991	199	252.56
2013	15,821	1,753	175	-11.94
2014	16,452	614	61	-64.99
기타 금액의 50% 규모 추정				
2015	19,882	1,654	165	169.56
2016	24,028	1,999	200	20.85
2017	29,037	2,416	242	20.85

주: 1. 기타 금액의 50% 규모 추정의 경우 연평균 20.85% 증가율 적용
2. '15 기준 부가가치율 적용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계산

<부표 A.7-12> 어업회사법인의 부가가치세 면제규모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

해당연도	기타 금액의 50%	부가가치 규모 (부가가치율 적용)	면제금액	증감률
2010	286	27	3	-
2011	-	-	-	-
2012	3,834	523	52	-
2013	11,977	1,327	133	153.95
2014	10,092	376	38	-71.63
기타 금액의 50% 규모 추정				
2015	16,372	1,362	136	261.86
2016	26,562	2,210	221	62.24
2017	43,093	3,586	359	62.24

주: 1. 2011년도 자료의 경우 데이터 부재로 이용 불가
2. 기타 금액의 50% 규모 추정의 경우 연평균 62.24% 증가율 적용
3. '15 기준 부가가치율 적용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계산

○ <부표 A.7-13>에 영농조합, 농업회사, 영어조합, 어업회사법인 각각의 '15~'17년 조세지출 규모 추정치 및 합계액을 명시

-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의 2015년도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2015년도 자료부터 농림부와 해수부에서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이후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시 해당 부처와 협업하여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 항목에 대행용역 규모를 추가하여 보다 정확한 조세지출 규모 산출 가능

<부표 A.7-13> 대행용역 관련 법인별 조세지출 규모 추정결과

(단위: 백만원)

해당연도	영농조합	농업회사	영어조합	어업회사	합계
2015	912	467	165	136	1,680
2016	1,075	595	200	221	2,091
2017	1,268	760	242	359	2,629

<부표 A.7-14> 대행용역 관련 조세지출 규모 추정결과

(단위: 억원)

	2015년 (실적)	2016년 (전망)	2017년 (전망)
조세지출 규모	16.80	20.91	26.29

6. 문제점

□ 해수부가 활용한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의 어업생산이외 사업수입 중 기타 항목의 50%를 대행용역 규모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임

○ 해수부 건의서에서 예상감면액 산출을 담당한 수협 직원은 대행용역의 규모를 기타 항목의 50%로 추정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음

- 통계청 담당자의 의견에 따르면 어업관련 법인의 경우 대행용역 규모가 매우 작아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에 해당 실적치가 집계되지 않을 수 있음

○ '15년부터 농림부 및 해수부에서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각 부처와 협업하여 해당 조사에 농어업 대행용역 규모를 명시하는 방안 제시

참고문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 각 연도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A.8.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1. 제도개요 및 연혁

□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주택법」 제2조(정의) 등 참조

가. 조세지출의 목적

□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주 수요층인 무주택 서민들이 원활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함과 국민주택 건설 및 취득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또한 국민생활 필수재화인 주택구입 시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킴

○ 원활한 주택공급과 건설산업의 활성화의 촉진을 통해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함

○ 최근 국민주택에 대한 리모델링과 관련된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허용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요인의 제거 및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억제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동 조세지출항목의 수혜자는 국민주택 취득자 및 국민주택의 건설업자 등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조세지출의 수혜자임[40]

40) 기획재정부,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나. 국민주택의 범위

□ 주택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06조 제4항)
  ○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 국민주택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 또는 100㎡ 이하인 다가구주택[41]을 포함함

□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은 가구(세대)당 면적을 기준으로, 단독주택 및 다중주택은 1동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함

다. 면세대상

□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세대상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이 그 대상
  ○ 공급의 주체와 완공정도 여부는 불문(조통칙 106-0-2)함
  ○ 부대시설·복리시설비를 분양가액에 포함시는 부수재화로 간주(조통칙 106-0-1)
  ○ 공급받는 자가 누구이든, 공급받는 자의 사용용도 불문(임대용, 사택용 등)
  ○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도급·하도급·재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등을 포함함(조특통칙 106-106-2) (부가 46015-3736, 2000.11.09.)

□ 호화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상시 주거용 주택(국민주택)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의 여러 산업을 포함하여 상당히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1) 국민주택의 공급(건설)

□ 일정규모 이하(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어느 누구인지

41)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것(「주택법」 제2조 제3호)
  -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주택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 「주택법」 제2조 제3호 참조

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따라서 이미 시공된 국민주택을 공급하거나,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공급하거나 공동주택이거나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기본통칙 106-0…2)

□ 주택의 유형이 단독이든 아파트·연립 등이든 공급주체가 국가(지차체 포함)든 민간이든 구분하지 않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2) 국민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

□ 국민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면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국민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기건축된 건물을 철거하여 그 철거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 1265.1-2068, 1981. 8. 3〉

② 국민주택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멘트포대, 고철, 화목 등을 판매하는 경우

③ 국민주택인 공동주택의 온수 및 난방에 사용하는 집중난방용 보일러를 건설되는 공동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 1265.2-2961, 1982. 11. 24〉

④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하는 경우

□ 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동일한 건축물에 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동시에 건축하여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간세 1265.1-2394, 1979. 7. 20〉

②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시 도시가스사업자가 국민주택에 취사용 가스시설을 설치하고, 가스시설분담금을 국민주택분양금에 포함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부가 1265.1-2311, 1981. 8. 29〉

③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의 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거나,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우[42]

42) 일반적으로 주택의 일부 또는 부수시설로 볼 수 있는 욕조, 조명, 벽지, 인터폰, 장식장, 신발장

(3)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는 아래 '라'에서 자세히 살펴봄

(4)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43]의 공급에 대한 면세

□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는 아래 '마'에서 자세히 살펴봄

라.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44]

□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대상자와 범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의 공급보다 더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1) 면세대상자

□ 국민주택의 공급과 달리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 즉,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 ○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설계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시행령 제106조 제4항)[45]
  - 그러나 감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등의 경우, 그 대가를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의 공급과 별도로 공급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국심 86서 427, 1986. 5. 29〉

43)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을 시행하는 행위

44) 삼일아이닷컴, 「조세특례제한법 해설」(http://www.samili.com/)

45) 2009년 2월 4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에 추가

(2)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

□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든, 공급받는 자가 그 주택을 분양하거나 또는 임대하거나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택으로 보유하는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부가 1265.1-1661, 1983. 8. 18 ; 부가 1265.1-1713, 1983. 8. 24〉.

□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자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기본통칙 106-106…2).

○ 따라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면세 포기 후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부가 1265.1-748, 1981. 3. 31 ; 부가 22601-807, 1985. 5. 1〉.

□ 한편, 건설용역에는 당해 건설업자가 직접 모든 자재를 부담하여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발주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및 노무 등 인적용역만을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 이 경우 건설용역으로 보는 금액은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부담한 재료비 및 노무비 등을 포함한 도급금액 전액임〈부가 1235-4036, 1978. 11. 13 ; 부가 1265-905, 1982. 7. 15 ; 부가 1265.2-313, 1984. 2. 15〉.

□ 국민주택의 공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의 경우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에 대한 취급규정이 적용됨

○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뿐만 아니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등의 건설용역을 포함

○ 예를 들어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공급되는 지하수개발용역, 택지조성용역,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도로포장·상하수도·조경·어린이놀이터·운동시설·울타리·조명시설 등을 설치하는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대한 하자보수용역의 경우에도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부가 1265.1-1765, 1983. 4. 23 ; 부가 1265.1-1366, 1983. 7. 9〉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 첫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다음의 경우

① 사업자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자기 소유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부지로 조성한 후 국민주택의 건설 없이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택지조성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 22601-204, 1985. 1. 29〉

② 사업자가 국민주택단지의 예정진입도로인 자기소유의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포장공사를 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 22601-204, 1985. 1. 29〉

③ 국민주택단지 밖에 소재하는 도로면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 22601-1298, 1985. 7. 10〉

④ 국민주택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에 별도로 공급하는 샷시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 22601-1623, 1986. 8. 11〉

⑤ 하자보수용역을 제외한 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46]

○ 둘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어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①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 당해 조립용역에 대하여는 철구조물 판매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 1265.1-1234, 1984. 6. 20〉

②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당해 설치용역에 대하여는 엘리베이터 판매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 〈부가 46015-1004, 2000. 5. 2.〉

③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에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 당해 조립·설치용역에 대하여는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 판매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 22601-2222, 1987. 10. 24〉

□ 국민주택과 기타의 건물이 혼합된 단지 내에서 부대시설 건설용역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지 기타건물에 부수되는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에 따라 안분계산

46) 하자보수용역의 경우 당초 시공자가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그러나 당초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당초 시공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 1265-2628, 1982. 10. 7 ; 서삼 46015-11626, 2003. 10. 16〉.

○ 공급받는 자의 총예정건평수에 대한 국민주택 예정건평수와 기타건물 예정건평수의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부가 1265.1-2311, 1981. 8. 29〉

□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상수도관 및 소화관의 철거용역이나 기존 건물·구축물의 철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 다만, 기존 건물 등의 철거용역과 함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 그 기존 건물 등의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재소비 46015-42, 2001. 2. 22. ; 부가 46015-599, 1999. 3. 5.〉

마.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47]

(1) 면세대상자

□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상기 「건축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리모델링 설계용역 및 리모델링 용역(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 국민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용역 및 설계용역의 면세대상자 요건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동일함

(2)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리모델링 용역 및 설계용역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규모가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리모델링 용역 및 설계용역에 한함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시공 전·후의 주택규모가 모두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이어야 함

47) 삼일아이닷컴, 「조세특례제한법 해설」(http://www.samili.com/)

○ 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리모델링한 후의 주택규모가 리모델링 시공 전 주택규모의 130%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48]

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요약

<부표 A.8-1> 국민주택 공급 등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사례

면 세 사 례	과 세 사 례
· 국민주택 규모 분양권 양도 ·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용역 ※다만, 일괄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도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과세 · 주택신축용 토지에 부착된 철거물 판매 · 부대설비·복리시설비를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 국민주택 택지조성 건설용역 ·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도시가스 배관공사용역 ·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조경공사 용역 · 국민주택 설계용역(2003.7.1.이후 공급분부터) · 국민주택 리모델링 건설 및 설계용역 (2004.1.1이후 공급분부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이주관리업무 및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 선수촌으로 활용예정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도로 선수촌 사용에 따른 본마감 손망실 방지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마감공사를 제공받는 때에는 과세 ·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감리용역 · 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건축하여 상가 분양 · 별도로 공급되는 인터폰·장식장·신발장 등 · 기부채납한 진입도로의 도로포장공사 용역 · 주택단지 밖 도로면에 가로등 설치용역 · 준공검사 완료 후 별도 공급하는 샷시공사용역 · 당초 시공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하자보수용역 ·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분양권 양도 ·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경우 ·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 · 전기공사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방용역은 과세

48)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 아파트로 증축 리모델링하여 리모델링 시공 전의 복도와 발코니 등이 거실화되어 주택규모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그 증가된 전용면적이 리모델링 시공 전 전용면적의 30% 이하인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됨(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전 20%, 개정 이후 30%)

<부표 A.8-1>의 계속

면 세 사 례	과 세 사 례
	・별장, 콘도, 종업원들의 근로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과세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부가가치세종합 안내(http://www.nts.go.kr/call/vat/2015_03/htm/13e420.htm)

사. 주요 연혁

□ 부가가치세제의 도입과 함께 1978년 최초 도입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조세지출항목임

○ 동 조세지출은 일몰기한이 없는 항목임

<부표 A.8-2> 주요 연혁

연도	주요 변경사항
1978년	- 조세감면조항 최초 도입(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8.1.1.] [법률 제3017호, 1977.12.19., 일부개정] 제11조의2 (부가가치세의 면제) 제2항 제1호) ・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 ・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년	-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전면개정
2003년	- 국민주택 설계용역 포함
2004년	- 면세대상에 국민주택 리모델링 건설 및 설계용역 포함 - 국민주택범위 변경: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도시지역 제외)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 이하 적용
2006년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증축 리모델링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시공 전 주택면적규모의 120%에서 130% 이내로 상향 조정

<부표 A.8-3> 최초 도입 당시의 법규정 내역과 도입 당시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8.1.1.] [법률 제3017호, 1977.12.19., 일부개정]

제11조의2 (부가가치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군수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물자
2. 「국군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부표 A.8-3>의 계속

② 다음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2. 연근해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3.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4. 「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상공부장관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본조신설 1977.12.19.]

【도입당시 제정·개정이유】
자주국방 태세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수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배제하고 대도시 산업시설의 지방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등을 신설하며, 중소기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통합에 대한 특례를 설정하는 한편,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 및 민간기업의 외자조달을 위한 조세지원과 기타 당면한 정부 주요시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면에서 지원하려는 것임

2. 국세청 자료 현황[49]

□ 동 조세지출은 1978년 부가가치세제의 도입 당시부터 면세항목으로 분류되어 조세지출 적용기간이 상당함
- ○ 따라서 당연 면세항목으로 여겨져 규모의 추정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왔으며, 이에 따라 조세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추정한 사례가 없음

□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상에도 추정곤란 사유를 "면세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금액을 파악·관리하기가 곤란"이라고 적시하고 있음

□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주택 공급과 건설용역의 범위가 넓어, 면제대상 용역의 업체 수가 하도급업체까지 포함하여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 ○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국민주택 공급과 관련된 용역의 범위가 설계용역, 리모델링 용역까지 포함하는 등 점점 더 복잡하고 다기화되었음

49) 동 추론은 법적근거, 통계자료, 사례 등을 통하여 저자가 예측한 내용에 불과하며 확정된 연구결과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견해 등을 적시한 것은 아님

□ 조세지출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예산의 범주에 조세지출을 포함하여 매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절차가 최근에서야 이루어져 그동안 동 항목에 대한 규모 추정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사실임

○ 이러한 상황은 국민주택 및 동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를 전반적으로 추계하려는 연구 결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규모추정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말해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면세항목에 속하는 조세지출로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에 기재된 해당 면제사항에 기입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통계자료로서 집계할 필요도 없었을 것임

○ 그러나 2010년도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에 직전 및 당해연도, 다음연도까지 3개년도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을 작성하여 포함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토록 함[50]으로써 각 항목별 조세지출 규모의 실적 및 추정치에 대한 집계가 필요해짐

○ 아래 <부표 A.8-4>로 보아 동 조세지출 항목은 부가가치세 면세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나 과거부터 실적치 또는 추정치가 전혀 포착되거나 추계되지 않은 항목임

<부표 A.8-4> 통계자료: 최근 10년간(05~14년) 주택건설실적(인허가실적 기준)

(단위: 호)

연도	주택건설 실적		
	소계	85㎡이하	85㎡초과
2005	463,641	336,353(73.0%)	127,288(27.0%)
2006	469,503	299,016(63.7%)	170,487(36.3%)
2007	555,792	347,387(62.5%)	208,405(37.5%)
2008	371,285	257,640(69.4%)	113,645(30.6%)
2009	381,787	252,996(66.3%)	128,791(33.7%)
2010	386,542	283,753(73.4%)	102,789(26.6%)
2011	549,594	445,920(81.1%)	103674(18.9%)
2012	586,884	484,241(82.5%)	102,643(17.5%)
2013	440,116	359,144(81.6%)	80,972(18.4%)
2014	515,251	429,760(83.4%)	85,491(16.6%)
2015	765,328	622.352(81.3%)	142,976(18.7%)
계	5,485,723	4,118,562(75.1%)	1,367,161(24.9%)

자료 : 온나라부동산정보3.0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

50) 기획재정부,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5.

□ 위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요약표 중 면세에 해당하는 업종을 분류하기 위해,

○ 국세청의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표상에서 면세업종이 포함되었다고 보여지는 업종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음

<부표 A.8-5>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부가가치세 업종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번호	적용범위 및 기준
주거용 건 물 건설업	· 주거용 건물 건설업	451101	○도급 및 자영건설업자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건물 건설공사를 일괄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451102, 451103
		451102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부동산매매업)
		451103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부동산매매업)
기반조성 관련 전문 공사업	· 토공사업 · 보링, 그라우팅 및 굴정공사업 · 조적 및 석축 공사업 · 미장, 타일 및 방수공사업	452101	○토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절토·성토·비탈보호·흙막이·물막이 등의 공사를 말하며 토공사에 따른 흙운반·파기·암석제거·파일박기·호파기·배수로파기 및 유사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포함 ○굴정공사: 전문직 별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음료수용 우물굴착공사 등(관정굴착공사 포함) ○석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조물의 외부공사와 관련하여 석조건축공사, 석재부착 및 석축공사, 석재공작물 건립 및 수리공사, 보도블록깔기 및 끝손질공사, 벽돌굴뚝공사 ○미장·방수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건축물 내부공사와 관련하여 회바르기, 타일부착, 대리석부착, 테라조공사, 모자이크공사, 일반미장공사, 다듬기공사, 미장뿜칠공사, 줄눈공사, 미장몰탈공사, 방수공사, 방습공사, 에폭시공사, 도막공사, 내화공사 등(소방공사 포함) ○조적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축조공사등

<부표 A.8-5>의 계속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번호	적용범위 및 기준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 유리 및 창호 공사업 · 비계 및 형틀 공사업건물 및 구축물해체공사업 ·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건물용 금속공작물설치공사업	452102	○ 유리공사 •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유리공사, 유리끼우기 및 유리세공·설치활동 ○ 창호공사 •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강제창호공사, 경금속창호공사, 목재창호공사 등 ○ 비계공사 •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구조물해체공사, 말뚝공사, 샌드파일공사, 빔운반거상공사, 굴뚝공사 등 ○ 건축물해체공사 •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파괴 또는 해체하는 공사 * 선박의 해체(→351104) ○ 철근·콘크리트공사 •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등 ○ 철물공사 • 철물 또는 기타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수문설치공사, 탱크공사, 셔터설치공사, 기타난간·계단·천정·굴뚝·가드레일·기드케이블·표지판·울타리·방음벽·버스승강대·옥외광고탑 등을 금속류로 설치하는 공사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 · 건물용기계장비설치공사업 · 일반전기공사업 · 일반통신공사업	452104	○ 배관·난방공사 • 일반적으로 전문직별 도급업자가 수행하는 가스배관공사, 옥내 급·배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냉난방설비공사, 공기조절장치의 설치 및 보수공사 • 냉방공사, 환기 및 보일러연소기, 살수시설 및 물펌프의 설치 포함 • 건물과 결합된 하수시설 및 부패조절시설, 변소공사 등은 포함하나 토목공사와 연관된 하수관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는 제외 • 배관공사와 결합되는 금속판공사는 포함하나 지붕잇기공사에 연관된 금속판 및 함석공사는 제외 ○ 기계설비공사 • 건축물·플랜트·기타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부표 A.8-5>의 계속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번호	적용범위 및 기준
			•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설비·열절연공사, 방음·방진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플랜트안의 배관 및 기기설치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기계설비자동제어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전기공사 • 전기난방공사를 포함하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전기배선, 조명시설 등을 용지 위에 설치하고 수선하는 업(토목공사의 성격을 갖는 발전설비의 건립 및 조립, 송배전선 및 구조물의 건설은 제외) ○ 통신공사 •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통신배선·통신장비 및 전화 등을 용지에 설치하고 수선하는 업(토목공사의 성격을 갖는 통신설비 및 구조물의 건립 및 조립활동설비는 제외) ○ 승강기설치공사,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 도장공사업	452105	○ 일반적으로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건물 및 구조물의 도장, 건물, 내부의 도배,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 경기장 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목공사업	452106	○ 인테리어공사 등
		452107	○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일반 목공공사 및 마루깔기공사, 건식칸막이공사, 내장공사(차고문·나무대문의 설치, 목재마루감을 설치하고 깎아내고 손질하거나 아스팔트 및 비닐타일 리놀륨 등의 경용면 마루깔개를 설치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블록 및 판석깔기는 제외)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 공사업	·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 · 기타시설물 축조관련전문공사업	452111	○ 상하수도설비공사 • 취수기기설치공사, 정수기기설치공사, 송배수기설치공사, 하수처리기기설비공사, 상하수도 등 용수관부설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 제외),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등 ○ 시설물유지관리공사 •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 기타전문공사 • 가스시설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온실설치공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공사

<부표 A.8-5>의 계속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번호	적용범위 및 기준
토목 시설물 건설업	· 조경건설업 · 기타시설물축조관련전문공사업 · 교량, 터널 및 철도건설업 · 수중공사업	452109	○ 조경식재공사 • 조경수목식재공사, 잔디 등 지피식물 입히기공사 등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 자연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및 파고라 설치공사 등 ○ 강구조물공사 •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인도전용 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 철강재 및 삭도설치공사 • 철강재로 교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 등의 시설물을 신축·개축·이축·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철골의 제작·조립 및 설치 또는 제거하는 공사와 삭도의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수중공사 •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잠수 및 수중공사 • 수중구조물기초공사, 수중암석폐쇄공사, 수중콘크리트공사, 수중관부설공사 등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 그외 기타 건축마무리공사업	452200	○ 전문건설업체로부터 재도급받아 공사하는 업 ○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건설업자로부터 경미한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는 경우 포함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742103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형태의 건물축조 및 개조에 관련된 설계, 작업도 작성, 건축감독 등과 같은 관련 기술서비스 ○ 건축공학(건축구조·계획·재료·시공에 관한 학문) 관련 서비스, 건축계약관리서비스, 건축설계관련관리서비스, 건축설계도와 관련 도안작성서비스 *건축사(→742105)
		742105	○ 건축사(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업)
부동산 관리업	· 주거용 부동산관리업 · 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	702003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주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업 ○ 아파트관리, 건물관리

<부표 A.8-5>의 계속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번호	적용범위 및 기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703011	○주거용 건물매매업(토지보유 5년 미만) *구입한 주거용건물을 재판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주택신축판매(건설업)) ○비주거용 건물매매업(토지보유 5년 미만)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 ○각종 용도의 토지매매업(토지보유 5년 미만)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개발하여 분양·재판매·구입한 토지를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건물만 취득하여 판매하는경우
		703012	○주거용 건물매매업(토지보유 5년 이상) *구입한 주거용건물을 재판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주택신축판매(건설업)) ○비주거용 건물매매업(토지보유 5년 이상)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 ○각종 용도의 토지매매업(토지보유 5년 이상)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개발하여 분양·재판매·구입한 토지를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 이와 같이 추려진 업종은 모두 면세되는 업종이 아니라 면세와 과세가 혼재되어 있음

○ 따라서 어느 한 코드에 해당하는 면세수입금액을 확보하여도 동 조세지출에 해당하는 면세금액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움

○ 또한 신고서 서식에 면세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입하는 난이 있다 하더라도 면세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기입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국세청조차도 국민주택 건설 등과 관련된 면세항목에 대한 자료의 수집을 할 수 없음

3. 기타 경제사회 통계자료 현황

□ 조세지출 규모의 추정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통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등을 이용함

○ 2000년, 2005년, 그리고 201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면세소비지출비율, 면세소비 및 투자의 중간투입률, 면세소비생산 및 면세투자생산을 위해 투입된 면세 중간투입비율, 그리고 한국은행의 GDP와 자본재 형태별 총자본형성 자료를 이용하여 면세소비생산 및 면세투자생산에 투입된 설비투자비율 등의 파라미터를 구함

□ 소형주택과 대형주택의 건설비율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설비투자 관련 통계치는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통계를 이용함

4. 추정모형 검토

□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업종별 수입면세 금액으로는 추계가 어려워 보이므로 다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하나의 방안으로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계정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반이 되는 부가가치의 총계는 국내총생산과 같고, 부가가치세 세율은 소득세 등 다른 세목과 달리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소득통계를 이용하여 탈루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

○ 그러나 단순하게 국가경제 내에서 창출된 모든 부가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 일부 산업 또는 품목에 대해서는 영세율과 면세가 함께 존재하고, 우리나라는 전단계세액 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산업별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수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어려움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계정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 이후 지난 15여 년 동안의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탈루규모를 추정하고자 함[51)]

51) 『조세지출예산서』에 지출규모는 직전연도 실적치와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추정치를 기재토록 하고 있어 최근 수개년도의 규모만을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본 조세지출항목의 중요성, 대규모성, 이전 연구의 희소성, 조세지출 항목에 포함된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0년도부터 추정하여 그 추이를 살펴보고자 함

○ 5년마다 공표되는 산업연관표 실측치를 통해 추정된 파라미터를 이용, 인접 연도의 부가가치세 탈루규모를 추정하여 지난 15여 년 동안의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이를 살펴보고자 함

□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계정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추계한 VAT 총세수와 주거용건물투자 중 면세인 소형주택(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투자를 면세에서 과세대상투자로 가정하여 총 VAT 세수를 구한 다음 양자 간의 차이를 국민주택 건설 및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세규모로 판단함

○ 본 추계방법론은 노기성・김동준, 「지하경제규모의 추정과 정책과제」, 『경제사회여건변화와 재정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비봉출판사, 2001의 것을 따름

가. 기존 연구

□ 부가가치세 탈세 및 탈루규모를 추정한 기존 연구로는 유일호(1995, 1998), 노기성・김동준(2001), 안종석 외(2010) 등이 있음

□ 유일호(1995)에서는 소득-지출 접근방식의 추계방법을 이용하여 지하경제규모인 소득의 과소보고 규모와 함께 부가가치세 탈세규모를 추정함

○ 산업연관표에서의 민간소비지출 내지 국민소득이 과세를 위한 자료와 거의 일치한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소득세 탈세규모 추정에서 산출된 소득의 과소보고 규모 추정치와 민간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을 이용하여 누락된 민간소비지출 규모를 추정하여 1987년과 1988년의 부가가치세 탈세규모를 추정

○ 즉, 소득세 탈세규모를 먼저 추정한 후 여기서 추정된 소득의 과소보고 규모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탈루규모를 추정함

○ 그러나 유일호(1995)에서는 부가가치세 탈세가 민간소비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과 면세되는 부분 사이에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는 추정하지 않은 한계점도 있음

○ 유일호(1998)에서는 유일호(1995)와 동일하게 소득-지출 추계방법을 이용하여 1993년과 1994년의 부가가치세 탈세규모를 추정하고 유일호(1995)에서 추정한 1987년과 1988년에 비해 1993년 1994년의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줌

□ 노기성・김동준(2001)은 한국은행에서 5년마다 발표하는 산업연관표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탈세규모를 추정

○ 노기성・김동준(2001)은 산업연관표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구분하고,

- 주거용 건물투자와 설비투자, 그리고 중간재 투입 등을 고려하여 이론적인 부가가치세 세수규모를 추정

○ 이와 같이 추계된 이론적 부가가치세 세수규모를 실제 부가가치세 징수규모와 비교하여 부가가치세 탈세규모를 추정

○ 노기성・김동준(2001)은 1980년, 1985년, 1990년, 그리고 1995년의 산업연관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 그 결과 부가가치세 탈세비율은 1980년 14.9%, 1985년 19.2%, 1990년 13.9% 그리고 1995년 14.3% 수준이라고 제시

□ 안종석 외(2010)에서는 기본적으로 노기성・김동준(2001) 모형을 바탕으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과 2005년의 부가가치세 탈루규모를 추정

○ 안종석 외(2010)에서는 당해 연도 GDP와 산업연관표를 사용하면서 부가가치세 징수액이 아닌 가산세 등이 제외된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세액을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탈루규모를 추정함

○ 그 결과 부가가치세 탈루비율은 2000년 15.5%, 그리고 2005년 5.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안종석 외(2010)의 연구방법은 노기성・김동준(2001)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함

○ 노기성・김동준(2001)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관행에 맞추어 GDP를 전년도 4/4분기에서 당해 연도 3/4분기까지의 합으로 하였음

-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는 1년을 전후반기로 나누어 부과되고 7월과 다음해 1월에 납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임

- 이런 방법은 발생주의에 근거한 GDP와 현금주의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징수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지만, 산업연관표와 연계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불합리함

- 왜냐하면 산업연관표는 GDP와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을 기준으

로 작성되기 때문

- 또한 부가가치세 징수액에는 사업부진에 의한 체납, 기업퇴출 또는 폐업으로 인한 결손액, 그리고 추가적인 가산세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적은 액수이지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안종석 외(2010)에서는 당해 연도 GDP와 산업연관표를 사용함

나. 기본분석모형

□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론적인 부가가치세수를 추정한 후, 면세대상인 소형주택(국민주택)건설 분야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수를 추정하여 전자와의 비교를 통해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 부가가치의 총계가 국내총생산과 동일하고 부가가치세제는 전단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전반의 흐름을 포괄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총생산 규모를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부가가치세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함

○ 국내에서 창출된 모든 부가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영세율과 면세제도가 있음

- 부가가치 면세가 적용될 경우 전단계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가가치세수 규모를 쉽게 추정할 수 없음
-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제의 특징을 감안하여 이론적인 부가가치세수 규모를 추정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노기성・김동준(2001)에서 사용한 이론적인 부가가치세 세수 추정모형을 사용하되 GDP의 적용기간은 산업연관표와 일치시켜 당해 연도의 자료를 이용함

□ 노기성・김동준(2001) 모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 한 경제 내에서 총공급은 총생산(Y)과 수입(M)으로 구성됨

○ 총수입은 중간투입(A), 최종소비(C), 투자(I), 수출(X)로 구성되며, 이러한 경제 전체의 총공급과 총수요는 일치함

$$Y+M=A+C+I+X \quad (1)$$

□ 매출과세표준은 수입을 포함한 모든 거래에 부과되므로 (Y + M)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이는 아래 식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음

○ 이때 수출(X)은 영세율 대상이기 때문에 제외함

$$Y+M=AT+AD+CNT+CT++INT+ID \quad (2)$$
$$=AT+AD+CNT+CT++INT+ID\cdot T+ID\cdot NT$$

여기서 $A=AT+AD$

$C=CNT+CT$

$I=IT+INT+ID$

$ID=ID\cdot T+ID\cdot NT$

AT : 매입공제가 불가능한 중간투입액

AD : 매입공제가 가능한 중간투입액

CNT : 면세소비, CT : 과세소비

IT : 과세투자(대형주택), INT : 면세투자(소형주택)

ID : 공제대상설비투자, $ID\cdot NT$: 공제가능설비투자

$ID\cdot T$: 공제불가능설비투자

□ 소비지출(C)은 면세소비지출(CNT)과 과세소비지출(CT)로 나눌 수 있음

□ 투자지출(I)은 주택건설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투자와 설비투자로 크게 나눌 수 있고, 다시 주거용 건물투자는 소형과 대형주택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대형주택 건설투자는 과세되므로 IT로, 소형주택 건설투자는 면세인 INT, 그리고 설비투자는 공제대상 투자 ID로 분류

○ 그런데 매입공제대상 투자지출, 즉 설비투자 중에서 면세조세지출과 소형주택 건설투자인 면세투자지출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부분은 과세됨

○ 따라서 공제대상설비투자(ID)는 과세되는 부분(IDT)과 그렇지 않은 부분(ID · NT)으로 나눌 수 있음

□ 같은 원리로 중간투입(A)도 역시 면세대상 소비재와 면세 투자재 생산에 투입된 중간투입물은 과세되는 부분(AT)과 공제되는 부분(AD)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

○ 이를 종합하면 다음의 식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표시할 수 있음

$$Y+M-AD-CNT-INT-ID\cdot NT=AT+CT+IT+ID\cdot T \quad (3)$$

그리고 식 (3)의 과세항목은 각각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CT=C-CNT=(1-\alpha)C \quad (4)$$

$\alpha=\frac{C_{NT}}{C}$: 면세소비비율

$$I_T=(1-\beta)\cdot I_H \quad (5)$$

β : 소형주택 건설비율

I_H : 주거용 건물 투자지출

$$I_{D\cdot T}=(\gamma_1+\gamma_2)I_D \quad (6)$$

γ_1 : 전체 ID에서 면세 소비재 생산을 위해 투자된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γ_2 : 전체 ID에서 소형주택건설을 위해 투자된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A_T=\delta_1 C_{NT}-\delta_2 C_{NT}+\delta_3 I_{NT}-\delta_4 I_{NT} \quad (7)$$

δ_1 : 면세대상 소비지출의 중간투입률

δ_2 : 면세 소비재 생산을 위해 면세대상 품목이 중간투입으로 투입된 비율

δ_3 : 면세투자의 중간투입률

δ_4 : 면세투자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면세중간투입률

□ 여기서 AT는 중간투입 중 과세되는 부분임

○ 면세소비생산에 투입된 중간투입($\delta_1 C_{NT}$)에는 면세대상 품목 생산업체로부터 투입된 부분($\delta_2 C_{NT}$)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해야 하며,

○ 면세투자의 중간투입($\delta_3 I_{NT}$)에도 면세투자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면세중간투입($\delta_4 I_{NT}$)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제외해야 함

□ 최종적으로 이론적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산출되면 이를 이용하여 이론적인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을 추정할 수 있음

□ 이후 위 모형 중 면세대상 항목인 소형주택(국민주택) 건설부문을 면세대상이 아닌 과세대상으로 하여(β=0, γ_2=0)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을 추정한 후, 기본모형의 부가가치세 규모와의 차이를 구하여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로 간주할 수 있음

다. 조세지출 규모 추정

□ 조세지출 규모의 추정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통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등을 이용함

- ○ 2000년, 2005년, 그리고 201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면세소비지출비율(α), 면세소비 및 투자의 중간투입률(δ_1, δ_3), 면세소비생산 및 면세투자생산을 위해 투입된 면세중간투입비율(δ_2, δ_4), 그리고 한국은행의 GDP와 자본재형태별 총자본 형성 자료를 이용하여 면세소비생산 및 면세투자생산에 투입된 설비투자비율(γ_1, γ_2)등의 파라미터를 구함
- ○ 소형주택(β)과 대형주택의 건설비율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설비투자 관련 통계치는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통계를 이용함

(1) 이론세수의 추정

□ 본 추정에서는 노기성·김동준(2001)의 추정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안종석 외(2010)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 GDP와 산업연관표를 사용함

- ○ 2000년, 2005년 2010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구한 위 모형에서 설명한 각 파라미터의 비율을 최종소비지출과 총자본형성(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토목건설, 운송장비, 기계류)에 적용하여 이들의 합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과세베이스를 구함
- ○ 그리고 이로부터 이론적인 부가가치세를 산출함

□ 이후 소형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새로이 추정하고 그 결과를 이론적인 부가가치세와 비교하여 국민주택(소형주택) 건설부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세수규모를 추정함

가) 산업연관표와 파라미터값

□ 산업연관표는 보통 5년 단위로 실측치를 조사하고 있으며 실측한 연도를 기준년으로 하여 2005년부터는 매년 연장표를 발표하고 있음

○ 이때 실측치의 발표는 가장 세부적인 산업분류 단위인 기본부문까지 구분하여 발표함

○ 반면에 연장표는 기본부문 분류보다 큰 산업분류인 소분류 이상 수준에서 발표함

<부표 A.8-6> 산업연관표 실측치 기준연도별 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본부문
2000년	28부문	77부문	168부문	404부문
2005년	28부문	78부문	168부문	403부문
2010년	30부문	82부문	161부문	384부문

○ 본 연구의 추정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품목을 구분하여 과·면세 소비지출비율 및 투자지출 관련 파라미터를 구하여야 하는바, 산업연관표는 개별 품목별이 아닌 산업별로 분류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가가치세의 과·면세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움

○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산업연관표의 가장 세분화된 산업분류기준에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제한적이나마 구분할 수 있음

□ 또한 기본분류가 포함된 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에서 매년 발표하지 않고 3~5년에 한번씩 발표하므로 매년도 면세소비지출과 과세소비지출 파라미터를 추정하여 부가가치세 세수 추정에 이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2000년 이후 기본분류가 포함된 산업연관표 중 2000년, 2005년, 2010년의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면세소비지출과 과세소비지출비율을 구하고, 나머지 다른 파라미터들도 3개 연도에 해당하는 것을 계산하여 구함

□ 이때 2000년도의 파라미터는 2000년도 실측치를 사용하여 구하고, 2005년도 파라미터는 2005년도 실측치를 사용하여 구하나, 나머지 2010년도는 2005년 실측치 기준 연장표를 이용함

○ 이러한 이유는 2010년도 실측치가 2014년도에 발표되었으나 2010년도 산업연관

표는 2005년도에 비해 산업 및 상품 분류에 많은 변화가 발생함

- 위 <부표 A.8-6>과 같이 기본부문이 403부분에서 384부분으로 변동되었고, 그 내용도 상품관련 산업에 비해 서비스 관련된 산업이 증가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음

○ 따라서 새로운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분류에 따라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도 재설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기본부문 분류가 유사한 2000년과 2005년과의 연속성이 사라짐

○ 결국 2010년도 산업연관표 실측표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2005년도 실측치 기준 2010년도 산업연관표 연장표의 기본부문 산업분류를 이용하여 추정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를 구함

□ 이와 같이 구해진 3개 기준연도의 파라미터 중 2000년도의 파라미터는 2000년~2004년도에 대응시키고, 2005년도의 파라미터는 2005년~2009년에, 2010년도의 파라미터는 20010년~2015년에 대응시켜 15년간의 파라미터들로 이루어진 시계열 자료를 마련함

□ 국민주택 건설 및 건설용역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는데 사용하는 파라미터들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시간추세와 명목GDP를 공통의 독립변수로 회귀분석하여 추정된 계수로 각 연도에 해당하는 수정된 파라미터(fitted value)들을 구하여 규모추정에 이용함

□ 그리고 '면세소비생산에 투입된 설비투자비율'과 면세투자생산에 투입된 설비투자비율'은 당해연도 GDP에 당해연도 설비투지출 항목을 대응시켜 구함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추정한 파라미터들은 <부표 A.8-7>과 같음

<부표 A.8-7> 회귀분석을 통하여 수정된 파라미터(fitted value)

	면세소비 지출비율	과세소비 지출비율	면세소비 생산에 투입된 설비투자 비율	면세투자 생산에 투입된 설비투자 비율	면세소비의 중간투입률	면세소비 생산을 위해 투입된 면세중간 투입비율	면세투자의 중간투입률	면세투자 생산을 위해 투입된 면세중간 투입비율
2000년	0.5459	0.4541	0.3553	0.0239	0.4013	0.1345	0.5814	0.0288
2001년	0.5472	0.4528	0.3663	0.0272	0.3996	0.1367	0.5683	0.0277

<부표 A.8-7>의 계속

	면세소비 지출비율	과세소비 지출비율	면세소비 생산에 투입된 설비투자 비율	면세투자 생산에 투입된 설비투자 비율	면세소비의 중간투입률	면세소비 생산을 위해 투입된 면세중간 투입비율	면세투자의 중간투입률	면세투자 생산을 위해 투입된 면세중간 투입비율
2002년	0.5482	0.4518	0.3710	0.0287	0.4065	0.1373	0.5871	0.0283
2003년	0.5495	0.4505	0.3632	0.0324	0.4032	0.1399	0.5678	0.0270
2004년	0.5506	0.4494	0.3532	0.0325	0.4065	0.1412	0.5734	0.0269
2005년	0.5520	0.4480	0.3615	0.0337	0.4010	0.1441	0.5460	0.0251
2006년	0.5534	0.4466	0.3686	0.0327	0.3966	0.1468	0.5224	0.0235
2007년	0.5543	0.4457	0.3675	0.0296	0.4048	0.1472	0.5466	0.0244
2008년	0.5554	0.4446	0.3725	0.0276	0.4066	0.1488	0.5462	0.0240
2009년	0.5568	0.4432	0.3721	0.0266	0.4025	0.1514	0.5241	0.0225
2010년	0.5572	0.4428	0.3610	0.0201	0.4258	0.1490	0.6044	0.0262
2011년	0.5582	0.4418	0.3659	0.0182	0.4300	0.1502	0.6134	0.0263
2012년	0.5596	0.4404	0.3705	0.0179	0.4250	0.1530	0.5876	0.0246
2013년	0.5609	0.4391	0.3697	0.0215	0.4229	0.1553	0.5729	0.0235
2014년	0.5621	0.4379	0.3680	0.0233	0.4227	0.1572	0.5654	0.0227
2015년	0.5631	0.4369	0.3643	0.0248	0.4290	0.1580	0.5823	0.0232

나) 주택비율

□ 본 조세지출 규모의 추정에 있어서는 소형주택이 곧 국민주택이라는 가정이 핵심임

○ 소형주택 건설이 대형주택 건설과 마찬가지로 과세된다고 가정하여(식 (5) $I_T=(1-\beta)\cdot I_H$ 에서 β = 0, 식 (6) $I_{D\cdot T}=(\gamma_1+\gamma_2)I_D$에서 γ_2 = 0) 규모 추정을 하는 것임

□ 소형주택 비중과 대형주택 비중은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전국주택총조사의 주택규모별 주택 수 자료를 소형주택과 대형주택으로 나누고 각 구간의 중위면적과 주택 수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합산하여 전체 주택면적을 구한 후 소형주택과 대형주택의 비중을 구함

□ 이와 같이 구해진 4개 기준연도의 비중 중 2000년도의 파라미터는 2000년~2004년도에 대응시키고, 2005년도의 파라미터는 2005년~2009년에, 2010년도의 파라미터는 20010년~2014년에, 2015년은 2015년에 대응시켜 15년간의 파라미터들로 이루어진 시계열 자료를 마련함

○ 산업연관표의 의한 파라미터와 마찬가지로 시간추세와 GDP를 독립변수로 회귀분석하여 수정된(fitted value) 주택비율을 구함

<부표 A.8-8> 연도별 소형주택비율(fitted value)

	소형주택비율	대형주택비율
2000년	0.6180	0.3820
2001년	0.6204	0.3796
2002년	0.6042	0.3958
2003년	0.6102	0.3898
2004년	0.6017	0.3983
2005년	0.6125	0.3875
2006년	0.6210	0.3790
2007년	0.6016	0.3984
2008년	0.5967	0.4033
2009년	0.6043	0.3957
2010년	0.5522	0.4478
2011년	0.5417	0.4583
2012년	0.5515	0.4485
2013년	0.5549	0.4451
2014년	0.5540	0.4460
2015년	0.5389	0.4611

<부표 A.8-9> 전국 주택총조사에 의한 소형주택 비중

(단위: 호, ㎡, %)

	연면적	2015		2010		연건평	2005		2000	
		주택(호)	면적[1]	주택(호)	면적		주택(호)	면적	주택(호)	면적
	합계	15,298,087 (1.0000)	1,189,884,490 (1.0000)	13,883,571 (1.0000)	1,096,962,930 (1.0000)	합계	12,494,827 (1.0000)	309,189,171 (1.0000)	10,959,342 (1.0000)	267,462,922 (1.0000)
소형주택	20㎡ 이하[2]	201,169	4,023,380	26,008	520,160	7평미만	37,348	261,436	38,434	269,038
	20㎡~40㎡	1,601,137	48,034,110	1,241,183	37,235,490	7~9평	214,686	1,717,488	209,018	1,672,144
	40㎡~60㎡	4,539,237	226,961,850	4,080,204	204,010,200	9~14평	1,216,388	13,988,462	1,207,719	13,888,769
	60㎡~85㎡	5,353,327	388,116,208	4,881,601	353,916,073	14~19평	3,508,578	57,891,537	3,197,587	52,760,186
						19~29평	4,767,425	114,418,200	3,969,683	95,272,392
	소계	11,694,870 (0.7645)	667,135,548 **(0.5607)**[1]	10,228,996 0.7368	595,681,923 **(0.5430)**[1]	소계	9,744,425 (0.7799)	188,277,123 **(0.6089)**[1]	8,622,441 (0.7868)	163,862,528 **(0.6127)**[1]
대형주택	85㎡~100㎡	751,713	73,292,018	1,018,083	99,263,093	29~39평	1,363,379	46,354,886	1,120,444	38,095,096
	100㎡~130㎡	1,270,654	152,478,480	1,204,192	144,503,040	39~49평	636,768	28,017,792	545,080	23,983,520
	130㎡~165㎡	793,794	117,084,615	829,434	122,341,515	49~69평	448,975	24,244,650	408,006	22,032,324
	165㎡~230㎡	410,898	81,152,355	355,061	70,124,548	69평이상	301,280	22,294,720	263,371	19,489,454
	230㎡ 초과[2]	376,158	98,741,475	247,805	65,048,813					
	소계	3,603,217 (0.2355)	522,748,943 **(0.4393)**[1]	3,654,575 (0.2632)	501,281,008 **(0.4570)**[1]	소계	2,750,402 (0.2201)	120,912,048 **(0.3911)**[1]	2,336,901 (0.2132)	103,600,394 **(0.3873)**[1]

주 : 1. ( ) 안은 비중

1) 각 구간의 중위면적과 주택 수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합산하여 전체 주택면적을 구한 후 소형주택과 대형주택의 비중을 구함

2) 최소면적 주택 구간은 20㎡ × 주택 수

최대면적 주택 구간: 230㎡ + 직전 규모 구간의 중위값((230-165)/2) × 주택수

자료 : 통계청, 「전국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다) 소비지출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소비지출은 전체 소비지출에서 면세소비지출을 제외한 부분임

○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규정을 산업연관표에서 가장 세부적인 산업분류인 기본부문에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를 구분함[52)]

□ 국민계정의 민간소비지출과 정부소비지출의 합인 최종소비지출의 추이는 2000년 약 413조원에서 2015년 약 1,008조원으로 2.4배 증가함

○ 이 중 같은 기간 면세소비지출도 약 226조원에서 568조원으로 2.5배가량 증가하여 면세소비지출비율은 최종소비지출의 55%(±1%p) 내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크게 변동이 없음

○ 따라서 과세대상 소비지출 및 그 비중도 큰 변화 없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부표 A.8-10> 소비지출

(단위: 십억원)

	2000	2005	2010	2015
과세대상 소비지출 $(CT)=(1-\alpha)C$	187,752.7	269,850.7	363,016.8	440,546.8
최종소비지출(C)	413,461.2	602,345.4	819,821.2	1,008,347.0
면세소비지출(CNT)	225,708.5	332,494.7	456,804.4	567,800.2
면세소비지출비율(α)	0.5459	0.5520	0.5572	0.5631
과세소비지출비율$(1-\alpha)$	0.4541	0.4480	0.4428	0.4369

주: 4개 연도만 추려서 제시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각 연도(http://ecos.bok.or.kr/)

라) 투자지출

□ 투자지출(I)는 주택건설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투자지출과 설비투자지출로 크게 나눌 수 있음

52) 가장 세부적인 산업분류를 이용하더라도 재화별 부가가치세의 과·면세를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부가가치세는 재화별로 과·면세를 결정하지만, 산업연관표 기본부문은 산업단위별로 분류하기 때문에 일부 동일 산업내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가 혼재된 경우가 있음. 따라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정밀분석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추정치는 대략적인 규모로 이해해야 할 것임

○ 우선 주거용 건물투자를 살펴보면, 주거용 건물투자는 소형주택과 대형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고, 대형주택 건설투자는 과세되지만 국민주택, 즉 소형주택 건설투자는 면세됨

○ 소형주택과 대형주택의 건설비율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율을 산출하였음

- 소형주택건설비율은 2000년, 2005년에는 62%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 2015년에는 54~55%를 유지하여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위 <부표 A.8-8> 연도별 소형주택비율(fitted value)을 살펴보면 2010년까지는 소형주택건설과 나머지의 비율이 6:4를 유지하여 왔으나 그이후로는 5.5:4.5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2010년 이후 대형주택건설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부표 A.8-11> 투자지출(주거용 건물투자)

(단위: 십억원)

	2000	2005	2010	2015
과세대상투자지출 $(I_T) = (1-\beta) I_H$	9,372.5	19,589.5	20,603.1	33,088.8
주거용건물투자(I_H)	24,535.4	50,553.5	46,009.7	71,760.6
면세대상투자(I_{NT})	15,162.9	30,964.0	25,406.6	38,671.8
소형주택비율(β)	0.6180	0.6125	0.5522	0.5389
대형주택비율$(1-\beta)$	0.3820	0.3875	0.4478	0.4611

주: 4개 연도만 추려서 제시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 각 연도(http://ecos.bok.or.kr/)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 그러나 건설 주택 수를 기준으로 보면 2015년 현재 소형주택 수와 대형주택 수의 비중은 7.6:2.4 정도로 소형주택 수의 비중이 3배가량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투자지출(I) 중 설비투자는 매입세액공제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제도의 특징으로 인해 면세대상 소비 및 면세대상 소형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투자된 설비투자는 과세됨

○ 즉, 과세대상 설비투자지출은 면세대상 소비 및 면세대상 소형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투자된 설비투자를 의미함

○ 면세소비재 생산과 면세대상 소형주택 건설에 투입된 설비투자비율은 면세소비지출과 면세투자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산출함

□ 면세소비생산에 투입된 설비투자비율은 동 기간 내내 36%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 또한 면세투자생산에 투입된 설비투자비율은 2000년 2%대에서 2005년도에 3% 수준으로 다소 높아졌고 2010년 2015년에는 다시 2%로 다시 낮아짐

<부표 A.8-12> 투자지출(설비투자)

(단위: 십억원)

	2000	2005	2010	2015
과세설비투자($I_{D\ .\ T}$) = ($\gamma_1+\gamma_2$)I_D	56,739.1	75,843.9	105,271.7	113,349.0
공제대상투자(I_D)	149,622.5	191,936.5	276,230.0	291,299.2
면세소비생산에 투입된 설비투자비율(γ_1)	0.3553	0.3615	0.3610	0.3643
면세투자생산에 투입된 설비투자비율(γ_2)	0.0239	0.0337	0.0201	0.0248

주: 4개 연도만 추려서 제시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 각 연도(http://ecos.bok.or.kr/)

마) 중간투입

□ 부가가치세제에서 중간투입은 최종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품 생산에 투입된 중간투입은 면세제도의 특징상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됨

○ 즉, 면세대상인 소비재와 소형주택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중간투입물에 대해서는 과세됨

- 그러나 이러한 중간투입물 중에는 면세품 생산에 투입된 면세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함

□ 면세소비의 중간투입률(δ_1)은 2000년 0.40에서 2010년 0.43, 2015년, 2015년 0.36으로 최근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약간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면세투자의 중간투입률(δ_3)은 2000년 0.58에서 2005년 0.55로 낮아졌다가 2010년 0.60으로 눈에 띄게 증가한 후 이후 2015년에는 0.58로 다시 낮아짐

○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면세소비생산을 위한 면세중간투입비율(δ_2)은 2000년 0.13에서 2015년 약 0.16 정도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이는 큰 증가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

□ 면세투자생산을 위한 면세중간투입비율(δ_4)은 2000년 0.0288, 2005년 0.0251, 2010년 0.0262에서 2015년 0.0232로 다소 낮아졌음

□ 중간투입 관련 파라미터들은 전반적으로 지난 15년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어온 것으로 판단됨

<부표 A.8-13> 중간투입(과세)

(단위: 십억원)

	2000	2005	2010	2015
중간투입 중 과세부분 $(A_T) = (\delta_1 - \delta_2) C_{NT} + (\delta_3 - \delta_4) I_{NT}$	68,598.0	101,547.0	141,133.5	175,495.2
면세소비의 중간투입률(δ_1)	0.4013	0.4010	0.4258	0.4290
면세소비생산을 위해 투입된 면세중간투입비율(δ_2)	0.1345	0.1441	0.1490	0.1580
면세투자의 중간투입률(δ_3)	0.5814	0.5460	0.6044	0.5823
면세투자생산을 위해 투입된 면세중간투입비율(δ_4)	0.0288	0.0251	0.0262	0.0232

주: 4개 연도만 추려서 제시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 각 연도(http://ecos.bok.or.kr/)

바) 추정된 이론적 부가가치세 과세베이스

□ 한국은행에서 5년마다 발표하는 산업연관표 실측표를 이용해 위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추정한 이론적인 부가가치세의 연도별 추정 과세베이스(부가가치세 포함)와 추정 이론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음

<부표 A.8-14> 추정된 이론적 부가가치세 과세베이스

(단위: 십억원)

	과세소비지출	과세대상 투자지출	과세설비투자	과세중간투입	합계 (과세베이스)	추정된 이론 부가가치세
2015년	440,547	33,089	113,349	175,495	762,480	69,316
2014년	426,044	27,900	110,722	164,005	728,671	66,243
2013년	413,750	24,677	109,812	159,391	707,629	64,330
2012년	401,618	20,025	110,812	152,670	685,125	62,284
2011년	385,922	20,545	110,833	150,687	667,987	60,726
2010년	363,017	20,603	105,272	141,134	630,025	57,275

<부표 A.8-14>의 계속

	과세소비지출	과세대상 투자지출	과세설비투자	과세중간투입	합계 (과세베이스)	추정된 이론 부가가치세
2009년	341,082	20,083	100,832	122,982	584,979	53,180
2008년	329,362	20,591	96,839	121,979	568,770	51,706
2007년	308,309	20,444	86,664	114,893	530,309	48,210
2006년	287,346	19,272	81,157	104,699	492,474	44,770
2005년	269,851	19,589	75,844	101,547	466,831	42,439
2004년	252,572	18,834	72,380	97,646	441,431	40,130
2003년	241,453	16,783	69,483	91,754	419,474	38,134
2002년	232,955	14,307	65,078	88,297	400,638	36,422
2001년	208,591	11,434	59,750	76,374	356,148	32,377
2000년	187,753	9,373	56,739	68,598	322,462	29,315

(2) 국민주택 조세지출 규모의 추정

□ 국민주택(소형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규모의 추정방법은 이론적 부가가치세 세수의 추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함

○ 다만 그동안 면세되어 왔던 국민주택(소형주택) 건설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가정하에 소형주택 건설도 대형주택과 같이 과세대상 부문으로 하여 이론적인 부가가치세를 추정하는 것임

□ 따라서 추정방법상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식 (5) $I_T=(1-\beta)\cdot I_H$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β의 값을 0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 아울러 식 (6) $I_{D\cdot T}=(\gamma_1+\gamma_2)I_D$에서 γ_2의 값을 0으로 하여 이론적인 부가가치세 규모 추정을 다시 한번 실시함

□ 이와 같이 소형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추정한 부가가치세 규모와 앞서 추정한 이론적인 부가가치세 규모와 비교하여 그 차액을 조세지출 규모로 삼는 것임

○ 소형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규모는 면세로 한 부가가치세 규모보다 크게 계산됨

□ 조세지출 규모의 추정 규모는 <부표 A.8-15>와 같음

<부표 A.8-15>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규모

(단위: 십억원)

	소형주택 부가가치세 면제시 세수규모(A)	소형주택 부가가치세 부과시 세수 규모(B)	국민주택 조세지출 규모(B-A)
2015년	69,316	70,209	893.0
2014년	66,243	67,084	840.9
2013년	64,330	65,041	711.1
2012년	62,284	62,799	514.5
2011년	60,726	61,160	433.5
2010년	57,275	57,745	470.0
2009년	53,180	53,957	777.4
2008년	51,706	52,423	716.4
2007년	48,210	48,964	753.9
2006년	44,770	45,608	837.5
2005년	42,439	43,200	761.2
2004년	40,130	40,749	618.9
2003년	38,134	38,713	579.4
2002년	36,422	36,873	451.7
2001년	32,377	32,783	405.6
2000년	29,315	29,607	292.0

□ 추정결과 최근 2005년까지는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후 2010년까지는 감소하는 모습을 최근 5년간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이것이 주택건설 경기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검토해 보아야 할 대상임

[부도 A.8-1] 국민주택 건설 및 주택건설용역에 대한 조세지출 추정 규모 추이

(단위: 십억원)



□ 연도별로 조세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많을 경우(2006년, 2015년)는 1조원에 육박하며, 가장 적게는 약 3천억원으로 3천억원과 9천억원 규모의 조세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로 볼 때 작은 규모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부표 A.8-16> 부가가치세 전체 탈루 규모 대비 국민주택건설 관련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십억원, %)

	국세통계연보의 실징수액(A)	소형주택 건설 면제 시 이론세수(B)	전체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B-A)	국민주택 조세지출 규모(D)	전체 탈루규모 대비 국민주택건설 관련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D/(B-A))
2010년	49,121	57,275	8,154	470.0	5.8
2011년	51,907	60,726	8,819	433.5	4.9
2012년	55,668	62,284	6,616	514.5	7.8
2013년	55,963	64,330	8,367	711.1	8.5
2014년	57,139	66,243	9,104	840.9	9.2

주: 부가가치세 전체 탈루라 함은 탈세액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모든 부문의 금액(각종 조세지출 및 신고가 필요 없는 부문 등)이 포함된 것임

□ 위 <부표 A.8-16>의 부가가치세 전체 탈루 규모는 불법적인 부가가치세 탈세액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모든 부문,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각종 조세지출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 없어 신고되지 아니한 모든 부문이 포함된 것임

○ 이러한 전체 탈루 규모 중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한 부문의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육박한다는 것은 향후 동 조세지출 항목에 대하여 규모의 추정 및 사후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임

(3) 국민주택 조세지출 규모의 전망

□ 2016년도 및 2017년도 조세지출 규모의 전망을 위해서는 주택건설인허가실적과 위에서 추정한 국민주택 조세지출 규모를 이용함

○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인허가실적의 증가는 다음 연도 또는 차차년도의 주택건설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주택건설투자부문의 선행지표로 작용함

○ 이는 예를 들어 2016연도의 주택건설경기의 부침은 2년전(2014년)과 1년전(2015년)의 주택건설인허가실적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함

□ 장래 연도의 조세지출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추정한 국민주택 조세지출 규모(부가가치세 규모)를 종속변수로 하고 주택인허가실적에 2개 연도의 시차를 적용한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후 추정함[53]

○ 추정식과 이용자료는 다음과 같음

$$EVAT_t = \alpha Hconsn_{t-1} + \beta Hconsn_{t-2} + \mu_t$$

$EVAT$: 산업연관표를 통하여 추정된 국민주택 조세지출 규모

$Hconsn_{t-1}$: 전기의 85㎡ 이하 주택건설실적(인허가실적기준)

$Hconsn_{t-2}$: 전전기의 85㎡ 이하 주택건설실적(인허가실적기준)

53) 2개 연도의 시차를 적용한 이유는 아파트 건설의 경우는 보통 2년 정도의 건설기간이 필요하고,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의 경우는 주택건설인허가 후 다음연도에 착공을 하고 다음 연도 1년내 완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2개 연도의 시차를 적용하는 것임

<부표 A.8-17> 회귀분석에 이용한 자료

(단위: 십억원, 천호)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국민주택조세지출 규모 (EVAT)	85㎡ 이하 주택건설실적(인허가실적기준) (Hconsn)
2000	292.0	339.5
2001	405.6	445.2
2002	451.7	540.3
2003	579.4	447.6
2004	618.9	351.3
2005	761.2	336.4
2006	837.5	299.0
2007	753.9	347.4
2008	716.4	257.6
2009	777.4	253.0
2010	470.0	283.8
2011	433.5	445.9
2012	514.5	484.2
2013	711.1	359.1
2014	840.9	429.8
2015	893.0	622.4
2016		548.5*

주: 2016년 조세지출예산서가 작성되는 시점인 2016년 9월까지의 85㎡ 이하 주택건설실적(인허가실적기준)은 411.4천호임. 이를 9개월로 나눈 후, 다시 12개월을 곱하여 2016년 주택건설실적으로 가정함.
자료: 온나라부동산정보3.0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

□ 회귀분석 결과

<부표 A.8-18> 회귀분석 결과

	상수	$Hconsn_{t-1}$ 계수값	$Hconsn_{t-2}$ 계수값	R2	관측수
계수값	350.1158	-0.6103	1.4077	0.3360	16 (자유도: 13)
t-값	1.77	-1.05	2.53		
유의성 여부	*		**		

주: * : 10% 수준에서 유의함
** : 5% 수준에서 유의함
1. 본 회귀분석은 규모 추정에 목적이 있으므로 로그선형의 형태를 취하지 않음

<부표 A.8-19> 회귀분석에 의한 2016년도와 2017년도 전망치

	상수	$\alpha \times Hconsn_{t-1}$	$\beta \times Hconsn_{t-2}$	전망치(십억원)
2016년도	350.1158	-0.6103 × 622.4	1.4077 × 429.8	575.3
2017년도	350.1158	-0.6103 × 548.5	1.4077 × 622.4	891.5

5. 추정결과

□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부표 A.8-20>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 추이

(단위: 억원)

연도	2015 (잠정)	2016 (전망)	2017 (전망)
추정규모	8,930	5,753	8,915

6. 문제점

□ 향후 추가 연도에 대한 추정을 위해서는 2005년도 산업연관표에서 개편된 2010년도 기준 산업연관표 실측치를 이용하여야 함

○ 그러나 2010년도 기준 산업연관표의 상품분류는 기존의 분류와 차이가 많이 나므로 부가가치세 과·면세대상 상품을 새로이 분류하는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또한 국민계정의 면세대상 설비투자에 연구개발 관련 투자들이 새로이 추가되어 향후 추정에서는 이를 고려하여야 함

□ 동 조세지출 항목은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부터 면세대상이었으므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자료로는 추정을 할 수 없음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5.

노기성 · 김동준,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과 정책과제」, 『경제사회여건 변화와 재정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2001.

안종석 외,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 연구보고서 10-12, 한국조세연구원, 2010.

유일호, 「우리나라의 세수규모 추정: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재정논집』 제9집, 한국재정학회, 1995.

_____, 「우리나라의 탈세규모 추정: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조세행정과 정책과제』 연구논문집 98-01, 현진권(편), 한국조세연구원, 1988, pp. 39~68.

통계청, 『전국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한국개발연구원, 「KID 경제전망」, 2016 상반기, 2016. 5.

국세청 홈페이지 부가가치세종합안내(http://www.nts.go.kr/call/vat/2015_03/htm/13e420.htm)

삼일아이닷컴, 조세특례제한법 해설(http://www.samili.com/)

온나라부동산정보3.0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A.9.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 추정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 제4의3)

1. 제도개요 및 연혁

□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참조

가. 도입 목적

□ 2001년 5월 주거비 안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허용([법률 제6480호, 2001.5.24., 일부개정])

나. 조세지출 내용

□ 동 조세지출은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과 경비 및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정한 것임

○ 면제대상은 국민주택 규모와 그밖의 것으로 규정

○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의 기한을 두지 않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3호)

○ 국민주택 규모의 이상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54]

- 당초에는 2003년 12월까지 운영하고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위탁관리비에 대해서만 정상과세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면제해오고 있음

54) 자치관리는 입주민이 직접 임금을 지급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부표 A.9-1> 공동주택 관리방법별 과·면세

공동주택 규모	공동주택 관리방법	과세 여부
국민주택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의3호)	자치관리	면제
	위탁관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자치관리	면제
	위탁관리	한시면제

○ 다만 현재는 적용대상에 있어서 지역과 면적에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음

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면제

② 위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135㎡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면제

다. 조세지출의 연혁 및 현황

(1) 주요 세법 변경사항

○ 2001년 5월 24일 일부개정: 주거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2003년 12월까지 부가가치세 면제조항 신설

○ 2002년 8월 26일 일부개정: 관리용역중 경비용역 제외

○ 2003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일몰기한을 2004년 12월 31까지 연장

○ 2004년 7월 26일 일부개정: 경비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에 추가

○ 2004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일몰기한을 2005년 12월 31까지 연장

○ 2005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일몰기한을 2008년 12월 31까지 연장

○ 2008년 12월 26일 일부개정: 청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에 추가하고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까지 연장

○ 2011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까지 연장

○ 2014년 12월 23일 일부개정: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적용대상을 다음의 경우로 제한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주택
  - 위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주택

(2) 정책대상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업체가 정책대상자임

○ 아파트(공동주택)는 위탁관리와 자치관리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음

- 자치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그 책임자인 관리소장을 선임하여, 지휘·총괄하도록 임명하는 반면,
- 위탁관리는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주체의 업무인 자치관리기구에 준하는 관리기구를 구성·지휘, 감독업무를 수행함
  - 이때 관리주체인 위탁관리회사의 대표이사가 관리소장을 파견하여, 지휘·총괄권을 관리소장의 업무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파트 입주민은 위탁관리수수료를 위탁관리회사에 지급함

○ 자치관리의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이며, 비영리이고,

- 위탁관리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이 수행)이며 영리임
- 따라서 자치관리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위탁관리 시에는 부과됨

○ 결국 정책대상자는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용역업체임

□ 2011년말 현재 전체 공동주택(국민주택 포함) 입주민은 8,586,687세대이고, 이를 관리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위탁관리공동주택 5,927,364세대, 자치관리공동주택 2,578,576세대, 기타(재건축·재개발 추진 중이거나 사업주체에 의한 관리기간 중에 있는 공동주택) 80,747세대임

<부표 A.9-2> 관리방법에 따른 전체 공동주택 세대 수 현황

(단위: 세대)

구분	계 (A+B+C)	C (A+B)	위탁관리(A)			자치관리(B)			기타
			소계	분양	임대	소계	분양	임대	
'09	8,094,390	8,017,190	5,390,793	4,922,434	468,359	2,626,397	2,234,755	391,642	77,200
'10	8,368,915	8,295,015	5,758,552	5,147,512	611,040	2,536,463	2,239,477	296,986	73,900
'11	8,586,687	8,505,940	5,927,364	5,287,762	639,602	2,578,576	2,275,653	302,923	80,747

자료: 국토해양부 내부행정자료

○ ‘기타’ 항목은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위탁관리 또는 자치관리 구분이 불가하므로 제외하고 전체 위탁관리공동주택 비율(A/C)을 <부표 A.9-3>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2011년은 약 69.7%로 나타나고 2010년 및 2009년은 각각 69.4% 및 67.2%이며, 세부 비율은 아래 <부표 A.9-3>과 같음

<부표 A.9-3> ‘기타’ 세대를 제외한 관리방법에 따른 전체 공동주택 세대 수 비율

(단위: %)

구 분	C (A+B)	위탁관리(A)			자치관리(B)		
		소계	분양	임대	소계	분양	임대
‘09	100	67.2	61.4	5.8	32.8	27.9	4.9
‘10	100	69.4	62.0	7.4	30.6	27.0	3.6
‘11	100	69.7	62.2	7.5	30.3	26.7	3.6
3년 평균	100	68.8	61.9	6.9	31.2	27.2	4.0

(3) 조세지출 규모

□ 본 조세지출 항목은 매년도 조세지출예산서(2013년~2017년)에 추정곤란항목으로 분류되어[55] 실적치 및 추정치 규모를 전혀 알 수가 없음

○ 추정곤란 사유는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 금액을 파악·관리하기가 곤란’임

(4) 관리비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현황

□ <부표 A.9-4>는 ‘국민주택’ 및 조세지출 대상 ‘국민주택 외’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관리비 세부 내역별로 부가가치세 과·면세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위탁관리업체)가 관리비를 입주자에게 부과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면세 여부를 정리한 것임

□ 관리비 항목중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소득비 등임

○ 난방비(급탕비), 전기료, 수도료는 징수권자를 대신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관리비 중 이러한 항목들은 입주민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

55)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13~2017년

되고 있는 항목들임

○ 그리고 위탁관리수수료와 잡수입 등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음

□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비 항목은 크게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익으로 나누어지고

○ 이 중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은 주로 공용관리비 중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에 해당하며, 입주자 개별사용료는 대부분 과세됨

<부표 A.9-4>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내역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일반관리비	난방비(공용, 전용)	월사용액	
인건비, 보험료 등	급탕비(공용, 전용)	충당금잔액	
제사무비	가스사용료(공용, 전용)		
제세공과금	전기료(공용, 전용)		
피복비	수도료(공용, 전용)		
교육훈련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차량유지비	생활폐기물수수료		
그밖의 부대비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청소비	건물보험료		
경비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유지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부표 A.9-5> '국민주택' 및 조세지출 대상 '국민주택 외'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관리비 내역별 부가가치세 과·면세 현황

관리비 항목	면제 여부	근거법 또는 자료	일몰 등 기타사항
1.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제4의2호>	국민주택(84㎡ 이하): 영구면제 국민주택외(84㎡ 초과~135㎡ 이하): 2017.12.31.까지 한시 면제
2. 청소비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제4의2호>	국민주택(84㎡ 이하): 영구면제 국민주택외(84㎡ 초과~135㎡ 이하): 2017.12.31.까지 한시 면제
3. 경비비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제4의2호>	국민주택(84㎡ 이하): 영구면제 국민주택외(84㎡ 초과~135㎡ 이하): 2017.12.31.까지 한시 면제
4. 소독비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	·제11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4-1. 저수조청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 청소용역과 「하수도법」에 따른 오배수관 청소용역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청소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비	부가가치세 과세		
6. 난방비	·지역난방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2008.04.21. ·서삼46015-11367,2002.08.20. ·서삼46015-10463,2001.10.15. ·서삼46015-10333,2001.09.26.	
	·중앙난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개별난방의 경우: 각 세대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스사용료 지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등유 구매		

<부표 A.9-5>의 계속

관리비 항목	면제 여부	근거법 또는 자료	일몰 등 기타사항
7. 급탕비	·지역난방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		
	·중앙난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개별난방의 경우: 각 세대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스사용료 지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등유 구매		
8. 수선유지비	부가가치세 과세		·과세대상이므로 관리비로 부과하고 세금을 납부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소모성자재 구입비 매입공제(매출 위해 매입한 비용은 과세대상에서 공제)
9. 위탁관리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과세대상이며 관리비로 부과하고 세금 납부
10. 전기료	부가가치세 면세: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		·과세대상이 되려면 관리주체가 재화를 공급(부가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3조)해야 하나 동 항목은 관리주체 공급으로 볼 수 없음 - 주택법 제4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서 징수권자를 대신해 징수하고 입주자를 대신해 납부해주는 것으로 매출행위가 아님
11. 수도료	부가가치세 면세: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		·과세대상이 되려면 관리주체가 재화를 공급(부가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3조)해야 하나 동 항목은 관리주체 공급으로 볼 수 없음 - 주택법 제4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서 징수권자를 대신해 징수하고 입주자를 대신해 납부해주는 것으로 매출행위가 아님

<부표 A.9-5>의 계속

관리비 항목	면제 여부	근거법 또는 자료	일몰 등 기타사항
12. 어린이집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세	<2012년 임대료 부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3호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같은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어린이집의 임대용역>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부동산을 임대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은 동 임대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면세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신고 의무는 있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50% 설정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함>「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3. 잡수입(전기검침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의 공급에 해당		· 용역공급자(매출부가세): 관리사무소가 전기검침 용역 제공 - 한전이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관리소에 지급 - 부가가치세 만큼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잡수입 사용의 3가지 방법(관리규약에 명시, 예산안에 반영, 입대의 의결)으로 하여 직원들의 비용으로 사용하며, 잡수입일 경우 사용 후 증빙을 남겨 놓아야 함
14. 잡수입(재활용품매각)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의 공급에 해당		· 재화공급자(매출부가세): 관리사무소가 재활용품을 제공 - 재활용 업체는 수익대금 속에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관리소에 지급 - 입주자로부터 수거한 재활용품을 사업상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부표 A.9-5>의 계속

관리비 항목	면제 여부	근거법 또는 자료	일몰 등 기타사항
			· 그러나 일시적으로 영리목적 없이 입주민을 대신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 · 대부분 매월 계속적인 사업을 위해 업체를 선정하므로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대법원판례(대법원84누629,1984.12.26.)에서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라고 하고 있음
15. 잡수입(통신 중계기 장소임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의 공급에 해당		· 재화공급자(매출부가세) : 관리사무소가 중계기 임대 장소 제공 - 임대업자(SK, KT, LG)가 임대비용에 부가각치세 포함하여 관리소에 지급
16. 잡수입(알뜰시장 장소임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의 공급에 해당	<잡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조세심판원 심판 결정>	· 재화공급자(매출부가세): 관리사무소가 알뜰장터 제공 - 알뜰장터 시행업자가 임대비용에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관리소에 지급 - 단지 내 알뜰시장을 운영하고자 장소 확보를 위해 공사 또는 수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공제 가능 또한 매출을 위해 필요비용 투입시 공제가능(단, 관련성이 있어야 함.).
16. 휘트니스 센터 운영 비용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없음		· 외부업체에 위탁운영시 외부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월 위탁관리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지급

2. 국세청 자료 현황

□ 국세청의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표상에서 동 조세지출에 해당하는 면세업종이 포함되었다고 보여지는 업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부표 A.9-6>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부가가치세 업종코드

코드 번호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702003	부동산 관리업	○주거용부동산관리업 ○비주거용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주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업 · 아파트관리, 건물관리

□ 신고서 서식에 면세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입하는 난이 있다 하더라도 면세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기입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과 관련된 면세항목에 대한 자료의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기타 경제사회 통계자료

□ 규모추정에 사용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부표 A.9-7> 규모 추정에 이용한 통계자료

자료명	자료내역 및 용도	출처	이용기간
지역별 공동주택 현황	· 17개 광역자치단체별 공동주택 세대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http://www.k-apt.go.kr)	'12년~ '16년
지역별 공동주택의 관리방법별 세대수 현황	· 공동주택 관리방법별 지역별 공동주택 분포 자료 -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비율 계산시 이용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공동주택현황	'12년~ '13년
지역별 공동주택 전용면적별 세대수 현황	· 전국 공동주택 중 조세지출 대상인 세대수 - 전용면적 85㎡ 초과~102㎡ 이하 주택과 102㎡ 초과~135㎡ 이하인 세대수 비중계산 시 이용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공동주택현황	'12년~ '13년
지역별 위탁관리공동주택의 평방미터당 관리비 현황	· 지역별로 위탁관리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단지들의 ㎡당 연간 월평균 관리비 내역(연간 월평균 관리비 / ㎡) - 연간 월평균 관리비 = 일반관리비 + 청소비 + 경비비 + 소독비의 4개 항목 합계 기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http://www.k-apt.go.kr)	'12년~ '16년

4. 추정모형 검토

□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지역별 공동주택 현황 및 관리비 자료 등을 이용한 산술계산 방식을 사용함

○ 추정은 먼저 85㎡~135㎡ 사이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추정하고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에 대해 추정하여 합계함

가. 사용자료

□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의 추정은 지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함

○ 공동주택은 주로 수도권과 광역시에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통합하여 추정하는 경우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조금이라도 더 정밀하게 추정하기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추정후 합산함

□ 규모추정에 사용된 자료는 <부표 A.9-7>의 내용과 같음

나. 추계방법

(1) 1단계: 자치관리 및 위탁관리 비중

□ 위 <부표 A.9-7>의 '지역별 공동주택 현황'과 '지역별 공동주택의 관리방법별 세대수 현황'을 이용하여 2012년도와 2013년도의 전체 공동주택 중 위탁관리 공동주택 단지의 비중을 17개 광역자치 단체별로 계산함

□ 연도별 공동주택 세대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17년도는 추정치로 2015년도의 지역별 아파트 착공실적(온나라부동산정보 3.0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을 더한 수치임[56]

○ 공동주택수 세대 수는 각년도 12월말 기준(2016연도는 11월말)이며, 수도권 지역의 공동주택 세대수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음

56)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건설기간은 1년 미만으로 당해 연도에 사용승인을 거쳐 세대수 통계에 포함되나 아파트의 경우는 건설기간이 2년 정도 걸리므로 2년 후 사용승인 후에 세대수 통계에 포함되고 이후 관리비가 부과됨

<부표 A.9-8> 연도별 공동주택 세대수 현황

(단위: 호)

	'12	'13	'14	'15	'16	'17(추정)
전국	7,730,742	7,931,866	8,247,658	8,508,951	8,760,445	9,257,933
서울	1,300,088	1,322,580	1,367,298	1,389,064	1,405,934	1,444,669
부산	537,714	558,088	579,560	602,773	613,114	637,770
대구	421,417	430,418	440,730	455,175	477,645	492,801
인천	458,842	472,934	485,833	497,960	507,068	530,015
광주	321,131	327,072	339,959	347,141	355,435	363,387
대전	285,611	290,780	301,476	306,065	311,444	319,462
울산	178,450	182,903	193,918	201,831	208,014	219,779
세종	18,440	21,778	39,292	56,814	64,198	78,580
경기	2,127,230	2,187,537	2,251,446	2,314,777	2,394,314	2,584,793
강원	219,632	223,253	233,575	240,003	245,565	260,144
충북	237,737	243,946	254,140	265,425	272,653	297,134
충남	302,919	309,756	322,854	333,574	354,969	387,347
전북	287,312	293,131	308,081	319,383	325,907	339,156
전남	230,546	242,389	259,331	270,327	281,092	291,133
경북	319,217	324,156	334,740	348,718	365,381	396,881
경남	457,781	472,339	503,436	525,861	540,962	573,944
제주	26,675	28,806	31,989	34,060	36,750	40,938

주: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 기준임
자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

□ 2014년도 국토교통부 자체평가보고서에 제시된 바 있는 2009년~2011년 동안의 위탁관리공동주택 비율을 살펴보면 2009년 67.2%에서 2011년 69.7% 3개년간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 전국기준으로 2012년에는 70.4%, 2013년에는 71%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표 A.9-9> 위탁관리 공동주택 세대수 비중

(단위: 세대, %)

구 분	소계	전년대비 증감률
2009	67.2	
2010	69.4	3.3
2011	69.7	0.4
2012	70.4	1.0
2013	71.0	0.9
평 균	69.54	1.4

주: 전국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 위탁관리 비중은 2013년 이후의 자료가 집계되지 않아 2009년~2013년의 전국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 평균치 1.4%을 적용하여 2014년~2017년에도 매년 각 지역별로 전년 대비 1.4%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지역별 위탁관리 비중을 구하여 추정치 계산에 적용하고자 함

<부표 A.9-10> 지역별 위탁관리 공동주택 세대수 비중

	'12	'13	'14(추정)	'15(추정)	'16(추정)	'17(추정)
전국	0.7037	0.7098	0.7197	0.7297	0.7398	0.7501
서울	0.7884	0.7850	0.7959	0.8070	0.8182	0.8296
부산	0.6258	0.6431	0.6520	0.6611	0.6703	0.6796
대구	0.4893	0.5033	0.5103	0.5174	0.5246	0.5319
인천	0.7571	0.7868	0.7977	0.8088	0.8201	0.8315
광주	0.3413	0.3584	0.3634	0.3684	0.3736	0.3788
대전	0.8313	0.8360	0.8476	0.8594	0.8714	0.8835
울산	0.7259	0.7376	0.7479	0.7583	0.7688	0.7795
세종	0.8612	0.9197	0.9325	0.9455	0.9586	0.9719
경기	0.8245	0.8298	0.8413	0.8530	0.8649	0.8769
강원	0.5632	0.5946	0.6029	0.6113	0.6198	0.6284
충북	0.7381	0.7472	0.7576	0.7681	0.7788	0.7896
충남	0.8003	0.7990	0.8101	0.8214	0.8328	0.8444
전북	0.6791	0.6706	0.6799	0.6894	0.6990	0.7087
전남	0.5197	0.5141	0.5212	0.5285	0.5358	0.5433
경북	0.4296	0.4260	0.4319	0.4379	0.4440	0.4502
경남	0.6813	0.6875	0.6971	0.7068	0.7166	0.7265
제주	0.15	0.1632	0.1655	0.1678	0.1701	0.1725

자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

(2) 2단계 : 공동주택 스톡 중 조세지출대상 공동주택 비중

가) 전용면적 85㎡ 초과 ~ 135㎡ 이하 공동주택

□ '지역별 공동주택 전용면적별 세대수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지출대상(전용면적 85㎡ 초과~102㎡ 이하 주택과 102㎡ 초과~135㎡ 이하)인 공동주택 비중을 구함

○ 우선 2009년~2013년간의 85㎡ 초과~102㎡ 이하 및 102㎡ 초과~13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공동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고 다시 비중의 증감률 평균을 구함

○ 5년간의 증감률 평균은 -1.3%로 나타나는데 이는 최근 대형 공동주택보다는 84㎡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부표 A.9-11> 전체 공동주택에서 조세지출대상 규모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세대, %)

	공동주택 세대수	85㎡이하	85㎡초과~102㎡이하	102㎡초과~135㎡이하	135㎡초과	85㎡초과~135㎡ 이하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2009년	8,087,840	5,743,324	1,032,730	960,207	351,579	24.6	
2010년	8,368,915	5,989,175	960,322	1,042,950	376,468	23.9	-2.9
2011년	8,586,687	6,093,685	944,792	1,121,335	426,875	24.1	0.5
2012년	8,853,209	6,218,982	1,015,333	1,171,654	447,240	24.7	2.7
2013년	9,060,597	6,485,822	921,390	1,190,638	462,747	23.3	-5.6
평균						24.1	-1.3

주: 음영부분이 조세지출 대상 공동주택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부표 A.9-12> 2013년 지역별 공동주택 전용면적별 세대수 현황

(단위: 세대)

유형	구분		전용면적				
			소계	85㎡이하	85㎡초과~102㎡이하	102㎡초과~135㎡이하	135㎡초과
전국	총계		9,060,597	6,485,822	921,390	1,190,638	462,747
	분양주택	계	8,126,273	5,572,940	910,189	1,181,441	461,703
		아파트	7,920,580	5,392,148	899,186	1,173,754	455,492
		연립	195,681	171,163	10,767	7,633	6,118
		다세대	10,012	9,629	236	54	93
	임대주택		934,324	912,882	11,201	9,197	1,044

주: 음영부분이 조세지출 대상 공동주택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 5년간의 증감률 평균인 -1.3%를 2013년도의 지역별 비중에 연도별로 적용하여 2014년~2017년간의 조세지출대상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면

○ 지역별로 조세지출대상 공동주택인 전용면적 85㎡ 초과~135㎡ 이하인 주택의 세대수는 아래 <부표 A.9-13>과 같음

<부표 A.9-13> 전체 공동주택 중 85㎡ 초과~135㎡ 이하가 차지하는 세대수 비중

	2012년	2013년	2014년(추정)	2015년(추정)	2016년(추정)	2017년(추정)
전국	0.2470	0.2331	0.2300	0.2270	0.2239	0.2210
서울	0.3878	0.3453	0.3407	0.3362	0.3317	0.3273
부산	0.3352	0.2949	0.2910	0.2871	0.2833	0.2795
대구	0.3209	0.3097	0.3056	0.3015	0.2975	0.2936
인천	0.2795	0.2928	0.2889	0.2851	0.2813	0.2776
광주	0.1162	0.1171	0.1155	0.1140	0.1125	0.1110
대전	0.1870	0.1774	0.1750	0.1727	0.1704	0.1682
울산	0.2856	0.2883	0.2845	0.2807	0.2770	0.2733
세종	0.1574	0.2200	0.2171	0.2142	0.2114	0.2085
경기	0.2622	0.2522	0.2489	0.2455	0.2423	0.2391
강원	0.0784	0.0750	0.0740	0.0730	0.0721	0.0711
충북	0.1175	0.1233	0.1217	0.1200	0.1185	0.1169
충남	0.2265	0.1673	0.1651	0.1629	0.1607	0.1586
전북	0.1483	0.1268	0.1251	0.1235	0.1218	0.1202
전남	0.1321	0.1305	0.1288	0.1271	0.1254	0.1237
경북	0.1302	0.1288	0.1271	0.1254	0.1237	0.1221
경남	0.1047	0.1373	0.1355	0.1337	0.1319	0.1302
제주	0.0715	0.0764	0.0754	0.0744	0.0734	0.0724

○ 위 <부표 A.9-1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도권의 경우는 전국 합산치보다 조세지출 대상 공동주택의 세대 수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전국 기준을 적용하여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광역자치단체별로 나누어 추정하는 것보다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별로 추정하여 합산하는 방법을 선택함

나)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공동주택

□ 2009년~2013년간 국민주택규모 주택이 전체 공동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면 다음과 같음

○ 5년간의 증감률 평균은 0.2%로 나타나는데 앞서 살펴본 85㎡ 초과~135㎡ 이하 주택이 감소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어서 84㎡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부표 A.9-14> 전체 공동주택에서 조세지출대상 규모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세대, %)

	공동주택 세대수	85㎡이하	85㎡이하 이하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2009년	8,087,840	5,743,324	71.0	
2010년	8,368,915	5,989,175	71.6	0.8
2011년	8,586,687	6,093,685	71.0	-0.8
2012년	8,853,209	6,218,982	70.3	-1.0
2013년	9,060,597	6,485,822	71.6	1.9
평균			71.1	0.2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 5년간의 증감률 평균인 0.2%를 2013년도의 지역별 비중에 연도별로 적용하여 2014년~2017년간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면 <부표 A.9-15>와 같음

<부표 A.9-15> 전체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85㎡ 이하)가 차지하는 세대수 비중

	2012년	2013년	2014년(추정)	2015년(추정)	2016년(추정)	2017년(추정)
전국	0.7025	0.7158	0.7173	0.7188	0.7203	0.7218
서울	0.5356	0.5756	0.5768	0.5780	0.5792	0.5804
부산	0.609	0.6507	0.6521	0.6534	0.6548	0.6562
대구	0.5996	0.6134	0.6147	0.6159	0.6172	0.6185
인천	0.6373	0.6275	0.6288	0.6301	0.6314	0.6328
광주	0.8541	0.8523	0.8541	0.8559	0.8576	0.8594
대전	0.7893	0.8011	0.8027	0.8044	0.8061	0.8077
울산	0.6991	0.6963	0.6978	0.6992	0.7007	0.7021
세종	0.8302	0.7641	0.7657	0.7673	0.7689	0.7705
경기	0.6847	0.6919	0.6934	0.6948	0.6962	0.6977
강원	0.8469	0.8519	0.8536	0.8554	0.8572	0.8589
충북	0.8704	0.8634	0.8652	0.8670	0.8688	0.8706
충남	0.7339	0.7960	0.7977	0.7993	0.8010	0.8026
전북	0.8094	0.8347	0.8364	0.8382	0.8399	0.8416
전남	0.8507	0.8513	0.8531	0.8549	0.8566	0.8584
경북	0.8553	0.8570	0.8588	0.8606	0.8623	0.8641
경남	0.8779	0.8401	0.8418	0.8436	0.8453	0.8471
제주	0.9115	0.9067	0.9086	0.9105	0.9124	0.9143

(3) 3단계 : 지역별 ㎡당 연간 월평균 관리비

□ 공동주택 관리비는 관리방법별(자치관리 및 위탁관리), 공동주택단지의 규모(세대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당 관리비가 다르게 나타남

- ○ 자치관리보다는 위탁관리 단지의 관리비가 작고, 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저렴하며, 전용면적이 큰 세대수일수록 관리비가 큼
- ○ 본고에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에서 제공하는 관리비중 위탁관리에 해당하는 연간 월평균 ㎡당 관리비를 추출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는 데 이용함

□ 관리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관리비를 합산하여 조세지출 대상 금액으로 보고 그 규모를 추정함

□ 공동주택 관리비는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사용[57]하고

○ 2017년도의 관리비는 매년 KDI에서 발표하는 경제전망치 중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이용하여 2016년도분에 반영한 추정치를 사용함

- 경제전망치는 조세지출예산서가 발행되는 9월 이전에 발행되는 매년도 상반기의 것을 사용함
- 2016년 상반기에 발행된 「2016~2017년 국내경제 전망」에서 예측한 2017년도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7%임
- 따라서 2017년의 관리비는 2016년도의 관리비에 1.7%만큼을 증가시킨 관리비를 사용함

<부표 A.9-16> 지역별 주거전용면적 1㎡당 관리비

(단위: 원/㎡(주거전용면적 기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1)]	2017년(추정)
전국	700	721	751	791	822	836
서울	831	852	880	926	959	975
부산	671	689	728	764	794	807
대구	644	670	703	752	785	798
인천	697	719	740	782	812	826
광주	542	563	599	644	674	685
대전	664	689	719	765	797	811
울산	641	662	705	748	788	801
세종	627	668	751	779	802	816
경기	717	736	763	805	840	854
강원	709	733	756	782	817	831
충북	672	699	723	762	795	809
충남	650	675	716	751	789	802
전북	614	638	671	714	749	762
전남	616	643	661	690	715	727
경북	599	621	669	706	729	741
경남	580	604	641	678	704	716
제주	613	615	647	723	750	763

주: 1) 2016년은 1월부터 8월까지 평균
1. 단지유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도시형생활주택 등 4가지 유형 전체 평균
2. 경비, 청소, 일반관리 형태는 모두 위탁관리에 대한 관리비
3.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합계 기준임
4. 2017년도는 2016년도에 2017년도 물가전망치 1.7%만큼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추산

자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홈페이지(http://www.k-apt.go.kr)

○ 관리비의 경우도 수도권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음을 알 수 있음

57) 2016년도는 8월까지의 자료를 이용

□ 다만, 조세지출 대상별로 구분된 공동주택 관리비를 이용하여야 하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는 각 세대 면적별로 집계된 자료는 제공하지 않아 국민주택을 포함하여 위탁관리 전체에 해당하는 단위 면적당 관리비를 사용함

(4) 4단계: 조세지출대상 공동주택의 매출세액

가) 전용면적 85㎡ 초과~135㎡ 이하 공동주택

□ 기본산식:

○ 지역별 공동주택세대수 × 위탁관리 비중 × 85㎡ 초과~135㎡ 이하 공동주택 세대수 비중 × ㎡당 연간 월평균 관리비(일반관리비 + 청소비 + 경비비) × 조세지출 대상 세대의 전용주거 면적(중간값인 110㎡)[58] × 12개월 × 부가가치세율(10%)

<부표 A.9-17> 2012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세 규모

(단위: 세대, 원, 억원)

구분	세대수	위탁관리비중	85㎡초과~135㎡이하 세대수 비중	㎡당 관리비	매출세액
서울	1,300,088	0.7884	0.3878	831	436.0
부산	537,714	0.6258	0.3352	671	99.9
대구	421,417	0.4893	0.3209	644	56.3
인천	458,842	0.7571	0.2795	697	89.3
광주	321,131	0.3413	0.1162	542	9.1
대전	285,611	0.8313	0.1870	664	38.9
울산	178,450	0.7259	0.2856	641	31.3
세종	18,440	0.8612	0.1574	627	2.1
경기	2,127,230	0.8245	0.2622	717	435.3
강원	219,632	0.5632	0.0784	709	9.1
충북	237,737	0.7381	0.1175	672	18.3
충남	302,919	0.8003	0.2265	650	47.1
전북	287,312	0.6791	0.1483	614	23.5
전남	230,546	0.5197	0.1321	616	12.9
경북	319,217	0.4296	0.1302	599	14.1
경남	457,781	0.6813	0.1047	580	25.0
제주	26,675	0.15	0.0715	613	0.2
계					1,348.4

58) 조세지출 대상 세대의 전용주거면적을 중간값인 110㎡로 사용

<부표 A.9-18> 2013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세 규모

(단위: 세대, 원, 억원)

구분	세대수	위탁관리비중	85㎡초과~135㎡이하 세대수 비중	㎡당 관리비	매출세액
서울	1,322,580	0.785	0.3453	852	403.2
부산	558,088	0.6431	0.2949	689	96.3
대구	430,418	0.5033	0.3097	670	59.3
인천	472,934	0.7868	0.2928	719	103.4
광주	327,072	0.3584	0.1171	563	10.2
대전	290,780	0.836	0.1774	689	39.2
울산	182,903	0.7376	0.2883	662	34.0
세종	21,778	0.9197	0.22	668	3.9
경기	2,187,537	0.8298	0.2522	736	444.8
강원	223,253	0.5946	0.075	733	9.6
충북	243,946	0.7472	0.1233	699	20.7
충남	309,756	0.799	0.1673	675	36.9
전북	293,131	0.6706	0.1268	638	21.0
전남	242,389	0.5141	0.1305	643	13.8
경북	324,156	0.426	0.1288	621	14.6
경남	472,339	0.6875	0.1373	604	35.5
제주	28,806	0.1632	0.0764	615	0.3
계					1,346.7

<부표 A.9-19> 2014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세 규모

(단위: 세대, 원, 억원)

구분	세대수	위탁관리비중	85㎡초과~135㎡이하 세대수 비중	㎡당 관리비	매출세액
서울	1,367,298	0.7959	0.3407	880	430.7
부산	579,560	0.652	0.2910	728	105.7
대구	440,730	0.5103	0.3056	703	63.8
인천	485,833	0.7977	0.2889	740	109.4
광주	339,959	0.3634	0.1155	599	11.3
대전	301,476	0.8476	0.1750	719	42.4
울산	193,918	0.7479	0.2845	705	38.4
세종	39,292	0.9325	0.2171	751	7.9
경기	2,251,446	0.8413	0.2489	763	474.8
강원	233,575	0.6029	0.0740	756	10.4
충북	254,140	0.7576	0.1217	723	22.4
충남	322,854	0.8101	0.1651	716	40.8
전북	308,081	0.6799	0.1251	671	23.2
전남	259,331	0.5212	0.1288	661	15.2
경북	334,740	0.4319	0.1271	669	16.2
경남	503,436	0.6971	0.1355	641	40.2
제주	31,989	0.1655	0.0754	647	0.3
계					1,453.1

<부표 A.9-20> 2015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세 규모

(단위: 세대, 원, 억원)

구분	세대수	위탁관리비중	85㎡초과~135㎡이하 세대수 비중	㎡당 관리비	매출세액
서울	1,389,064	0.807	0.3362	926	460.7
부산	602,773	0.6611	0.2871	764	115.4
대구	455,175	0.5174	0.3015	752	70.5
인천	497,960	0.8088	0.2851	782	118.5
광주	347,141	0.3684	0.1140	644	12.4
대전	306,065	0.8594	0.1727	765	45.9
울산	201,831	0.7583	0.2807	748	42.4
세종	56,814	0.9455	0.2142	779	11.8
경기	2,314,777	0.853	0.2455	805	515.1
강원	240,003	0.6113	0.0730	782	11.1
충북	265,425	0.7681	0.1200	762	24.6
충남	333,574	0.8214	0.1629	751	44.2
전북	319,383	0.6894	0.1235	714	25.6
전남	270,327	0.5285	0.1271	690	16.5
경북	348,718	0.4379	0.1254	706	17.8
경남	525,861	0.7068	0.1337	678	44.5
제주	34,060	0.1678	0.0744	723	0.4
계					1,577.4

<부표 A.9-21> 2016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세 규모

(단위: 세대, 원, 억원)

구분	세대수	위탁관리비중	85㎡초과~135㎡이하 세대수 비중	㎡당 관리비	매출세액
서울	1405934	0.8182	0.3317	959	483.0
부산	613114	0.6703	0.2833	794	122.0
대구	477645	0.5246	0.2975	785	77.2
인천	507068	0.8201	0.2813	812	125.4
광주	355435	0.3736	0.1125	674	13.3
대전	311444	0.8714	0.1704	797	48.7
울산	208014	0.7688	0.277	788	46.1
세종	64198	0.9586	0.2114	802	13.8
경기	2394314	0.8649	0.2423	840	556.4
강원	245565	0.6198	0.0721	817	11.8
충북	272653	0.7788	0.1185	795	26.4
충남	354969	0.8328	0.1607	789	49.5
전북	325907	0.699	0.1218	749	27.4
전남	281092	0.5358	0.1254	715	17.8
경북	365381	0.444	0.1237	729	19.3
경남	540962	0.7166	0.1319	704	47.5
제주	36750	0.1701	0.0734	750	0.5
계					1,686.1

<부표 A.9-22> 2017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세 규모

(단위: 세대, 원, 억원)

구분	세대수	위탁관리비중	85㎡초과~135㎡이하 세대수 비중	㎡당 관리비	매출세액
서울	1,444,669	0.8296	0.3273	975	504.8
부산	637,770	0.6796	0.2795	807	129.0
대구	492,801	0.5319	0.2936	798	81.1
인천	530,015	0.8315	0.2776	826	133.4
광주	363,387	0.3788	0.1110	685	13.8
대전	319,462	0.8835	0.1682	811	50.8
울산	219,779	0.7795	0.2733	801	49.5
세종	78,580	0.9719	0.2085	816	17.2
경기	2,584,793	0.8769	0.2391	854	610.9
강원	260,144	0.6284	0.0711	831	12.7
충북	297,134	0.7896	0.1169	809	29.3
충남	387,347	0.8444	0.1586	802	54.9
전북	339,156	0.7087	0.1202	762	29.1
전남	291,133	0.5433	0.1237	727	18.8
경북	396,881	0.4502	0.1221	741	21.3
경남	573,944	0.7265	0.1302	716	51.3
제주	40,938	0.1725	0.0724	763	0.5
계					1,808.5

나)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공동주택

□ 기본산식 :

○ 지역별 공동주택세대수 × 위탁관리 비중 × 85㎡ 이하 공동주택 세대수 비중 × ㎡당 연간 월평균 관리비(일반관리비 + 청소비 + 경비비) × 조세지출 대상 세대의 전용주거 면적(중간값인 62.5㎡)[59] × 12개월 × 부가가치세율(10%)

□ 여기서 조세지출 대상 세대의 전용 주거면적을 62.5㎡로 적용함

○ 2015년 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합한 전체 공동주택 규모 중 40㎡~60㎡과 60㎡~85㎡ 규모의 주택이 74%를 차지하며 두 구간의 비중도 34.5%와 39.4%로 거의 대등함

○ 20㎡~40㎡ 구간의 주택비중도 11%에 이르나 아파트와 같이 위탁관리를 통하여 관리비를 납부하는 가구는 당해 구간에서는 그 수가 작을 것으로 판단하여 위 두 구간의 중간값을 적용함

59) 조세지출 대상 세대의 전용주거면적을 중간값인 110㎡로 사용

<부표 A.9-23>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수 비중

(단위: 호, %)

	공동주택 수	비중
합계	11,397,714	100.000
20㎡ 이하	161,998	1.421
20㎡~40㎡	1,250,903	10.975
40㎡~60㎡	3,931,260	34.492
60㎡~85㎡	4,494,196	39.431
85㎡~100㎡	184,827	1.622
100㎡~130㎡	859,527	7.541
130㎡~165㎡	431,186	3.783
165㎡~230㎡	76,995	0.676
230㎡ 초과	6,822	0.060

주: 1. 아파트, 연립, 다세대 합계 기준
2. 단독주택 및 기타 제외
자료: 2015년 주택총조사

□ 85㎡ 초과~135㎡ 이하 규모에 대해 적용한 동일한 방식으로 매출세액을 구하면 다음과 같음

<부표 A.9-24> 연도별 지역별 국민주택 규모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규모

(단위: 억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추정)
서울	342.2	381.9	414.3	450.0	479.2	508.7
부산	103.1	120.7	134.5	149.2	160.3	172.1
대구	59.7	66.8	72.9	81.8	91.1	97.0
인천	115.7	125.9	135.3	148.8	159.9	172.8
광주	38.1	42.2	47.4	52.9	57.6	60.8
대전	93.3	100.6	110.6	121.4	130.8	138.7
울산	43.5	46.6	53.5	60.0	66.2	72.3
세종	6.2	7.7	15.8	24.1	28.5	36.0
경기	645.8	693.3	751.5	828.3	908.3	1,012.9
강원	55.7	62.2	68.2	73.6	79.9	87.5
충북	77.0	82.5	90.3	101.0	110.0	123.9
충남	86.7	99.7	112.0	123.4	140.1	157.9
전북	72.7	78.5	88.2	98.8	107.5	115.6
전남	47.1	51.2	57.2	63.2	69.2	74.0
경북	52.7	55.1	62.3	69.6	76.5	85.8
경남	119.1	123.6	142.0	159.4	173.0	189.7
제주	1.7	2.0	2.3	2.8	3.2	3.7
계	1,960.3	2,140.4	2,358.4	2608.4	2,841.3	3,109.4

(5) 매입세액 및 부가가치세액 추정

□ 매입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먼저 서비스업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을 구함

○ 먼저 국세통계연보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법인 및 일반의 매출과표와 매입과표액을 가중하여 법인과 일반의 부가가치율을 구한 후 합산하여 기별 과세표준 가중 부가가치율을 구함

※ 1기 또는 2기 과세표준 가중부가가치율 = {((법인매출과표 + 법인매입과표)/(법인매출과표 + 법인매입과표 + 일반매출과표 + 일반매입과표)) × 법인부가가치율} + {((일반매출과표 + 일잔매입과표)/(법인매출과표 + 법인매입과표 + 일반매출과표 + 일반매입과표)) × 일반부가가치율}

○ 이후 1기와 2기의 평균을 구하여 연평균 부가가치율을 구함

○ 2016년도와 2017년도의 부가가치는 2012년~2015년의 부가가치율을 평균(39.1%)하여 적용함

<부표 A.9-25> 서비스업 부가가치율

(단위: %)

		부가가치율		과세표준 가중부가가치율		적용 부가가치율 (A+B)/2
		제1기	제2기	제1기(A)	제2기(B)	
2012년	법인	33.2	35.8	35.2	37.3	36.2
	일반	54.0	51.6			
2013년	법인	34.4	35.6	36.3	37.2	36.8
	일반	54.1	51.6			
2014년	법인	34.8	36.9	36.7	37.9	37.3
	일반	53.2	45.9			
2015년	법인	44.7	45.1	46.1	46.1	46.1
	일반	55.4	53.5			
2016년						39.1
2017년						39.1

□ 이제 앞서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의 매출과표와 적용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매입과표와 매입세액을 구한 후 부가가치세액을 구함

○ 매입과표: 매출과표 - (매출과표 × 부가가치율)

가) 전용면적 85㎡ 초과~135㎡ 이하 공동주택

<부표 A.9-26> 2012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
(85㎡ 초과~135㎡ 이하)

(단위: 억원)

	매출과표 (A)	매입과표 (B)	부가가치세액 (A×0.1 - B×0.1)
서울특별시	4,359.9	2,779.9	158.0
부산광역시	998.9	636.9	36.2
대구광역시	562.5	358.7	20.4
인천광역시	893.4	569.7	32.4
광주광역시	91.1	58.1	3.3
대전광역시	389.1	248.1	14.1
울산광역시	313.1	199.6	11.3
세종특별자치시	20.7	13.2	0.7
경기도	4,353.1	2,775.6	157.8
강원도	90.7	57.9	3.3
충청북도	182.8	116.6	6.6
충청남도	471.2	300.4	17.1
전라북도	234.6	149.6	8.5
전라남도	128.7	82.1	4.7
경상북도	141.1	90.0	5.1
경상남도	250.1	159.5	9.1
제주특별자치도	2.3	1.5	0.1
계	13,483.6	8,597.2	488.6

<부표 A.9-27> 2013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
(85㎡ 초과~135㎡ 이하)

(단위: 억원)

	매출과표 (A)	매입과표 (B)	부가가치세액 (A×0.1 - B×0.1)
서울특별시	4,031.8	2,550.1	148.2
부산광역시	962.6	608.8	35.4
대구광역시	593.3	375.3	21.8
인천광역시	1,034.0	654.0	38.0
광주광역시	102.0	64.5	3.7
대전광역시	392.2	248.1	14.4
울산광역시	339.9	215.0	12.5

<부표 A.9-27>의 계속

	매출과표 (A)	매입과표 (B)	부가가치세액 (A×0.1 - B×0.1)
세종특별자치시	38.9	24.6	1.4
경기도	4,447.6	2,813.1	163.5
강원도	96.3	60.9	3.5
충청북도	207.4	131.2	7.6
충청남도	368.9	233.3	13.6
전라북도	209.9	132.8	7.7
전라남도	138.0	87.3	5.1
경상북도	145.8	92.2	5.4
경상남도	355.5	224.8	13.1
제주특별자치도	2.9	1.8	0.1
계	13,467.1	8,517.8	494.9

<부표 A.9-28> 2014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
(85㎡ 초과~135㎡ 이하)

(단위: 억원)

	매출과표 (A)	매입과표 (B)	부가가치세액 (A×0.1 - B×0.1)
서울특별시	4,306.8	2,699.9	160.7
부산광역시	1,056.7	662.4	39.4
대구광역시	637.8	399.8	23.8
인천광역시	1,093.7	685.6	40.8
광주광역시	112.8	70.7	4.2
대전광역시	424.4	266.1	15.8
울산광역시	384.0	240.7	14.3
세종특별자치시	78.9	49.4	2.9
경기도	4,748.3	2,976.7	177.2
강원도	104.0	65.2	3.9
충청북도	223.6	140.2	8.3
충청남도	408.1	255.8	15.2
전라북도	232.1	145.5	8.7
전라남도	151.9	95.2	5.7
경상북도	162.3	101.7	6.1
경상남도	402.4	252.2	15.0
제주특별자치도	3.4	2.1	0.1
계	14,531.0	9,109.4	542.2

<부표 A.9-29> 2015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
(85㎡ 초과~135㎡ 이하)

(단위: 억원)

	매출과표 (A)	매입과표 (B)	부가가치세액 (A×0.1 - B×0.1)
서울특별시	4,606.6	2,482.0	212.5
부산광역시	1,153.8	621.7	53.2
대구광역시	704.8	379.8	32.5
인천광역시	1,185.3	638.6	54.7
광주광역시	123.9	66.8	5.7
대전광역시	458.7	247.2	21.2
울산광역시	424.2	228.5	19.6
세종특별자치시	118.3	63.7	5.5
경기도	5,150.9	2,775.3	237.6
강원도	110.6	59.6	5.1
충청북도	246.1	132.6	11.3
충청남도	442.5	238.4	20.4
전라북도	256.3	138.1	11.8
전라남도	165.4	89.1	7.6
경상북도	178.5	96.2	8.2
경상남도	444.7	239.6	20.5
제주특별자치도	4.1	2.2	0.2
계	15,774.5	8,499.3	727.5

<부표 A.9-30> 2016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
(85㎡ 초과~135㎡ 이하)

(단위: 억원)

	매출과표 (A)	매입과표 (B)	부가가치세액 (A×0.1 - B×0.1)
서울특별시	4,830.2	2,941.3	188.9
부산광역시	1,220.3	743.1	47.7
대구광역시	772.4	470.4	30.2
인천광역시	1,253.8	763.5	49.0
광주광역시	132.9	80.9	5.2
대전광역시	486.5	296.3	19.0
울산광역시	460.8	280.6	18.0
세종특별자치시	137.7	83.9	5.4
경기도	5,563.6	3,387.9	217.6
강원도	118.3	72.1	4.6

<부표 A.9-30>의 계속

	매출과표 (A)	매입과표 (B)	부가가치세액 (A×0.1 - B×0.1)
충청북도	264.1	160.8	10.3
충청남도	494.8	301.3	19.3
전라북도	274.3	167.1	10.7
전라남도	178.2	108.5	7.0
경상북도	193.1	117.6	7.6
경상남도	475.2	289.3	18.6
제주특별자치도	4.5	2.8	0.2
계	16,860.7	10,267.3	659.3

<부표 A.9-31> 2017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
(85㎡ 초과~135㎡ 이하)

(단위: 억원)

	매출과표 (A)	매입과표 (B)	부가가치세액 (A×0.1 - B×0.1)
서울특별시	5,048.5	3,074.3	197.4
부산광역시	1,290.5	785.8	50.5
대구광역시	810.7	493.6	31.7
인천광역시	1,333.9	812.3	52.2
광주광역시	138.2	84.1	5.4
대전광역시	508.2	309.5	19.9
울산광역시	495.0	301.5	19.4
세종특별자치시	171.5	104.4	6.7
경기도	6,109.2	3,720.2	238.9
강원도	127.5	77.6	5.0
충청북도	292.9	178.4	11.5
충청남도	549.2	334.4	21.5
전라북도	290.6	177.0	11.4
전라남도	187.8	114.3	7.3
경상북도	213.4	129.9	8.3
경상남도	513.1	312.5	20.1
제주특별자치도	5.1	3.1	0.2
계	18,085.2	11,013.0	707.2

나)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공동주택

<부표 A.9-32> 2012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85㎡ 이하)

(단위: 억원)

	매출과표 (A)	매입과표 (B)	부가가치세액 (A×0.1 - B×0.1)
서울특별시	3,421.5	2,181.6	124.0
부산광역시	1,031.3	657.6	37.4
대구광역시	597.2	380.8	21.6
인천광역시	1,157.3	737.9	41.9
광주광역시	380.5	242.6	13.8
대전광역시	933.3	595.1	33.8
울산광역시	435.4	277.6	15.8
세종특별자치시	62.0	39.5	2.2
경기도	6,457.8	4,117.5	234.0
강원도	557.1	355.2	20.2
충청북도	769.8	490.8	27.9
충청남도	867.3	553.0	31.4
전라북도	727.2	463.7	26.4
전라남도	470.9	300.2	17.1
경상북도	526.9	336.0	19.1
경상남도	1,191.1	759.4	43.2
제주특별자치도	16.8	10.7	0.6
계	19,603.4	12,499.2	710.4

<부표 A.9-33> 2013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85㎡ 이하)

(단위: 억원)

	매출과표 (A)	매입과표 (B)	부가가치세액 (A×0.1 - B×0.1)
서울특별시	3,818.9	2,415.4	140.3
부산광역시	1,206.9	763.4	44.4
대구광역시	667.7	422.3	24.5
인천광역시	1,259.2	796.4	46.3
광주광역시	421.9	266.8	15.5
대전광역시	1,006.3	636.5	37.0
울산광역시	466.4	295.0	17.1
세종특별자치시	76.7	48.5	2.8
경기도	6,933.1	4,385.1	254.8

<부표 A.9-33>의 계속

	매출과표 (A)	매입과표 (B)	부가가치세액 (A×0.1 - B×0.1)
강원도	621.7	393.2	22.8
충청북도	825.1	521.9	30.3
충청남도	997.4	630.8	36.7
전라북도	785.1	496.6	28.9
전라남도	511.6	323.6	18.8
경상북도	551.2	348.6	20.3
경상남도	1,235.8	781.6	45.4
제주특별자치도	19.7	12.4	0.7
계	21,404.4	13,538.1	786.6

<부표 A.9-34> 2014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85㎡ 이하)

(단위: 억원)

	매출과표 (A)	매입과표 (B)	부가가치세액 (A×0.1 - B×0.1)
서울특별시	4,142.9	2,597.2	154.6
부산광역시	1,345.4	843.4	50.2
대구광역시	728.9	456.9	27.2
인천광역시	1,352.5	847.9	50.5
광주광역시	474.0	297.2	17.7
대전광역시	1,106.1	693.4	41.3
울산광역시	535.1	335.4	20.0
세종특별자치시	158.0	99.1	5.9
경기도	7,515.5	4,711.4	280.4
강원도	681.6	427.3	25.4
충청북도	903.3	566.3	33.7
충청남도	1,120.3	702.3	41.8
전라북도	881.7	552.7	32.9
전라남도	571.6	358.4	21.3
경상북도	623.0	390.5	23.2
경상남도	1,420.3	890.4	53.0
제주특별자치도	23.3	14.6	0.9
계	23,583.6	14,784.5	879.9

<부표 A.9-35> 2015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85㎡ 이하)

(단위: 억원)

	매출과표 (A)	매입과표 (B)	부가가치세액 (A×0.1 - B×0.1)
서울특별시	4,500.0	2,424.6	207.5
부산광역시	1,492.1	803.9	68.8
대구광역시	818.1	440.8	37.7
인천광역시	1,488.5	802.0	68.6
광주광역시	528.7	284.8	24.4
대전광역시	1,214.0	654.1	56.0
울산광역시	600.4	323.5	27.7
세종특별자치시	240.8	129.7	11.1
경기도	8,282.7	4,462.7	382.0
강원도	736.0	396.6	33.9
충청북도	1,010.2	544.3	46.6
충청남도	1,233.6	664.7	56.9
전라북도	988.3	532.5	45.6
전라남도	632.0	340.5	29.1
경상북도	695.8	374.9	32.1
경상남도	1,594.4	859.0	73.5
제주특별자치도	28.2	15.2	1.3
계	26,083.7	14,053.9	1,203.0

<부표 A.9-36> 2016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85㎡ 이하)

(단위: 억원)

	매출과표 (A)	매입과표 (B)	부가가치세액 (A×0.1 - B×0.1)
서울특별시	4,792.3	2,918.3	187.4
부산광역시	1,602.5	975.9	62.7
대구광역시	910.6	554.5	35.6
인천광역시	1,599.1	973.8	62.5
광주광역시	575.7	350.6	22.5
대전광역시	1,307.7	796.3	51.1
울산광역시	662.2	403.3	25.9
세종특별자치시	284.6	173.3	11.1
경기도	9,083.4	5,531.3	355.2
강원도	799.4	486.8	31.3
충청북도	1,100.0	669.8	43.0
충청남도	1,401.2	853.2	54.8
전라북도	1,074.8	654.5	42.0
전라남도	691.9	421.3	27.1
경상북도	764.9	465.8	29.9
경상남도	1,730.2	1,053.6	67.7
제주특별자치도	32.1	19.5	1.3
계	28,412.6	17,301.8	1,111.1

<부표 A.9-37> 2017년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85㎡ 이하)

(단위: 억원)

	매출과표 (A)	매입과표 (B)	부가가치세액 (A×0.1 - B×0.1)
서울특별시	5,086.8	3,097.6	198.9
부산광역시	1,721.3	1,048.2	67.3
대구광역시	970.3	590.9	37.9
인천광역시	1,727.5	1,052.0	67.6
광주광역시	607.8	370.1	23.8
대전광역시	1,386.7	844.4	54.2
울산광역시	722.6	440.0	28.3
세종특별자치시	360.1	219.3	14.1
경기도	10,128.7	6,167.9	396.1
강원도	875.1	532.9	34.2
충청북도	1,239.4	754.7	48.5
충청남도	1,579.1	961.6	61.8
전라북도	1,156.1	704.0	45.2
전라남도	740.3	450.8	29.0
경상북도	858.1	522.5	33.6
경상남도	1,896.8	1,155.0	74.2
제주특별자치도	36.9	22.5	1.4
계	31,093.7	18,934.5	1,215.9

5. 추정결과

□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추이

<부표 A.9-38> 연도별 조세지출 추정 규모 추이

(단위: 억원)

연도	2015 (잠정)	2016 (전망)	2017 (전망)
85㎡초과~135㎡이하	727.5	659.3	707.2
85㎡이하	1,203.0	1,111.1	1,215.9
계	1,930.5	1,770.4	1,923.1

6. 문제점

□ 동 조세지출에 대한 규모추정은 단순 산술계산에 의한 것으로 다음의 미시자료가 구비되면 비교적 쉽게 규모추정을 할 수 있는 항목임

- ○ 우선 읍·면단위까지 구분된 지역별 공동주택 세대수 현황
- ○ 둘째, 지역별 공동주택을 읍·면단위까지 구분하되 주거전용면적을 국민주택규모와 그 이상으로 나누어진 세대수 자료
- ○ 시·군(읍·면)·구별로 구분되고 주거 전용면적별로 구분된 관리비 내역

<부표 A.9-39> 향후 규모추정에 필요한 자료 구조

(단위: 호, 원/㎡,)

	구분(㎡)	자체관리					위탁관리				
		분양주택			임대주택	㎡당 관리비	분양주택			임대주택	㎡당 관리비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시·군(읍.면)·구 별	20㎡ 이하										
	20㎡~40㎡										
	40㎡~60㎡										
	60㎡~85㎡										
	85㎡~100㎡										
	100㎡~130㎡										
	130㎡~165㎡										
	165㎡~230㎡										
	230㎡ 초과										
⋮	20㎡ 이하										
	20㎡~40㎡										
	40㎡~60㎡										
	60㎡~85㎡										
	85㎡~100㎡										
	100㎡~130㎡										
	130㎡~165㎡										
	165㎡~230㎡										
	230㎡ 초과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13~2017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http://www.k-apt.go.kr)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온나라부동산정보3.0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

A.10.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의4호)

1. 제도개요 및 연혁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의4호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가. 도입 배경 및 목적

□ (도입배경)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인해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함

○ 이는 의료용역 및 주택관리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나 장애인 용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이 어긋남

□ (도입목적) 노인복지주택에 공급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추가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통합에 이바지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794) 참고

□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나. 연혁

□ 주요 세법 변경사항

○ 2010년 12월 27일 일부개정 : 제도 신설

다. 정책대상자 및 수혜자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됨

□ 본 조세지출의 정책대상자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가 가능한 60세 이상인 자임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대상자는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있음

- 의료목적보다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정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 입소가 불가함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입소

○ 노인복지주택은 단독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노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 수혜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자로 국민주택규모가 아닌 노인복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함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100㎡ 이하인 주택

□ 보건복지부의 '2013~16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 현황은 <부표 A.10-1>과 같음

○ <부표 A.10-1>에 제시된 33개 시설 중 31개 시설이 노인복지주택을 운영 중이며, 2개 시설은 '14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포함되었다가 이후 배제됨

-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더클래식500'은 현재 노인요양시설로 분류되어 노인복지주택 통계에서 배제되었으며, '후성누리움'은 노인복지시설 명단에 없음

○ 운영방식에 따라 살펴보면, 분양방식으로 5개 시설, 임대방식으로 15개 시설, 혼합방식(분양, 임대 둘 다)으로 11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총 5,508세대이며, 분양방식은 1,138세대, 임대방식 1,858세대, 혼합방식(분양, 임대) 2,521세대

□ 노인복지주택 시설 내에 일부 세대만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해당"으로 표시

○ 세대당 전용면적이 85㎡를 기준으로 수혜대상 여부를 판단함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시설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100㎡를 넘지 않음
  - 아름다운 은빛농장의 경우, 임대가능주택이 30세대인 것에 비해 건축물대장에 나온 건축면적은 335.9㎡로 한 세대당 전용면적이 100㎡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세대별 전용면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용도가 "노인복지시설", "노유자시설"로 표시한 면적을 세대수로 나눈 값이 85㎡ 이하인 경우에 국민주택 규모를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함

- 골든팰리스의 경우, "2016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나온 전화로 연결이 안되고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용도변경되어 사용 중인 것을 볼 때 폐업한 것으로 판단됨
  - 2016년 5월 16일, 노유자시설(유료복지주택)이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음
- 운영주체가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 및 사회복지법인 등일 경우에는, 규모가 영세하여 세대당 85㎡ 이상인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는 시설이 적음
  - 명지엘펜하임에서 전용면적 105.58㎡인 노인복지주택을 66세대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됨
-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5개 노인복지주택시설도 85㎡를 넘지 않음

□ 노인복지주택을 국민주택규모에 따라 분류해 보면, <부표 A.10-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국민주택규모를 만족하는 주택은 총 4,745세대이며, 814세대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이므로 수혜요건을 만족하지 못함

- 후성누리움은 2016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에서 노인복지주택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4,694세대가 국민주택규모를 만족하고 있음

○ 85㎡ 이상인 주택의 총면적은 109,180.4㎡이며, 85㎡ 이하인 주택의 총면적은 264,308.7㎡임

- 후성누리움을 제외하면 85㎡ 이하인 주택의 총면적은 260,050.117㎡임

<부표 A.10-1> 2012~2015년 노인복지주택 분양현황

(단위: 세대)

지역	시군구	시설명	계	분양	임대	혼합		규모 해당 여부
						분양	임대	
서울	강동구	후성누리움	(51)	(51)	0	0	0	해당
서울	강서구	서울시니어스타워 ㈜가양본부	350	0	0	188	162	일부 해당
서울	강남구	서울시니어스타워 ㈜강남본부	95	0	0	64	31	해당
서울	강서구	서울시니어스타워 ㈜강서본부	142	0	0	101	41	일부 해당
서울	강서구	그레이스 힐	182	0	0	137	45	해당
서울	마포구	상암카이저팰리스클래식	240	240	0	0	0	해당
서울	성북구	노블레스타워	239	0	0	115	124	해당
서울	용산구	하이원빌리지	114	0	114	0	0	해당
서울	은평구	시니어캐슬 클라시온	134	134	0	0	0	해당
서울	종로구	골든팰리스	83	0	83	0	0	알 수 없음
서울	중구	서울시니어스	144	0	144	0	0	해당
서울	중구	정동상림원	98	98	0	0	0	해당 안됨
부산	기장군	낙원대실버타운	65	0	65	0	0	해당
부산	수영구	흰돌실버타운	208	0	208	0	0	해당
인천	서구	마리스텔라	264	0	264	0	0	해당
인천	서구	보미골드리즌빌	216	0	0	87	129	일부 해당
세종	세종시	밀마루복지마을	100	0	100	0	0	해당
경기	성남시	엔젤아크	33	0	33	0	0	해당
경기	가평군	청심빌리지	155	0	155	0	0	해당
경기	하남시	블루밍더클래식	220	220	0	0	0	일부 해당
경기	남양주시	수동시니어타운	136	0	136	0	0	해당
경기	성남시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	254	0	0	181	73	일부 해당
경기	성남시	더헤리티지	390	0	0	341	49	일부 해당
경기	성남시	정원속궁전	170	0	0	150	20	해당
경기	성남시	성남시 아리움	19	0	19	0	0	해당
경기	수원시	유당마을	257	0	257	0	0	해당
경기	용인시	명지엘펜하임	336	0	0	55	281	일부 해당
강원	홍천군	아름다운 은빛농장	30	0	30	0	0	해당
전북	전주시	옥성골든카운티	446	446	0	0	0	해당
전북	김제시	김제노인 전용주택	150	0	150	0	0	해당
전북	정읍시	내장산실버 아파트	147	0	0	7	140	해당
경북	김천시	월명성모의집 노인복지주택	100	0	100	0	0	해당
합계			5,517	1,488	1,858	1426	1095	-

주: 후성누리움은 2016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부터 노인복지주택에서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 2013~16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세대수 및 운영방식별 세대수)

<부표 A.10-2> 국민주택규모 기준 노인복지주택현황

(단위: 세대)

지역	설치일	시설명	85㎡ 이상		85㎡ 이하	
			총면적(㎡)	세대수	총면적(㎡)	세대수
서울	2007.04.08	후성누리움	0	0	4,258.59	51
서울	2008.01.29	서울시니어스 타워㈜가양본부	934.48	8	22,169.68	342
서울	2015.04.28	서울시니어스 타워㈜강남본부	0	0	3,988.30	95
서울	2003.03.25	서울시니어스 타워㈜강서본부	352.76	4	8,422.68	138
서울	2007.03.22	그레이스 힐	0	0	9,833.45	182
서울	2010.12.31	상암카이저팰리스 클래식	23,285.16	182	4,917.24	58
서울	2008.04.02	노블레스타워	0	0	11,404.37	239
서울	2009.09.10	하이원빌리지	0	0	5,441.28	114
서울	2007.09.28	시니어캐슬 클라시온	0	0	7,168.50	134
서울	2008.06.26	골든팰리스	알 수 없음	0	5,097.28	83
서울	2015.07.17	서울시니어스	0	0	5,298.48	144
서울	2006.11.25	정동상림원	16,156.61	98	0.00	0
부산	2004.07.02	낙원대실버타운	0	0	2,410.40	65
부산	2000.10.19	흰돌실버타운	0	0	8,962.83	208
인천	2015.01.21	마리스텔라	0	0	12,196.80	264
인천	2009.01.14	보미골드리즌빌	8,131.05	81	10,667.34	135
세종	2014.11.17	밀마루복지마을	0	0	3,000.00	100
경기	2013.07.04	엔젤아크	알 수 없음	0	1,880.71	33
경기	2005.06.08	청심빌리지	0	0	5,093.48	155
경기	2010.08.02	블루밍더클래식	3,320.01	36	15,411.11	184
경기	2003.09.20	수동시니어타운	0	0	4,657.61	136
경기	2003.08.23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	1,190.97	9	13,477.41	245
경기	2009.09.18	더헤리티지	48,841.04	330	4,437.20	60
경기	2005.03	정원속궁전	0	0	7,303.55	161
경기	2009.02.17	성남시 아리움	알 수 없음	0	1,507.75	19
경기	1988.07.01	유당마을	알 수 없음	0	10,806.03	257
경기	2006.11.30	명지엘펜하임	6,968.28	66	21,747.96	270
강원	2009.01.09	아름다운 은빛농장	알 수 없음	0	311.08	30
전북	2013.05.30	옥성골든카운티	0	0	34,555.60	446
전북	2000.10.30	김제노인 전용주택	0	0	4,901.71	150
전북	2011.11.16	내장산실버 아파트	0	0	8,195.32	147
경북	1999.04.12	월명성모의집 노인복지주택	0	0	4,785.00	100
합계			109,180.4	814	264,308.7	4745

주: 후성누리움은 2016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부터 노인복지주택에서 제외됨

자료: 1. 보건복지부, 2013~16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세대수 및 운영방식별 세대수)

2. 노인시설업체 공개자료, 3.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

2. 추정모형 검토

가. 감면규모 추정에 사용된 자료

□ 동 조항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국세청의 개별 납세 서식의 부속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면세사업 수입금액"관련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국세청과 협의했으나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어서 해당 자료를 통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노인복지시설 현황자료"는 평형별 정보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시설의 홈페이지에 나온 정보와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활용

○ 노인복지시설에서 공개하는 자료를 활용하거나 전화문의를 통해 평형별 세대수를 파악

- 전화문의가 어려운 경우에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웹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평형별 세대수를 확보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며 건축물대장을 발급·열람할 수 있음

○ 건축물대장에서 세대별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에 나와 있는 용도별 면적을 활용함

- 집합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별 면적을 활용함
  - 용도별 면적을 이용할 경우에 주거전용면적보다 크므로 과다추정 가능성이 존재함
  - 골든팰리스, 엔젤아크, 아리움(성남시), 아름다운 은빛농장 등 총 4개 시설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서 용도별 면적으로 대신함

○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일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 현황자료"를 참고하였음

□ 관리비 정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나와 있는 지역별·연도별 ㎡당 월평균 관리비를 이용함

○ 관리비 세부분류 중 동 조항에 의해 면세 대상인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의 합계는 <부표 A.10-3>에서 지역별 및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음

<부표 A.10-3> 지역별·연도별 1㎡당 월평균 면세대상 관리비

(단위: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서울	850	872	899	942
부산	676	694	732	768
대구	653	674	708	751
인천	700	720	742	784
광주	528	549	577	617
대전	659	683	715	757
울산	634	656	694	737
세종	628	661	723	770
경기	725	745	772	812
강원	695	718	747	776
충북	683	708	738	777
충남	656	682	722	756
전북	607	632	662	701
전남	597	623	649	677
경북	600	622	663	698
경남	579	604	641	676
제주	598	615	653	710

자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나. 추정방법

□ 면세대상 관리비를 지역별로 먼저 추정하고 이를 합산한 해당 연도의 면세대상 관리비 합계를 매출세액 과세표준으로 추정하고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면세대상 관리비 합계에 적용하여 매입세액 과세표준으로 추정

○ 동 제도의 면세대상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각 과세표준 추정치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최종적으로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추정

- 국세통계연보상의 부가가치율의 경우 중분류 업태별 부가가치율만 파악되고 있어서 조세지출 규모 추정오차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여기서는 국세통계연보상 업태구분 중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매입세액 과세표준을 추정할 계획임

○ 매출세액 과세표준 산출은 앞에서 살펴본 지역별 면세대상 주거전용면적과 지역별·연도별 1㎡당 연간 월평균 면세대상 관리비에 연도별 운영기간을 곱하여

산출하여 합산

- 지역별 면세대상 매출세액 과세표준 Y_{it}는 다음과 같이 산출

$$Y_{it} = \text{면세대상 총주거용 면적} \times \text{월평균 면세대상 관리비} \times \text{연도별 운영기간}$$

  - 면세대상 총주거용 면적은 <부표 A.10-2>에 제시된 각 시설별 85㎡ 이하 노인복지주택 총면적을 이용
  - 월평균 면세대상 관리비는 각 지역별·연도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의 합계액으로 <부표 A.10-3>에 제시
- t-연도 전국 면세대상 매출세액 과세표준은 지역별 면세대상 매출세액 과세표준의 합인 $Y_t = \sum_i Y_{it}$이고 매출세액은 Y_t의 10%로 계산
- t-연도 해당 매입세액 과세표준은 서비스업 부가가치율 v_t를 이용하여 $X_t = (1-v_t)Y_t$로 계산하고 매입세액은 X_t의 10%
  - <부표 A.9-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세통계연보에서 찾을 수 있는 서비스업 부가가치율은 2012년 36.2%, 2013년 36.8%, 2014년 37.3%, 2015년 46.1%로 나타남
  - 2016년과 2017년 조세지출 규모 전망과정에 2015년 부가가치율을 사용

○ 결과적으로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TE_t = (Y_t - X_t) \times 0.1 = v_t Y_t \times 0.1$

□ 노인복지주택 현황 등의 현재 가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함

○ 노인복지시설에 공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 입주현황은 "연도별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를 보면 파악할 수 있지만, 평형별로 입주현황을 제공하지 않고 시설별로 제공하여 이를 추정에 적용하기 어려움
- 노인복지주택시설별 평균 전용면적과 입주현황을 곱해서 임대 및 분양 중인 주거전용면적을 구하는 방법을 고려하였지만 적용할 수 없음
  - 8개 시설이 국민주택규모 85㎡ 이상 세대와 85㎡ 이하 세대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공실이 발생한 평형대가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감면규모가 달라짐
  - 공실기간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해 감면규모 추정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노인복지주택시설의 평형별 세대수 및 입주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면 보다 정교한 추계모형을 개발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및 각 노인복지주택시설의 협조를 통해 노인복지주택시설 현황자료를 구체적으로 수집한다면 실적치와 추정금액의 오차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이 포함되는 세세분류 업태별 부가가치율을 파악하지 못하고 서비스업 전체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하고 있어서 오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향후 보다 세분류 업태별 부가가치율을 파악할 수 있는 국세청 자료의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추정결과

□ 노인복지시설 수는 2012년 총 22개에서 2015년 31개로 9개 증가하였으며,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2012년 0.61억원에서 2015년 약 1.16억원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망됨

○ 공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추정을 하였으므로 실제 감면규모는 이보다 다소 적을 수 있음

○ 엔젤아크는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는 노인복지주택으로 나와 있지만, 전화로 확인 시 요양시설이라고 답하여 노인복지주택에서 제외할 경우 감면규모가 소폭 작아짐

□ 노인복지주택 일반관리비, 청소비 및 경비비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노인복지주택시설 수도 매년 증가하여 감면규모가 연평균 24.04%씩 증가함

<부표 A.10-4> 노인복지시설의 면세대상 관리비 및 조세지출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국민주택 규모 노인복지시설 총주거면적 추정치	183,771.52	225,630.67	244,215.93	260,050.15
노인복지주택 면세대상 관리용역 매출액 추정치	16.81	19.46	21.65	25.20
연도별 감면규모	0.61	0.72	0.81	1.16

<부표 A.10-5> 노인복지주택 관리비 중 면세대상 매출액 과세표준 추정치

(단위: 원)

지역	시설명	2012	2013	2014	2015
서울	후성누리움	43,437,618	44,561,886	45,941,669	-
서울	서울시니어스타워 ㈜가양본부	226,130,736	231,983,532	239,166,508	250,606,063
서울	서울시니어스타워 ㈜강남본부	-	-	-	30,055,829
서울	서울시니어스타워 ㈜강서본부	85,911,336	88,134,924	90,863,872	95,209,975
서울	그레이스 힐	100,301,149	102,897,179	106,083,215	111,157,274
서울	상암카이저팰리스 클래식	50,155,848	51,453,999	53,047,185	55,584,481
서울	노블레스타워	116,324,574	119,335,328	123,030,344	128,914,998
서울	하이원빌리지	55,501,056	56,937,554	58,700,529	61,508,229
서울	시니어캐슬클라시온	73,118,700	75,011,184	77,333,778	81,032,724
서울	골든팰리스	51,992,297	53,337,980	54,989,500	57,619,698
서울	서울시니어스	-	-	-	24,955,841
서울	정동상림원	-	-	-	-
부산	낙원대실버타운	19,553,165	20,073,811	21,172,954	22,214,246
부산	흰돌실버타운	72,706,439	74,642,409	78,729,457	82,601,398
인천	마리스텔라	-	-	-	105,185,203
인천	보미골드리즌빌	89,605,656	92,165,818	94,981,995	100,358,335
세종	밀마루복지마을	-	-	2,169,000	27,720,000
경기	엔젤아크	-	-	17,422,897	18,325,638
경기	청심빌리지	44,313,276	45,535,711	47,185,999	49,630,869
경기	블루밍더클래식	134,076,648	137,775,314	142,768,514	150,165,846
경기	수동시니어타운	40,521,216	41,639,042	43,148,108	45,383,762
경기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	117,253,467	120,488,045	124,854,726	131,323,883
경기	더헤리티지	38,603,640	39,668,568	41,106,221	43,236,077
경기	정원속궁전	-	65,293,737	67,660,087	71,165,791
경기	성남시 아리움	-	-	13,967,796	14,691,516
경기	유당마을	-	-	-	105,293,956
경기	명지엘펜하임	189,207,252	194,426,762	201,473,101	211,912,122
강원	아름다운 은빛농장	2,594,407	2,680,265	2,788,521	2,896,777
전북	옥성골든카운티	-	152,873,974	274,509,686	290,681,707
전북	김제노인 전용주택	35,704,056	37,174,569	38,939,184	41,233,185
전북	내장산실버 아파트	59,694,741	62,153,339	65,103,655	68,939,067
경북	월명성모의집 노인복지주택	34,452,000	35,715,240	38,069,460	40,079,160
합계		1,681,159,277	1,945,960,170	2,165,207,961	2,519,683,650

<부표 A.10-6> 각 시설별 감면규모 추정결과

(단위: 원)

지역	시설명	2012	2013	2014	2015
서울	후성누리움	1,572,442	1,639,877	1,713,624	-
서울	서울시니어스타워 ㈜가양본부	8,185,933	8,536,994	8,920,911	11,552,939
서울	서울시니어스타워 ㈜강남본부	-	-	-	1,385,574
서울	서울시니어스타워 ㈜강서본부	3,109,990	3,243,365	3,389,222	4,389,180
서울	그레이스힐	3,630,902	3,786,616	3,956,904	5,124,350
서울	상암카이저팰리스 클래식	1,815,642	1,893,507	1,978,660	2,562,445
서울	노블레스타워	4,210,950	4,391,540	4,589,032	5,942,981
서울	하이원빌리지	2,009,138	2,095,302	2,189,530	2,835,529
서울	시니어캐슬클라시온	2,646,897	2,760,412	2,884,550	3,735,609
서울	골든팰리스	1,882,121	1,962,838	2,051,108	2,656,268
서울	서울시니어스	-	-	-	1,150,464
서울	정동상림원	-	-	-	-
부산	낙원대실버타운	707,825	738,716	789,751	1,024,077
부산	흰돌실버타운	2,631,973	2,746,841	2,936,609	3,807,924
인천	마리스텔라	-	-	-	4,849,038
인천	보미골드리즌빌	3,243,725	3,391,702	3,542,828	4,626,519
세종	밀마루복지마을	-	-	80,904	1,277,892
경기	엔젤아크	-	-	649,874	844,812
경기	청심빌리지	1,604,141	1,675,714	1,760,038	2,287,983
경기	블루밍더클래식	4,853,575	5,070,132	5,325,266	6,922,646
경기	수동시니어타운	1,466,868	1,532,317	1,609,424	2,092,191
경기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	4,244,576	4,433,960	4,657,081	6,054,031
경기	더헤리티지	1,397,452	1,459,803	1,533,262	1,993,183
경기	정원속궁전	-	2,402,810	2,523,721	3,280,743
경기	성남시 아리움	-	-	520,999	677,279
경기	유당마을	-	-	-	4,854,051
경기	명지엘펜하임	6,849,303	7,154,905	7,514,947	9,769,149
강원	아름다운 은빛농장	93,918	98,634	104,012	133,541
전북	옥성골든카운티	-	5,625,762	10,239,211	13,400,427
전북	김제노인 전용주택	1,292,487	1,368,024	1,452,432	1,900,850
전북	내장산실버 아파트	2,160,950	2,287,243	2,428,366	3,178,091
경북	월명성모의집 노인복지주택	1,247,162	1,314,321	1,419,991	1,847,649
합계		60,857,966	71,611,334	80,762,257	116,157,416

□ 2016년과 2017년 전망을 위해 2012~2015년도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노인복지주택의 연평균 증가추이를 이용하여 향후 노인복지주택 총면적을 추정함

○ 노인복지주택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존의 노인복지주택도 추후에 노인복지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전망과정에는 고려하지 않음

○ 구체적인 노인복지주택 건설계획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연평균 증가율을 이용하여 향후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총전용면적을 추정

<부표 A.10-7> 전용면적 85㎡이하 노인복지주택의 총면적 전망

(단위: ㎡)

전용면적 85㎡ 이하 노인복지주택의 총면적					85㎡ 이하 노인복지주택 총면적 전망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3~'15년 연평균 증가율	2016년	2017년
183,771.52	225,630.67	244,215.93	260,050.15	7.4%	279,293.86	299,961.61

□ 2012~2015년도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노인복지주택은 평균적으로 연 12.3%씩 증가하였으나 2013년 22.8% 증가한 이후 2014년 8.2%, 2015년 6.5% 증가하며 증가세 둔화양상이 관측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전망함

○ 2016년 신축면적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거 증가추이를 반영하여 전망하고자 함

○ 2012년 이후의 12.3% 연평균 증가율은 2013년의 이례적 높은 증가율로 인해 2014년과 2015년 증가세 둔화양상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2013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인 7.4%수준으로 2016년과 2017년 국민주택규모 노인복지주택 총주거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 동 제도에 따른 면세대상 노인복지주택의 총면적은 2016년 279,293.9㎡, 2017년 299,961.6㎡으로 전망

□ 관리비는 지역별·연도별 관리비를 이용하여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을 구하고 이를 2015년도 관리비 항목에 적용하여 2016, 2017년도 관리비 전망치를 구함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각 관리비 항목에 지역별

연평균 증가율을 구할 수 있음

- 지역별·연도별 관리비를 이용하여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은 <부표 A.10-8> 참고

□ 위에서 과거 평균 관리비 항목별 증가율을 이용하여 구한 2016년과 2017년 지역별 면세대상 관리비는 2015년 기준 지역별 면세대상 노인복지주택 총주거면적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전국 평균 면세대상 관리비로 환산할 필요

○ 2016년과 2017년 지역별 면세대상 노인복지주택의 총주거면적을 알 수 없으므로 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과 2017년 전국 평균 1㎡ 평균 면세대상 관리비를 추정

- '17년도 1㎡ 평균 관리비도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함

○ 각 지역별 가중치는 전국 합산 전용면적 85㎡ 이하 노인복지주택의 총주거면적 합계 대비 각 지역 소재 해당 면세대상 노인복지주택의 총주거면적으로 계산하여 활용

○ 이러한 가중치를 각 지역별 면세대상 관리비 전망결과에 적용하여 전국 평균 면세대상 관리비를 구하면 2016년 859원/㎡, 2017년 894원/㎡으로 전망됨

- 산식: '16년도 1㎡당 평균 관리비 전망치 = {(서울지역 '16년도 관리비 전망치 * '15년도 서울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노인복지주택의 총면적) + (경기지역 '16년도 관리비 전망치 * '15년도 경기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노인복지주택의 총면적) + … + (경북지역 '16년도 관리비 전망치 * '15년도 경북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노인복지주택의 총면적)} / '15년도 전국 전용면적 85㎡ 이하 노인복지주택의 총면적

<부표 A.10-8> 지역별·연도별 관리비 항목의 연평균 증가율

(단위: 원, %)

구분	관리비별 금액 및 연평균 증가율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서울	374	378	391	398	2.09	124	130	136	145	5.35	352	364	372	399	4.27
부산	303	307	325	331	2.99	114	120	129	137	6.32	259	267	278	300	5.02
대구	295	303	315	327	3.49	103	109	116	125	6.67	255	262	277	299	5.45
인천	324	332	338	351	2.70	115	121	127	134	5.23	261	267	277	299	4.63
광주	244	249	258	268	3.18	88	95	102	111	8.05	196	205	217	238	6.69
대전	301	311	324	339	4.04	106	111	119	128	6.49	252	261	272	290	4.79
울산	303	308	329	344	4.32	111	118	127	138	7.53	220	230	238	255	5.04
세종	330	346	378	401	6.71	112	125	147	168	14.47	186	190	198	201	2.62
경기	344	351	362	374	2.83	115	121	128	137	6.01	266	273	282	301	4.21
강원	368	377	387	395	2.39	98	103	111	117	6.08	229	238	249	264	4.86
충북	368	377	391	406	3.33	115	121	127	135	5.49	200	210	220	236	5.67
충남	334	345	365	375	3.93	121	128	139	148	6.94	201	209	218	233	5.05
전북	317	329	339	352	3.55	106	111	119	127	6.21	184	192	204	222	6.46
전남	300	309	315	318	1.96	97	105	115	123	8.24	200	209	219	236	5.67
경북	305	311	328	338	3.48	100	107	116	124	7.43	195	204	219	236	6.57
경남	278	289	305	315	4.25	101	107	117	125	7.37	200	208	219	236	5.67
제주	335	342	365	383	4.56	117	120	128	146	7.66	146	153	160	181	7.43

자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2016, 2017년도의 감면규모를 추정해 보면, '16년도는 1억 3천만원 규모로 추정되며, '17년도에는 1억 5천만원 정도 감면받을 것으로 추정됨

<부표 A.10-9> 2016 및 2017년도 조세지출 전망치

(단위: m^2, 원)

2016년				2017년			
총면적 추정치	평균 관리비	면세대상 매출액	조세지출	총면적 추정치	평균 관리비	면세대상 매출액	조세지출
279,293.86	859	2,880,578,597	132,506,615	299,961.61	894	3,217,785,160	148,018,117

□ 2015~2017년도 조세지출 전망결과 요약

<부표 A.10-10> 조세지출 전망결과 요약

(단위: 억원)

	2015년 (추정)	2016년 (전망)	2017년 (전망)
감면금액	1.16	1.32	1.48

A.11.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의5호)

1. 제도 개요 및 연혁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의5호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조세특례제한법**
> **제10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 **4의5.**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한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2.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가. 도입 배경 및 목적[60]

□ (도입배경)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살고 있음

60) 마이홈포털(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2015년도 조세지출평가서(국토부 소관) 참조

□ (도입목적)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주거관련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 도모

나. 연혁

□ 동 제도는 2014년 최초 도입되어 시행됐으며 2015년 말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임

다. 정책대상자 및 수혜자

□ 지역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및 각 시별 도시공사,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 중 난방방식이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방식으로 난방공급을 하는 주택단지에 입주한 사람이 정책대상자임

○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함

-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0%수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40㎡ 이하)가 제한됨
  -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40㎡ 이상의 주택이 있음(예, 세종시 도램마을 7단지, 대전광역시 대화동 시영주택 등)
- LH공사에서 임대운영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며,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의 도시공사에서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은 크게 개별난방, 중앙난방, 지역난방으로 구분되며,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 전기난방, 가스난방, 유류난방으로 구분됨

- 중앙난방방식은 과거 90년대에 완공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이며, 요즘 완공한 아파트는 개별난방 또는 지역난방방식을 통해 난방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개별난방은 각 세대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어서 난방용역에 의한 열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 조세특례의 수혜자가 될 수 없음

<부표 A.11-1> 영구임대주택 난방방식 현황: 2016년 11월 말 기준

(단위: 개, %, 세대)

난방방식	영구주택단지		영구주택세대		주거전용면적 합계
	단지	비율	세대수	비율	
개별난방	67	30.7	27,038	13.6	814,042.77㎡
중앙난방	87	39.9	97,569	49.0	2,746,450.10㎡
지역난방	64	29.4	74,561	37.4	2,108,749.01㎡
합계	218	100	199,168	100	5,669,241.88㎡

주: 동일한 단지안에 도로 주소명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단지 수는 분류기준(주소, 단지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마이홈포털 기존주택 기본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자료,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

○ 난방용역에 의한 열공급은 지역난방방식에 의해 열공급이 이루어지는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거주하는 자만이 수혜자가 될 수 있음

- 국세청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질의회신에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중략) 아파트 난방공급방식(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61]라고 나와 있으나 실제 수혜자는 지역난방방식 단지임

  ·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조세지출 평가서』에서는 지역난방방식만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중앙난방방식은 공공주택관리업체에서 단지 내 열공급장치를 운영·관리하므로 이미 일반관리비 인건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

  * 중앙난방방식으로 각 세대에 열공급을 하는 영구임대주택단지는 본 조세특례제도의 도입으로 추가적인 감면혜택이 없음[62]

□ <부표 A.11-2>에 나타나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살펴보면, 동 제도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음

○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하며, 입주자격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 갱신계약이 제한됨

○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운영 중인 주거복지동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거주중인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입주자격이 우선적으로 주어짐

61)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1)

62) LH공사 주거복지사업처 및 주택관리공사 주거복지실에 문의한 결과임

-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인·고령자 세대 또는 일반세대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부표 A.11-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순위		입주자격	비고
우선공급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2019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신혼부부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
		귀환국군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일반공급	1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제1호·제3호
		②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16조
	2순위	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제13조 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 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3순위	⑪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 주택의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	

자료: 마이홈 주거복지 안내

2. 추정방법 검토

가. 사용 자료 현황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현황자료는 영구임대주택의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여 본 조세지출의 감면규모를 추정하는 자료로 적합하지 않음

○ 40㎡ 이하, 40~60㎡, 60㎡~85㎡ 등 전용면적별 현황이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아서 감면규모 추정자료로 이용할 수 없음

○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현황"자료에 나온 영구임대주택의 규모 및 총계는 <부표 A.11-3>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부표 A.11-3> 2015년 영구임대주택 현황

(단위: 세대)

규모	소계	LH	지자체
합계	195,699	144,227	51,472
40㎡이하	191,252	143,842	47,410
40㎡~60㎡	3,604	385	3,219
60㎡~85㎡	843	0	843
85㎡초과	0	0	0

자료: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현황

□ 각 지자체의 도시공사 및 LH공사에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여 조세감면규모 추정에 이용할 수 있음

○ 단지별·보유 평형별 세대수, 주소, 난방방식 등 정보를 요청하여 조세감면규모 추정에 활용

□ 정보요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안으로 "마이홈포털"과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본 조세지출의 감면규모 추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도 존재함

○ "마이홈포털"과 "세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로 "마이홈포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정보(단지별 세대수, 보유 평형, 주소, 난방방식)를 얻고, "세움터"에서는 단지별 건축물대장을 활용하여 단지별·평형별 세대수를 구할 수 있음

○ LH공사에서 운영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1990년대에 완공된 아파트가 많으며, 대개 26.37㎡, 31.32㎡, 40.32㎡로 비교적 평형대가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기 수월하였으며, 다른 지자체 및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평형별 정보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음

- 주택유형이 다세대가구 및 단독주택인 경우에 정보 접근이 어려우나, 이런 주택유형은 소규모이므로 지역난방, 중앙난방방식을 채택하지 않아 감면규모 추정에서 제외함

□ 난방비 정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공하는 "지역별 1㎡당 월평균 난방비 및 급탕비의 합계"를 이용함

○ <부표 A.11-3>를 보면 난방비는 계절에 따른 편차가 크고, 본 조세지출 도입 이후에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이 있으므로, 월별자료를 이용함

나. 추정방법

□ 기본산식 :

○ ∑{단지별 영구임대주택의 총전용면적 × 지역별 1㎡당 월평균 총난방비(난방비 + 급탕비) × 부가가치세율(10%) × (부가가치율)}

- 각 단지별 감면규모를 구하고, 이를 합하여 총감면규모를 구함
-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수도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함
  - 국세통계연보상에 세세업종의 부가가치율이 가용하지 않아서 증기 및 온수공급업을 포괄하는 전기가스수도업의 부가가치율을 사용함
  -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연간 매출과표와 매입과표를 합산하여 동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계산한 결과, 2014년 전기·가스·수도업의 부가가치율은 5.25%, 2015년 10.06%로 나타남

<부표 A.11-4> 지역별 1㎡당 월평균 난방비

(단위: 원)

구분	2014년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640	540	421	239	152	92	75	71	86	172	346	664	631	533	430	253	135	89	73	62	79	147	316	518
서울	980	812	633	338	209	122	103	98	118	260	534	1069	988	831	666	367	185	123	101	86	107	217	495	816
부산	283	257	217	127	75	56	42	35	47	80	147	267	257	227	186	122	70	49	41	31	41	62	123	201
대구	572	501	385	220	127	86	66	59	75	145	308	537	543	468	369	231	110	77	69	52	69	118	243	399
인천	763	650	483	284	186	109	89	87	99	177	382	781	753	637	517	303	168	110	88	75	93	158	357	624
광주	269	229	204	123	80	52	45	40	48	74	143	255	264	233	198	128	78	56	49	44	47	68	123	197
대전	918	754	625	345	214	130	100	93	118	250	524	918	864	735	571	346	168	114	93	75	100	193	420	680
울산	50	43	35	25	16	9	6	4	7	14	24	42	41	36	27	20	10	6	5	3	5	11	17	25
세종	680	548	427	248	184	119	110	120	142	264	502	964	924	807	646	419	243	161	138	113	156	272	579	936
경기	940	779	609	347	229	132	108	106	129	257	517	1004	957	803	655	380	210	134	109	95	119	233	496	813
강원	215	193	144	84	54	40	33	31	35	74	114	192	172	142	112	74	36	29	25	21	27	52	81	126
충북	722	585	455	256	166	110	93	88	102	188	379	691	649	559	437	272	141	102	89	75	87	154	313	514
충남	174	150	123	75	48	35	27	24	30	52	102	178	168	142	119	76	44	31	25	21	26	43	85	135
전북	136	139	107	67	44	29	23	19	24	41	84	125	118	100	83	57	27	18	15	11	16	31	62	86
전남	85	79	70	51	35	22	16	12	13	19	32	41	48	47	43	34	23	16	12	9	10	15	28	42
경북	220	199	169	106	60	35	26	19	24	57	96	147	161	140	109	77	39	23	17	13	17	33	56	83
경남	216	247	154	98	60	41	35	32	40	65	120	211	204	178	138	91	48	36	34	24	35	54	101	164
제주	9	7	5	2	2	2	2	1	1	1	4	7	6	5	4	3	2	1	1	1	1	1	1	4

자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3. 추정결과

가. 2014년 및 2015년 조세지출 규모

□ 2015년 조세지출 규모는 약 0.92억원 정도로 추정됨

○ 이는 0.49억원 수준으로 추정된 2014년 조세지출 규모에 비해 1.8배 수준으로 2015년 조세지출규모가 확대된 것은 부가가치율의 증가에 기인함

- 2014년 5.25%이던 전기·가스·수도업의 부가가치율이 2015년 10.06%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

○ 2015년도에 지역별 1㎡당 월평균 난방비가 전체적으로 2014년도보다 낮아짐에 따라 지역난방방식의 단지가 3개 단지, 956세대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면대상 매출세액 과세표준이 2014년보다 3.18% 감소

- 입주기간 파악이 되지 않는 "서창LH1단지"는 준공일자가 2014년 10월 26일이므로 입주시작일 지정 및 입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5년 1월부터 조세감면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였음

<부표 A.11-5> 감면규모 추정결과

(단위: 원)

구분	2014년	2015년
난방비 관련 매출세액 과세표준 추정치	9,414,395,353	9,123,456,973
매출세액 추정치	941,439,535	912,345,697
부가가치율 반영 조세지출 규모 추정치	49,392,726	91,753,825

<부표 A.11-6> 단지별 감면규모 추정결과

번호	단지명	세대수	준공일자 (입주시작일)	난방방식	지역	주거전용 면적 합계 (㎡)	감면규모(원)	
							2014년	2015년
1	강남LH3단지	192	2013.8.31	지역난방	서울	5,176.26	143,282	259,349
2	광명하안13단지 (독산동)	1226	1990.11.6	지역난방	서울	38,444.40	1,064,164	1,926,201
3	가양주공7단지	1,998	1992.6.30	지역난방	서울	56,820.51	1,572,825	2,846,909
4	등촌주공9단지	1,445	1994.10.1	지역난방	서울	43,128.90	1,193,833	2,160,911
5	동촌주공7단지	1,146	1994.9.16	지역난방	서울	31,403.07	869,256	1,573,405

<부표 A.11-6>의 계속

번호	단지명	세대수	준공일자 (입주시작일)	난방방식	지역	주거전용 면적 합계 (㎡)	감면규모(원)	
							2014년	2015년
6	등촌주공4단지	1,575	1995.5.5	지역난방	서울	43,745.40	1,210,899	2,191,800
7	등촌주공1단지	1,670	1994.10.15	지역난방	서울	46,331.01	1,282,470	2,321,348
8	수서주공1단지	2,565	1992.10.19	지역난방	서울	71,925.75	1,990,947	3,603,735
9	중계주공9단지	2,634	1992.9.18	지역폐열 난방	서울	75,220.38	2,082,145	3,768,808
10	중계주공3단지	1,325	1991.9.14	지역가스 난방	서울	34,940.25	967,167	1,750,630
11	중계주공1단지	882	1990.12.05	지역가스 난방	서울	23,258.34	643,805	1,165,325
12	상계마들	170	2001.1.31	지역가스 난방	서울	5,711.10	158,087	286,146
13	신내12단지	1,000	1995.11.27	지역가스 난방	서울	27,380.00	757,895	1,371,835
14	신내10단지	906	1996.3.11	지역가스 난방	서울	21,917.49	606,689	1,098,144
15	월계사슴1단지	1,372	1995.5.30	지역가스 난방	서울	37,534.68	1,038,982	1,880,621
16	공릉1단지	1,395	1994.11.30	지역가스 난방	서울	37,676.55	1,042,909	1,887,729
17	방화11단지	1,065	1994.4.30	지역가스 난방	서울	29,239.80	809,375	1,465,018
18	방화6단지	404	1994.7.15	지역가스 난방	서울	10,859.49	300,597	544,099
19	방화2-1단지	1,563	1993.9.30	지역가스 난방	서울	41,412.26	1,146,316	2,074,901
20	가양5단지	2,411	1992.10.15	지역가스 난방	서울	66,944.28	1,853,057	3,354,146
21	가양4단지	1,998	1992.10.15	지역가스 난방	서울	54,858.72	1,518,522	2,748,616
22	수서6단지	1,508	1993.9.27	지역가스 난방	서울	39,495.16	1,093,249	1,978,848
23	수서1단지	984	1992.11.20	지역가스 난방	서울	27,703.08	766,838	1,388,023
24	대치1단지	1,623	1991.11.20	지역난방	서울	46,586.44	1,289,540	2,334,146
25	중계3단지	2,619	1991.11.30	지역난방	서울	83,867.90	2,321,513	4,202,079

<부표 A.11-6>의 계속

번호	단지명	세대수	준공일자 (입주시작일)	난방방식	지역	주거전용 면적 합계 (㎡)	감면규모(원)	
							2014년	2015년
26	성산	1,807	1991.5.31	지역폐열 난방	서울	59,074.88	1,635,228	2,959,861
27	하계5단지	640	1989.11.30	지역가스 난방	서울	21,312.00	589,929	1,067,807
28	삼성마을LH (군포당동2A-1)	90	(2014.6.12.)	지역난방	경기	2,228.38	24,797	112,143
29	분당한솔7 (주거복지동)	248	(2015.5.29)	지역난방	경기	7,078.28	-	132,761
30	고양원흥 도래울마을 1단지	340	2014.10.13	지역폐열 난방	경기	9,547.00	50,289	480,451
31	안산군자13단지	588	1992.4.21	지역난방	경기	15,505.56	419,522	780,314
32	부흥관악주공	489	1992.8.7	지역가스 난방	경기	12,894.93	348,889	648,935
33	광명하안13단지 광명	2,066	1990.11.6	지역난방	경기	68,533.20	1,854,252	3,448,920
34	덕유마을 주공1단지	956	1994.11.30	지역가스 난방	경기	25,209.72	682,081	1,268,674
35	중동한라1단지	925	1994.10.23	지역가스 난방	경기	24,392.25	659,963	1,227,535
36	산본매화 주공14단지	1,340	1995.7.21	지역가스 난방	경기	38,281.05	1,035,742	1,926,486
37	산본가야주공 5단지2차아파트	900	1993.6.4./ 1993.7.23	지역난방	경기	25,630.20	693,457	1,289,835
38	산본 주몽주공10단지	1,191	1995.5.3	지역가스 난방	경기	33,614.37	909,479	1,691,636
39	청솔마을 주공6단지	1,250	1994.7.25	지역난방	경기	39,375.00	1,065,340	1,981,539
40	한솔마을 주공7단지	1,420	1994.7.25	지역난방	경기	39,062.40	1,056,882	1,965,807
41	목련마을 주공1단지 (판교로)	1,240	1993.5.17	지역난방	경기	34,990.65	946,716	1,760,897
42	우만주공3단지	1,213	1992.3.30	지역난방	경기	33,169.86	897,452	1,669,267
43	일산흰돌 주공4단지	1,141	1995.4.29	지역난방	경기	32,048.37	867,109	1,612,828

<부표 A.11-6>의 계속

번호	단지명	세대수	준공일자 (입주시작일)	난방방식	지역	주거전용 면적 합계 (㎡)	감면규모(원)	
							2014년	2015년
44	문촌마을 주공9단지	496	1995.5.28	지역난방	경기	14,059.62	380,401	707,548
45	일산문촌 주공7단지	645	1995.7.4	지역난방	경기	18,726.30	506,664	942,397
46	서창LH1단지	448	2014.10.26	지역가스 난방	인천	11,118.40	-	187,069
47	삼산주공1단지	1,764	1991.8.26	지역가스 난방	인천	46,516.68	998,166	1,816,523
48	갈산주공2단지	1,170	1992.5.30	지역난방	인천	30,501.90	654,517	1,191,130
49	연수주공1단지	1,654	1992.6.22	지역가스 난방	인천	45,982.08	986,694	1,795,646
50	인천만수 주공7단지	1,466	1990.11.25	지역가스 난방	인천	47,041.20	1,009,421	1,837,006
51	도램마을 7단지	400	2014.10.20	지역폐열 난방	세종	20,669.63	104,539	1,121,265
52	행복아파트	500	2012.9.19	지역폐열 난방	세종	18,619.50	420,837	1,010,052
53	노은(3)지구 1단지	260	(2015.8.24.)	지역난방	대전	6,541.04	-	85,057
54	대구성서3	835	1995.5.4	지역난방	대구	23,494.05	379,770	649,291
55	대구성서1 (은하수마을)	1,341	1995.5.4	지역난방	대구	36,837.27	595,456	1,018,050
56	월성주공3단지	1,482	1991.11.10	지역난방	대구	39,817.89	643,636	1,100,423
57	월성주공2단지	2,364	1991.9.20	지역난방	대구	65,288.88	1,055,362	1,804,350
58	익산 부송주공1차	1,612	1993.3.22	지역난방	전북	44,433.99	195,357	278,846
합계		69,957	-	-	-	1,993,177	49,392,726	91,753,825

자료: LH공사 내부자료 및 마이홈포털

나. 2016년 및 2017년 전망

□ LH공사에 영구임대주택 분양계획을 바탕으로 2015년 이후 입주하는 단지의 감면규모를 계산하고 이를 '15년도 감면규모에 더해주는 방식으로 이후 연도 감면규모를 추정함

○ "지역별 1㎡당 월평균 난방비"의 뚜렷한 추세를 찾기 어려워서 '15년도 난방비

로 '16년, '17년에 입주하는 단지의 감면규모를 구함

- 2016년 지역별 1㎡당 월평균 난방비 자료가 가용한 시점에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해서 감면규모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부가가치율을 2016년과 2017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함

□ 2015년 조세지출 규모에 비해서 '16년도에는 347만원, '17년도에는 628만원 정도 감면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부표 A.11-7> 2015~2017년도 입주 영구임대주택 단지 현황

(단위: 세대, ㎡)

번호	단지명	세대수	입주예정일	난방방식	지역	총 주거전용면적
1	서울중계3 주거복지동	130	2016.10.	지역가스난방	서울	3,038.10
2	부천옥길LH1단지	538	2016.10	지역가스난방	경기	13,571.10
3	구리갈매(09, 보금4) 1단지	380	2016.7	지역난방	경기	11,097.72
4	위례35단지 아파트	550	2016.6.30	지역난방	경기	14,346.10
5	시흥목감LH7단지	402	2016.6.30	지역난방	경기	9,772.44
6	수원호매실22(국임, 영구)	612	2016.2.19	지역난방	경기	13,451.76
7	하남미사A13BL	1,152	2015.12.15	지역난방	경기	27,999.84
8	화성동탄2 24블럭	600	2015.12.28	지역난방	경기	16,134.00
9	대전관저5(05, 국민, GB) 1단지	240	2016.1.11	지역난방	대전	6,160.20
10	성남여수공공주택지구내 A-1블록	124	2017.9	지역난방	경기	3,097.52
11	삼산주공1단지 증축	208	2017.2	지역난방	인천	5,597.28
12	분단목련1단지 증축	220	2016.12	지역난방	경기	6,237.85

자료: LH청약센터 모집공고

<부표 A.11-8> 2015~2017년 입주 영구임대주택 단지 조세감면규모

(단위: 원)

번호	단지명	2016년		2017년	
		매출액	감면규모	매출액	감면규모
1	서울중계3 주거복지동	3,982,949	40,056	15,135,814	152,220
2	부천옥길LH1단지	17,764,570	178,657	67,909,784	682,963
3	구리갈매(09, 보금4) 1단지	19,487,596	195,985	55,532,991	558,491
4	위례35단지 아파트	25,191,752	253,351	71,787,884	721,965

<부표 A.11-8>의 계속

번호	단지명	2016년		2017년	
		매출액	감면규모	매출액	감면규모
5	시흥목감LH7단지	17,160,405	172,581	48,901,290	491,796
6	수원호매실22(국임, 영구)	34,826,607	350,248	67,312,607	676,957
7	하남미사A13BL	140,111,199	1,409,086	140,111,199	1,409,086
8	화성동탄2 24블럭	65,294,298	656,659	80,734,536	811,940
9	대전관저5(05, 국민, GB) 1단지	21,529,899	216,524	26,852,312	270,051
10	성남여수공공주택지구내 A-1블록	-	-	4,776,376	48,036
11	삼산주공1단지 증축	-	-	13,954,019	140,334
12	분단목련1단지 증축	-	-	31,214,201	313,919
합계		345,349,275	3,473,147	624,223,013	6,277,758

□ '15~17년도 추정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음

<부표 A.11-9> 2016년 및 2017년 조세지출 규모 전망결과

(단위: 억원)

	2015년	2016년	2017년
감면금액	0.92	0.96	0.99

4. 문제점

□ 최근 4년(2012~15년)간, "지역별 1㎡당 월평균 난방비"를 살펴보면 뚜렷한 추세를 찾기 어려움

○ 위의 감면방법에서 감면규모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수는 "지역별 1㎡당 월평균 난방비"이지만 특정한 추이를 찾지 못해서 2016년과 2017년 전망치에 반영하지 못했음

○ 난방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난방연료 가격의 변화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반영하는 추정모형의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임

□ 향후 전망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영구임대주택건설계획을 각 지자체 및 각 지자체의 도시공사, LH공사에 직접 문의하여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어려움 상존함

A.12.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의 제1항 제10호)

1. 제도 개요 및 연혁

가. 도입목적

□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나아가 단일세율로 운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의 역진적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63]

○ 기초생활에 필수적인 재화 및 용역, 국민후생용역, 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 등을 주된 면세대상으로 하고 있음

□ 희귀병 환자 치료제의 부가가치세 감면을 통한 수입사의 손실 감소로 필수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도록 하고 희귀질환 환자에게 치료 기회 등을 제공[64]

○ 엘라프라제주(헌터증후군 치료제)의 경우, 부가세 감면을 통해 원활한 의약품 공급이 가능해짐

나. 정책대상자 및 수혜 내용[65]

□ 정책 대상자

○ 치료제의 수입사

□ 수혜자

○ 희귀병 환자[66]

○ 치료제의 수입사 및 해당 질환자

63) 삼일인포마인,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의 내용 발췌
64) 2013년 보건복지부의 조세지출 자체평가 의견 내용 발췌
65) 2013년 보건복지부의 조세지출 자체평가 의견 내용 발췌
66)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수혜자

□ 수혜 내용

○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물품 중 희귀병치료 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조특법§106①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희귀병 치료 등을 위한 것(조특령§106⑭)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91④)[67]

<부표 A.1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병 치료제 범위

1. 세레자임 등 고셔병 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 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6.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7.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8.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9. 삭제 <2014.2.21.>[68]
10.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및 백신(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만 해당한다)
11. 발작성 야간 혜모글로빈뇨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다. 제도연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제1항 제10호는 1999년 하반기 조문 신설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됨

○ 일몰 없음

67) <부표 A.12-1>에서와 같이 해당 법조문에서 면세 대상 약품을 특정짓지 않기 때문에 개별 청에서 면제 품목을 특정지어 관리하기 어려움

68) 뮤코다당증 Ⅱ형(헌터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의 경우 2014년 2월 21일 세법개정으로 해당 조문에서 삭제됨

□ 수혜 병목 변천[69]

<부표 A.12-2>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혜 병목 변천

개정년도	주요 변경 사항
1999. 10. 30	○ 제도 신설 ○ 수혜 병목 - 고셔병 - 부신이영양증 - 혈우병(심신장애자)
2009. 09. 21	○ 추가된 수혜 병목 - 근육이영양증 - 윌슨병 - 후천성면역결핍증(심신장애자) - 삼킴장애제거제 - 림파구증식증(장기이식 합병증) - 타이로신혈증 - 뮤코다당증 Ⅱ형(헌터증후군) - 신종인플루엔자A(H1N1)[70]
2014. 02. 21	○ 추가된 수혜 병목 -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 삭제된 수혜 병목 - 뮤코다당증 Ⅱ형(헌터증후군)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라. 조세지출규모

□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금액을 파악·관리하기 어려우므로 현재까지 조세지출 규모 실적치 및 전망치 없음

2. 국세청 자료 현황

□ 현재 국세청에서 보유 중인 관련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부가가치세 업종 코드를 이용하여 추출한 부가가치세 면제금액 자료의 경우 관련 업종 코드의 분류 포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동 조항의 조세지출 금액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로 적절치 못함

69) 조특령 § 106⑭는 1999년 10월 30일 신설 이후 총 다섯 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수혜 병목에 변화가 있었던 개정은 두 번임

70)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한하여 조세특례를 적용함

○ 또한 해당 코드에서의 면세대상 매출액 자료를 추출한다 해도 면세사업자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면세대상 매출액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관련 업종 코드

<부표 A.12-3> 희귀병 치료제 관련 업종 코드

귀속	업종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15	523111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2015	242301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완제 의약품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제조업
2015	513311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의약품 도매업

자료: 국세청, 2015년도 귀속 기준경비율 자료

3. 기타 경제사회 통계자료 현황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 자료 개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협조받아서 분석에 활용함

○ 12개 희귀성 질환에 대한 원내외 처방 건수, 약품 매출액 합계, 총투여일수 등의 집계자료를 협조 받음

○ 약품매출액의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의 주상병코드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약품과 함께 처방되어 있는 부상병코드에 해당하는 약품비도 포함되어 있는 한계가 있음

- 또한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약품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 자료에 누락되는 한계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협조받은 자료가 유일한 가용자료로 판단됨

<부표 A.12-4> 희귀 난치성 질환자 약품 매출액 자료 개요

분류	주요 내용
자료 명칭	희귀 난치성 질환자 관련 자료
기간	2009년~2015년 연도별 자료
자료 수집 대상	건강보험, 의료급여, 국비보훈 대상자
자료 특성	가산적용되지 않은 약품비 총금액, 상병코드의 하위코드 포함 금액
변수명	주상병코드, 원내외 구분, 진료건수, 약품비 합계, 총투여일수 등
주상병코드 포함 목록[71]	1) 고쉐병 - E75.2 2) 부신이영양증 - E71.3 3) 혈우병 - D66/D67/D68~D68.9 4) 근이영양증 - G71.0 5) 윌슨병 - P.27.0 6) 후천성면역결핍증 - B24 7) 림프절증식증 - D47.9 8) 타이로신혈증 - E70.2 9) 뮤코다당증 Ⅱ형 - E76.1 10 삼킴곤란 - R13 11) 신종인플루엔자 A(H1N1) - J09 12)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마키아화바-미쉘리] - D59.5

□ 12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연도별 약품 매출액, 총진료건수, 총투여일수 자료를 이용하여 총진료건수, 진료건수당 평균 투여일수, 투여일당 평균 약품매출액을 구하고 각 변수의 증가율 추이를 원내처방과 원외처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이용할 계획

○ 주요 변수들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다음의 관계를 이용하여 분석

- 약품 매출액 = 총진료건수 × 진료건수당 평균 투여일수 × 투여일당 평균 약품 매출액
- 총진료건수, 진료건수당 평균 투여일수, 투여일당 평균 약품매출액의 증가 추이는 질병과 원내외 처방구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
- 질병별 및 원내외 구분별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

□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 질환의 발병률 등 보다 세부적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추정모형의 엄밀성과 모형 관리운영의 편리성 사이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모형 구축에 무게를 두고자 함

71) 질병분류 정보센터의 질병코드를 참고함

나. 주요 변수들의 추이

(1) 고쉐병

□ 고쉐병의 총진료건수는 2009년 1,497건에서 2015년 4,163건으로 확대되고 이에 사용되는 약품 매출액도 2009년 144억원에서 2015년 310억원으로 증가했음

- ○ 총진료건수의 원내 비중은 2009년 76.2%에서 2015년 81.4%로 확대됐음
- ○ 약품 매출액의 원내 비중은 2009년 이후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에 달함

□ 고쉐병 관련 주요 변수들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원내외 경우 모두 2012년을 전후하여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 원내 및 원외의 경우 모두 총진료건수의 증가추이가 2012년 이후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수 및 투여일당 약품비의 감소추이도 각각 2012년과 2013년 이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 원외 투여일당 약품비의 경우 2014년 대비 2015년 1.9% 증가하면 이전 기간의 추이와 달리 나타남

<부표 A.12-5> 고쉐병 원내외 비중 추이

(단위: 건, 억원, %)

	총 진료		약품 매출액	
	건수	원내 비중	금액	원내 비중
2009	1,497	76.2	144	99.7
2010	1,598	73.2	85	99.3
2011	1,868	74.3	118	99.6
2012	2,923	77.6	181	99.7
2013	3,140	81.2	233	99.8
2014	3,728	80.4	265	99.8
2015	4,163	81.4	310	99.9

주: 원내비중은 원내외 건수 또는 금액 대비 원내 건수 또는 금액의 비율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부표 A.12-6> 고쉐병 주요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단위: %)

	기간	총진료건수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수	투여일당 약품비
원내	2009~2015	19.9	-6.8	1.8
	2010~2015	19.4	-10.4	16.0
	2011~2015	16.0	-11.5	14.3
	2012~2015	6.9	-0.7	3.1
	2013~2015	4.8	-4.7	4.9
	2014~2015	2.1	-2.5	3.1
원외	2009~2015	13.8	-1.3	-8.2
	2010~2015	10.4	-3.2	-11.3
	2011~2015	8.3	-2.4	-6.0
	2012~2015	2.9	0.0	-4.0
	2013~2015	4.7	-1.6	-1.3
	2014~2015	1.0	-0.9	1.9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2) 근이영양증

□ 근이양증의 총진료건수는 2009년 3,580건에서 2015년 5,758건으로 확대되고 이에 사용되는 약품 매출액도 2009년 3억원에서 2015년 5억원으로 증가했음

○ 총진료건수의 원내 비중은 2009년 41.4%에서 2013년 50.8%로 확대됐으나 이후 소폭 감소추이를 보이며 2015년 49.2% 수준으로 나타남

○ 약품 매출액의 원내 비중은 2009년 59.7%에서 2011년 70.3%로 확대된 이후 소폭 하락 추이 속에 60% 중후반대를 유지

□ 근이영양증 관련 주요 변수들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원내의 경우 2013년을 전후로, 원외의 경우 2012년을 전후하여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원내 및 원외 총진료건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013년과 2012년 이후 2% 내외로 둔화됐음

○ 원내 및 원외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수도 각각 2013년과 2012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 원내 및 원외 투여일당 약품비의 감소추이도 각각 2013년과 2012년 이후 완화되거나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음

<부표 A.12-7> 근이영양증 원내외 비중 추이

(단위: 건, 억원, %)

	총 진료		약품 매출액	
	건수	원내 비중	금액	원내 비중
2009	3,580	41.4	3	59.7
2010	3,761	42.6	4	64.0
2011	4,094	44.5	5	70.3
2012	4,791	46.6	4	63.2
2013	5,043	50.8	5	69.9
2014	5,372	49.2	5	68.0
2015	5,758	49.2	5	66.6

주: 원내비중은 원내외 건수 또는 금액 대비 원내 건수 또는 금액의 비율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부표 A.12-8> 근이영양증 주요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단위: %)

	기간	총 진료건수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수	투여일당 약품비
원내	2009~2015	11.4	2.7	-3.1
	2010~2015	10.0	0.9	-3.8
	2011~2015	7.6	0.3	-8.0
	2012~2015	4.0	3.7	-3.2
	2013~2015	1.7	1.0	-1.5
	2014~2015	1.2	1.3	-1.3
원외	2009~2015	5.7	2.6	-2.7
	2010~2015	5.2	0.8	-1.4
	2011~2015	4.3	-0.6	-1.4
	2012~2015	2.3	-1.3	0.9
	2013~2015	2.8	-0.3	1.3
	2014~2015	1.2	-0.4	1.4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3) 림프절증식증

□ 림프절증식증의 총진료건수는 2009년 1,352건에서 2015년 2,571건으로 확대되고 이에 사용되는 약품 매출액도 2009년 3억원에서 2015년 5억원으로 증가했음

○ 총진료건수의 원내 비중은 소폭의 연도별 등락 속에 2009년 이후 4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음

○ 약품 매출액의 원내 비중은 2009년 48.3%에서 2011년 53.5%로 확대된 이후 다소의 등락 속에 50%대 중반을 유지

□ 림프절증식증 관련 주요 변수들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원내의 경우 2013년을 전후로, 원외의 경우 2012년을 전후하여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원내 및 원외 총진료건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013년과 2012년 이후 2% 내외로 둔화됐음

○ 원내 및 원외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수도 각각 2013년과 2012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 원내 및 원외 투여일당 약품비의 감소추이도 각각 2013년과 2012년 이후 완화되거나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음

<부표 A.12-9> 림프절증식증 원내외 비중 추이

(단위: 건, 억원, %)

	총진료		약품 매출액	
	건수	원내 비중	금액	원내 비중
2009	1,352	46.4	3	48.3
2010	1,720	47.2	3	48.8
2011	2,068	46.2	4	53.5
2012	2,523	41.7	5	44.1
2013	2,409	45.7	4	55.8
2014	2,507	43.5	4	53.1
2015	2,571	44.4	5	54.7

주: 원내비중은 원내외 건수 또는 금액 대비 원내 건수 또는 금액의 비율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부표 A.12-10> 림프절증식증 주요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단위: %)

	기간	총진료건수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수	투여일당 약품비
원내	2009~2015	10.5	-2.9	4.2
	2010~2015	5.9	-4.3	5.6
	2011~2015	3.0	-2.1	0.2
	2012~2015	1.4	-1.4	3.4
	2013~2015	0.6	-0.3	0.9
	2014~2015	0.8	-0.5	2.2

<부표 A.12-10>의 계속

	기간	총진료건수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수	투여일당 약품비
원외	2009~2015	12.0	-0.4	-3.9
	2010~2015	7.8	-1.3	-3.4
	2011~2015	4.3	-1.4	-2.4
	2012~2015	-0.5	-0.6	-2.7
	2013~2015	1.5	-1.4	2.0
	2014~2015	0.1	-0.6	1.8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4) 뮤코다당증

□ 뮤코다당증의 총진료건수는 2009년 820건에서 2015년 3,804건으로 확대되고 이에 사용되는 약품 매출액도 2009년 124억원에서 2015년 261억원으로 증가했음

- ○ 총진료건수의 원내 비중은 2009년~2011년 80% 안팎의 비중을 보이다가 2012년부터 94%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약품 매출액의 원내 비중은 2009년 이후 99.9%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뮤코다당증 관련 주요 변수들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원내의 경우 2011~2012년을 전후로, 원외의 경우 변수마다 2010~2012년을 전후하여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 원내의 경우 총진료건수와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012년을 전후하여 이전에 보였던 증가세나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거나 소폭의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투여일당 약품비는 2011년 이후 소폭의 감소세로 전환
- ○ 원외의 경우 주요 변수들의 연평균 증가율 사이에 특정한 공통의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투여일당 약품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2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지료 건당 평균 투여일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1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음

<부표 A.12-11> 뮤코다당증 원내외 비중 추이

(단위: 건, 억원, %)

	총진료		약품 매출액	
	건수	원내 비중	금액	원내 비중
2009	820	84.3	124	100.0
2010	1,082	77.6	122	99.9
2011	1,610	83.6	197	99.9
2012	3,095	94.0	207	99.9
2013	3,297	94.3	211	99.9
2014	3,736	93.8	246	99.9
2015	3,804	94.5	261	99.9

주: 원내비중은 원내외 건수 또는 금액 대비 원내 건수 또는 금액의 비율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부표 A.12-12> 뮤코다당증 주요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단위: %)

	기간	총진료건수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수	투여일당 약품비
원내	2009~2015	31.6	-18.0	4.8
	2010~2015	27.4	-18.9	9.8
	2011~2015	17.8	-10.3	-0.9
	2012~2015	3.6	0.3	0.0
	2013~2015	2.4	1.6	-0.5
	2014~2015	0.4	1.5	-0.9
원외	2009~2015	8.5	-7.7	26.9
	2010~2015	-2.3	-1.3	22.7
	2011~2015	-3.7	3.6	2.6
	2012~2015	2.0	3.1	-7.3
	2013~2015	1.9	6.2	-3.1
	2014~2015	-1.6	2.7	-2.3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5) 부신이영양증

□ 부신이영양증의 총진료건수는 2009년 518건에서 2015년 882건으로 확대되고 이에 사용되는 약품 매출액은 2009년 0.8억원 수준에서 2015년 1.41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연도별 등락이 관측되며 1억원 안팎수준을 유지

○ 총진료건수의 원내 비중은 연도별 등락 속에 2013년 이후 60% 안팎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 약품 매출액의 원내 비중은 2010년 80.8%를 고점으로 이후 하락 추이를 보이다가 2015년 73.4%로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부신이영양증 관련 주요 변수들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원내의 경우 2012~2013년을 전후로, 원외의 경우 변수마다 2010~2011년을 전후하여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원내의 경우 총진료건수와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012년을 전후하여 이전에 보였던 증가세나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거나 소폭의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감소세가 지속되던 투여일당 약품비는 2013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

○ 원외의 경우 총진료건수는 2011년을 전후하여 다른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보이는 반면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수와 투여일당 약품비는 2011년을 전후하여 연평균 증가율의 둔화세 또는 감소세로의 전환이 나타남

<부표 A.12-13> 부신이영양증 원내외 비중 추이

(단위: 건, 억원, %)

	총진료		약품 매출액	
	건수	원내 비중	금액	원내 비중
2009	518	54.6	0.8	72.9
2010	564	61.7	1.2	80.8
2011	777	55.2	1.3	78.7
2012	902	55.9	1.4	73.0
2013	843	60.5	1.1	67.7
2014	874	59.6	1.0	61.6
2015	882	61.8	1.4	73.4

주: 원내비중은 원내외 건수 또는 금액 대비 원내 건수 또는 금액의 비율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부표 A.12-14> 부신이영양증 주요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단위: %)

	기간	총진료건수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수	투여일당 약품비
원내	2009~2015	11.5	-2.8	1.8
	2010~2015	7.8	-2.1	-4.4
	2011~2015	4.1	-1.9	-1.3
	2012~2015	1.3	1.8	-2.2
	2013~2015	1.1	0.4	3.8
	2014~2015	0.8	0.9	6.7
원외	2009~2015	6.2	3.6	0.0
	2010~2015	7.7	3.3	-2.6
	2011~2015	-0.5	6.0	0.4
	2012~2015	-2.7	4.4	-1.0
	2013~2015	0.2	2.4	-1.9
	2014~2015	-0.8	0.1	-0.1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6) 삼킴곤란

□ 삼킴곤란의 총진료건수는 2009년 6,366건에서 2015년 15,161건으로 확대되고 이에 사용되는 약품 매출액은 2009년 2억원 수준에서 2015년 15억원으로 증가했음

- ○ 총진료건수의 원내 비중은 연도별 등락 속에 2013년 이전까지 소폭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다 이후 축소되며 2015년 57.8%수준까지 축소
- ○ 약품 매출액의 원내 비중은 2009년 이후 지속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며 2015년 28.6%로 축소됨

□ 삼킴곤란 관련 주요 변수들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원내의 경우 2012년을 전후로, 원외 관련 주요 변수들의 연평균 증가율은 대체적으로 지속 축소되는 양상을 보임

- ○ 원내의 경우 총진료건수와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012년을 전후하여 이전에 보였던 증가세나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거나 소폭의 증가세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투여일당 약품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2년 이후 4% 내외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됨
- ○ 원외의 경우 총진료건수와 투여일당 약품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최근으로 올수

록 축소되며 증가세 둔화 양상을 보이는 한편,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수 연평균 증가율은 2012년 이후 감소세로의 전환이 나타남

<부표 A.12-15> 삼킴곤란 원내외 비중 추이

(단위: 건, 억원, %)

	총진료		약품 매출액	
	건수	원내 비중	금액	원내 비중
2009	6,366	59.6	2	62.0
2010	6,732	66.2	3	56.6
2011	8,086	65.9	4	53.8
2012	10,662	66.3	5	53.6
2013	11,846	64.1	6	37.0
2014	13,184	61.5	9	33.4
2015	15,161	57.8	15	28.6

주: 원내비중은 원내외 건수 또는 금액 대비 원내 건수 또는 금액의 비율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부표 A.12-16> 삼킴곤란 주요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단위: %)

	기간	총진료건수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수	투여일당 약품비
원내	2009~2015	15.0	0.9	2.1
	2010~2015	11.9	3.6	2.2
	2011~2015	8.6	-3.0	6.8
	2012~2015	3.6	1.1	4.1
	2013~2015	2.4	2.2	5.4
	2014~2015	1.3	-0.1	3.9
원외	2009~2015	16.4	6.0	21.3
	2010~2015	18.8	1.4	19.9
	2011~2015	15.1	0.1	16.7
	2012~2015	10.1	-0.8	19.2
	2013~2015	7.1	-0.9	10.9
	2014~2015	3.9	-0.8	5.9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7) 신종인플루엔자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유행성 질환의 특성상 연도별 등락이 매우 크지만 총 진

료건수는 2009년 100만건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2015년 165,913건으로 축소됐고 이에 사용되는 약품 매출액은 2009년 123억원 수준에서 2015년 35억원으로 감소

○ 총진료건수의 경우 2013년 29천건으로 크게 축소되었다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원내 비중은 연도별 등락 속에 40%대 중반수준을 유지

○ 약품 매출액도 총진료건수 추이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며 2013년 가장 낮은 7억원 수준까지 축소됐으나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원내 비중은 2011년 77.9%를 정점으로 이후 지속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며 2015년 56.7% 수준임

□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주요 변수들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원내외 주요 변수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 또는 감소율 추이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공통적인 양상을 보이며 변동 폭이 축소됨

○ 원내의 경우 총진료건수와 투여일당 약품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속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 수의 연평균 감소율 추이는 둔화되며 그 변화폭이 과거보다 크게 축소

○ 원외의 경우 총진료건수와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원내 주요 변수의 연평균 증감률 추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며 변동 폭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투여일당 약품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5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부표 A.12-17> 신종인플루엔자 원내외 비중 추이

(단위: 건, 억원, %)

	총진료		약품 매출액	
	건수	원내 비중	금액	원내 비중
2009	1,043,249	42.0	123	53.5
2010	87,918	47.1	23	73.8
2011	19,624	52.4	10	77.9
2012	72,254	41.7	16	53.2
2013	29,004	49.0	7	64.9
2014	144,732	43.4	26	50.3
2015	165,913	44.4	35	56.7

주: 원내비중은 원내외 건수 또는 금액 대비 원내 건수 또는 금액의 비율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부표 A.12-18> 신종인플루엔자 주요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단위: %)

	기간	총진료건수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수	투여일당 약품비
원내	2009~2015	-25.7	6.6	3.3
	2010~2015	10.1	-2.4	-4.6
	2011~2015	38.8	-9.8	-6.0
	2012~2015	16.1	0.8	-1.6
	2013~2015	31.5	-2.6	-0.5
	2014~2015	2.7	3.3	0.9
원외	2009~2015	-26.9	-1.7	11.3
	2010~2015	12.1	-2.8	6.8
	2011~2015	46.5	-4.5	-0.9
	2012~2015	14.0	-0.1	-1.3
	2013~2015	35.7	-0.4	-0.2
	2014~2015	2.0	0.9	-0.4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8) 야간혜모글로빈뇨

□ 야간혜모글로빈뇨의 총진료건수는 2009년 1,858건 수준에서 2015년 4,297건으로 증가했고 이에 사용되는 약품 매출액은 2012년까지 5억원 이하 수준이었으나 2013년 152억원으로 급증한 이후 2015년 265억원으로 지속 급증

○ 총진료건수의 원내 비중은 2009년 31.8%에서 2013년 이후 50% 내외로 확대되어 2015년 52.2% 수준이며 약품 매출액의 원내비중도 2013년 이후 9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을 전후하여 야간혜모글로빈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됨

□ 야간혜모글로빈뇨 관련 주요 변수들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 또는 감소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2013년 이후 그러한 양상은 더욱 두드러짐

○ 원내의 경우 2013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또는 감소율이 이전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 또는 감소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원외의 경우 원내 관련 변수들의 추이보다는 덜 명확하지만 2013년 이후 증가

세 또는 감소세의 둔화 양상이 관측되고 투여일당 약품비의 경우에는 감소세를 벗어나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부표 A.12-19> 야간헤모글로빈뇨 원내외 비중 추이

(단위: 건, 억원, %)

	총진료		약품 매출액	
	건수	원내 비중	금액	원내 비중
2009	1,858	31.8	3	58.2
2010	1,998	33.1	2	50.2
2011	2,148	35.4	2	54.8
2012	2,470	37.1	5	78.9
2013	3,363	45.4	152	99.3
2014	3,809	50.3	205	99.5
2015	4,297	52.2	265	99.6

주: 원내비중은 원내외 건수 또는 금액 대비 원내 건수 또는 금액의 비율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부표 A.12-20> 야간헤모글로빈뇨 주요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단위: %)

	기간	총진료건수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수	투여일당 약품비
원내	2009~2015	24.9	-22.6	139.0
	2010~2015	22.5	-19.0	151.0
	2011~2015	19.7	-20.1	153.1
	2012~2015	16.1	-16.0	106.6
	2013~2015	6.6	-9.5	13.9
	2014~2015	2.6	-7.8	10.4
원외	2009~2015	8.4	-5.1	-5.6
	2010~2015	7.4	-4.9	-2.8
	2011~2015	6.8	-4.5	-2.4
	2012~2015	4.8	-3.9	-0.8
	2013~2015	1.9	-2.1	0.0
	2014~2015	1.4	-1.3	0.2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9) 윌슨병

□ 윌슨병의 경우 총 진료건수는 2009년 이후 대체적으로 50건 이하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치료제 매출액도 대체로 300만원 미만 수준으로 나타남

○ 윌슨병 총진료건수의 원내 비중은 50% 안팎으로 나타나며 약품 매출액의 원내 비중은 2009년 70%대 후반 수준에서 2013년까지 축소되다가 이후 다시 확대되어 2015년 94.2% 수준에 달함

□ 윌슨병 관련 주요 변수들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 추이는 특정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원내 및 원외 총진료건수는 매우 불안정적인 양상으로 증가세와 감소세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남

○ 원내 및 원외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수의 경우도 특정한 양상을 찾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감소율의 크기가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원외의 경우 2015년 증가세로 전환

○ 원내 투여일당 약품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1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원외의 경우 2011년 이후 감소세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부표 A.12-21> 윌슨병 원내외 비중 추이

(단위: 건, 억원, %)

	총진료		약품 매출액	
	건수	원내 비중	금액	원내 비중
2009	45	48.9	0.10	78.4
2010	29	48.3	0.04	79.7
2011	28	53.6	0.02	70.7
2012	25	68.0	0.02	65.0
2013	22	54.5	0.01	59.3
2014	79	58.2	0.03	76.4
2015	30	50.0	0.03	94.2

주: 원내비중은 원내외 건수 또는 금액 대비 원내 건수 또는 금액의 비율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부표 A.12-22> 윌슨병 주요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단위: %)

	기간	총진료건수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수	투여일당 약품비
원내	2009~2015	-6.2	-2.8	-6.4
	2010~2015	1.2	-12.1	10.9
	2011~2015	0.0	-22.4	51.7
	2012~2015	-2.1	-15.7	41.1
	2013~2015	3.8	-11.9	43.5
	2014~2015	-17.0	-8.6	37.2
원외	2009~2015	-6.9	-29.5	1.3
	2010~2015	0.0	-23.7	2.2
	2011~2015	2.4	-16.1	-0.1
	2012~2015	11.0	-17.7	-11.1
	2013~2015	7.0	-8.2	-10.5
	2014~2015	-12.3	8.9	-16.6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10) 타이로신혈증

□ 타이로신혈증의 총진료건수는 2009년 이후 증가추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매해 50여건 이하 수준에 불과하고 해당 약품 매출액도 대체적으로 500만원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집계자료이므로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의 추이는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음
- ○ 총진료건수의 원내 비중은 2011년 이후 추세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 약품 매출액의 원내 비중은 2013년 이전에는 97%를 상회하기도 했으나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확대되며 2015년 45.5% 수준으로 특정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내 및 원외 타이로신혈증 치료 관련 주요 변수들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뚜렷한 특징을 찾기는 어려우나 2014년 이후 대체적으로 증가세 또는 감소세의 크기가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 총진료건수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은 원내의 경우 2014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고 원외의 경우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

수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도 2014년 이후 이전 기간보다 둔화됐음

○ 투여일당 약품비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은 원내의 경우 2014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원외의 경우 감소율의 크기가 축소되며 변동폭이 축소되는 양상

<부표 A.12-23> 타이로신혈증 원내외 비중 추이

(단위: 건, 억원, %)

	총진료		약품 매출액	
	건수	원내 비중	금액	원내 비중
2009	22	50.0	0.094	97.0
2010	17	35.3	0.005	6.7
2011	23	65.2	0.154	99.5
2012	24	62.5	0.022	97.0
2013	22	54.5	0.049	6.6
2014	55	54.5	0.032	22.6
2015	53	43.4	0.004	45.5

주: 원내비중은 원내외 건수 또는 금액 대비 원내 건수 또는 금액의 비율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부표 A.12-24> 타이로신혈증 주요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단위: %)

	기간	총진료건수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수	투여일당 약품비
원내	2009~2015	13.1	-34.4	-30.0
	2010~2015	25.1	-2.8	9.5
	2011~2015	7.4	-34.7	-32.2
	2012~2015	7.4	-17.6	-25.3
	2013~2015	11.5	-27.5	12.1
	2014~2015	-4.3	-14.4	-3.5
원외	2009~2015	18.2	-16.3	-3.5
	2010~2015	18.2	-19.3	-7.3
	2011~2015	24.6	-10.3	6.9
	2012~2015	22.2	4.8	-5.0
	2013~2015	20.1	-4.1	-47.9
	2014~2015	3.1	-2.0	-34.3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11) 혈우병

□ 혈우병 총진료건수는 2009년 35,546건에서 2015년 49,632건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다음으로 높은 진료건수를 기록하며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약품 매출액의 경우에는 2015년 1,968억원으로 분석 대상 12가지 질환 중 가장 큼

○ 총 진료건수의 원내비중은 2009년 87.8%에서 2015년 82.5%로 축소됐으며 약품 매출액의 원내 비중도 축소추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2015년 99.1%로 압도적으로 원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혈우병 관련 주요 변수들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 대체적으로 원내의 경우 2012년 전후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한편 원외의 경우 투여일 당 약품비의 경우에만 2012년 전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원내의 경우 총진료건수는 2012년 이전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보다 포함하지 않는 기간의 진료건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수의 경우 2012년 이전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대체로 감소세가 나타났으나 이후 기간의 경우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전환됐음

- 투여일당 약품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1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그 증가율은 2012년 이후 축소되며 2015년 0.1%에 그침

○ 원외의 경우 총진료건수와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수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투여일당 약품비의 경우 2012년 이전연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연평균 증가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며 축소되는 양상

<부표 A.12-25> 혈우병 원내외 비중 추이

(단위: 건, 억원, %)

	총진료		약품 매출액	
	건수	원내 비중	금액	원내 비중
2009	34,546	87.8	1,340	99.9
2010	31,276	85.6	1,506	99.9
2011	34,000	84.6	1,454	99.9
2012	42,949	84.1	1,497	99.4
2013	44,819	83.7	1,633	99.3
2014	46,942	82.7	1,843	99.3
2015	49,632	82.5	1,968	99.1

주: 원내비중은 원내외 건수 또는 금액 대비 원내 건수 또는 금액의 비율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부표 A.12-26> 혈우병 주요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단위: %)

	기간	총진료건수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수	투여일당 약품비
원내	2009~2015	5.1	3.0	-1.6
	2010~2015	7.3	-1.1	-1.6
	2011~2015	6.0	-1.7	0.8
	2012~2015	2.1	1.1	1.3
	2013~2015	1.5	1.0	0.6
	2014~2015	0.9	0.1	0.1
원외	2009~2015	12.8	6.7	26.1
	2010~2015	11.5	4.1	27.5
	2011~2015	8.9	3.7	26.0
	2012~2015	4.1	4.7	2.3
	2013~2015	2.9	3.5	-0.3
	2014~2015	1.1	1.9	0.5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12) 후천성면역결핍증

□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경우 2009년 17,054건에서 2015년 37,390건으로 지속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 약품 매출액도 2009년 270억원에서 2015년 704억원으로 확대됐음

○ 총진료비와 약품 매출액의 원내비중이 각각 97%와 99%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원내 치료 중심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음

□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주요 변수들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은 원내 및 원외의 경우 모두 2013년 이후의 기간에서 대체적으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대체로 모든 관련 변수들의 증가율 또는 감소율이 2013년 이후에 축소되며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임

○ 원내의 경우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수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은 대체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013년 이후 0.2% 이하의 감소세 지속

○ 원외의 경우 총진료건수와 투여일당 약품비가 2015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수는 2013년 이후 3% 초중반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며 안정화되는 것으로 판단됨

<부표 A.12-27> 후천성면역결핍증 원내외 비중 추이

(단위: 건, 억원, %)

	총진료		약품 매출액	
	건수	원내 비중	금액	원내 비중
2009	17,054	97.4	270	99.9
2010	19,556	97.2	322	99.6
2011	23,920	97.8	415	99.9
2012	29,083	97.9	478	99.9
2013	32,078	97.5	552	99.8
2014	35,870	97.2	635	99.6
2015	37,390	97.5	704	99.7

주: 원내비중은 원내외 건수 또는 금액 대비 원내 건수 또는 금액의 비율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부표 A.12-28> 후천성면역결핍증 주요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단위: %)

	기간	총진료건수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수	투여일당 약품비
원내	2009~2015	14.0	0.1	2.8
	2010~2015	11.4	-1.4	3.7
	2011~2015	7.7	-1.6	3.0
	2012~2015	4.2	0.3	2.0
	2013~2015	2.6	-0.2	1.7
	2014~2015	0.7	-0.1	1.1

<부표 A.12-28>의 계속

	기간	총진료건수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수	투여일당 약품비
원외	2009~2015	13.5	5.7	13.2
	2010~2015	9.9	7.8	-9.4
	2011~2015	10.2	5.9	11.2
	2012~2015	7.8	4.9	13.1
	2013~2015	3.2	3.5	3.0
	2014~2015	-1.1	3.2	-2.7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자료

4. 추정모형 검토

□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약품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는 작업은 크게 매출규모 추정작업과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으로 나눌 수 있음

○ 각각의 정책대상 질환마다 진료건수, 진료건당 투여일, 투여일당 약품비의 추이가 서로 다르므로 12개 정책대상 질환에 대해 개별적으로 매출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각각의 질환의 진료건수, 진료건당 투여일, 투여일당 약품비의 증가율에 대한 가정을 통해 이후 연도에 대한 전망을 수행하여 향후 조세지출 규모 전망치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질환의 구분뿐만 아니라 원내처방과 원외처방에 대한 구분을 반영하여 각각의 매출규모를 추정
  - 2016년과 2017년 매출규모 추정을 위해서, 각 질환별 주요 변수들의 최근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2013년 이후 각 변수들의 연평균 증감률이 2016년과 2017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함
- 과거 연도에 대해서는 개별 질환별 원내 및 원외 약품 매출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조세지출 규모 산출의 근거자료로 활용
  - 물론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약품에 대한 매출 규모는 현재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정치 또는 전망치는 건강보험 급여대상 약품에 대해서만 제한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

○ 각각의 질환의 치료약품의 매출규모 추정치에 각 약품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함

으로써 해당 약품의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이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

- 각 품목별 부가가치율이 파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제조업 또는 판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율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임
- 향후 이에 대한 보완작업이 수행된다면 보다 정확한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여기서는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산출하고자 함
  -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약품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으나 어느 정도가 국내에서 생산되는지를 파악되지 않으므로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자 함
  -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국세통계연보에서 찾을 수 있는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1기 및 2기 매출과표, 매입과표를 합산하여 2009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 다시 계산하여 활용
  - 2016년과 2017년 부가가치율 전망은 쉽지 않은 작업이므로 과거 3년치 평균 부가가치율이 2016년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함

    * 소매업 전체 부가가치율: 2009년 17.3%, 2010년 17.9%, 2011년 17%, 2012년 22%, 2013년 16.9%, 2014년 16%, 2015년 16.7%, 2013~2015년 평균 16.5%

□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집계된 매출액 또는 매출 전망치에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부가가치 규모를 산정하고 이 부가가치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다만 각 질환의 매출액 규모를 결정하는 총진료건수, 진료건당 평균 투여일, 투여일당 평균 약품 매출액의 최근 추이를 원내와 원외처방을 구분하여 반영

- 앞에서 살펴본 각 질환별 원내외 구분별 주요 변수의 증가율 추이 중 2013~2015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2016년과 2017년의 각 질환별 매출액을 전망함

○ 부가가치율에 대한 가정도 각 질환별 치료제의 국내생산과 해외 수입 비중을 파악할 수 있으면 보다 정교하게 설정할 수 있겠으나 현재 가용한 자료로는 파악이 어려우므로 2013~2015년 평균 소매업 전체(법인사업자 및 일반사업자 포괄)의 부가가치율 16.5%를 가정

5. 추정결과

□ 2009년 이후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에 의해 발생한 조세지출 규모는 2009년 34.7억원에서 2015년 54.6억원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이후 발생한 조세지출 규모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질병은 혈우병으로 나타남

- 2009년 전체 조세지출 규모에서 혈우병 치료제에 대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6.7% 수준이었으며 2010년 72.8%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15년 60.1% 수준

○ 혈우병 다음으로 고쉐병, 야간헤모글로빈뇨,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가 2015년 기준 3.6억원 이상 크게 나타남

○ 여타 질병 치료제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작게는 1만원 규모에서 5,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작은 조세지출 규모가 발생한 질환은 타이로신혈증으로 2015년 기준 총 약품 매출규모가 4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부표 A.12-29>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조세지출 실적 추정

(단위: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고쉐병	2.4842	1.5214	2.0121	3.9879	3.9308	4.2488	5.1715
근이영양증	0.0552	0.0674	0.0892	0.0954	0.0797	0.0782	0.0888
림프절증식증	0.0457	0.0611	0.0742	0.1022	0.0700	0.0652	0.0762
뮤코다당증[1)]	2.1456	2.1804	3.3507	4.5735	3.5552	.	.
부신이영양증	0.0136	0.0217	0.0214	0.0298	0.0190	0.0165	0.0236
삼킴곤란	0.0428	0.0481	0.0659	0.1033	0.1071	0.1499	0.2472
신종인플루엔자[2)]	2.1282	0.4128	.	.	.	.	.
야간헤모글로빈뇨[3)]	.	.	.	.	.	3.2850	4.4261
윌슨병	0.0017	0.0007	0.0003	0.0004	0.0002	0.0005	0.0005
타이로신혈증	0.0016	0.0001	0.0026	0.0005	0.0008	0.0005	0.0001
혈우병	23.1456	26.8996	24.6997	32.9996	27.5410	29.5223	32.8201
후천선면역결필증	4.6623	5.7508	7.0498	10.5402	9.3114	10.1637	11.7353
합계	34.7265	36.9641	37.3659	52.4328	44.6152	47.5306	54.5894

주: 1) 뮤코다당증은 2014년 2월부로 시행령에서 삭제됨
2) 신종인플루엔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과세특례 적용
3) 야간헤모글로빈뇨는 2014년 2월부로 시행령에 추가됨

○ 이러한 조세지출 실적 추정치는 건강보험급여 대상 품목에 한해서만 추정된 것이라는 점이 재차 강조될 필요

□ 앞에서 언급한 주요 변수들의 추이와 부가가치율에 대한 가정 아래 산출한 2016년과 2017년 동 조항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 전망결과는 각각 56.3억원과 58.7억원 수준으로 나타남

<부표 A.12-30>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조세지출 규모 전망

(단위: 억원)

	2015 (실적)	2016 (전망)	2017 (전망)
고쉐병	5.1715	5.3729	5.6350
근이영양증	0.0888	0.0898	0.0917
림프절증식증	0.0762	0.0767	0.0780
부신이영양증	0.0236	0.0243	0.0253
삼킴곤란	0.2472	0.2829	0.3271
야간혜모글로빈뇨	4.4261	4.8148	5.2874
윌슨병	0.0005	0.0007	0.0009
타이로신혈증	0.0001	0.0000	0.0000
혈우병	32.8201	33.5416	34.6033
후천선면역결필증	11.7353	12.1058	12.6061
합계	54.5894	56.3095	58.6548

참고문헌

윤충식 외 2명,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6

박실비아 외 2명,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A.13.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제106조의 제1항 제11호)

1. 제도 개요 및 연혁

가. 도입목적

□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나아가 단일세율로 운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의 역진적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72]

○ 기초생활에 필수적인 재화 및 용역, 국민후생용역, 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 등을 주된 면세대상으로 하고 있음

□ 영유아를 보육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가계지출을 낮춰 줌으로써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지원 강화를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있음[73]

○ OECD 국가 최저수준인 출산율 제고 및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74]

-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에서 출산 중단 사유 중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1위를 차지했음

나. 정책대상자 및 수혜 내용

□ 정책 대상자 및 수혜자

○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소정의 분유와 기저귀 소비자[75]

□ 수혜 내용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72) 삼일인포마인,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의 내용 발췌
73) 2013년, 2014년 보건복지부의 조세지출 자체평가 의견 내용 발췌
74) 2013년 합계출산율이 1.19명까지 하락하였으며, OECD 평균(1.7명) 대비 크게 미흡한 상황
75) 2013년, 2014년 보건복지부의 조세지출 자체평가 의견 내용 발췌

것은 제외함)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조특법」§106①10)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 관련 항목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탈지분유 및 전지분유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탈지분유 및 전지분유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의 면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76]

다. 제도 연혁

<부표 A.13-1> 조세특례제한법상 변천

연도	주요 변경사항
2008. 12. 26	○ 제도 신설 ○ 일몰 년도 -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조세특례 적용(3년 연장)
2011. 12. 31	○ 일몰 연장 -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조세특례 적용(3년 연장)
2014. 12. 23	○ 일몰 연장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조세특례 적용(3년 연장)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라. 조세지출규모

<부표 A.13-2>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전망)	2017 (전망)
부가가치세	.	.	18

주: 추정곤란사유: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금액을 파악·관리하기 곤란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위의 2017년 조세지출규모 전망치는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액상형 분유에 한하여 추정된 일부 세수추계 수치로서 동 조항 전체의 조세지출 규모가 아님

7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을 참고하여 작성함

○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육아비용 절감을 위하여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됨에 따라 액상용 분유업계의 시장규모 추정치에 기초한 액상분유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로 판단됨

○ 액상용 분유의 시장규모를 약 250억원으로 보고 해당 시장규모의 100분의 10을 부가가치세액으로 추정한 부분이 2017년도 전망치로 기재됨

- 조세지출 예산서는 9월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4분기에 걸쳐 세금이 부과되므로 개정 세법이 적용되는 2017년의 경우 총부가가치세 전망치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함

2. 국세청 자료 현황

□ 현재 국세청에서 보유 중인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함

○ 부가가치세 업종 코드를 이용하여 추출한 부가가치세 면제금액 자료의 경우 관련 업종 코드의 분류 포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동 조항의 조세지출 금액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로 적절치 못함

○ 또한 해당 코드에서의 면세수익금액 자료를 추출한다 해도 면세사업자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면세 수익금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출한 자료가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관련 업종 코드

<부표 A.13-3> 영유아용 조제분유 및 기저귀 관련 업종 코드

귀속	업종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15	210903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2015	152001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2015	512244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가공식품 도매업	낙농품 도매업, 빵 및 과자 도매업,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2015	521911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제외)	대형 종합 소매업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부표 A.13-3>의 계속

귀속	업종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15	521991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제외)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그 외 기타 종합소매업
2015	522071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제외)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자료 : 국세청, 2015년도 귀속 기준경비율 자료

3. 기타 경제사회 통계자료 현황

가. 조제분유

□ 한국식품유통공사에서 링크아즈텍코리아에 의뢰해 수집한 자료로서 오프라인 대형 매장뿐만 아니라 소형판매점 및 온라인 판매점에서의 매출까지 포함하는 자료를 협조 받음

○ 해당 자료는 품목별, 업태별 소매점 매출총액에 대한 자료로 해당 재화에 대하여 최종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의 합계를 파악할 수 있음

- 편의점, 독립슈퍼, 일반식품점의 경우 표본조사를 통해 집계됨
- 대형 유통사인 “이마트”의 판매실적이 빠져 있어 과소집계금액으로 판단됨

○ 2011년도 4/4분기부터의 업태별 자료를 제공하며 2013년도부터 제조사별, 분기별 및 연도별 합계 자료를 제공함

- 2012년도의 경우 4/4분기 자료가 없으므로 정확한 분기별 자료는 2013년도부터 제공함

○ 2016년도는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2/4분기까지의 자료를 제공함

<부표 A.13-4> 조제분유 품목별 소매점 매출액

(단위: 백만원)

연도(분기)	2013	2014	2015	2016(1/4)	2016(2/4)
남양유업	144,499	99,704	58,834	16,165	16,395
매일유업	70,817	60,833	41,392	8,798	8,204
일동후디스	36,615	40,254	32,418	6,247	6,473
롯데푸드	16,092	13,875	12,853	2,573	2,058
엘지생활건강	900	3,605	5,911	929	1,243

<부표 A.13-4>의 계속

연도(분기)	2013	2014	2015	2016(1/4)	2016(2/4)
아이배넷	5,609	4,307	2,060	404	414
한국애보트	120	4	-	-	-
파인트리비에이치 코리아	10	4	5	1	1
뉴질랜드 오리진	-	11	36	11	10
녹십자	-	6	24	312	569
합계	274,664	222,604	159,541	35,442	35,370

□ 상기 자료에서 누락된 부분은 이마트를 통해 판매되는 조제분유의 매출액과 함께 해외 직구 등을 통해서 수입하는 수입산 조제분유에 대한 매출액이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식·비공식 통계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

○ 대형할인마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마트의 조제분유 판매량이 누락된 것은 상기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크게 저하시킴

○ 또한 수입분 해외 조제분유의 유통량 또는 소비금액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이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점도 상기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크게 저하시킴

- 관세청의 품목별 수입금액에는 개별소비자의 해외직구 금액뿐만 아니라 대형할인마트 등 해외상품 수입판매업체의 조제분유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관세청의 품목별 수입금액을 합산할 경우 중복계상될 가능성도 있음

○ 현재 외국 시장조사기관인 Koncept Analytics에서 지난 5월에 발간한 "Global Infant Formula Market Report: 2016 Edition"의 5장에 한국시장규모에 대한 분석이 수록되어 있어서 자료 입수를 진행 중임

- 향후 해당 자료가 입수되면 우리나라 조제분유 시장규모에 대한 하나의 추정치를 확보하고 이하 간접적 소비금액 추정치와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조제분유의 국내 시장규모를 파악하는 다른 방법은 우리나라 인구추계 중 주요 조제분유 섭취계층인 0~4세의 영유아 인구수와 연령별 조제분유 섭취율 및 월별 평균 조제분유 구입비용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시장규모를 추정하는 것임

○ 통계청의 0~4세 연령별 중위추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0~4세 인구는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연평균 1.6%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3~2017년 기간 동안 0세 인구수는 연평균 3%씩 감소, 1세 2.7%씩 감소, 2세 2.2%씩 감소, 3세 0.5%씩 감소, 4세 0.7%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최윤경 외(2016)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령별 분유섭취율, 연령별 월평균 조제분유 구입비를 상기 통계청의 중위 추계결과에 적용하여 전체 시장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음

- 최윤경 외(2016)에서 제시된 연령별 분유섭취율과 월평균 구입비는 1,002 영유아 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므로 얼마나 전체 인구에 대한 대표성을 갖느냐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최윤경 외(2016)의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과거 연도의 조제분유 섭취율 및 월평균 구입비가 가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듯이, 3세 아동의 월평균 조제분유 구입비용이 여타 연령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점도 설문조사의 한계로 판단됨
- 현재 조제분유 시장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대안이 부재하므로 상기 분유섭취율과 월평균 구입비는 2013~2017년의 기간 동안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수행함

<부표 A.13-5> 2016년 연령별 조제분유 섭취율 및 아동 1명당 월평균 구입비용

(단위: %, 원)

	조제분유 섭취율	월평균 구입비
0세	66.9	81209.2
1세	55.6	88403.2
2세	11.3	73,208.0
3세	2.3	28,720.0
4세	2.1	75,569.2

자료: 최윤경 외(2016)

□ 위에서 설명한 간접적인 조제분유 시장규모는 2013년 6,411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연평균 2.8%씩 감소하여 2016년 5918.8억원, 2017년 5,730.8억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연령별 조제분유 소비금액의 연평균 감소율은 연령별 인구감소율과 동일하고 전체 시장규모의 연평균 감소율은 -2.8%로 나타남

<부표 A.13-6> 연령별 조제분유 소비규모 및 전체 시장규모 추정결과

(단위: 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0세	3,030.0	2,848.1	2,879.6	2,767.6	2,679.2
1세	2,784.0	2,734.1	2,565.0	2,593.5	2,493.3

<부표 A.13-6>의 계속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세	476.6	468.3	459.5	431.4	435.9
3세	35.1	38.1	37.3	36.7	34.4
4세	85.6	84.3	91.3	89.6	88.0
합계	6,411.3	6,172.9	6,032.6	5,918.8	5,730.8

나. 영유아용 기저귀

□ 영유아용 기저귀 매출액, 시장점유율 추정치를 영유아용 기저귀를 생산 판매하는 개별 기업으로부터 협조 받음

○ 동 자료에는 자료 협조 개별 업체의 영유아용 기저귀 연도별 매출액, 해당 기업이 추정하는 시장점유율이 포함되어 있음

- 협조된 개별 업체의 연도별 매출액과 해당 기업의 시장점유율 추정치를 이용하여 시장규모를 역산할 수 있음

○ 이 자료의 신뢰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이 자료를 활용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는 데 걸림돌임

<부표 A.13-7> 개별 업체의 영유아용 기저귀 관련 자료

(단위: 억원, %)

	A업체의 매출액	A업체의 시장점유율	시장규모
2010년	403	5.0	8,060
2011년	496	5.6	8,857
2012년	661	8.4	7,869
2013년	820	10.9	7,523
2014년	785	8.0	9,813
2015년	761	6.6	11,530
2016년 3분기 누계	510	4.6	11,087

주: 1. 시장규모는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을 이용한 추정치

□ 조제분유에서와 같이 통계청의 인구추계, 최윤경 외(2016)의 일회용 기저귀 사용률 및 월평균 기저귀 구입비용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기저귀 시장규모를 추정할 수 있으며 2013년 기저귀 시장규모는 1.16조원 규모에서 연평균 2.4%씩 감소하여 2016년 1.08조원, 2017년 1.05조원 규모로 추정됨

○ 개별 업체에서 제공한 시장점유율과 해당 업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시장규모와 간접추계방식으로 추정한 시장규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데, 개별 기업 협조자료의 신뢰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5년의 경우에는 383.8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2014년과 2013년에는 각각 1,554.9억원과 4,111.4억원의 차이가 발생
  - 2014년까지는 간접추계방식의 추정치가 크고 2015년에는 개별 업체 제공자료가 더 큼
- 이러한 시장규모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간접추계방식에서 2016년 월평균 지출액을 2013년과 201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데서 비롯될 수도 있음
- 그러나 개별 기업의 협조자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시장규모는 0~4세 인구가 2013년 이후 2015년까지 연평균 0.4%씩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개별 업체 협조자료에 기초한 시장규모 추정치는 연평균 23.8%씩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가격요인 또는 제품의 고급화를 통한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설명하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음

○ 따라서 향후 조세지출 규모 분석에는 간접추계방식을 통해 추정한 시장규모를 활용하고자 함

<부표 A.13-8> 2016년 연령별 일회용 기저귀 사용률 및 아동 1명당 월평균 구입비용

(단위: %, 원)

	일회용 기저귀 사용률	월평균 구입비
0세	100	72,165.5
1세	99.1	59,610.9
2세	97.3	53,139.1
3세	54.8	37,049.2
4세	11.4	33,390.1

자료: 최윤경 외(2016)

<부표 A.13-9 연령별 일회용 기저귀 소비규모 및 전체 시장규모 추정결과

(단위: 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0세	4,024.8	3,783.2	3,824.9	3,676.2	3,558.8
1세	3,346.0	3,286.0	3,082.7	3,117.1	2,996.7
2세	2,978.8	2,926.7	2,871.6	2,696.1	2,724.4
3세	1,079.6	1,169.6	1,147.8	1,127.2	1,057.9
4세	205.2	202.3	219.1	215.0	211.1
합계	11,634.4	11,367.9	11,146.2	10,831.6	10,548.8

4. 추정모형 검토

□ 영유아용 조제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각 재화의 최종소비자의 소비규모로 추정된 시장규모에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해당 재화의 부가가치 규모를 산정하고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추정함

○ X_t가 t-연도의 해당 재화 시장규모이고, v_t가 같은 연도의 부가가치율일 때,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 TE_t는 다음과 같이 계산함

$$TE_t = X_t \times v_t \times 0.1$$

○ 여기서 어떤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사용할지가 문제이나 국내 제조업체가 존재하므로 수입품도 국내 제조업체와 동일한 부가가치율을 갖는 것으로 가정함

- 이러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조제분유나 기저귀 품목의 부가가치율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전체 제조업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율을 사용함
  - 이러한 품목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는 법인사업자라는 점을 반영함
- 국세통계연보상에서 찾을 수 있는 제조업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율은 2013년 귀속 24.1%, 2014년 귀속 24.4%, 2015년 귀속 28.0%임
  - 2016년과 2017년의 부가가치율은 2013~2015년 귀속 부가가치율의 평균인 25.5%로 가정
- 조제분유의 경우 액상과 분말을 모두 포괄하므로 앞에서 추정한 조제분유 시장규모에서 250억원(2017년 추정치)을 차감
  - 액상 조제분유의 시장규모는 2016년 25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2013년부터 동일한 250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가정

5. 추정결과

□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계청의 0~4세 인구추계를 이용한 간접추계방식으로 추정한 시장규모에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2013~2015년 조세지출 규모 추정결과는 아래와 같음

○ 2013년 이후 2015년까지 간접추계방식으로 추정한 영유아용 기저귀와 조제분유의 시장규모는 감소추이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개선된 제조업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율에 의해 조세지출 규모는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조제분유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2013년 148.5억원에서 2014년 144.5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5년 부가가치율 개선으로 조세지출 규모는 161.9억원으로 증가

- 2014년 부가가치율 개선정도는 0.3%포인트에 불과했으나 2015년 부가가치율은 3.6%포인트 확대되며 조세지출 규모 증가를 유발

○ 기저귀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 역시 같은 양상을 보이여 2013년 280.4억원에서 2015년 312억원으로 확대

<부표 A.13-10> 영유아 조제분유 및 기저귀 부가가치세 면세의 조세지출 규모 추정치

(단위: 억원, %)

	2013	2014	2015
조제분유	148.5	144.5	161.9
기저귀	280.4	277.4	312.1
합계	428.9	421.9	474.0

□ 동 조항에 의해 유발되는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 420.8억원, 2017년 415.1억원으로 전망되며 2015년 이후 연평균 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조세지출 규모에 산출에 적용된 부가가치율은 28%이지만 2016년과 2017년 전망에는 과거 3년 평균 부가가치율 25.5%를 적용하여 조세지출 규모가 시장규모 감소율 보다 크게 나타남

○ 향후 국세청의 부가가치율에 대한 보다 엄밀한 자료의 협조를 통해 보다 정확한 조세지출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부표 A.13-11> 영유아 조제분유 및 기저귀 부가가치세 면세의 조세지출 규모 전망

(단위: 억원, %)

	2015 (추정)	2016 (전망)	2017 (전망)
조제분유	161.9	144.6	146.1
기저귀	312.1	276.2	269.0
합계	474.0	420.8	415.1

참고문헌

윤충식 외 2명,『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6

이삼식 외 9명,『행복한 임신 · 출산을 위한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최윤경 · 이정원 · 박진아 · 송헌재 · 이동하,『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효과성 분석 및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2016.

A.14.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제1항제12호)

1. 제도개요 및 연혁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조세특례제한법**
> **제10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입 배경 및 목적

□ (도입배경)「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가 신설되기 전에는 동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의해서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조합에서 생산하는 목재펠릿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었기 때문에 민간업체의 불만이 커짐

- ○ 이와 함께, 화석연료인 연탄과 무연탄이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라는 점도 목재펠릿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요구가 커짐[77]
- ○ 다른 이유로 목재펠릿이 친환경 연료이며, 화석연료와 달리 오염물질 발생이 낮고, 산림을 이용하여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이를 권장할 대내외적 이유가 존재함

77) 「2010년도 조세감면 건의서」 내용 중

-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 목재펠릿을 권장할 국내외 환경이 조성됨

□ (도입목적)조세형평성을 이유로 민간업체에서 생산하는 목재펠릿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 요청하여 기재부에 건의함

○ 산림청에서 「2010년 조세감면 건의서」(일련번호 10-12)를 제출하여 건의의견 제시

- 조세감면 건의서에는 연탄, 무연탄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포함되도록 요청하고 있음

나. 연혁

□ 주요세법 변경사항

○ 2010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도 신설(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의4호)

○ 2013년 1월 1일 일부개정: 일몰연장(2015년 12월 31일)

○ 2015년 12월 15일 일부개정: 일몰연장(2017년 12월 31일)

다. 정책대상자 및 수혜자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인 민간업체와 목재펠릿을 이용하는 최종소비자가 정책대상자임

○ 목재펠릿을 생산·수입하는 업체는 최소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고, 최종소비자는 간접세 부담이 줄어듦

-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본 조세특례(조특법106①1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78]

□ 본 조세특례가 도입되기 전에는 2010년 7개의 목재펠릿 제조업체가 있었으나, 현재는 총 24개 제조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 중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산림조합에서 생산된 목재펠릿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음

- 본 조세특례(조특법106①12)에 신설되기 이전부터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고 있었으나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78)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85)

○ 2015년도 기준으로 15개 기업이 본 조세특례의 혜택을 받고 있음

- 총 18개 민간기업이 있지만, 3개 업체는 집계된 판매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부표 A.14-1> 목재펠릿 생산기업 현황: 2015년 기준

(단위: 톤)

번호	기업명	생산용량	생산량	판매량
1	산림조합중앙회	7,800	9,132	8,171
2	신영이앤피	15,600	19,078	15,022
3	양평산림조합	7,800	4,453	1,811
4	단양산림조합	7,800	8,011	6,129
5	풍림	7,800	8,352	7,645
6	아주녹화개발	7,800	4,341	4,183
7	포항산림조합	7,800	6,958	5,367
8	세종산림조합	11,700	4,198	2,566
9	산청산림조합	3,900	2,427	1,452
10	개명목재	3,900	869	519
11	청림	3,900	-	-
12	경기아스콘	1,950	1,886	2,397
13	서귀포산림조합	1,950	167	167
14	대현우드	7,800	4,897	4,711
15	(재)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	1,950	32	46
16	무주군	7,800	1,431	1,182
17	세온엔텍	3,900	400	690
18	일도바이오			
19	대성우드(sk임업)	7,800	2,022	2,581
20	그린에코	7,800	160	349
21	규원에너지(구 우주그린)	15,600	3,243	2,980
22	삼다에너지비료	11,700	80	-
23	유성에너지산업	5,850	-	-
24	유한회사로컬이앤말	3,900	-	-
합계		163,800	82,137	67,968

자료: (사)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 목재펠릿 보일러는 2009~2014년 기간동안 총 18,638대가 보급되었고 2015년 기존 보급된 목재펠릿 보일러 총량의 10% 정도인 1,858대가 추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남

○ 주택용이 전체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 이외의 나머지 용도가 약 5%를 차지함

<부표 A.14-2>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현황: 2015년 기준

(단위: 대)

구분	주택용	주민편의, 사회복지일반시설	휴양림 용	일반시설용	지역단위 집중난방용	합계
'09 ~'14년	17,672	935	24	4	3	18,638
'15년	1,716	142	-	-	-	1,858
합계	19,388	1,077	24	4	3	20,496

출처: (사)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 목재펠릿 소비량의 대부분이 발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발전용 소비량은 2015년 전년 대비 2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도에 전체의 약 73%가 발전용으로 소비되었으며, 농업용과 산업용 순으로 소비량이 많음

- 개별가구의 난방보다 발전 및 작물재배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음
- 전년 대비 2015년 발전용 목재펠릿 소비량은 약 26.4% 감소하였지만, 나머지 용도는 12.9~99.7% 증가함
  - 그러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발전용 소비량의 감소로 인해 2015년 전체 목재펠릿 소비량은 전년 대비 14.9% 감소하였음
  - 다른 용도의 경우 난로와 산업용을 중심으로 2015년 큰 폭의 사용량 증가세를 보였음

<부표 A.14-3> 용도별 목재펠릿 소비량

(단위: 톤, %)

구분	총계	주택용	난로	산업용	농업용	발전용
2014년	1,737,274	57,865	20,095	76,650	118,000	1,464,664
비중	100	3.3	1.2	4.4	6.8	84.3
2015년	1,478,175	75,496	37,772	153,090	133,300	1,078,517
비중	100	5.1	2.6	10.4	9.0	73.0
14년 대비 증감률	-14.91	30.47	87.97	99.73	12.97	-26.36

자료: (사)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2. 추정방법 검토

가. 감면규모 추정에 사용할 자료

□ (사)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매년 목재펠릿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생성하여 산림청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 자료가 유일한 자료이므로 이를 감면규모 추정에 이용함

○ 연도별·제조업체별 생산 및 판매량, 해외 국가별 목재펠릿 수입현황 등 통계자료가 발표되고 있음

○ 국내 목재펠릿 생산업체의 생산판매량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 추정에는 판매량, 톤당 가격 등을 이용

○ 수입목재펠릿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수입물량과 수입단가를 이용하여 추정함

나. 추정방법

□ 기본산식

○ 국내 생산업체의 생산판매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

- {업체별 판매량(톤) × 소포장(20kg) 톤당 가격(관내 톤당 가격과 관외 톤당 가격의 평균치)} ×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율(10%)
  - 관내·외 판매량을 각각 알 수 없으므로 평균치를 이용하여 추정함
  - 톤백 포장별 가격은 일부 업체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포장(20kg)의 1톤당 가격으로 추정함
-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 산림조합은 감면규모 추정에서 제외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음
- 도·소매 판매량을 구분할 수 없고, 이후 유통과정에 대한 정보가 제한됨

○ 수입물량

- {국가별 수입물량(톤) × 톤당 가격($) × 2015년도 원/달러환율 × (1 + 국가별 관세율)} ×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율(10%)
  - (사)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CIF 기준 수입물량의 1톤당 가격으로 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입 국가별 해당 관세율을 반영하여 감면규모를 추정함

·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연간 매출과표와 매입과표를 이용하여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계산하면 2011년 22.3%, 2012년 23.69%, 2013년 25.1%, 2014년 25.37%, 2015년 28.83%로 나타남

* 목제펠릿 제조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정확히 찾을 수 없으므로 국세통계연보상에 제시된 제조업 전체의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추정함

3. 추정결과

가. 2015년 조세지출 규모

□ 국내 생산판매에 대한 감면규모

○ 2015년 국내 생산업체의 총판매량은 67,968톤이며, 총판매액의 추정치는 220억원 규모이며,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산림조합을 제외한 감면규모는 3억 8,900만원 수준으로 추계됨

<부표 A.14-4> '15년도 국내 생산업체의 부가가치세 감면규모 추정결과

번호	기업명	판매량 (톤)	톤당 가격 (관내, 원)	톤당 가격 (관외, 원)	총판매액 (천원)	감면규모 (천원)
1	산림조합중앙회	8,171	350,000	350,000	2,859,850	타조항 감면
2	신영이앤피	15,022	310,000	330,000	4,807,040	138,587
3	양평산림조합	1811	330,000	350,000	615,740	타조항 감면
4	단양산림조합	6,129	315,000	330,000	1,976,603	타조항 감면
5	풍림	7,645	290,000	320,000	2,331,725	67,224
6	아주녹화개발	4,183	350,000	370,000	1,505,880	43,415
7	포항산림조합	5367	320,000	340,000	1,771,110	타조항 감면
8	세종산림조합	2566	330,000	350,000	872,440	타조항 감면
9	산청산림조합	1452	320,000	340,000	479,160	타조항 감면
10	개명목재	519	340,000	340,000	176,460	5,087
11	청림	-	-	-	-	-
12	경기아스콘	2397	350,000	350,000	838,950	24,187
13	서귀포산림조합	167	340,000	-	56,780	타조항 감면
14	대현우드	4711	245,000	250,000	1,165,973	33,615
15	(재)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	46	280,000	-	12,880	371
16	무주군	1182	290,000	320,000	360,510	10,394
17	세온엔텍	690	340,000	340,000	234,600	6,764
18	일도바이오	-	-	-	-	-

<부표 A.14-4>의 계속

번호	기업명	판매량 (톤)	톤당 가격 (관내, 원)	톤당 가격 (관외, 원)	총판매액 (천원)	감면규모 (천원)
19	대성우드(sk임업)	2,581	330,000	350,000	877,540	25,299
20	그린에코	349	360,000	360,000	125,640	3,622
21	규원에너지 (구 우주그린)	2980	330,000	330,000	983,400	28,351
22	삼다에너지비료	-	-	-	-	-
23	유성에너지산업	-	-	-	-	-
24	유한회사 로컬이앤말	-	-	-	-	-
	소계	67,968	-	-	22,052,280	386,916

주: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산림조합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면제됨

□ 해외 수입물량에 대한 감면규모

○ 15년도 목재펠릿 총수입량은 1,470,659톤이며, 관세를 포함한 총수입금액은 약 2,124억원으로 감면금액의 추정치는 212억 4천만원으로 추계됨

- 베트남에서 수입된 물량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감면금액의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인해,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감면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음
  - 가격은 두 번째로 저렴하며 한·아세안 FTA로 관세도 없음

<부표 A.14-5> 2015년도 해외 수입물량의 부가가치세 감면추정규모

번호	국가	수입량(톤)	가격 ($/톤)	관세율	총수입금액 (천원)	감면규모 (천원)
1	베트남	1,022,809	112	0%	134,315,278	3,872,309
2	캐나다	87,743	183	1.3%	19,071,545	549,833
3	중국	3,057	178	0%	638,011	18,394
4	말레이지아	153,959	122	0%	22,023,065	634,925
5	태국	35,118	127	0%	5,229,334	150,762
6	인도네시아	59,977	119	0%	8,368,441	241,262
7	미국	18,847	146	0%	3,226,324	93,015
8	러시아	84,070	134	2%	13,472,831	388,422
9	일본	525	202	2%	126,830	3,657
10	남아프리카 공화국	1,753	130	2%	272,545	7,857

<부표 A.14-5>의 계속

번호	국가	수입량(톤)	가격 ($/톤)	관세율	총수입금액 (천원)	감면규모 (천원)
11	독일	207	691	0%	167,711	4,835
12	네덜란드	895	323	0%	338,952	9,772
13	폴란드	111	45	0%	5,857	169
14	뉴질랜드	1216	198	1.3%	285,970	8,245
15	우크라이나	372	172	2%	76,522	2,206
16	대만	26	154	2%	4,788,584	138,055
소계		1,470,659	-	-	212,407,799	6,123,717

주: 총수입금액은 2015년도 환율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통화별 환율 조사통계」, 2015

□ 국내 생산판매분과 수입분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유발되는 조세지출 규모는 2015년 총 65억 1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이 수입분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국내생산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금액은 총 3억 9천만원으로 추정되며, 수입분 목재펠릿에 대한 감면금액은 총 61억 2천만원으로 추정됨

□ 이상에서 적용한 방식대로 2011년 이후 감면규모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의 주된 요인은 수입분의 빠른 성장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51억 6천만원 수준이던 목재펠릿 총수입액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4년 3,856억원 규모로 확대됐으며 2015년 2,124억원 규모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1년 105억 3천만원 수준의 국내 생산판매 목재펠릿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220억원 규모

○ 목재펠릿 수입규모가 2011년 국내 생산판매금액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국내 생산판매금액의 10배 수준으로 확대

- 2015년 목재펠릿 수입금액 감소는 전체 소비량의 80%에 달하는 발전용 목재펠릿 소비량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부표 A.14-6> 2011년 이후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의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국내분	1.50	2.29	3.06	3.93	3.87
수입분	1.15	4.63	22.17	90.96	61.24
합계	2.65	6.93	25.23	94.89	65.11

나. 2016년, 2017년도 전망치

□ 목재펠릿은 국내 생산분 판매금액 및 수입분 수입금액은 2014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2015년 위축된 상황이어서 향후 전망치 추정을 위한 추이를 가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나 201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자 함

○ '14년도까지 수입금액은 평균 188.7%씩 증가하였지만, '15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40.8% 감소하였음

- 국내 생산물량의 판매금액도 '14년도까지 연평균 증가율 37%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15년도에 전년도 판매액 대비 18.6% 감소함

○ 최근 3년간('13~15년) 국내분 판매금액 및 수입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이용하여 2016년과 2017년 판매금액 및 수입금액을 추정할 경우 2014년 대비 2015년의 급격한 감소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최근 5년간 목재펠릿 국내산 판매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20.3%이고 수입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53.25%로 나타나서 201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전망할 경우 2015년의 감소 추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2013년 이후 2015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국내분 판매금액 0.35%, 수입금액 55.09%로 나타나서 수입분 증가세로 향후 전망을 수행함

<부표 A.14-7> 2015년 이후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판매금액 및 수입금액 추정치

(단위: 억원)

	2015	2016	2017
국내분	220.5	221.3	222.1
수입분	2,124.1	3,294.2	5,108.8
합계	2,344.6	3,515.5	5,330.9

□ 상기 국내산 판매금액과 수입금액 합계액에 2015년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16, '17년도 전망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음

○ 연도별 감면금액은 '15년 67억 6천만원, '16년 101억 4천만원, '17년 153억 7천만원으로 추정됨

○ 이러한 증가추이는 목재펠릿 수입금액의 빠른 증가세에 기인하기 때문에 특정 여건 변화와 더불어 수입분 목재펠릿 수입금액 축소 또는 정체 시에는 과대 전망한 결과를 초래

<부표 A.14-8> 2015년 이후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의 조세지출 규모 전망치

(단위: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국내분	6.4	6.4	6.4
수입분	61.2	95.0	147.3
합계	67.6	101.4	153.7

A.15. 금 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22조의4, 조특법 시행령 제117조의4)

1. 개요

가. 도입목적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으로 늘어나는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토록 하여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후 탈루하는 것 방지하기 위해 도입

- ① 현행 매출자 납부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세사례 방지
- ② 구리 스크랩 등 관련 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세원 양성화
- ③ 궁극적으로 자원재활용 산업 발전 기여

나. 주요 내용[79)]

□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 등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

○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철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

79) 금 사업자(제106조의4 제1항 제3호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스크랩 등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각각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라 금거래계좌나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제106조의9 제1항 제3호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 적용대상[80][81]: 금 스크랩[82], 구리 스크랩[83], 철 스크랩[8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85]

○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경우[86]

- 스크랩 등 사업자: 구리, 철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 스크랩 등
  - ①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87]
  - ②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 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 ③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88]

○ 스크랩 등을 수입하려는 사업자

□ 사업장별로 다음 i), ii)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당해 연도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① 증가분방식

○ i) 직전 과세연도 대비 당해 과세연도 스크랩 등의 수입금액* 증가분의 50%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세액

---

80) http://www.customs.go.kr/kcshome/getHoList.po
81) 국세청, 『2016년 부가가치세 상담실무』, 2016.
82)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7112" 해당 품목
83)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7404" 해당 품목
84)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7204" 해당 품목
8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86) 소매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조특법 106의9①)
87)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8404" 해당 품목
88)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당해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 - **\text{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 \times 50\%}{\text{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

*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함

**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없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으로 함

○ 증가분 방식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함(조특령 117의4①)

② 당기분 방식

○ ii) 당해 과세연도 스크랩 등의 수입금액의 5%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세액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 \times 5\%}{\text{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

□ 공제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

□ 적용기한: 2016.12.31

○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등을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2018.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공제 적용

○ 구리 스크랩 등은 2014.01.0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2016.12.31.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 다만, 「조특법」 제106조의9 제1항 제3호의 물품(철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6.10.01.이후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신고하고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2018.12.31.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함

다. 변천과정

<부표 A.15-1>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변천과정

연도	주요 변경사항
2013. 5.10	- 신설 ○ 2014.1.1. 이후부터 시행
2014.12.23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추가
2015.12.15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등 추가하고, 동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공제 적용
2016. 2. 5	- 세액공제 요건 추가 ○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월수가 사업자의 과세연도보다 짧은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사업자의 과세연도 단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산 ○ 2016.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자료:「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접속일자 2014.8.29

2. 국세청 자료 현황

가. 관련 서식

□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2호서식]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 신청서

- ⑥⑦직전연도 및 해당연도 익금·손금합계액
- ⑨⑩직전연도 및 해당연도 매입자납부 익금·손금합계액
- ⑫공제대상 익금·손금
- ⑬⑭직전연도 및 해당연도 산출세액
- ⑰세액공제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서식]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

나. 국세청 데이터 보유 현황

□ 동 조항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①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 및 ②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명세서는 국세청에서 DB화되어 있지 않고, 다음의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서식을 이용하여 파악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갑)]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1) 법인세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갑)]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⑤ 전기이월액	⑥당기발생액	⑦공제세액
⑳ 금 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14W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⑩① 구 분	근거법 조 항	⑩② 계 산 기 준	코드	⑩③ 계산명세	⑩④ 공제대상 세 액
금 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등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2) 소득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국세청에서 DB화하여 보유하고 있음

○ ⓭ 세액공제명세서상 ⑤「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서식]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는 국세청에서 DB화하고 있지 않음

○ ④ 구 분, ⑤ 계산내역, ⑥ 공제대상세액, ⑲ 공제세액

3. 기타 경제사회 통계자료 현황

가. 금 스크랩

□ <부표 A.15-2> 금 스크랩(scrap) 관련 수출입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07~2015년 동안 수출량은 연평균 13.0%씩 증가하였으나 톤당 가격은 7.9%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수입량은 동 기간 동안 38.2% 증가하였으며, 톤당 가격은 24.5%씩 감소하여 그 폭이 수출량보다 더 크게 나타났음

<부표 A.15-2> 금 스크랩(scrap) 관련 수출입실적

(단위: 톤, 천달러, %)

기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중량	수출금액	톤당 가격	수입중량	수입금액	톤당 가격	
2007	3,732	135,181	36.2	2,835	555,834	196.1	-420,653
2008	7,002	208,986	29.8	3,489	477,816	136.9	-268,830
2009	5,207	168,305	32.3	6,624	638,461	96.4	-470,156
2010	3,476	129,036	37.1	10,228	754,289	73.7	-625,253
2011	8,464	331,160	39.1	18,213	797,596	43.8	-466,436
2012	5,214	120,529	23.1	24,073	680,516	28.3	-559,987
2013	9,669	246,567	25.5	24,264	481,582	19.8	-235,015
2014	8,410	140,222	16.7	26,698	657,749	24.6	-517,527
2015	9,925	185,189	18.7	37,806	780,765	20.7	-595,576
2016.10	8,158	158,410	19.4	38,519	663,721	17.2	-505,311
연평균증감률 (2007~2015)	13.0	4.0	-7.9	38.2	4.3	-24.5	4.4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https://unipass.customs.go.kr:38030/ets/)

□ <부표 A.15-3> 연도별 금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금 가격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평균 19.2%씩 증가, 2012년 이후로는 9.3%씩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6.4% 증가하여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부표 A.15-3> 연도별 금 가격 추이

(단위: US$/OZ, %)

		금 가격	전년 대비
2007		695	15.2
2008		872	25.4
2009		972	11.5
2010		1,225	25.9
2011		1,572	28.4
2012		1,669	6.2
2013		1,411	-15.4
2014		1,266	-10.3
2015		1,160	-8.4
2016(전망)		1,081	-6.8
2017(전망)		1,150	6.4
연평균증감률	2007~2015	6.6	
	2007~2012	19.2	
	2013~2015	-9.3	

자료: 2006~2015: Thomson Reuters, GFMS GOLD SURVEY 2016, 2016,
2016~2017(전망):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54547/precious-metal-price-forecast/

나. 구리 스크랩

□ <부표 A.15-4> 구리 스크랩(scrap) 관련 수출입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07~2015년 동안 수출량은 연평균 12.9%씩 감소하였으나 톤당 가격은 6.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수입량은 동 기간 동안 3.4% 증가하였으며, 톤당 가격은 2.3%씩 감소하였음

<부표 A.15-4>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의 수출입실적

(단위: 톤, 천달러, %)

기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중량	수출금액	톤당 가격	수입중량	수입금액	톤당 가격	
2007	216,151	281,853	1.3	221,054	1,422,039	6.4	-1,140,186
2008	191,500	272,515	1.4	217,008	1,427,493	6.6	-1,154,978
2009	186,958	210,575	1.1	163,020	708,874	4.3	-498,299
2010	100,090	165,963	1.7	202,898	1,297,763	6.4	-1,131,800
2011	84,608	197,789	2.3	263,182	2,106,854	8.0	-1,909,065
2012	119,105	315,155	2.6	300,708	2,134,047	7.1	-1,818,892
2013	95,652	211,276	2.2	291,179	1,949,359	6.7	-1,738,083
2014	85,638	189,623	2.2	298,541	1,920,824	6.4	-1,731,201
2015	71,322	158,575	2.2	289,645	1,534,569	5.3	-1,375,994
2016.10	65,602	97,375	1.5	232,850	1,006,225	4.3	-908,850
연평균증감률 (2007~2015)	-12.9	-6.9	6.8	3.4	1.0	-2.3	2.4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https://unipass.customs.go.kr:38030/ets/)

□ <부표 A.15-5> 연도별 동 스크랩(scrap) 유통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동 스크랩 가격은 2016년 하반기 기준 kg당 5,198원으로 201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반기평균 감소율은 5.5%임

<부표 A.15-5> 연도별 동 스크랩(scrap) 유통가격

(단위: 원/kg, %)

		유통가격	전기 대비
2011	상반기	9,673	-
	하반기	8,415	-13.0
2012	상반기	8,481	0.8
	하반기	8,042	-5.2
2013	상반기	7,712	-4.1
	하반기	7,226	-6.3
2014	상반기	6,746	-6.6
	하반기	6,481	-3.9
2015	상반기	6,371	-1.7
	하반기	5,750	-9.7
2016	상반기	5,360	-6.8
	하반기	5,198	-3.0
반기평균증감률 (2011~2016)		5.5	

주: 1. 대상매입단가 A동, 2. 주초 시세 기준 반기평균, 3. 부가가치세 별도
자료: 스크랩워치

□ 동스크랩 가격은 구리(전기동)가격의 92~93% 수준[89]으로 파악되고 Bloomberg에 따르면 구리의 가격은 2017년 2분기부터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부표 A.15-6> 2017년 비철금속(구리) 가격 전망

(단위: 달러/톤)

기관	'17Q1	'17Q2	'17Q3	'17Q4	평균
Societe Generale SA	5,000	5,500	5,695	5,800	5,499
Prestige Economics	5,291	5,732	5,952	6,173	5,787
Itau Unibanco	5,262	5,123	4,985	4,846	5,054
Commerz bank AG	5,200	5,400	5,500	5,600	5,425
Market Risk Adv.	5,200	5,100	5,100	5,150	5,138
Standard Chartered	4,550	4,750	5,000	5,200	4,875
Oversea-Chinese B.	5,063	5,125	5,188	5,250	5,157
FlexihedgeL td	4,900	5,000	5,100	5,200	5,050
Westpac Banking	4,396	4,307	4,183	4,364	4,313
Intesa Sanpaolo SpA	4,750	4,810	4,875	4,925	4,840
평균	4,961	5,085	5,158	5,251	5,114

자료: 조달청 자료(원자료 Bloomberg, '16.11.28 기준 최근 10개사)

다. 철 스크랩

□ 철 스크랩은 철강업 자체에서의 강재 생산과정 또는 철강수요산업이 철강재 가공과정, 철강제품의 사용불능, 상태 등에서 발생한 것을 수집과정을 통하여 회수한 후에 철강재 생산에 재투입하는 철강의 설을 말함[90]

○ <부표 A.15-7> 철 스크랩(scrap) 관련 수출입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07~2015년 동안 수출량은 연평균 8.8%씩 증가하였으나 톤당 가격은 13.3%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수입량은 동 기간 동안 2.2% 감소하였으며, 톤당 수입가격도 6.2%씩 감소하였음

89) 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
90) 한국철강자원협회 홈페이지(http://www.kosia.kr/iron/iron_04.php)

<부표 A.15-7> 철 스크랩(scrap) 관련 수출입실적

(단위: 톤, 천달러, %)

기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중량	수출금액	톤당 가격	수입중량	수입금액	톤당 가격	
2007	213,181	462,476	2.2	6,881,671	3,553,666	0.5	-3,091,190
2008	368,233	502,543	1.4	7,313,414	4,562,050	0.6	-4,059,507
2009	479,731	411,124	0.9	7,800,414	2,617,225	0.3	-2,206,101
2010	458,305	645,890	1.4	8,089,538	3,816,403	0.5	-3,170,513
2011	393,687	597,584	1.5	8,626,039	5,026,122	0.6	-4,428,538
2012	235,621	318,683	1.4	10,125,827	4,866,515	0.5	-4,547,832
2013	204,266	229,614	1.1	9,257,868	3,806,872	0.4	-3,577,258
2014	296,768	315,433	1.1	8,001,442	3,317,798	0.4	-3,002,365
2015	418,146	288,678	0.7	5,745,884	1,716,335	0.3	-1,427,657
2016.10	418,448	214,059	0.5	4,865,676	1,215,440	0.2	-1,001,381
연평균증감률 (2007~2015)	8.8	-5.7	-13.3	-2.2	-8.7	-6.2	-9.2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https://unipass.customs.go.kr:38030/ets/)

□ 2015년 기준으로 철 스크랩 총수요의 98.6%는 내수용이며, 수입의존도는 2007년 이후로 연평균 2.2%씩 감소하여 2015년 기준 18.8% 수준임

○ 한편, 국내 공급은 자가발생[91] 30.4%와 69.6%의 국내구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91) 자가발생 철스크랩이란 제강공장 또는 철강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철스크랩으로서 대부분 강괴, 블룸, 빌릿, 파이프, 봉강 등의 양단절단, 용강의 흘림(Spills), 흐름(Runnings), 판재의 절단(Plate Shearing), 강판의 측부절단(Trimmings), 탄도강(Gates), 압탕(Risers), 불합격품, Scale 등이며, 별도의 가공처리나 유통거래 없이 대부분 전량 회수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발생량은 제강공장이나 주물공장의 용해량과 최종제품의 양에 정비례하고 있음. 이는 일명 환원 철스크랩(Return Scrap)이라고도 함

<부표 A.15-8> 철 스크랩(scrap) 현황

(단위: 톤, %)

	내수	수출	총수요	생산	수입
2007	29,386,338 (99.3)	213,177 (0.7)	29,599,515 (100.0)	22,715,502 (76.7)	6,884,013 (23.3)
2008	29,089,726 (98.7)	369,491 (1.3)	29,459,217 (100.0)	22,144,620 (75.2)	7,314,597 (24.8)
2009	27,084,194 (98.3)	479,738 (1.7)	27,563,932 (100.0)	19,763,512 (71.7)	7,800,420 (28.3)
2010	30,496,786 (98.5)	457,695 (1.5)	30,954,481 (100.0)	22,864,786 (73.9)	8,089,695 (26.1)
2011	33,004,229 (98.8)	393,690 (1.2)	33,397,919 (100.0)	24,771,857 (74.2)	8,626,062 (25.8)
2012	34,040,198 (99.3)	235,723 (0.7)	34,275,921 (100.0)	24,149,990 (70.5)	10,125,931 (29.5)
2013	34,938,170 (99.4)	205,461 (0.6)	35,143,631 (100.0)	25,862,472 (73.6)	9,281,159 (26.4)
2014	33,398,044 (99.1)	296,768 (0.9)	33,694,812 (100.0)	25,688,778 (76.2)	8,006,034 (23.8)
2015	30,075,277 (98.6)	418,143 (1.4)	30,493,420 (100.0)	24,747,490 (81.2)	5,745,930 (18.8)
연평균 증감률 (2007~2015)	0.3	8.8	0.4	1.1	-2.2

주: 1. 생산은 국내구입 및 자가발생 철스크랩의 합계임
2. ( ) 안은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철강협회, 『철강통계연보』, 2016

<부표 A.15-9> 철 스크랩(scrap) 용도별 수급

(단위: 톤)

	수입	국내			합계	수출	명목소비
		소계	자가발생	국내구입			
2013	9,281,159	25,862,472	6,469,262	19,393,210	35,143,631	205,461	34,938,170
2014	8,006,034	25,688,778	7,638,628	18,050,150	33,694,812	296,768	33,398,044
2015	5,745,930	24,747,490	7,531,036	17,216,454	30,493,420	418,143	30,493,420

주: 생산은 국내구입 및 자가발생 철스크랩의 합계임
자료: 한국철강협회, 『철강통계연보』, 2016

□ <부표 A.15-9> 연도별 철 스크랩(scrap)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철 스크랩 가격은 2015년 하반기 기준 kg당 153원으로 2011년 이후로 연평균 19.3%씩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철 스크랩은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큰 자원으로 국내가격은 수입되는 철 스크랩 가격에 연동되는 유통되는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음[92)]

<부표 A.15-10> 지역별 고철(철 스크랩) 가격현황

(단위: 원/kg, %)

	전체	수도권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011	360	385	350	355	359	354	358	355	360
2012	346	367	323	334	336	353	365	358	331
2013	305	312	281	286	323	317	310	335	277
2014	248	251	232	238	258	271	253	262	219
2015	153	148	140	152	161	156	164	158	142
연평균 증감률 (2011~2015)	-19.3	-21.3	-20.5	-19.1	-18.2	-18.5	-17.7	-18.3	-20.8

주: 월별 평균

자료: 통계청, 「품목별 가격현황」; 한국환경공단, 「재활용가능자원가격조사」

4. 추정모형 검토

□ 조세지출예산서상 추정곤란 사유

○ 금,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정확한 조세지출규모 추정곤란

□ **(추정곤란 사유 검토 결과)** 동 조항을 적용받기 위하여 납세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서식을 이용하여 실적치는 파악 가능하며,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실적치를 제공하기 시작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갑)]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다만, 미확정연도 전망치는 각 개별기업의 수입금액 증가 여부를 전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추정곤란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조항의 조문담당자의 의견임

92) 김재진 · 홍성열 · 이형민, 『철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효과 및 문제점 검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13.

가. 실적치

(단위: 억원)

구 분	2015년 (실적)	2016년[1] (전망)
소득세	-	0.02
법인세	0.69	3.46
계	0.69	3.48

주: 1) 2016년도 상반기 신고분을 이용하여 진도비로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6.

나. 다음 연도 추정치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적용받는 철 스크랩 관련 개별 기업의 과거 연도 수입금액 및 산출세액을 파악하더라도 미확정연도의 수입금액 증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음

○ 또한 스크랩 등 사업자는 대부분 여러 가지 품목을 함께 취급하여 다양한 업종에 분포되어 있어 개별 기업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음

- 2015년 동 조항을 적용받은 법인은 20개 미만이며, 다양한 업종[93]을 영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다만, <부표 A.15-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통해 국고에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은 금 및 구리스크랩 가격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나므로 2017년도 금·구리 스크랩의 가격 및 거래량을 전망하여 2017년도 조세지출규모를 추계하였음

○ 금·구리 스크랩의 가격 및 거래량 전망은 관련 기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각 개별 기업이 처한 경영환경은 고려하지 못함

○ 한편, 부가가치세 탈세사례 방지 및 관련 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세원 양성화 효과도 고려하지 못함

○ 납세자가 동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 ① 증가분 방식 ② 당기분 방식 중 각 연도별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부분도 반영하지 못함

□ 한편, 2016년 10월 1일 부터 철 스크랩(고철)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

93) 소매업, 제조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등

납부특례제도가 시행되어 철 스크랩 추가로 인한 조세지출규모를 추정하여 포함하여야 하나 이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제시함

<부표 A.15-1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통해 국고에 납부된 부가가치세액

(단위: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1기	2기	합계	1기	2기	합계	1기
개인사업자	574	654	1,228	526	470	996	416
법인사업자	682	676	1,358	627	540	1,167	504
전체사업자	1,256	1,330	2,586	1,153	1,010	2,163	920

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0항에 의거,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

[부도 A.15-1] 연도별 금 및 동스크랩 가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로 인한 부가가치세수실적 추이 비교

(단위: 원/kg, US$/OZ, 억원)

<동스크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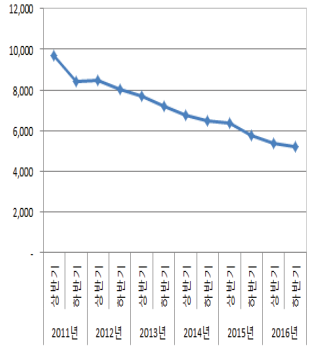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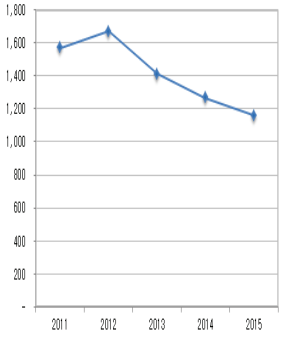

<부가가치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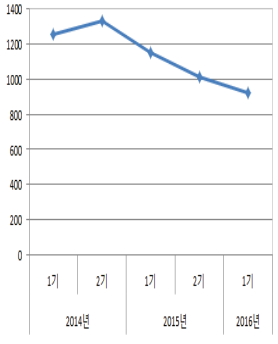

자료: 스크랩워치, Thomson Reuters, 국세청 협조자료

(1) 금, 구리 스크랩

□ 2017년 금,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조세지출규모를 추계하기 위하여 2017년 금과 구리의 향후 가격 및 거래량을 전망하였음

○ 거래량은 2013~2015년 동안 3년 연평균 수입량 증감률을 이용하였으며, 가격은 Bloomberg, Thomson Reuters, 영국의 금 산업 관련 연구소인 세계 금 위원회(WGC) 등에서 수집한 2017년 전망치를 이용함

- 구리 스크랩 수입량의 3년 연평균 증감률(2013~2015): -0.3%씩 감소
  - 2016년 대비 환율 반영 후 구리 스크랩 가격 증가율: 11.7% 증가
- 금 스크랩 수입량 3년 연평균 증감률(2013~2015): 25% 증가
  - 2016년 대비 2017년 환율 반영 후 금 가격 증가율: 12.1% 증가
  - 금 스크랩 가격은 금 가격 시세를 반영하여 결정되므로 금 가격 전망치를 이용함

○ 한편 거래량은 가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므로 가격변동률만을 이용하여 조세지출규모를 추계한 결과도 제시하였음

<부표 A.15-12> 금, 구리 스크랩 가격 증감률(2016년 기준)

(단위: %)

	연평균(2013~2015)	2017년(전망)
구리 스크랩[1)]	-9.9	11.7
금 스크랩[2)]	-4.2	12.1

주: 1) 구리스크랩: 2016년 10월 기준 대비 증감률
2) 금스크랩: 금 가격
1. 가격은 환율(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계약 체결된 종가 기준)을 반영한 후 연평균 증감률을 계산함

자료: 조달청 자료(원자료 Bloomberg, '16.11.28 기준 최근 10개사)

<부표 A.15-13> 금, 구리 스크랩 수입량 연평균 증감률(2013~2015)

(단위: %)

	연평균 증감률
구리 스크랩	-0.3
금 스크랩	25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https://unipass.customs.go.kr:38030/ets/)

□ 2017년 금,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조세지출규모는 가격 증감률만 반영 시 소득세 약 300만원, 법인세 약 4억 3,300만원으로 총 4억 3,300만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정부가 전망한 조세지출규모와는 7,1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방법 1) 2017년 조세지출규모 = 2016년 조세지출규모 × (1+가격과 수입량 증감률)

○ (방법 2) 2017년 조세지출규모 = 2016년 조세지출규모 × (1+가격 증감률)

<부표 A.15-14> 금,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조세지출규모 (2017년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정부(A)	가격과 수입량 증감률 반영		가격 증감률 반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B)	차이 (B-A)	한국조세재정연구원 (B)	차이 (B-A)
소득세	-	0.03	0.03	0.03	0.03
법인세	3.62	5.28	1.66	4.33	0.71
계	3.62	5.31	1.69	4.36	0.74

주: 금 스크랩과 구리 스크랩만 고려

(2) 철 스크랩

□ 2017년 추가된 철 스크랩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조세지출규모의 경우에는 금 및 구리 스크랩과는 달리 2016년 실적치가 없으므로 철 스크랩산업의 철 스크랩 공급으로 인한 2016년 이론적 산출세액을 추계한 후, 철 스크랩산업의 연평균 성장률과 도입 첫 해임을 감안하여 세원 양성화 정도를 반영하였음

- ○ 연평균 성장률은 관련 기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각 개별 기업이 처한 경영환경은 고려하지 못함
- ○ 납세자가 동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 ① 증가분 방식 ② 당기분 방식 중 각 연도별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부분도 반영하지 못하였음
- ○ 수입금액 증가로 인한 산출세액 증가분이 전액 세액공제된다고 가정하여 과대추정의 가능성이 있음
- ○ 또한 철 스크랩 관련 업종의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비중을 파악하기 어려워 조세지출규모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합하여 제시하였음

□ 2016년 추가된 철 스크랩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2017년 조세지출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

- ○ 철스크랩 유통규모는 국내 철스크랩 물동량 중 자가 발생을 제외한 국내구입과 수입분을 고려하였음
  - 동 제도는 사업자간 거래 시에만 적용되나 그 거래 규모는 파악할 수 없어 전체 철스크랩 물동량을 이용함

○ Infiniti Research Limited의 Global Steel Scrap Market 2016-2020에 따르면, 세계의 철스크랩 시장은 2015-2020년 연평균 성장률(CAGR) 약 2%로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철 스크랩 관련 사업자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나 본 추계를 위하여 2015년 귀속 고철가공처리업의 단순경비율 91.6%를 이용하였음

○ 실효세율은 각 세목별로 3년 평균 실효세율의 평균치를 이용하였음

□ 철 스크랩 산업의 철 스크랩 공급으로 인한 이론적 산출세액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510.2억원과 520.4억원이며, 추계과정은 <부표 A.15-15>에 제시되어 있음

<부표 A.15-15> 철 스크랩 산업의 철 스크랩 공급으로 인한 이론적 산출세액

	철스크랩규모[1] (2015년 기준)			연평균 성장률 (%) (B)	철스크랩 수입금액 (억원) (C)=A(1+B)	단순 경비율[2] (%) (D)	실효 세율[3] (%) (E)	철 스크랩 공급으로 인한 이론적 산출세액 (억원) (F)=C×(1-D)×E
	물동량 (톤)	가격 (원/kg)	규모 (억원) (A)					
2016	22,962,384	153	35,132	2%	35,835	91.60%	16.95%	510.2
2017					36,551			520.4

주: 1) 2015년 기준으로 국내구입과 수입분
2) 고철가공처리업
3) 귀속연도 2012~2014년 법인세와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의 평균치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 한국철강협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2017년 추가된 철 스크랩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지출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음

조세지출규모 = 철 스크랩 산업의 철 스크랩 공급으로 인한 이론적 산출세액 증가분 + 세원양성화에 따른 세액 증가분

○ 조세지출규모는 철 스크랩 추가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양성화되어 증가하게 되는 수입금액에 대한 세부담 경감제도이므로 도입 첫 해임을 감안하여 세원 양성화 정도를 반영하였음

○ 2017년 철 스크랩 등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에 대한 조세지출규모 = 29억 1천만원

- 철 스크랩 산업의 철 스크랩 공급으로 인한 이론적 산출세액 증가분: 2016년

철 스크랩 공급으로 인한 이론적 산출세액(510.2억원) × 연평균 성장률(2%) = 10억 2천만원

- 2016년 세원 양성화에 따른 세액 증가분: 2016년 수입금액(35,835억원) × 조세회피율(3.7%) × (1- 단순경비율(91.6%)) × 실효세율(16.95%) = 18억 9천만원
  - 조세회피율은 김종희(2016)에서 제시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개 연도의 평균 수치인 GDP 대비 3.7%를 이용함

○ 수입금액 증가로 인한 산출세액 증가분이 전액 세액공제된다고 가정하여 과대추정의 가능성이 있음

5. 추정결과

<부표 A.15-16> 구리 스크랩 등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지출규모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5년 (실적)	2016 (전망)[1]	2017 (전망)[2]		
			금, 구리스크랩	철스크랩	합계
소득세	-	0.02	0.03	29.1	33.43~34.38
법인세	0.69	3.46	4.33~5.28[3]		
계	0.69	3.48	4.36~5.31	29.1	33.43~34.38

주: 1) 2016년도 상반기 신고분을 이용하여 진도비로 산출
2) 2016.10.1.부터 철스크랩 추가,
3) (방법 1) 가격 및 거래량 증감률, (방법2) 가격 증감률 적용방법에 따라 범위로 추계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6.

6. 문제점

□ 동 제도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서식을 이용하여 실적치는 파악이 가능하나, 미확정연도 전망치는 각 개별 기업의 수입금액 증가 여부를 전망하기가 쉽지 않음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받는 품목들은 시장가격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이나 납세자가 동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 ① 증가분 방식 ② 당기분 방식 중 각 연도별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부분까지 모두 반영할 수는 없음

○ 또한, 관련 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정도를 파악하기도 어려움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적용받는 금, 구리 등 스크랩 관련 기업의 연도별 수입금액, 산출세액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나 스크랩 등 사업자는 대부분 여러 가지 품목을 함께 취급하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참고문헌

국세청, 『법인세 신고안내』, 각 연도

기획재정부, 『2017 조세지출예산서』, 2016.

김재진 · 홍성열 · 이형민, 『철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효과 및 문제점 검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13.

김종희, 「조세의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2016

조달청, 「주간 경제 · 비철금속 시장동향」, 2016.

한국철강협회, 『철강통계연보』, 2016

Thomson Reuters, *GFMS GOLD SURVEY 2016*, 2016,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관세청 무역통계(https://unipass.customs.go.kr:38030/ets/)

삼일아이닷컴(http://www.samili.com)

세계 금 위원회(http://www.gold.org)

한국철강자원협회 홈페이지(http://www.kosia.kr/iron/iron_04.php)

A.16.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조특법」 제136조 제3항, 「조특법」 시행령 제130조)

1. 제도개요 및 연혁

가. 도입목적[94]

□ 음주·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가급적 문화접대비 등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문화접대비를 우대하는 인센티브 도입

○ 대부분의 문화·예술단체가 영세하여 직접적 세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단체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 창출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

나. 주요 내용

(1) 문화접대비의 범위

□ 문화접대비 지출액이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함[95]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 「관광진흥법」 제48조의2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

94) 재정경제부, 『2007년 간추린 개정세법』, 2008.7.
9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 국내에서 지출되는 문화예술관련 비용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문화접대비 한도

□ 문화접대비 한도액

○ 2017.12.31. 이전에 지출한 문화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에도 불구하고 접대비 한도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

접대비 한도액 =일반법인의 접대비 한도액 + 문화접대비 한도액[Min(①, ②)] ① 문화접대비 지출액, ② 접대비 한도액 × 20%

[부도 A.16-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귀속연도 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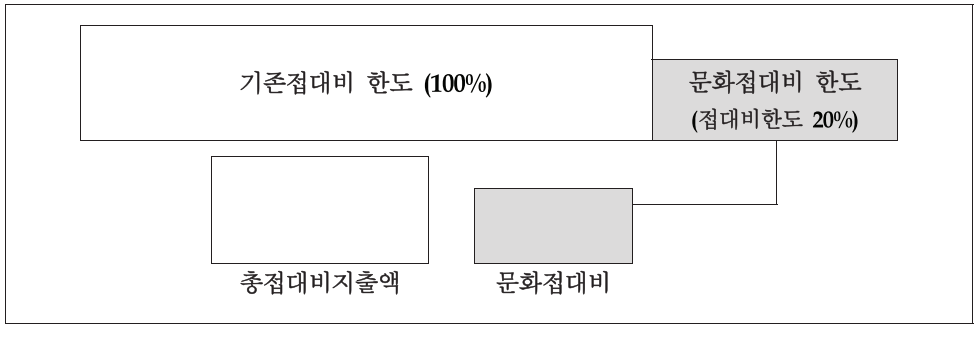

[부도 A.16-2]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체계 변천과정(귀속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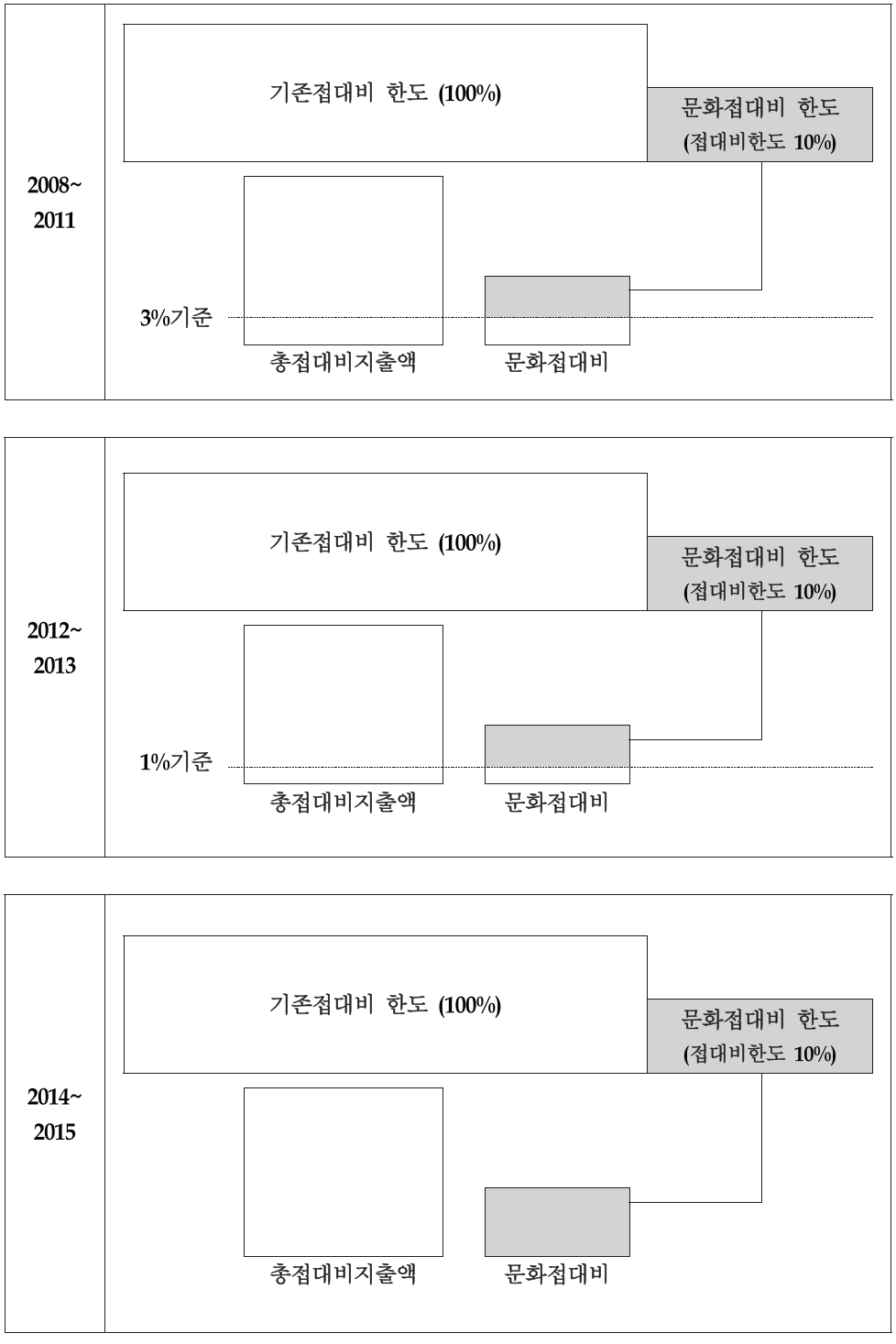

다. 변천과정

<부표 A.16-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변천과정

연도	주요 변경사항
2007. 6. 1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 ○ 2008.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일몰기한: 2008.12.31.
2008.12.26	- 적용기한 연장 ○ 3년 연장 → 2011.12.31
2010. 2.18	- 적용 대상 확대 ○ 여수박람회・문화관광축제・관광공연업 입장권 ○ 2010.2.18.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011.12.31	- 적용기한 연장 ○ 3년 연장 → 2014.12.31
2012. 2. 2	- 지원요건 완화 ○ 최소금액 기준 하향 조정 - 문화접대비가 접대비 총액의 3% 초과 → 1% 초과 ○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적용 대상 확대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등록문화재의 입장권 구입 추가 ○ 2012. 2. 2.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014. 2.21	- 지원요건 삭제 ○ 문화접대비가 접대비 총액의 1%를 초과할 것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14.12.23	- 적용기한 연장 ○ 3년 연장 → 2017.12.31.
2015. 2. 3	- 적용 대상 확대 ○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비용 및 초빙강연료 등 ○ 2015.2.3.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015.12.15	- 한도 확대 ○ 적용한도: 10% → 20%로 확대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16. 2. 5	- 적용 대상 확대 ○ 적용대상 비용 추가 -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문화예술 행사비 - 문화부에 후원 등을 받는 거래처 등의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접속일자 2014.8.22

라. 관련 서식

(1) 법인세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접대비조정명세서(갑)

○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과 ⑩ 문화접대비 한도액

-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에 따른 지출액 기재
- 문화접대비 한도(⑨~⑫)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서식(갑) 주요계정명세서(갑)

○ ⑰ 접대비한도액, ⑱ 접대비(⑲, ⑳포함), ⑲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⑳ 문화접대비 신고내역

(2) 소득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접대비조정명세서(2)

○ ⑧ 문화접대비 지출액, ⑨ 해당 과세연도 총접대비 지출액, ⑩ 문화접대비 조정대상액, ⑫ 문화접대비 한도액

2. 국세청 자료 현황

가. 법인세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갑)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은 DB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화접대비 관련 정보 파악 불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서식(갑) 주요 계정명세서(갑)은 국세청에서 DB화하고 있으므로 동 서식상 정보는 모두 추출 가능

○ 다만, 문화접대비 지출액만 추출가능하고 문화접대비 한도액 정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별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로 인한 추가손금산입 금액의 추정이 불가피함

나. 소득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접대비조정명세서(2)가 DB화되어 있지 않아 개인사업자의 문화접대비 지출 현황 파악은 불가하며, 납세자 유형별 신고 자료를 통하여 접대비 신고 금액만 파악 가능

□ 복식부기의무자

○ 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상 접대비 계정

- 신고금액으로 접대비 시부인 전 금액

□ 간편장부대상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 필요경비 중 일반관리비 등 ㉙ 접대비[96]
- 신고금액으로 접대비 시부인 전 금액

3. 기타 경제사회 통계자료 현황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접대비 신고 현황은 파악해 볼 수 있으나 문화접대비 신고 현황은 제공하고 있지 않음

○ 2011~2013년 동안 접대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1~022%로 나타났으며 귀속연도 2013년 기준으로 수입금액 규모가 커질수록 접대비 비중은 작아지고 있음

96) ㉙ 접대비란의 해당 과세기간 접대비 지출금액이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천400만원) × 과세기간 월수/12]을 초과할 때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1)·(2)[별지 제55호서식]를 첨부

<부표 A.16-2> 연도별 접대비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귀속연도	신고법인수	접대비	기업당 접대비
2005	352,647	5,748,160	16.3
2006	372,141	6,364,693	17.1
2007	398,331	7,050,160	17.7
2008	419,420	7,478,990	17.8
2009	440,023	7,665,842	17.4
2010	460,614	8,353,506	18.1
2011	482,574	8,770,080	18.2
2012	517,805	9,006,787	17.4
2013	550,472	9,336,850	17.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부도 A.16-3] 수입금액 규모별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귀속연도 201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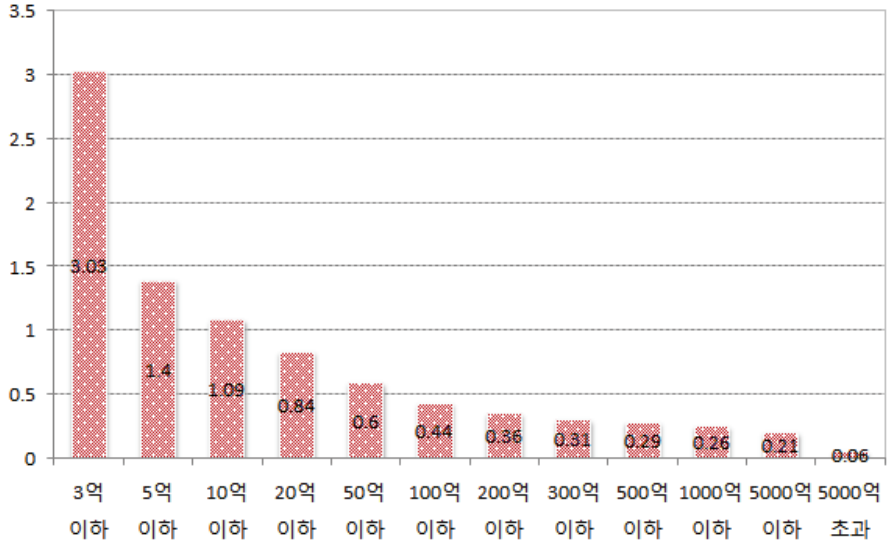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부표 A.16-3> 수입금액규모별 매출액 및 접대비 현황(귀속연도 기준)

(단위: 백만원, %)

수입금액 규모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매출액	접대비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	매출액	접대비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	매출액	접대비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	매출액	접대비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	매출액	접대비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
3억 이하	13,598,207	415,068	3.05	14,309,755	422,345	2.95	15,319,618	496,522	3.24	16,412,635	463,677	3.03	17,907,814	-	-
5억 이하	14,419,092	197,629	1.37	15,245,026	207,506	1.36	16,307,549	215,198	1.32	17,218,659	227,659	1.40	18,599,049	-	-
10억 이하	41,322,838	439,722	1.06	42,678,783	450,004	1.05	46,392,394	475,684	1.03	48,423,083	506,911	1.09	51,788,619	-	-
20억 이하	84,394,334	683,117	0.81	87,317,386	697,686	0.80	93,635,857	734,321	0.78	98,714,663	784,356	0.84	105,124,839	-	-
50억 이하	203,021,125	1,145,896	0.56	212,631,310	1,200,417	0.56	229,513,034	1,256,842	0.55	243,467,372	1,371,415	0.60	255,845,873	-	-
100억 이하	208,162,412	902,171	0.43	223,927,434	982,095	0.44	234,327,787	979,678	0.42	246,687,997	1,038,439	0.44	257,721,411	-	-
200억 이하	213,555,577	738,270	0.35	233,663,575	784,980	0.34	242,024,257	819,033	0.34	252,927,633	873,738	0.36	264,658,157	-	-
300억 이하	123,999,623	374,481	0.30	136,681,704	402,080	0.29	140,728,788	430,892	0.31	145,939,236	441,910	0.31	149,979,232	-	-
500억 이하	147,915,908	438,136	0.30	168,784,145	476,650	0.28	171,271,828	477,811	0.28	176,284,243	495,769	0.29	179,442,998	-	-
1000억 이하	203,318,870	540,572	0.27	214,374,619	555,923	0.26	226,355,640	576,003	0.25	227,798,711	595,244	0.26	231,776,847	-	-
5000억 이하	462,334,507	1,057,162	0.23	499,095,099	1,074,147	0.22	502,223,096	1,007,160	0.20	523,482,843	1,071,900	0.21	536,386,609	-	-
5000억 초과	2,117,563,336	1,421,282	0.07	2,363,463,778	1,516,247	0.06	2,395,435,800	1,537,643	0.06	2,326,230,851	1,465,831	0.06	2,399,241,294	-	-
합계	**3,833,605,829**	**8,353,506**	**0.22**	**4,212,172,614**	**8,770,080**	**0.21**	**4,313,535,648**	**9,006,787**	**0.21**	**4,323,587,926**	**9,336,849**	**0.22**	**4,468,472,742**	**-**	**-**

주: 귀속연도 2014년도에 대한 수입금액규모별 접대비 규모는 2016년 12월 말 공표될 예정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추정모형 검토

□ 조세지출예산서상 추정곤란 사유

○ 개별 사업자별로 총접대비 지출액 및 한도액이 다르므로 추정곤란한 사유 조사

□ **(추정곤란 사유 검토 결과)** 법령 서식은 존재하나 문화접대비 지출로 인한 조세지출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자별 차가감 접대비 해당 금액, 일반접대비 한도액, 일반접대비 금액, 법인세 실효세율을 각각 계산하고, 경우별로 구분하여 추계하는 과정이 필요함

가. 법인세

(1) 실적치 추정 방법

□ 국세청에서 제공한 주요 계정명세서(갑)의 ⑰ 접대비한도액, ⑱ 접대비(⑲, ⑳포함), ⑲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⑳ 문화접대비 신고내역을 이용

○ ③ **회사계상금액: ⑳ 문화접대비 신고내역**

○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 ⑱ 접대비(⑲, ⑳포함), ⑲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 ⑤ **차가감금액(③~④): ⑰ 접대비한도액. ⑱ 접대비(⑲, ⑳포함)**

○ 귀속연도 문화접대비 지출로 인한 조세지출액의 계산을 위해서는 평균 실효세율과 문화접대비 추가 손금산입 금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금액은 문화접대비 지출액과 문화접대비 한도액 중 작은 금액임[97]

  · 문화접대비 한도액 = 당해 사업연도 일반접대비 한도액 × 손비인정률

97)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 Min(①, ②)
① Max [0, (문화접대비 지출액-당해 사업연도 총접대비 지출액 × 3%(1%)*)]
② 당해 사업연도 일반접대비 한도액 × 10%
* 2007.9.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11.12.31.까지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 적용하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3.12.31.까지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1%를 적용함

<부표 A.16-4> 접대비 손금산입액 계산구조

손금산입액		손금산입한도액
① 일반접대비	문화접대비를 제외한 접대비 지출액	1,200만원(중소기업 2,400만원) + (수입금액×적용률)
② 문화접대비	문화접대비 지출액	접대비 한도액 × 20%
접대비 손금산입액 = ① 일반접대비 손금산입액 + ② 문화접대비 손금산입액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조세특례 규모는 문화접대비 지출로 인한 추가손금산입금액과 이로 인한 법인세 감소분임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조세특례 규모	=	방법 1	문화접대비 지출로 인한 추가 손금산입액	×	법인세 실효세율
		방법 2	문화접대비 지출로 인한 추가 손금산입액의 산출세액 변화분		

□ 가정

○ 법인세 실효세율을 이용하는 [방법 1] 적용 시 문화접대비 지출로 인한 추가 손금액이 한계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음

○ 과세표준이 0보다 큰 경우만 고려

○ 결손이 누적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결손금 이월로 인한 문화접대비 손금으로 인한 세수감소효과 미고려

□ 문화접대비로 지출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귀속연도 2014~2015년도)

○ **(경우1)** 접대비 한도미달액 & 문화접대비 지출이 있는 경우(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일반・문화접대비) < 일반접대비 한도액): 조세지출 발생하지 않음

- 만약,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일반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문화접대비 지출로 인한 추가 손금산입액이 발생하지 않음

○ **(경우2)** 접대비 한도초과액 & 문화접대비 지출이 있는 경우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일반・문화접대비) > 일반접대비 한도액): Min[문화접대비 지출액, 문화접대비 한도액] 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분

- 법인세 감소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또는 산출세액의 변화분으로 측정

○ **(경우3)** 접대비 한도미달액 & 문화접대비 지출이 있는 경우(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일반·문화접대비) > 일반접대비 한도액): 추가손금 산입액이 발생하여 Min[문화접대비 지출액, (차감 접대비 해당금액(일반·문화접대비) - 일반접대비 한도액)] 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분

- 법인세 감소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또는 산출세액의 변화분으로 측정

<부표 A.16-5> 문화접대비 추가손금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 시산(2014년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경우1	경우2		경우3
수입금액	10,000	10,000		15,000
중소기업 여부	대기업	대기업		대기업
일반접대비	5	35	32	35
문화접대비 지출액	5	5	5	5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10	40	37	40
일반접대비 한도액	32	32	32	37
문화접대비 한도액	3.2	3.2	3.2	3.7
접대비 한도액	35.2	35.2	35.2	40.7
접대비 손금산입액	10	35.2		40
문화접대비 지출로 인한 추가 손금산입액	-	3.2		3.0
적용세율	20%	20%		20%
문화접대비 조세지출규모	-	0.64		0.6

<부표 A.16-6> 문화접대비 지출 추가 손금산입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 추정식

	주요 내용		조세지출금액
경우1	차감접대비 해당 금액 ≤ 일반접대비 한도액		조세지출 발생하지 않음
경우2	차감접대비 해당 금액 > 일반접대비 한도액	일반접대비 ≥ 일반접대비 한도액	Min[문화접대비 지출액, 문화접대비 한도액] 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분
경우3		일반접대비 < 일반접대비 한도액	Min[(차가 접대비 해당금액 - 일반접대비 한도액), 문화접대비 한도액] 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분

<부표 A.16-7> 문화접대비 조세지출금액 규모 추정 흐름도(귀속연도 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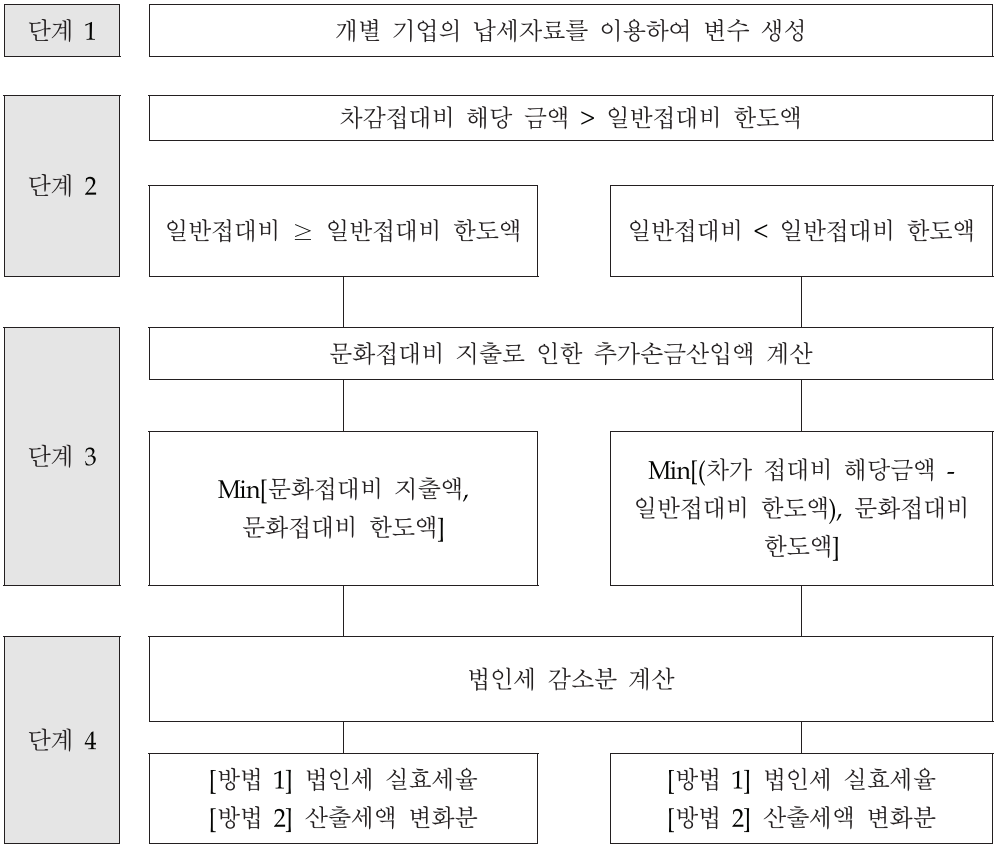

(2) 실적치 추정 시 이용자료

□ 2010~2014년 국세청 협조자료

○ 접대비 관련 자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갑)] 주요 계정명세서(갑)

- ⑰ 접대비한도액, ⑱ 접대비(⑲, ⑳포함), ⑲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⑳ 문화접대비 지출액
- 각 항목별 ③ 회사계상금액,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 ⑤ 차가감금액

○ 법인 관련 정보

- 접대비 관련 정보 이외에도 각 기업별 재무자료(자산, 자본금)와 세무자료(매출액, 각 사업연도소득,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업종 등의 자료

○ 기타 요청사항

- (법인규모)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

- (업태) 업태 분류는 법인세 신고서상 기재된 주업종으로 분류한 것 기준

□ <부표 A.16-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문화접대비를 지출한 기업은 귀속연도 2014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70.9%로 일반기업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흑자기업이 80.4%를 차지하고 있음

○ 수입금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20억 초과 50억원 이하 기업의 비중이 17.5%이며, 이어서 10억 초과 20억원 이하의 기업이 12.4%의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25.9%로 가장 많은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이어서 도매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22.4%, 20.4%로 나타남

<부표 A.16-8> 문화접대비 지출 기업 특징

(단위: 개,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기업규모	일반기업	174(25.0)	195(27.2)	209(24.6)	285(27.9)	316(29.1)
	중소기업	523(75.0)	523(72.8)	639(75.4)	736(72.1)	770(70.9)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흑자기업	578(82.9)	573(79.8)	682(80.4)	827(81.0)	873(80.4)
	적자기업	119(17.1)	145(20.2)	166(19.6)	194(19.0)	213(19.6)
수입금액 규모별	3억 이하	84(12.1)	99(13.8)	94(11.1)	144(14.1)	131(12.1)
	5억 이하	40(5.7)	39(5.4)	60(7.1)	50(4.9)	59(5.4)
	10억 이하	72(10.3)	57(7.9)	80(9.4)	98(9.6)	96(8.8)
	20억 이하	98(14.1)	89(12.4)	117(13.8)	110(10.8)	135(12.4)
	50억 이하	124(17.8)	143(19.9)	150(17.7)	202(19.8)	190(17.5)
	100억 이하	86(12.3)	109(15.2)	103(12.1)	118(11.6)	127(11.7)
	200억 이하	65(9.3)	53(7.4)	86(10.1)	96(9.4)	115(10.6)
	300억 이하	33(4.7)	22(3.1)	27(3.2)	40(3.9)	47(4.3)
	500억 이하	28(4.0)	36(5.0)	40(4.7)	46(4.5)	47(4.3)
	1000억 이하	33(4.7)	28(3.9)	28(3.3)	48(4.7)	53(4.9)
	5000억 이하	20(2.9)	26(3.6)	40(4.7)	45(4.4)	47(4.3)
	5000억 초과	14(2.0)	17(2.4)	23(2.7)	24(2.4)	39(3.6)
업종	농임어업	-	1(0.1)	-	3(0.3)	1(0.1)
	광업	-	1(0.1)	-	-	-
	제조업	176(25.3)	150(20.9)	217(25.6)	263(25.8)	281(25.9)
	전기가스수도업	-	2(0.3)	2(0.2)	1(0.1)	2(0.2)
	건설업	85(12.2)	80(11.1)	91(10.7)	90(8.8)	117(10.8)
	도매업	159(22.8)	181(25.2)	187(22.1)	225(22.0)	243(22.4)
	소매업	22(3.2)	19(2.6)	16(1.9)	34(3.3)	39(3.6)
	음식숙박업	4(0.6)	8(1.1)	12(1.4)	10(1.0)	8(0.7)
	운수창고통신업	36(5.2)	31(4.3)	42(5.0)	46(4.5)	48(4.4)
	금융보험업	32(4.6)	54(7.5)	50(5.9)	87(8.5)	81(7.5)
	부동산업	9(1.3)	21(2.9)	29(3.4)	42(4.1)	36(3.3)
	서비스업	170(24.4)	164(22.8)	196(23.1)	210(20.6)	222(20.4)
	보건업	2(0.3)	5(0.7)	6(0.7)	7(0.7)	6(0.6)
	기타	2(0.3)	1(0.1)	-	3(0.3)	2(0.2)
합계		697(100.0)	718(100.0)	848(100.0)	1,021(100.0)	1,086(100.0)

주: ( )안은 비중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

<부표 A.16-9> 연도별・수입금액규모별 문화접대비 지출액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2010						2011						2012					
	법인수	매출액	회사계 상접대비 (A)	문화접대비 (B)	매출액 대비 (A)	매출액 대비 (B)	법인수	매출액	회사계 상접대비	문화접대비	매출액 대비 (A)	매출액 대비 (B)	법인수	매출액	회사계 상접대비	문화접대비	매출액 대비 (A)	매출액 대비 (B)
3억 이하	84	12,400	785	74.4	6.3	0.600	99	10,600	1,460	131.0	13.8	1.236	94	9,900	927	50.4	9.4	0.509
5억 이하	40	16,300	410	27.9	2.5	0.171	39	15,100	366	37.7	2.4	0.250	60	24,000	670	53.4	2.8	0.223
10억 이하	72	53,400	996	74.0	1.9	0.139	57	40,600	749	17.4	1.8	0.043	80	59,000	1,040	65.7	1.8	0.111
20억 이하	98	142,000	2,220	102.0	1.6	0.072	89	128,000	1,730	96.0	1.4	0.075	117	168,000	2,500	149.0	1.5	0.089
50억 이하	124	400,000	3,670	341.0	0.9	0.085	143	462,000	4,080	247.0	0.9	0.053	150	492,000	4,800	193.0	1.0	0.039
100억 이하	86	611,000	5,660	443.0	0.9	0.073	109	803,000	6,450	335.0	0.8	0.042	103	720,000	5,360	252.0	0.7	0.035
200억 이하	65	937,000	5,280	237.0	0.6	0.025	53	773,000	5,340	347.0	0.7	0.045	86	1,210,000	7,720	293.0	0.6	0.024
300억 이하	33	817,000	3,430	137.0	0.4	0.017	22	549,000	1,930	25.3	0.4	0.005	27	643,000	3,870	166.0	0.6	0.026
500억 이하	28	1,050,000	3,420	41.3	0.3	0.004	36	1,470,000	6,880	248.0	0.5	0.017	40	1,640,000	8,400	333.0	0.5	0.020
1000억 이하	33	2,420,000	11,900	558.0	0.5	0.023	28	2,090,000	9,640	194.0	0.5	0.009	28	2,060,000	9,480	379.0	0.5	0.018
5000억 이하	20	3,650,000	13,900	283.0	0.4	0.008	26	5,350,000	16,800	463.0	0.3	0.009	40	7,650,000	31,800	585.0	0.4	0.008
5000억 초과	14	127,000,000	121,000	2,460.0	0.1	0.002	17	128,000,000	142,000	2,430.0	0.1	0.002	23	99,000,000	108,000	1,890.0	0.1	0.002
합계	697	137,109,100	172,671	4778.6	0.1	0.003	718	139,691,300	197,425	4571.4	0.1	0.003	848	113,675,900	184,567	4409.5	0.2	0.004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

<부표 A.16-9>의 계속

(단위: 개, 백만원, %)

	2013						2014					
	법인수	매출액	회사계상 접대비	문화 접대비	매출액 대비		법인수	매출액	회사계상 접대비	문화 접대비	매출액 대비	
					(A)	(B)					(A)	(B)
3억 이하	144	17,400	1,440	130.0	11.6	0.747	131	13,300	1,170	66.6	11.0	0.501
5억 이하	50	19,500	536	19.7	2.7	0.101	59	23,500	589	64.5	2.5	0.274
10억 이하	98	74,900	1,540	93.9	2.1	0.125	96	69,900	1,440	121.0	2.1	0.173
20억 이하	110	166,000	2,530	142.0	1.5	0.086	135	194,000	3,140	245.0	1.6	0.126
50억 이하	202	655,000	7,070	358.0	1.1	0.055	190	617,000	6,440	244.0	1.0	0.040
100억 이하	118	806,000	5,770	302.0	0.7	0.037	127	907,000	6,740	282.0	0.7	0.031
200억 이하	96	1,390,000	10,400	583.0	0.7	0.042	115	1,580,000	9,770	437.0	0.6	0.028
300억 이하	40	927,000	3,990	91.6	0.4	0.010	47	1,140,000	8,840	246.0	0.8	0.022
500억 이하	46	1,830,000	7,950	331.0	0.4	0.018	47	1,830,000	10,400	154.0	0.6	0.008
1000억 이하	48	3,490,000	20,600	622.0	0.6	0.018	53	3,800,000	16,200	516.0	0.4	0.014
5000억 이하	45	9,190,000	39,200	827.0	0.4	0.009	47	9,770,000	39,500	2,290.0	0.4	0.023
5000억 초과	24	81,200,000	73,800	1,450.0	0.1	0.002	39	168,000,000	190,000	4,310.0	0.1	0.003
합계	1021	99,765,800	174,826	4950.2	0.2	0.005	1086	187,944,700	294,229	8976.1	0.2	0.005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

(3) 실적치 추정 방법

□ **(단계 1) 변수 생성**

○ 개별 기업의 차감접대비 해당금액(EE) = 접대비(회사계상)(EE_3) - 기준금액초과접대비(세무상부인)(over_EE_4)

○ 개별 기업의 일반접대비 금액(G_EE) = 차감접대비 해당금액(EE) - 문화접대비 지출액(CEE)

○ 개별 기업의 문화접대비 금액(C_EE) = 문화접대비 지출액(CEE) - 차감접대비 해당금액(EE)×적용률

- 2010~2011년도: 3%, 2012~2013년도: 1%, 2014년 이후: 없음

○ 개별 기업의 접대비 한도초과액(over_EE_limit) = 접대비(세무상부인)(EE_4) - 기준금액초과접대비(세무상부인)(over_EE_4)

○ 개별 기업의 접대비 한도액(F_EE_limit) = 차감접대비 해당금액(EE) - 접대비 한도초과액(over_EE_limit)

□ **(단계 2) 차감접대비 해당액(EE)과 일반접대비 한도액(G_EE_limit) 비교**

○ 차감접대비 해당 금액 > 일반접대비 한도액일 경우 조세지출 발생

□ **(단계 3) 문화접대비로 인한 조세지출규모**

○ 일반접대비(G_EE) ≥ 일반접대비 한도액(G_EE_limit)

- 조세지출규모 = Min[문화접대비 지출액, 문화접대비 한도액]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분

○ 일반접대비(G_EE) < 일반접대비 한도액(G_EE_limit)

- 조세지출규모 = Min[(차가 접대비 해당금액 - 일반접대비 한도액), 문화접대비 한도액] 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분

□ **(단계 5)** 법인세 감소분의 계산

○ 법인세 실효세율: 개별 기업이 부담한 총부담세액의 과세표준 대비 비율

○ 산출세액 변화분: 문화접대비 지출로 인한 추가손금산입액 전·후 과세표준 이용

(4) 실적치 추정 과정

가) 법인세

□ 법인세 실효세율을 이용한 귀속연도 2014년 문화접대비 지출로 인한 조세지출규모는 약 9억 6천만원으로 추정되었으며, 2013년 약 2억 8,100만원 대비 약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이는 2014년 문화접대비가 접대비 총액의 1%를 초과해야 한다는 최소금액 기준이 삭제된 데 주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 2012년 최소금액 기준 하향 조정(문화접대비가 접대비 총액의 3% → 1% 초과)

<부표 A.16-10> 문화접대비 지출 추가 손금산입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법인세 실효세율)

(단위: 개,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경우1	3	-	1	-	3	-	4	-	12	-
경우2	583	192.0	618	155.0	728	195.0	863	198.0	919	328.0
경우3	111	99.1	99	12.9	117	31.2	154	83.1	155	633.0
합계	697	291.1	718.0	167.9	848.0	226.2	1,021	281.1	1,086	961.0

주: 경우1: 차감접대비 해당 금액 ≤ 일반접대비 한도액
경우2: 차감접대비 해당 금액 > 일반접대비 한도액 & 일반접대비 ≥ 일반접대비 한도액
경우3: 차감접대비 해당 금액 > 일반접대비 한도액 &일반접대비 < 일반접대비 한도액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

□ 한편 산출세액 변화분을 이용한 귀속연도 2014년 문화접대비 지출로 인한 조세지출규모는 약 11억 5,800만원으로 추정되었음

<부표 A.16-11> 문화접대비 지출 추가 손금산입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산출세액 변화분)

(단위: 개,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경우1	3	-	1	-	3	-	4	-	12	-
경우2	583	209.0	618	168.0	728	223.0	863	243.0	919	366.0
경우3	111	114.0	99	16.2	117	35.8	154	97.2	155	792.0
합계	697	323.0	718	184.2	848	258.8	1,021	340.2	1,086	1,158.0

주: 경우1: 차감접대비 해당 금액 ≤ 일반접대비 한도액
경우2: 차감접대비 해당 금액 > 일반접대비 한도액 & 일반접대비 ≥ 일반접대비 한도액
경우3: 차감접대비 해당 금액 > 일반접대비 한도액 & 일반접대비 < 일반접대비 한도액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

<부표 A.16-12> 연도별·수입금액 규모별 문화접대비 조세지출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

수입금액 규모별	2010					2011					2012				
	문화접대비 지출액	조세지출규모		문화접대비 지출액 대비 조세지출규모		문화접대비 지출액	조세지출규모		문화접대비 지출액 대비 조세지출규모		문화접대비 지출액	규모		문화접대비 지출액 대비 조세지출규모	
		방법1	방법2	방법1	방법2		방법1	방법2	방법1	방법2		방법1	방법2	방법1	방법2
3억 이하	74.4	0.2	0.3	0.27	0.40	131.0	0.6	0.6	0.46	0.46	50.4	0.8	1.1	1.59	2.18
5억 이하	27.9	0.4	0.5	1.43	1.79	37.7	0.4	0.4	1.06	1.06	53.4	1.3	1.6	2.43	3.00
10억 이하	74.0	0.8	0.9	1.08	1.22	17.4	0.5	0.6	2.87	3.45	65.7	1.3	1.4	1.98	2.13
20억 이하	102.0	2.0	2.2	1.96	2.16	96.0	2.0	2.6	2.08	2.71	149.0	3.1	3.7	2.08	2.48
50억 이하	341.0	12.0	21.3	3.52	6.25	247.0	7.6	9.1	3.08	3.68	193.0	7.3	11.8	3.78	6.11
100억 이하	443.0	11.2	17.3	2.53	3.91	335.0	8.2	13.1	2.45	3.91	252.0	8.7	12.3	3.45	4.88
200억 이하	237.0	9.8	11.7	4.14	4.94	347.0	0.0	8.2	0.00	2.36	293.0	15.5	19.4	5.29	6.62
300억 이하	137.0	5.0	6.5	3.65	4.74	25.3	2.7	2.1	10.67	8.30	166.0	4.5	5.2	2.71	3.13
500억 이하	41.3	1.7	2.0	4.12	4.84	248.0	6.6	7.6	2.66	3.06	333.0	9.2	11.7	2.76	3.51
1000억 이하	558.0	12.1	12.6	2.17	2.26	194.0	4.6	5.6	2.37	2.89	379.0	13.7	16.3	3.61	4.30
5000억 이하	283.0	9.1	10.4	3.22	3.67	463.0	19.8	20.8	4.28	4.49	585.0	21.1	24.5	3.61	4.19
5000억 초과	2,460.0	227.0	238.0	9.23	9.67	2,430.0	108.0	114.0	4.44	4.69	1,890.0	140.0	150.0	7.41	7.94
합계	4778.6	291.3	323.7	6.10	6.77	4571.4	161.1	184.7	3.52	4.04	4409.5	226.4	259.0	5.13	5.87

주: 방법1: 법인세 실효세율, 방법2: 산출세액 변화분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

<부표 A.16-12>의 계속

(단위: 백만원, %)

수입금액 규모별	2013					2014				
	문화접대비 지출액	조세지출규모		문화접대비 지출액 대비 조세지출규모		문화접대비 지출액	조세지출규모		문화접대비 지출액 대비 조세지출규모	
		방법1	방법2	방법1	방법2		방법1	방법2	방법1	방법2
3억 이하	130.0	1.1	1.2	0.85	0.92	66.6	0.7	0.9	1.05	1.35
5억 이하	19.7	0.4	0.4	2.03	2.03	64.5	1.1	1.2	1.71	1.86
10억 이하	93.9	2.1	2.5	2.24	2.66	121.0	1.9	2.1	1.57	1.74
20억 이하	142.0	2.5	3.4	1.76	2.39	245.0	8.6	10.1	3.51	4.12
50억 이하	358.0	11.7	17.2	3.27	4.80	244.0	8.9	13.0	3.65	5.33
100억 이하	302.0	13.1	18.8	4.34	6.23	282.0	12.3	17.3	4.36	6.13
200억 이하	583.0	26.5	39.8	4.55	6.83	437.0	20.3	26.8	4.65	6.13
300억 이하	91.6	6.0	7.4	6.55	8.08	246.0	16.3	19.7	6.63	8.01
500억 이하	331.0	13.4	16.0	4.05	4.83	154.0	8.9	11.8	5.78	7.66
1000억 이하	622.0	16.7	21.1	2.68	3.39	516.0	25.2	32.0	4.88	6.20
5000억 이하	827.0	35.3	41.9	4.27	5.07	2,290.0	185.0	316.0	8.08	13.80
5000억 초과	1,450.0	153.0	170.0	10.55	11.72	4,310.0	672.0	706.0	15.59	16.38
합계	4950.2	281.8	339.7	5.69	6.86	8,976.1	961.2	1,156.9	10.71	12.89

주: 방법1: 법인세 실효세율, 방법2: 산출세액 변화분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

나) 소득세

□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국세청에 DB화가 되어 있지 않고, 접대비도 시부인 전 신고금액만 파악이 가능하여 개별 기업별로 일반접대비 한도와 문화접대비 지출액을 비교하여 실적치와 다음 연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함

○ 또한 사업소득세는 추계신고자가 많아 조세지출규모 산출에 따른 실익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5) 다음 연도 추정치

□ 동 제도는 총접대비 지출액 및 한도액을 개별 사업자별로 적용해야 하므로 다음 연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기업별 매출액 및 문화접대비 지출액의 예측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음

□ 다만, 수입금액 규모별 매출액 비중을 비롯하여 매출액에서 접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도별로 크게 변하지 않아 동 통계의 과거 3개연도의 평균 증감률을 활용하고, 귀속연도 2014년 기준 수입금액 규모별 문화접대비 지출액 및 조세지출규모 실적치를 이용하여 2015년~2017년 조세지출규모를 전망하고자 함

○ 매출액은 수입금액 규모별로 귀속연도 2011~2013년 연평균 증감률을 이용하고, 매출액 비중도 수입금액 규모별 3년 평균을 이용함

○ 다음 연도 매출액을 예측한 후 수입금액 규모별 3년 평균 매출액 비중으로 배분한 후 2014년 귀속 기준 수입금액 규모별 전체기업 매출액 대비 문화접대비 비중을 이용하여 문화접대비 지출액을 추계함

○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장 최근 연도인 귀속연도 2014년 기준 수입금액 규모별 문화접대비 지출액 대비 조세지출규모 비중이 이후 연도에도 계속 지속되리라고 가정한 후 2015~2017년 동안의 조세지출규모를 전망함

가) 2015년도

□ 2015년도 문화접대비 손금산입으로 인한 조세지출규모는 법인세 실효세율로 추계 시 약 9억 7,200만원, 산출세액 변화분으로 추계 시 11억 7,700만원으로 나타남

<부표 A.16-13> 수입금액 규모별 문화접대비 조세지출규모 전망치(2015년도)

(단위: 백만원, %)

수입금액 규모별	매출액(전망) (최근 3년 연평균 증감률)[1] (A)	전체기업 매출액 대비 문화접대비 비중(2014년 기준) (B)	문화접대비 지출액 (C=A×B)	2014년 기준 문화접대비 지출액 대비 조세지출규모 비중 (D)		문화접대비 지출로 인한 조세지출규모 (E=C×D)	
				방법1	방법2	방법1	방법2
3억 이하	20,539,444	0.00037	76	1.05	1.35	0.80	1.03
5억 이하	21,006,896	0.00035	74	1.71	1.86	1.26	1.37
10억 이하	58,759,047	0.00023	135	1.57	1.74	2.12	2.35
20억 이하	118,846,470	0.00023	273	3.51	4.12	9.59	11.26
50억 이하	292,948,966	0.00010	293	3.65	5.33	10.69	15.61
100억 이하	283,916,881	0.00011	312	4.36	6.13	13.62	19.14
200억 이하	286,477,519	0.00017	487	4.65	6.13	22.65	29.85
300억 이하	160,137,413	0.00016	256	6.63	8.01	16.99	20.52
500억 이하	187,416,733	0.00009	169	5.78	7.66	9.75	12.92
1000억 이하	246,290,663	0.00022	542	4.88	6.20	26.44	33.59
5000억 이하	562,596,562	0.00043	2,419	8.08	13.80	195.47	333.84
5000억 초과	2,361,444,744	0.00018	4,251	15.59	16.38	662.67	696.25
합계	4,586,667,396	0.00020	9,173	10.71	12.89	972.04	1,177.75

주: 1) 2011~2013년 수입금액규모별 매출액 연평균 증감률 이용
1. (방법1) 법인세 실효세율, (방법2) 산출세액 변화분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 및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나) 2016~2017년도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문화접대비 적용한도는 10%에서 20%로 확대되므로, 2016년과 2007년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로 인한 전망치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전망을 비롯하여 한도 확대에 따른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

○ 문화접대비 한도 확대에 따른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귀속연도 2014년 기준으로 문화접대비를 지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접대비 한도를 10%에서 20%로 확대하였을 경우 조세지출규모를 추정한 결과는 <부표 A.16-14>, <부표 A.16-15>와 같음

- 법인세 실효세율을 이용하여 추계한 귀속연도 2014년 기준 조세지출규모는 한도 확대 적용 후 약 9억 6천만원에서 10억 8,000만원으로 약 1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산출세액 변화분으로 추계한 2014년 기준 조세지출규모는 한도 확대 적용 후 약 11억 5,600만원에서 약 12억 8,400원으로 약 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문화접대비 적용한도를 적용한 이후의 조세지출규모는 법인세 실효세율로 추계 시 약 11억 2,000만원, 산출세액 변화분으로 추계시 약 13억 4,000만원으로 전망되었음

<부표 A.16-14> 수입금액 규모별 문화접대비 조세지출규모 전망치(2016년도): 법인세 실효세율

(단위: 백만원, %)

수입금액 규모별	매출액(전망) (최근 3년 연평균 증감률)[1] (A)	전체기업 매출액 대비 문화접대비 비중 (2014년 기준) (B)	문화접대비 지출액 (C=A×B)	2014년 기준 문화접대비 지출액 대비 조세지출규모 비중				문화접대비 지출로 인한 조세지출규모 (E=C×D)
				한도(10%)		한도(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D)	
3억 이하	21,996,913	0.00037	81.4	0.7	1.05	1.0	1.5	1.22
5억 이하	22,325,309	0.00035	78.1	1.1	1.71	1.1	1.7	1.33
10억 이하	62,588,558	0.00023	144.0	1.9	1.57	2.0	1.6	2.30
20억 이하	126,364,987	0.00023	290.6	8.6	3.51	8.9	3.6	10.46
50억 이하	313,471,993	0.00010	313.5	8.9	3.65	9.7	4.0	12.54
100억 이하	297,996,781	0.00011	327.8	12.3	4.36	15.2	5.4	17.70
200억 이하	298,052,781	0.00017	506.7	20.3	4.65	25.3	5.8	29.39
300억 이하	165,471,670	0.00016	264.8	16.3	6.63	21.2	8.6	22.77
500억 이하	191,535,503	0.00009	172.4	8.9	5.78	12.6	8.2	14.14
1000억 이하	253,884,914	0.00022	558.5	25.2	4.88	33.4	6.5	36.31
5000억 이하	576,177,968	0.00043	2,477.6	185.0	8.08	200.0	8.7	215.55
5000억 초과	2,342,770,345	0.00018	4,217.0	672.0	15.59	750.0	17.4	733.76
합계	4,672,637,723	0.00020	9,345	961.2	10.71	1,080.3	12.0	1,121.43

주: 1) 2011~2013년 수입금액규모별 매출액 연평균 증감률 이용
1. (방법1) 법인세 실효세율, (방법2) 산출세액 변화분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 및 국세청,『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부표 A.16-15> 수입금액 규모별 문화접대비 조세지출규모 전망치(2016년도): 산출세액 변화분

(단위: 백만원, %)

수입금액 규모별	매출액(전망) (최근 3년 연평균 증감률)[1] (A)	전체기업 매출액 대비 문화접대비 비중(2014년 기준) (B)	문화접대비 지출액 (C=A×B)	2014년 기준 문화접대비 지출액 대비 조세지출규모 비중				문화접대비 지출로 인한 조세지출규모 (E=C×D)
				한도(10%)		한도(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D)	
3억 이하	21,996,913	0.00037	81.4	0.9	1.35	1.3	1.9	1.55
5억 이하	22,325,309	0.00035	78.1	1.2	1.86	1.2	1.9	1.48
10억 이하	62,588,558	0.00023	144.0	2.1	1.74	2.2	1.8	2.59
20억 이하	126,364,987	0.00023	290.6	10.1	4.12	10.5	4.3	12.50
50억 이하	313,471,993	0.00010	313.5	13.0	5.33	13.9	5.7	17.87
100억 이하	297,996,781	0.00011	327.8	17.3	6.13	21.1	7.5	24.58
200억 이하	298,052,781	0.00017	506.7	26.8	6.13	33.1	7.6	38.51
300억 이하	165,471,670	0.00016	264.8	19.7	8.01	25.3	10.3	27.27
500억 이하	191,535,503	0.00009	172.4	11.8	7.66	16.4	10.6	18.27
1000억 이하	253,884,914	0.00022	558.5	32.0	6.20	41.5	8.0	44.68
5000억 이하	576,177,968	0.00043	2,477.6	316.0	13.80	332.0	14.5	359.25
5000억 초과	2,342,770,345	0.00018	4,217.0	706.0	16.38	786.0	18.2	767.49
합계	4,672,637,723	0.00020	9,345	1,156.9	12.89	1,284.5	14.3	1,336.37

주: 1) 2011~2013년 수입금액규모별 매출액 연평균 증감률 이용
1. (방법1) 법인세 실효세율, (방법2) 산출세액 변화분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 및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부표 A.16-16> 수입금액 규모별 문화접대비 조세지출규모 전망치(2017년도): 법인세 실효세율

(단위: 백만원, %)

수입금액 규모별	매출액(전망) (최근 3년 연평균 증감률)[1] (A)	전체기업 매출액 대비 문화접대비 비중(2014년 기준) (B)	문화접대비 지출액 (C=A×B)	2014년 기준 문화접대비 지출액 대비 조세지출규모 비중 (한도 20%)		문화접대비 지출로 인한 조세지출규모 (E=C×D)
				금액	비중(D)	
3억 이하	23,557,804	0.00037	87	1.0	1.5	1.31
5억 이하	23,726,466	0.00035	83	1.1	1.7	1.41
10억 이하	66,667,650	0.00023	153	2.0	1.6	2.45
20억 이하	134,359,143	0.00023	309	8.9	3.6	11.12
50억 이하	335,432,796	0.00010	335	9.7	4.0	13.42
100억 이하	312,774,927	0.00011	344	15.2	5.4	18.58
200억 이하	310,095,747	0.00017	527	25.3	5.8	30.58
300억 이하	170,983,614	0.00016	274	21.2	8.6	23.53
500억 이하	195,744,789	0.00009	176	12.6	8.2	14.45
1000억 이하	261,713,330	0.00022	576	33.4	6.5	37.43
5000억 이하	590,087,237	0.00043	2,537	200.0	8.7	220.75
5000억 초과	2,324,243,624	0.00018	4,184	750.0	17.4	727.95
합계	4,749,387,128	0.00020	9,499	1,080.3	12.0	1,139.85

주: 1) 2011~2013년 수입금액규모별 매출액 연평균 증감률 이용
1. (방법1) 법인세 실효세율, (방법2) 산출세액 변화분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 및 국세청,『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부표 A.16-17> 수입금액 규모별 문화접대비 조세지출규모 전망치(2017년도): 산출세액 변화분

(단위: 백만원, %)

수입금액 규모별	매출액(전망) (최근 3년 연평균 증감률)[1] (A)	전체기업 매출액 대비 문화접대비 비중(2014년 기준) (B)	문화접대비 지출액 (C=A×B)	2014년 기준 문화접대비 지출액 대비 조세지출규모 비중 (한도 20%)		문화접대비 지출로 인한 조세지출규모 (E=C×D)
				금액	비중(D)	
3억 이하	23,557,804	0.00037	87	1.3	1.9	1.66
5억 이하	23,726,466	0.00035	83	1.2	1.9	1.58
10억 이하	66,667,650	0.00023	153	2.2	1.8	2.76
20억 이하	134,359,143	0.00023	309	10.5	4.3	13.29
50억 이하	335,432,796	0.00010	335	13.9	5.7	19.12
100억 이하	312,774,927	0.00011	344	21.1	7.5	25.80
200억 이하	310,095,747	0.00017	527	33.1	7.6	40.06
300억 이하	170,983,614	0.00016	274	25.3	10.3	28.18
500억 이하	195,744,789	0.00009	176	16.4	10.6	18.67
1000억 이하	261,713,330	0.00022	576	41.5	8.0	46.06
5000억 이하	590,087,237	0.00043	2,537	332.0	14.5	367.92
5000억 초과	2,324,243,624	0.00018	4,184	786.0	18.2	761.42
합계	4,749,387,128	0.00020	9,499	1.284.5	14.3	1,358.32

주: 1) 2011~2013년 수입금액규모별 매출액 연평균 증감률 이용
1. (방법1) 법인세 실효세율, (방법2) 산출세액 변화분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 및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5. 추정결과

<부표 A.16-18>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로 인한 조세지출규모

(단위: 억원)

연도		2015 (추정)	2016 (전망)	2017 (전망)
법인세	법인세 실효세율 이용 시	9.7	11.2	11.4
	산출세액 변화분 이용 시	11.8	13.4	13.6

6. 문제점

□ 소득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문화접대비를 파악할 수 있는 DB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시부인 전 접대비 신고내역이 있다고 해도 추계신고자가 많아 추계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 문화접대비 지출에 의한 추가 손금액이 조세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기업의 연도별 접대비 일반접대비 한도액과 차가감 접대비 해당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확정연도에 대한 전망치는 실적치와 오차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문화접대비 한도 확대에 따른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2016년에 신고한 2015년 귀속 자료를 이용해서 추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국세청, 『법인세 신고안내』, 각 연도.

_____, 『2016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2016. 3.

김성규 외, 『문화접대비 세제 효과 분석 2차 연구』, 한국메세나협의회, 2009. 5.

손원익, 『접대비 지출과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2003.

이태정, 「접대비 지출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경영연구』 Vol. 24 No. 4. 2009.

장상록 · 김강호, 「기업특성이 접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경영연구』 Vol. 25 No. 4. 2010.

재정경제부, 『2007년 간추린 개정세법』, 2008.7.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삼일아이닷컴(http://www.samili.com)

<A.16.부록-1> 접대비 지출 관련 선행연구

저자(연도)	주제	연구방법	주요 내용	연구결과
손원익 (2003)	접대비 지출과 조세정책	해외사례 조사, 회귀분석	- 접대비 관련 세제의 개편에 따른 접대비 지출실태 변화 분석 · 손금산입한도의 변화율이 접대비비율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 접대비지출과 유흥산업과의 관계 분석 - 향후 접대비 관련세제의 방향을 제시	- 접대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분석(세제개편의 효과분석) · 종속변수: 접대비를 당해기업의 매출액으로 나눈 접대비비율 증가율 · 독립변수: 손금산입한도 증가율(+), 동종 업종내 타기업의 수, 타기업 접대비비율의 평균값(-), 업종 및 기업규모 더미변수
이태정 (2009)	접대비 지출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회귀분석	- 접대비의 수익창출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	- 접대비와 수익과의 관련성 분석(+) - 접대비 한도초과와 수익과의 관련성 분석(+) - 접대비 지출규모와 수익과의 관련성 분석(+) - 추가분석 · 도소매·서비스 산업을 제외한 산업군(+) · 호경기시 접대비와 수익의 관련성이 더 높음
장상록·김강호 (2010)	기업특성이 접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 기업특성과 경영자 유인이 접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 종속변수: 접대비지출비율 - 독립변수: 기업규모(-), 부채비율(+), 매출액(+), 기타의 판매비와 관리비(+), 복리후생비(+), 최대주주지분비율(-), 외국인 투자자 지분비율, 중소기업여부 - 통제변수: 연도 및 산업더미 통제변수

자료: 손원익,『접대비 지출과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2003.
이태정,「접대비 지출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경영연구』Vol. 24 No. 4. 2009.
장상록·김강호,「기업특성이 접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경영연구』Vol. 25 No. 4. 2010.

<A.16.부록-2>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의안번호 6118(2007. 2.13)

1. 비용추계의 전제

① 접대비 관련 통계(05년 신고기준)

구 분	모든 법인의 접대비한도액 합계	한도미달법인의 접대비한도액 합계
금 액	64,746억원	49,753억원

② 총접대비 중 문화접대비 비중

- 문광부 연구용역 결과 (설문조사 : 156개 기업이 응답 / 3,852개 기업에 발송)

▪ 발생빈도가 높은 접대방식(단위 : %)

응답률	향응접대	운동접대	물품접대	현금접대	문화접대	관광접대	기타	합계
1순위	61.4	10.3	7.7	10.3	2.6	7.7	0	100
2순위	5.1	23.1	28.1	15.4	10.3	7.7	10.3	100
3순위	20.5	46.2	12.7	7.7	10.3	0	2.6	100

③ 법인세 실효세율 : 21%

④ 기준초과 문화접대비 지출률 : 50%

: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문화접대비는 추가손비인정한도(접대비한도액의 10%)의 50%에 해당한다고 가정

⑤ 접대비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기업의 경우 문화접대비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총접대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없다고 가정

2. 비용추계내역

(모든 법인의 접대비한도액 합계 - 한도미달법인의 접대비한도액 합계) × 추가손비 인정률 × 기준초과 문화접대비 지출률 × 법인세 실효세율

= (64,746억원 - 49,753억원) × 10% × 50% × 21%

= 14,993억원 × 10% × 50% × 21%

= 157억원

A.17. 비거주자 등의 정기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특법」 제21조의 2)

1. 제도개요 및 연혁

가.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참조

나. 도입목적

(1) 외화예금의 취약성

□ 2012년 6월 「외화예금확충방안」이라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공동의 보도자료를 통해 동 조세지출의 도입이 언급됨

○ 보도자료에서는 은행이 예금을 통해 충분한 외화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외화조달체계로 인해 외화조달은 주로 비거주자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함을 지적함

○ 이처럼 외화조달의 차입 의존도가 높으면 경제위기(금융·외환 등) 시 급격한 자본유출의 우려가 대두되는 등 대외적인 경제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위기발생 시 외환보유액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함을 지적함

□ 또한 차입을 통한 외화조달은 외화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달비용이 높다는 것도 지적함

○ 시장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동일만기 차입금리에 비해 외화예금 금리가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달비용 면에서도 외화예금이 유리함

□ 은행 외화영업의 수익성 하락과 국가적인 손실의 방지를 위해 은행 외화조달에

서 비거주자로부터 차입·채권발행 비중을 낮추고 외화예금의 비중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됨

□ 결국 외화조달구조의 안정화와 외화예금 확대를 위해 비거주자의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대해 외화차입·채권발행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 면제를 도입

○ 수시입출금식·단기예금 중심인 외화예금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외화예금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장기예금에만 면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세지출 도입

(2) 비거주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개선

□ 2012년 6월 당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외화차입 또는 채권발행이 이자소득세 면에서 외화예금에 비해 유리함

○ 외화차입의 경우 은행 차입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 면제

○ 외화채권은 모든 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면제함

○ 반면에 외화예금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 부과

<부표 A.17-1> 외화자금 조달수단별 이자소득세 부과 여부(2012년 6월 말 현재)

	외화채권	외화차입	외화예금
거주자	부과	부과	부과
비거주자	면제	은행차입시 면제	부과

□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대해서도 외화차입·채권발행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 면제제도를 도입키로 함

○ 수시입출금식·단기예금 중심인 외화예금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외화예금 안정성 제고를 위해 1년 이상의 비거주자 장기예금에 대하여만 면세를 도입

○ 당시 거주자가 동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원화예금에 비하여 장기외화예금의 유인이 낮으므로 거주자의 제도 악용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다. 조세지출 내용

□ 면제대상: 비거주자, 외국법인

□ 비과세 요건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98]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이고 금융감독원장의 약관심사를 거친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외화예금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예금에서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세

○ 동 조세지출을 적용받기 위해 비거주자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조특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

○ 비거주자 등이 예금 계약을 변경 또는 갱신하여 예금이 정기외화예금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갱신일에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봄(「조특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 감면세액의 추징(「조특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 예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예금을 취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

①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발생이자에 대해 부과하지 않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② 예금을 인출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인출일까지 인출한 예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하지 않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 예금의 인출 없이 1년 이상 예치한 경우에는 그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

라. 조세지출 현황

□ 2015년 세법개정 시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대하여 종료함

98)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

□ 적용 종료 사유는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항목에 대한 정비 차원임[99]

○ 따라서 동 조세지출 항목은 지원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명된 바, 규모추정을 위한 추계모형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동 조세지출에 대한 지원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이 2015년 세법개정(안)에 제기되어 비과세 적용이 종료되었다면 이에 대한 판단 근거가 기재부 내에 존재할 것으로 보임

○ 이 판단 근거가 동 조세지출의 규모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외화예금 현황

(1) 우리나라 외화예금의 특징

□ 앞서 설명한 2012년 6월의 보도자료에서 설명하는 우리나라 외화예금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예금목적이 투자수익 목적보다는 거래목적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예금주가 대부분인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교역규모의 움직임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남

○ 개인예금의 경우는 여행지급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임

99) 2015년 세법개정(안)

[부도 A.17-1] 수시입출식예금과 교역규모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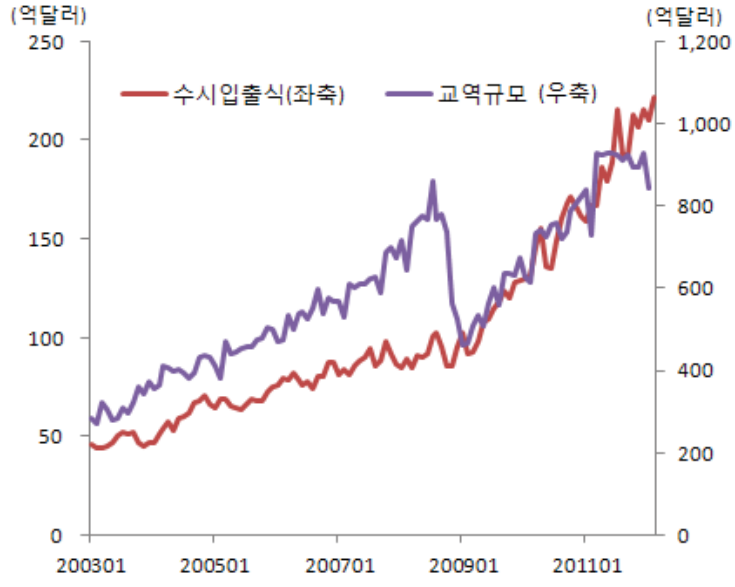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부도 A.17-2] 개인예금과 여행지급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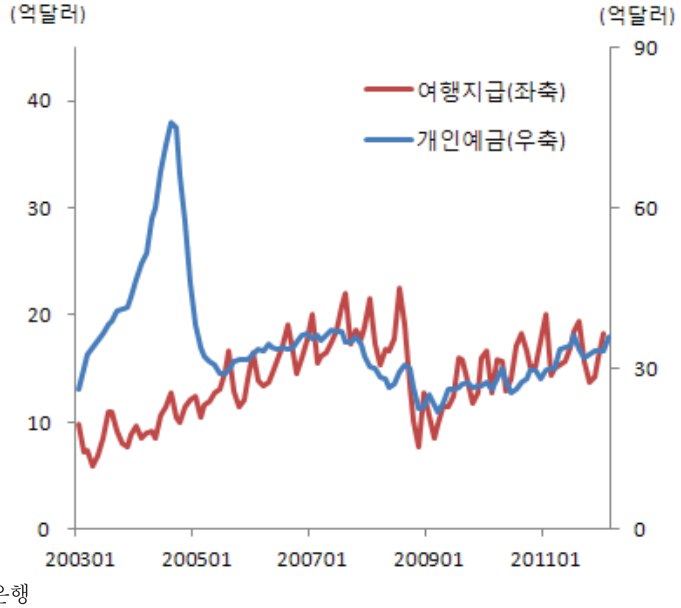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환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원화가치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 외화예금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환율의 하락 시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부도 A.17-3] 외화예금 비중과 환율과의 관계



자료: 한국은행

○ 환율의 변동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외화예금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자국 통화가치 상승기에 외화예금이 감소하고, 국가의 환율 변동성이 높을 경우 외화예금이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은 해외사례에서도 주된 경향임을 알 수 있음100)

□ 금리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외화 정기예금의 경우는 내외금리차(외화금리 - 원화금리)가 감소할 때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부도 A.17-4] 정기예금과 내외금리차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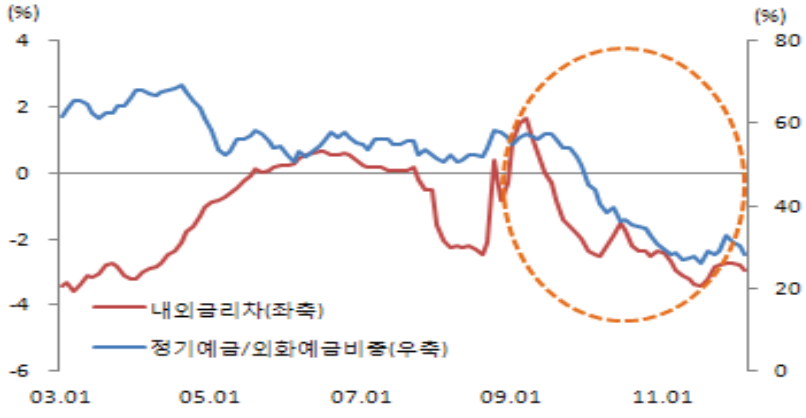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100) 보도자료에서는 해외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는 없음.

□ 또한 안정성 측면에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시에 외화예금 잔액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며[101], 장기부채로 인정되는 핵심예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이러한 안정성 측면에서 외화예금이 금융위기와 같은 유사 시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 동 조세지출의 도입 목적의 달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2) 우리나라 외화예금의 구조

□ 조세지출규모의 추정을 위해서는 외화예금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12년 4월 말의 외화예금은 전체 373억달러이며 이중 거주자 외화예금은 320억달러이며,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은 53억달러를 차지함

-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은 전체 외화예금의 14.2%를 차지함

○ 비거주자 외화예금은 기업, 개인, 은행이 각각 13억달러, 10억달러, 30억달러를 예치하고 있음.

- 비거주자 외화예금 전체에 대해 각각 24.5%, 18.9%, 56.6%를 차지함

○ 외화예금의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정기예금은 각각 16억달러, 37억달러를 차지함

- 그 비중은 30.2%와 69.8%로 약 3:7의 비율을 보임

[부도 A.17-5] 우리나라 은행의 외화예금 구조(2012.4월말)

(단위: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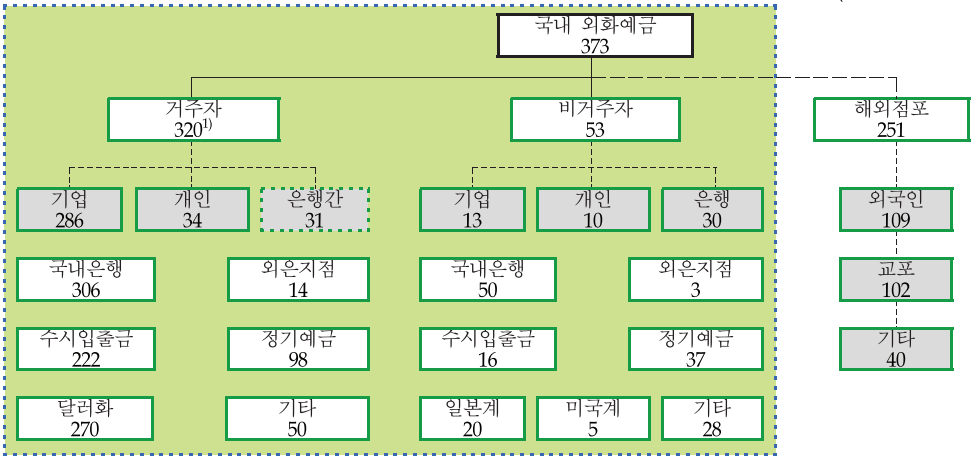

주: 1) 은행간 예금 제외

자료: 보도자료, 「외화예금확충방안」,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12. 6

101) 은행차입・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리먼사태 및 유럽 국가채무위기 시 각각 -754억달러, -72억달러 순유출된 반면 거주자 외화예금은 각각 37억달러, 25억달러 증가(보도자료, 「외화예금확충방안」,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12. 6)

□ 동 조세지출이 시행되었던 2013년~2015년 사이의 비거주자 외화예금의 추이는 [부도 A.19-6]과 같음

○ 3조 5천억원과 4조 5천억원 사이에서 예금규모가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조세지출이 시행되기 전과 시행된 후의 변동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즉, 조세지출의 도입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음을 보여줌

[부도 A.17-6] 비거주자 외화예금 월별 추이(2013.1~2016.6)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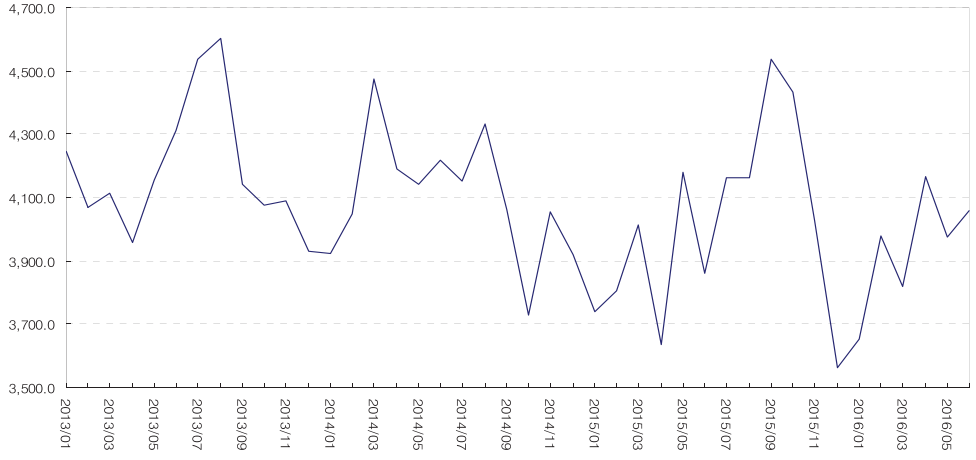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 오히려 조세지출이 시행된 2013년의 경우, 2011년, 20112년에 비해 외화예금 총 수신고가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부표 A.17-2>, [부도 A.19-7]] 참조)

<부표 A.17-2> 비거주자의 외화예금 총수신 규모(말잔)

(단위: 십억원)

연도	금액	연도	금액
1992	69.4	2004	1,333.8
1993	103.6	2005	1,612.7
1994	117.9	2006	2,052.2
1995	162.4	2007	1,613.8
1996	256.2	2008	2,423.8
1997	517.7	2009	3,530.3
1998	1,169.1	2010	3,035.1
1999	1,076.5	2011	5,420.2
2000	1,778.2	2012	4,434.8
2001	1,297.6	2013	3,930.4
2002	1,395.6	2014	3,918.1
2003	2,238.9	2015	3,563.1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부도 A.17-7] 비거주자 외화예금 연도별 추이(1992~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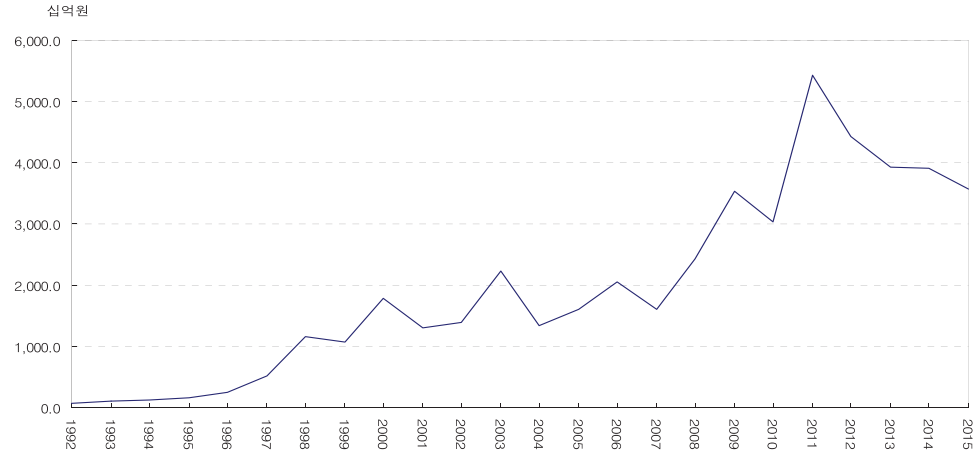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3) 이자소득세율 변천

<부표 A.17-3> 이자소득세율 추이

(단위: %)

기간	세율
1996.1~1997.12	15
1998.1~1998.9	20
1998.10~1999.12	22
2000.1~2000.12	20
2001.1~2004.12	15
2005.1~ 현재	14

2. 국세청 자료 현황

가. 국세청 자료

□ 조세지출예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추정곤란 사유를 관련 신고서식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국세청 등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 본 조세지출항목에 대한 조세지출예산서상 추정곤란 사유는 단순히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상 자료추출이 불가하여 추정곤란'이라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1)]에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이 존재함

□ 본 서식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구분되어 있으며, 비과세·과세 여부, 이자 또는 배당에 대한 면세액이 나타남

○ 결정적으로는 「조특법」 제21의2에 의한 조세지출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아래의 자료가 확보되면 조세지출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필요자료는 다음과 같음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중 다음 항목의 연도별 합계액

- ⑩번 '거주구분' 중 비거주자
- ⑯번 '과세구분' 중 비과세, 면제(개인, 법인)
- ⑱번 '조세특례 등' 중 PU(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비과세(조특법 §21의2①)
- ㉔지급액(소득금액)
- ㉖ 소득세(원천징수세액)

나. 자료이용 불가 사유

□ 우선 금융거래정보(이자, 배당)에 대한 자료는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 대상이므로 자료제공을 할 수 없음

○ 국세청이 밝힌 비밀보장 대상으로 자료제공이 불가한 경우(유권해석)는 다음과 같음

<부표 A.17-4>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자료 불제공 사유

1	• 특정인의 연도별 금융기관별 이자소득 금액 • 특정인의 연도별 이자(배당)소득 • 특정인의 연도별 금융소득 합계액 • 특정인의 연도별 종합소득급액과 금융소득금액의 합계액 • 연도별 금액구간별 인원 및 이자(배당) 소득금액 합계액
2	특정인 자녀의 금융소득금액
3	건강보험료 징수 등에 이용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제공
4	특정인의 소득세, 법인세 금액을 감사목적으로 감사원 등에 제공

□ 둘째, 별지 제23호 서식 ⑱번 '조세특례 등'의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

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조특법§21의2①)' PU 표기의 집계는 가능하나 조세지출의 대상인 1년 이상 정기예금인지의 구분은 불가함

□ 셋째, 서식상의 면세금액이 조세조약에 의한 금액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움

□ 이상과 같은 문제점 등으로 인해 국세청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어려움

○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상 자료추출이 불가하여 추정곤란'이라고 한 표현은 이를 두고 말한 것으로 판단됨

3. 기타 경제사회통계자료 현황

□ 한국은행의 비거주자 외화예금 총액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 예금/대출금/기타금융 > 3.1 예금은행 수신 > 3.1.5 예금은행 총수신 > 비거주자예수금 > 외화예금

<부표 A.17-5> 비거주자 외화예금 추이(말잔)

(단위: 십억원)

기간	예금액	기간	예금액
2013/01	4,245.1	2014/10	3,730.1
2013/02	4,067.8	2014/11	4,056.6
2013/03	4,114.4	2014/12	3,918.1
2013/04	3,958.3	2015/01	3,740.9
2013/05	4,155.0	2015/02	3,804.4
2013/06	4,310.7	2015/03	4,012.6
2013/07	4,538.6	2015/04	3,634.0
2013/08	4,603.4	2015/05	4,180.8
2013/09	4,141.6	2015/06	3,860.9
2013/10	4,076.5	2015/07	4,161.7
2013/11	4,090.9	2015/08	4,162.3
2013/12	3,930.4	2015/09	4,536.5
2014/01	3,923.7	2015/10	4,431.8
2014/02	4,048.0	2015/11	4,026.2
2014/03	4,472.9	2015/12	3,563.1
2014/04	4,190.8	2016/01	3,651.8
2014/05	4,141.2	2016/02	3,977.1
2014/06	4,219.6	2016/03	3,820.2
2014/07	4,151.4	2016/04	4,165.1
2014/08	4,330.7	2016/05	3,974.7
2014/09	4,062.2	2016/06	4,057.8

주: 1. 산업은행이 예금은행으로 분류된 2002년 1월부터 동 기관분 포함
2. 동업자예금 제외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비거주자 외화예금 이자율

○ 외화정기예금이자율은 리보금리에 연동되며 각 시중은행별로 통화별 및 기간별로 고시함

<부표 A.17-6> 외화정기예금이자율(우리은행 기준)

(단위: %)

통화	구분	1주일 미만	1주일 이상	1개월 이상	2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USD	거주자	0.1318	0.1707	0.2606	0.3401	0.4302	0.6931	1.0689
	비거주자	0.1474	0.1876	0.2637	0.3442	0.4354	0.7012	1.0803
SGD	거주자	0.3866	0.4294	0.5285	0.8289	0.8892	1.012	1.5339
	비거주자	0.4174	0.4617	0.5348	0.8364	0.898	1.0231	1.5464
SEK	거주자	0	0	0	0	0	0	0
	비거주자	0	0	0	0	0	0	0
NZD	거주자	1.9233	1.9732	2.1484	2.1409	2.2033	2.389	2.6803
	비거주자	2.0486	2.0992	2.1699	2.1628	2.2258	2.4114	2.7027
JPY	거주자	0	0	0	0	0	0	0
	비거주자	0	0	0	0	0	0	0
HKD	거주자	0	0	0	0.0033	0.1134	0.4566	1.0025
	비거주자	0	0	0	0.0045	0.1174	0.464	1.0138
GBP	거주자	0.0432	0.0877	0.1793	0.2272	0.3151	0.5074	0.7702
	비거주자	0.0648	0.1095	0.1832	0.2314	0.3197	0.5135	0.7789
EUR	거주자	0	0	0	0	0	0	0
	비거주자	0	0	0	0	0	0	0
CNY	거주자	0	0	0	0	0.1315	1.1436	2.1884
	비거주자	0	0	0	0	0.1504	1.1753	2.2256
CHF	거주자	0	0	0	0	0	0	0
	비거주자	0	0	0	0	0	0	0
CAD	거주자	0.0416	0.0915	0.2006	0.2803	0.3819	0.6619	1.0283
	비거주자	0.0888	0.1387	0.2085	0.2882	0.3897	0.6711	1.0383
AUD	거주자	1.3711	1.4094	1.5871	1.6834	1.7657	1.9426	2.3594
	비거주자	1.4706	1.51	1.6046	1.7019	1.7846	1.9629	2.3803

주: 조회기준: 2016.05.01~2016.05.31

자료: 우리은행 홈페이지(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DEP0005)

4. 추정모형 검토

가. 국세청 자료 이용

□ 국세청 자료는 추계 절차 없이 서식에 기재된 원천징수금액을 그대로 이용하면 될 것임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⑱번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조특법§21의2①)' 난에 'PU' 라고 표기된 신고서 급액을 합산하면 본 조세지출의 규모가 될 것임

□ 이와 같이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면 추정이 아닌 단순 집계에 의하여도 당해 조세지출 항목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인 존재하나 위에 설명한 사유 등(개인정보 보호 등)에 의하여 국세청의 자료를 집계할 수 없으므로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해야 함

나. 한국은행 자료 이용

□ 한국은행의 비거주자 외화예금 연도별 말잔 총액과 시중은행의 정기외화예금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함

○ 동 추정방법은 정기외화예금액과 이자율을 가지고 단순 산술 계산을 통해 구하는 것으로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할 수 있다면 비교적 정확하게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을 것임

○ 예컨대 각 금융기관별 비거주자의 해외 거주국가별 정기외화예금 규모와 이자율, 그리고 만기지급 시기 정보만 있으면 규모 추정이 가능하리라는 판단임

○ 이와 같은 기본 개념하에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을 통하여 확보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규모 추정을 실시함

○ 추정기간은 비거주자 외화정기예금 이자율의 구득이 가능한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임

(1) 이용자료

□ 연도별 비거주자의 외화예금 현황

○ 동 조세지출의 도입이 결정된 2012년까지는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 이후 연도부터는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임

<부표 A.17-7> 연도별 비거주자의 외화예금 은행 총수신 규모

(단위: 십억원)

연도	평잔	말잔
1992	-	69.4
1993	106.6	103.6
1994	125.3	117.9
1995	210.6	162.4
1996	243.5	256.2
1997	336.5	517.7
1998	815.4	1,169.1
1999	1,172.2	1,076.5
2000	1,296.6	1,778.2
2001	2,041.0	1,297.6
2002	1,894.4	1,395.6
2003	1,535.3	2,238.9
2004	2,086.1	1,333.8
2005	1,381.3	1,612.7
2006	1,827.0	2,052.2
2007	1,582.2	1,613.8
2008	1,915.0	2,423.8
2009	3,401.5	3,530.3
2010	2,869.1	3,035.1
2011	2,454.1	5,420.2
2012	5,506.2	4,434.8
2013	4,257.7	3,930.4
2014	4,145.1	3,918.1
2015	3,986.0	3,563.1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http://ecos.bok.or.kr/)

□ 비거주자 외화예금 이자율

○ 외화예금 이자율은 국가별 통화에 따라 다르고 만기에 따라 다름(<부표 A.17-8> 참조>)

○ 본 추정에서는 정기외화예금이므로 12개월 이상의 전체 평균이자율과 통화별(국가별) 이자율을 이용함

<부표 A.17-8> 연평균 비거주자 외화정기예금 이자율(우리은행)

(단위: %)

	전체 평균	국 가 별		
		일본	미국	기타
2016년[1)]	1.0299	0.0000	1.0740	1.1284
2015년	1.2679	0.1074	0.9538	1.4153
2014년	1.4881	0.4177	0.7929	1.6647
2013년	1.6011	0.6243	0.9933	1.7596
2012년	2.2222	1.1258	1.6729	2.3867
2011년	2.4928	1.2060	1.4768	2.7231
2010년	2.4357	1.3288	1.6431	2.6257
2009년[2)]	4.1621	3.3372	3.8238	4.2914

주: 1) 2016.01 ~ 2016.12까지의 평균치
2) 2014.4 ~ 2014.12까지의 평균치
자료: 우리은행 홈페이지(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DEP0005)

(2) 몇 가지 가정들

① 당해 조세지출항목을 도입할 당시인 2012년 현재 외화예금 중 수시입출금식과 정기예금과의 비중은 약 3:7인 것으로 파악되므로(보도자료, 「외화예금확충방안」,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12. 6)

○ 위 제시한 비거주자 외화예금 총액 규모중 70%를 정기외화예금으로 가정하고 추계

② 동 조항의 조세지출 규모 추정은 두 가지의 이자율에 의함

○ 외화정기예금 이자율은 총 12개 국가 통화에 따라 차이가 큼

- 따라서 전체 국가의 평균이자율을 사용하느냐 국가별 통화별 이자율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이자소득의 차이가 큼

○ 첫 번째는 비거주자의 정기외화예금을 일본계, 미국계, 기타계로 구분하고 일본계는 엔화(JPY)로 미국계는 달러(USD)로, 나머지 국가의 비거주자는 해당 해외거주국가의 통화로 외화정기예금을 들었다고 가정하고 추정

- 이때 일본계, 미국계, 기타계의 비거주자 수 비중은 외화예금 중 수시입출금식과 정기예금과의 비중과 마찬가지로 보도자료(「외화예금확충방안」,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12. 6)에 제시된 2012.4월 말의 외화예금 구조를 이용하고자 함

<부표 A.17-9> 2012년 4월말 현재 비거주자별 외화예금 구조

(단위: 억달러, %)

국 가	일본계	미국계	기타	전체
규 모	20	5	28	53
비 중	37.74	9.43	52.83	100.00

주: 1. 은행간 예금 제외
자료: 보도자료, 「외화예금확충방안」, 기획재정부 · 금융위원회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2012.6.

○ 두 번째는 통화별 이자율을 전체적으로 평균하여 추정
○ 비거주자 외화정기예금 이자율은 구득이 가능한 우리은행의 이자율을 이용함

③ 중도해지 없이 매년도(12개월)에 한번씩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납부한다고 가정함

④ 이자소득세율은 일반세율인 14%로 가정하며 지방소득세분은 고려하지 아니함

⑤ 평잔 및 말잔 금액을 이용하여 추정

(3) 규모 추정

□ 추정산식은 다음과 같음
○ 정기예금규모 = 외화예금 규모 (말잔) × 0.7
○ 통화별 예금규모
- 일본 = 정기예금규모 × 일본계 비중(0.3774)
- 미국 = 정기예금규모 × 미국계 비중(0.0943)
- 기타 = 정기예금규모 × 기타계 비중(0.5283)

○ 전체 평균 이자율 적용 이자소득세 = 정기예금규모 × 비거주자 외화정기예금 이자율 전체 평균('09년: 4,1621%) × 이자소득세율(14%)
○ 통화별 이자율 적용 이자소득세
- 일본 = 일본 통화별 예금 규모 × 일본 이자율('09년: 3.3372%)
- 미국 = 미국 통화별 예금 규모 × 미국 이자율('09년: 3.8238%)
- 기타 = 기타 통화별 예금 규모 × 기타 이자율('09년: 4.2914%)

□ 위 산식에 의한 조세지출 규모 추정 결과는 <부표 A.17-10>와 <부표 A.17-11>의 음영 영역과 같음

○ 추정규모에 있어 말잔과 평잔 간의 차이는 크게 없음을 알 수 있음

<부표 A.17-10> 비거주자의 정기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규모 추정 결과(평잔)

(단위: 십억원)

연도	외화예금 규모(말잔)	정기예금규모	통화별 예금 규모			이자소득세				
			일본	미국	기타	전체 평균 이자율 적용	통화국별 이자율 적용			
							일본	미국	기타	합계
2009	3,401.5	2,381.1	898.5	224.6	1,257.9	13.9	4.2	1.2	7.6	13.0
2010	2,869.1	2,008.4	757.9	189.5	1,061.0	6.8	1.4	0.4	3.9	5.7
2011	2,454.1	1,717.9	648.3	162.1	907.6	6.0	1.1	0.3	3.5	4.9
2012	5,506.2	3,854.3	1,454.5	363.6	2,036.3	12.0	2.3	0.9	6.8	9.9
2013	4,257.7	2,980.4	1,124.7	281.2	1,574.5	6.7	1.0	0.4	3.9	5.3
2014	4,145.1	2,901.6	1,094.9	273.7	1,532.9	6.0	0.6	0.3	3.6	4.5
2015	3,986.0	2,790.2	1,052.9	263.2	1,474.1	5.0	0.2	0.4	2.9	3.4

<부표 A.17-11> 비거주자의 정기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규모 추정 결과(말잔)

(단위: 십억원)

연도	외화예금 규모(말잔)	정기예금규모	통화별 예금 규모			이자소득세				
			일본	미국	기타	전체 평균 이자율 적용	통화국별 이자율 적용			
							일본	미국	기타	합계
2009	3,530.3	2,471.2	932.5	233.1	1,305.5	14.4	4.4	1.2	7.8	13.4
2010	3,035.1	2,124.6	801.7	200.4	1,122.4	7.2	1.5	0.5	4.1	6.1
2011	5,420.2	3,794.1	1,431.8	357.9	2,004.5	13.2	2.4	0.7	7.6	10.8
2012	4,434.8	3,104.4	1,171.5	292.9	1,640.0	9.7	1.8	0.7	5.5	8.0
2013	3,930.4	2,751.3	1,038.2	259.6	1,453.5	6.2	0.9	0.4	3.6	4.8
2014	3,918.1	2,742.7	1,035.0	258.7	1,449.0	5.7	0.6	0.3	3.4	4.3
2015	3,563.1	2,494.2	941.2	235.3	1,317.7	4.4	0.1	0.3	2.6	3.1

다. 회귀분석을 이용한 방법

(1) 기본모형

□ 환율변화와 이자율 변화와의 관계는 이자율평가설(IRPT : Interest Rate Parity Theorem)에 의하여 설명이 가능함

- ○ 이자율평가설은 금융시장에서의 일물일가의 법칙, 즉, 동일한 금융상품은 완전한 금융시장을 가정할 때 국제적으로 동일한 가격(이자율)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
- ○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국가 간에 가격(이자율)이 다르면 차익거래가 발생할 것이며 그 결과 금융상품의 가격(이자율)과 환율의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균형이 달성됨을 의미함

□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어떤 투자자가 자국통화표시의 자산에 투자할 것인가 동일한 외국통화표시의 자산에 투자할 것인가의 선택은 두 가지 경우로 이루어짐

- ○ 자국통화표시의 자산에 투자할 때의 수익률은 투자기간 후의 원리금에 의해 결정되며
- ○ 외국통화표시의 자산에 투자할 때의 수익률은 자금을 외국통화로 교환하여 투자 후 원리금을 자국통화로 환전한 값에 의해 결정됨

□ 외국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할 경우에는 두 가지의 정보가 필요함

- ○ 하나는 투자 또는 예금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수익률 혹은 이자율) 하는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환율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환율의 예상치) 하는 정보임

□ 우선 특정 균형시점에서 i_n의 고정이자율로 자국통화표시의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면, 만기인 t시점의 투자액 한 단위의 가치는 $(1+i_n)$이 될 것임

□ 이제 자국통화 한 단위의 투자를 i_n^*의 고정금리를 지불하는 외화표시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 ○ 외환(현물환)시장에서 자국통화 한 단위를 환전하여 $(1/S_0)$ 만큼의 외화로 만

기 시점에 $(1+S_0)(1+i_n^*)$ 만큼의 원리금을 받기로 하고 금융상품에 투자함

- ○ 동시에 투자가 완료되는 t시점을 만기로 하는 선물환(F_t) 매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함
- ○ 이 계약은 투자 만료시점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의 합계인 $(1/S_0)(1+i_n^*)$ 만큼의 외화를 지불하고 그 대가로 자국통화를 받기로 하는 약속을 투자시점에 미리 해두는 것임
- ○ 따라서 (F_t)는 0시점에 계약하여 t시점에 인도하게 될 외화 1단위당 자국통화의 양을 의미함
- ○ 따라서 t시점에 자국통화로 표시된 투자원금과 수익금의 크기는 $(1/S_0)(1+i_n^*)F_t$가 됨

□ 완전금융시장에서는 자국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한 수익률과 외국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한 수익률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 수익률의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없어질 때까지 차익거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임

- ○ $(1+i_n) = (1/S_0)(1+i_n^*)F_t$
- ○ $F_t/S_0 = (1+i_n)/(1+i_n^*)$
- ○ 즉, $(F_t - S_0)/S_0 = (i_n - i_n^*) \ / \ (1+i_n^*)$
  $\fallingdotseq (i_n - i_n^*)$

  여기서 $(i_n - i_n^*)$ = 국내와 외국간의 금리차

  F_t는 0시점에 계약하여 t시점에 인도하게 될 외화 1단위당 자국통화의 양

□ 일정시점 후(t)를 만기로 하는 선물환의 할증 또는 할인 $(F_t - S_0)/S_0$은 그 기간 동안(0기~t기) 두 당사국의 이자율의 차이($i_n - i_n^*$)와 대략 같을 때 균형을 이룸

□ 결국 외화표시의 금융상품의 투자는 양국의 이자율 차이와 환율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음

- ○ 아울러 투자수익 목적뿐만 아니라 거래목적의 외화예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교역규모와 같은 변수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됨

$$Y = f(\text{이자율 차, 환율, 교역규모})$$

(2) 회귀분석 결과

□ (이용자료) 분석에 이용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비거주자 외화예금 예금은행 총수신(평잔, 말잔)
- ○ 이자율차: 한국 국고채 5년 만기 이자율(한국은행) - 미국 재무부증권 5년 만기 이자율(한국은행), 월별자료
- ○ 환율: 원/달러(종가기준)(한국은행), 월별자료
- ○ 교역규모: 통관기준 수출입액(한국은행), 월별자료

□ (분석기간) 2010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분석함

□ (예상영향)

- ○ 내외 이자율 차가 하락(상승)할 시 외화정기예금은 증가(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자율 차' 변수의 회귀계수는 ' - ' 부호를 예상
- ○ 원화가치가 상승(하락)하면 외화정기예금은 감소(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 '환율' 변수는 '+' 부호를 예상
- ○ 교역규모의 증가는 거래목적의 외화예금 수요가 증대할 가능성이 크므로 '교역규모' 변수는 '+' 부호를 예상

□ 회귀분석 결과

- ○ 평잔기준과 말잔기준 비거주자 외화예금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말잔 평잔 분석 모두 종속변수에 미치는 설명변수의 영향이 예측한 바대로 나타났고, 말잔기준의 분석이 결정계수나 유의성 등에서 다소 나은 결과를 보였음

<부표 A.17-12> 비거주자 외화예금 예금은행 총수신(평잔) 회귀분석 결과

	상수	환율	이자율 차	교역규모	R^2	관측수
계수값	-3023.108	3.2640	-252.0049	4.3531	0.0906	81 (자유도: 77)
t-값	-0.65	1.04	-1.96	2.40		
유의성 여부			**	**		

주: * : 10% 수준에서 유의함
** : 5% 수준에서 유의함
*** : 1% 수준에서 유의함
1. 본 회귀분석은 규모 추정에 목적이 있으므로 로그선형의 형태를 취하지 않음

<부표 A.17-13> 비거주자 외화예금 예금은행 총수신(말잔) 회귀분석 결과

	상수	환율	이자율 차	교역규모	R^2	관측수
계수값	-7660.0450	6.2175	-187.7461	5.9032	0.1424	81 (자유도: 77)
t-값	-1.81	2.16	-1.59	3.55		
유의성 여부	*	**		***		

주: * : 10% 수준에서 유의함
** : 5% 수준에서 유의함
*** : 1% 수준에서 유의함
1. 본 회귀분석은 규모 추정에 목적이 있으므로 로그선형의 형태를 취하지 않음

□ 규모추정 결과

○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월별 외화예금 추정치를 구한 후 연평균 잔액을 구하면 <부표 A.17-14>, <부표 A.17-15>와 같음

○ 회귀분석을 통하여 추정된 비거주자 외화정기예금의 추정 규모를 이용하여 이자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은 위의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한 산식에 의한 추정과 방법은 동일함

<부표 A.17-14> 회귀분석에 의한 비거주자 외화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규모 추정 결과(평잔)

(단위: 십억원, %)

	회귀분석 추정치	외화 정기예금[1]	평균이자율[2]	이자소득[3]	이자소득세[4]
2010년	3,367.5	2,357.2	2.4357	57.4	8.0
2011년	3,903.3	2,732.3	2.4928	68.1	9.5
2012년	3,891.0	2,723.7	2.2222	60.5	8.5
2013년	3,996.5	2,797.5	1.6011	44.8	6.3
2014년	4,090.5	2,863.3	1.4881	42.6	6.0
2015년	4,042.2	2,829.6	1.2679	35.9	5.0

주: 1) 회귀분석 추정치 × 0.7(정기예금비율)
2) 우리은행 비거주자 외화정기예금이자율(연평균)
3) 외화정기예금 × 평균이자율
4) 이자소득 × 0.14(이자소득세율)

<부표 A.17-15> 회귀분석에 의한 비거주자 외화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규모 추정 결과(말잔)

(단위: 십억원, %)

	회귀분석 추정치	외화 정기예금[1]	평균이자율[2]	이자소득[3]	이자소득세[4]
2010년	3,454.4	2,418.0	2.4357	58.9	8.2
2011년	4,089.4	2,862.6	2.4928	71.4	10.0
2012년	4,122.4	2,885.7	2.2222	64.1	9.0
2013년	4,098.2	2,868.8	1.6011	45.9	6.4
2014년	4,060.6	2,842.4	1.4881	42.3	5.9
2015년	4,021.4	2,815.0	1.2679	35.7	5.0

주: 1) 회귀분석 추정치 × 0.7(정기예금비율)
2) 우리은행 비거주자 외화정기예금이자율(연평균)
3) 외화정기예금 × 평균이자율
4) 이자소득 × 0.14(이자소득세율)

(3) 추정 결과 비교

□ 지금까지 추정한 4가지의 비거주자의 외화정기예금 추정규모를 비교해 보면(<부표 A.17-16> 참조)

○ 금액 규모는 각 연도별로 유사한 추이를 보임

○ 2011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이자율의 하락에 기인함

- 특히 통화국별 이자율을 적용한 추정규모는 감소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엔화표시 예금이자율이 다른 국가의 이자율보다 낮은 데 기인함

□ 2016년에 동 조세지출 항목은 일몰처리되어 경과규정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 이는 조세지출 정책대상자가 비거주자인 특정 소수 집단에 해당되고

○ 전 세계적인 이자율의 하락으로 국내외 금리 차가 사라져 국내 금융기관에 외화정기예금 계정을 개설할 유인이 작아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보여짐

□ 동 조세지출의 도입 연도인 2013년도에 작성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는 2014년도 전망치를 8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부표 A.17-16> 추정규모 비교

(단위: 십억원)

	한국은행 자료이용 추정		회귀분석에 의한 추정(평잔)	회귀분석에 의한 추정(말잔)
	전체 평균이자율 적용	통화국별 이자율 적용		
2010년	7.2	6.1	8.0	8.2
2011년	13.2	10.8	9.5	10.0
2012년	9.7	8.0	8.5	9.0
2013년	6.2	4.8	6.3	6.4
2014년	5.7	4.3	6.0	5.9
2015년	4.4	3.1	5.0	5.0

(4) 전망치 추정

□ 비거주자 외화예금과 환율, 이자율, 수출입 규모 등은 월별 자료이므로 조세지출예산서가 작성되는 달까지는 자료의 확보가 가능함

- ○ 또한 회귀분석 자료는 월별자료를 이용하므로 당해연도의 전망치는 이전년도까지의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구하여진 회귀식에 조세지출예산서가 작성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 월평균 자료를 적용하여 추정할 수 있음
- ○ 익년도의 추정치는 KDI 등 각종 경제전망기관의 익년도 전망치 중 가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함

□ 회귀분석에 이용한 2016년도 1월~9월까지의 자료의 월평균은 다음과 같음

- ○ 2016~17년 국내경제전망에 의하면 환율은 2017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
- ○ 수출은 2016년 대비 2.7%, 수입은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금리는 저금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부표 A.17-17> 2016년, 2017년도 전망치

(단위: 십억원, %)

	환율	이자율 차	교역규모
2016년	1,161.77	0.288	732
2017년	1,161.77	0.288	734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2016 상반기」, 2016.05

□ 위 전망을 바탕으로 2016년도와 2017년도의 조세지출 규모를 다음과 같이 추정함

<부표 A.17-18> 회귀분석에 의한 비거주자 외화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규모 추정 결과(평잔)

(단위: 십억원, %)

	회귀분석 추정치	외화 정기예금[1]	평균이자율[2]	이자소득[3]	이자소득세[4]
2016년	3,881.0	2,716.7	1.0299	28.0	3.9
2017년	3,889.9	2,722.9	1.0299	28.0	3.9

주: 1) 회귀분석 추정치 × 0.7(정기예금비율)
2) 우리은행 비거주자 외화정기예금이자율(연평균)
3) 외화정기예금 × 평균이자율
4) 이자소득 × 0.14(이자소득세율)

<부표 A.17-19> 회귀분석에 의한 비거주자 외화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규모 추정 결과(말잔)

(단위: 십억원, %)

	회귀분석 추정치	외화 정기예금[1]	평균이자율[2]	이자소득[3]	이자소득세[4]
2016년	3,827.8	2,716.7	1.0299	28.0	3.9
2017년	3,839.9	2,722.9	1.0299	28.0	3.9

주: 1) 회귀분석 추정치 × 0.7(정기예금비율)
2) 우리은행 비거주자 외화정기예금이자율(연평균)
3) 외화정기예금 × 평균이자율
4) 이자소득 × 0.14(이자소득세율)

5. 추정결과

<부표 A.17-20> 연도별 조세지출 추정 규모 추이

(단위: 억원)

연도	2015 (잠정)	2016[1] (전망)	2017[1] (전망)
추정규모	50	39	39

주: 평잔, 말잔 모두 같은 규모로 추정됨

6. 문제점

□ 국세청에 축적된 자료에 의한 규모의 추정이 가장 정확하나 자료공개의 어려움으로 인해 추계에 의존하여 지출규모를 가늠할 수밖에 없음

□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한 회귀모형에 의한 추정도 여러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음

○ 우선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이 수시입출금식인지 정기예금인지 구분할 수 없음

- 본 추정에서는 외화예금의 70% 정도를 정기예금으로 보고 추정하였으나 이는 매년도 다를 것임

○ 각 국가의 통화별 외화정기예금 규모를 알 수 없음

- 각 통화별로 적용되는 환율과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통화별 외화정기예금 규모가 필요함

○ 각 금융기관별 자료가 필요함

-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임

□ 위와 같은 많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집계된 원화표시 비거주자의 외화예금 총액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나

○ 가장 좋은 규모 추정방안은 국세청 자료를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삭제하고 통화별 예금액, 금융기관별 이자율 및 예금액, 적용환율, 예금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3.

박해식, 「은행의 외화예금 확충 필요성 및 과제」, 주간금융브리프 21~22, 한국금융연구원, 2012.6.2. (http://www.kif.re.kr/kif2/search/total_search.aspx?menuid=59#BroadData)

보도자료, 「외화예금확충방안」,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12. 6

우리은행 홈페이지(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DEP0005)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2016 상반기」, 2016.0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A.18~26. 2016년 조세지출예산서상 2015년 신설항목 중 추정곤란항목 중 추정곤란

1. 현황

□ 2016년 조세지출예산서상 추정곤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5년 신설항목은 총 9개이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었고,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 새로이 신설된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조특법」 제121의 26~31) 관련 추정곤란 항목들에 대한 법령서식은 2016. 8. 9에 개정되었음

○ 다만, 조세지출규모 실적치 집계 시 관련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는 국세청에 DB화되어 있는 서식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은 2016년 12월 초 현재 아직 정비되지 않았음

□ 2015년 신설된 제도들의 감면방법은 주로 손금산입 및 과세이연방식[102]임

○ 2015년 신설된 제도 중 직접감면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제도들로는 (1)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개인소유 토지의 양도세 10% 감면(「조특법」 제97조의7),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공급에 대한 VAT면제), (3)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제121의28③) 중 주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음

102) 세금을 납부해야 할 시점을 연기해 주는 조세지원방식

<부표 A.18~26-1> 2015년 조세지출 신설제도 감면방법

조문	조세지출 내역	주요 내용	감면방법
조특 39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모회사는 인수·변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자회사는 채무면제이익을 4년 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청산하는 경우는 해산 시 익금산입)	손금산입/과세이연
조특 97의7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개인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10% 감면	직접감면(세액감면)
조특 121의25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할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과세이연
조특 121의25⑦⑧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 VAT 면제	직접감면(비과세)
조특 121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4년 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과세이연
조특 121의27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모회사) 채무인수·변제액 손금산입 - (자회사) 채무면제이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손금산입/과세이연
조특 121의28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수증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법인주주) 증여재산가액 손금산입 -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대금 증여시 증여금액에 상당한 양도차익 100% 세액감면 또는 익금불산입	손금산입/과세이연/익금불산입/세액감면
조특 121의2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면제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손금산입/과세이연
조특 121의30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	과세이연
조특 121의3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자산양도차익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과세이연

2. 국세청 자료 보유 현황

□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 새로이 신설된 제도들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서식은 국세청에 DB화가 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서식을 이용하여 해당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 법인세의 경우에는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 2016년 12월 초 현재 아직 정비되지 않았으며, 2016년 귀속분 신고 전에 정비 필요

○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특 97의7)의 경우에는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 통계 추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다음 연도에 확인 가능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특 121의28)은 기존에 「조특법」 40조에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이므로 통계 추출은 가능하나 실적치는 다음 연도 8~9월에 가능

□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신설된 제도들은 모두 2016.1.1.(조특법 121의25는 2016.10.4.)부터 시행되어 귀속연도 2016년에 대한 실적치는 현재 확보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서식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는 실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세청 담당자에 따르면 기업이 수동서류로 제출 시에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서식 내에서는 실적치 파악이 어려우며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 기업을 통하여 파악하는 수밖에 없으나 이를 국세청에서 일일이 파악하지는 않음

-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1의23)"가 이에 해당하는 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에도 수협중앙회를 통하여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임
  - 한편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 2016년 12월 1일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수협중앙회는 신용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였음

<부표 A.18~26-2> 2016년 조세지출예산서상 2015년 신설항목 중 추정곤란항목 실적치 파악 여부 요약

법	조문	항목	법령 서식	국세청 DB화 여부			실적치 자료출처	2016년 (실적)
				법령 서식	다른 서식을 통하여 추출가능여부	관련 정보 포함 DB화 되어 있는 서식		
조특	39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별지 제31호서식]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1호의2서식]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DB ×	○	[별지 제8호서식(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국세청	(법인세) 귀속연도 2015년 실적 없으며, 2016년도는 파악불가
조특	97의7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별지 제13호서식]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DB ×	○	[별지 제84호서식]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다만, 2016년부터 시행되어 통계로 추출할 수 있는지는 2017년 초에 가능	국세청	(양도소득세) 2016년 귀속분은 2017년 8~9월에 확정
조특	121의25 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별지 제43호서식] 물적분할 과세특례 신청서 ▪[별지 제46호의2서식]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을)	DB ×	-	-	수협 중앙회	(법인세) 2016.10.4. 시행으로 현시점 파악불가
조특	121의25 ⑦⑧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공급에 대한 VAT면제)	▪[별지 제21호서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 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DB ×	-	-	수협 중앙회	

<부표 A.18~26-2>의 계속

법	조문	항목	법령 서식	국세청 DB화 여부			실적치 자료출처	2016년 (실적)
				법령 서식	다른 서식을 통하여 추출가능여부	관련 정보 포함 DB화 되어 있는 서식		
조특	121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별지 제22호의2서식] 양도차익 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DB ×	○	[별지 제8호서식(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국세청	(법인세) 2016.1.1. 시행으로 현시점 파악불가
조특	121의27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별지 제31호서식]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1호의2서식]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DB ×	○	[별지 제8호서식(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국세청	(법인세) 2016.1.1. 시행으로 현시점 파악불가
조특	121의28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별지 제33호서식]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35호서식] 세액감면신청서	DB ×	○	[별지 제8호서식(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별지 제84호서식]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법인세) 2016.1.1. 시행으로 현시점 파악불가 (양도소득세) 2016년 귀속분은 2017년 8~9월에 확정
조특	121의2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별지 제38호서식] 채무면제명세서	DB ×	○	[별지 제8호서식(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국세청	(법인세) 2016.1.1. 시행으로 현시점 파악불가
조특	121의30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별지 제40호의4서식] 과세이연신청서	DB ×	○	[별지 제8호서식(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국세청	(법인세) 2016.1.1. 시행으로 현시점 파악불가
조특	121의3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별지 제12호의2서식] 양도차익 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DB ×	○	[별지 제8호서식(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국세청	(법인세) 2016.1.1. 시행으로 현시점 파악불가

3. 기타 경제사회 통계자료 현황

□ 2015년 신설된 제도들 조특법 121의26~31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2016년 9~11월 3개월 동안 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10개(7개 업종)이며, 연말까지 4~5개 기업이 더 탄생할 것으로 예상됨

○ (승인업종) 철강·비철금속 4, 석유화학 2, 조선기자재·섬유·농기계·태양광셀 각 1

○ (사업재편 유형) 영업용 자산 양수도 7, 인수·합병 3

○ (승인기업 규모)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3

○ (지원요청 사항) R&D 지원 9, 세제지원 5, 혁신활동 지원 3, 기업결합심사 단축 2, 상법상 절차간소화 특례 1

<부표 A.18~26-3> 기업활력법 공표사항

일련번호 (승인일자)	기업명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1 (2016.9.8)	한화케미칼㈜	○ (필요성) 국내수요 대비 생산능력이 과한 가성소다 업종의 과잉공급 해소에 기여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 진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기간) 2016년 9월~2019년 8월 ○ (주요내용) 한화케미칼㈜은 울산 가성소다 공장 설비와 부지를 **유니드에 매각**하여 과잉공급 상태인 가성소다 생산량을 감축하고, 고부가 PVC 제품 등 신산업분야의 경쟁력 제고 - ㈜유니드는 해당 설비를 부가가치가 높은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운영하여 글로벌 지위 강화 ○ (지원사항) - 신속한 기업결합심사(㈜유니드) - **법인세 이연(한화케미칼㈜)** - 정부 R&D 지원(한화케미칼㈜)
2 (2016.9.8)	㈜유니드	
3 (2016.9.8)	동양물산기업㈜	○ (필요성) 사업재편을 통한 생산품목·규모 조정 등으로 국내 농기계 시장의 과잉공급을 개선하고 전문화·대형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필요 ○ (기간) 2016년 9월~2019년 8월 ○ (주요내용) 동양물산기업㈜이 동종업체인 **국제종합기계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 효율화 - **양사의 중복생산 품목·설비 등을 조정**하여 과잉공급을 완화하고, R&D·판매망 등을 통합 운영하여 경쟁력 강화 ○ (지원사항)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정부 R&D 지원

<부표 A.18~26-3>의 계속

일련번호 (승인일자)	기업명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4 (2016.10.19)	㈜리진	○ (필요성) 사업재편을 통한 생산 조정으로 조선 기자재 시장의 과잉공급 개선에 기여하고 유망 분야 진출 촉진 등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 (기간) 2016년 10월~2019년 9월 ○ (주요내용) **송정공장 건물·부지 매각** 및 송정공장의 설비를 미음공장으로 이전, 미음공장에 발전 기자재 설비 신규투자 - 조선 기자재 생산을 축소하고 발전 기자재 신규 생산 및 기술개발 등 사업혁신 추진 ○ (지원사항) - **법인세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지원
5 (2016.10.19)	㈜보광 ㈜에코 프론텍스	○ (필요성) 사업재편을 통해 국내 섬유산업의 과잉공급 해소에 기여하고, 고부화 가치화 및 국내 산업기반 유지 ○ (기간) 2016년 10월~2019년 9월 ○ (주요내용) **보광이 에코프론텍스를 합병하고 에코프론텍스 설비 매각** 후, 산업용 특수섬유 직물 제조 공장 신설 - 에코프론텍스의 가공사 및 편직물 생산 설비를 감축하고 산업용 특수섬유를 생산하여 고부가가치와 추진 ○ (지원사항) -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지원 - 정부 R&D 우대 지원 (신청시 업계 여건 등 고려)
6 (2016.10.19)	㈜하이스틸	○ (필요성) 사업재편을 통한 생산 조정,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품목 생산 등을 통해 과잉공급 개선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기간) 2016년 10월~2019년 9월 ○ (주요내용) **인천2공장 및 생산라인 일부 매각**을 통해 전기용접강관(ERW) 생산 축소 - 신규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을 통해 유망분야인 소구경(10인치) 아크용접(SAW) 특수 강관 및 내지진 대구경 각관 생산 ○ (지원사항) - 정부 R&D 우대 지원 - 월드클래스 300 우대 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지원
7 (2016.10.19)	㈜신성 솔라에너지 ㈜신성 이엔지	○ (필요성) 국내 BSF형 태양광셀 시장의 과잉 공급 해소 및 고부가가치 신산업 진출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 (기간) 2016년 10월~2019년 9월 ○ (주요내용) **신성솔라에너지와 신성ENG, 신성FA를 합병** 후 신성솔라에너지의 BSF형 태양광셀 생산설비를 PERC형 태양광셀 생산설비로 개조

<부표 A.18~26-3>의 계속

일련번호 (승인일자)	기업명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신성 에프에이	- 기존에 신성ENG·신성FA가 영위하던 사업부문 일부를 결합하여 스마트공장·스마트 그리드 구축사업에 진출 ○ (지원사항) - 상법상 절차간소화(「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내지 20조) - **등록면허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 정부 R&D 우대 지원
8 (2016.11.22)	동국제강㈜	○ (필요성) 국내 후판 시장의 과잉공급 해소 및 고부가가치·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한 기업 수익성 강화 ○ (기간) 2016년 11월~2019년 10월 ○ (주요내용) ① 포항 후판 공장·설비 매각 추진 ② 고급 컬러강판 사업 강화 ③ 친환경 컬러강판, 초대형 H형강, 고효율 전기로 기술 등 친환경·고부가 제품 개발 ○ (지원사항) 정부 R&D 우대 지원
8 (2016.11.22)	현대제철㈜	○ (필요성) 국내 단강시장의 과잉공급을 개선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 ○ (기간) 2016년 11월~2019년 10월 ○ (주요내용) ① 인천공장 단강(잉곳) 생산용 전기로 매각 추진 ② 순천공장에 고부가 단조제품 신규개발·생산 및 설비투자 ○ (지원사항) ① 관세 납기연장·분납(「관세법」 제10조, 사업재편 관련성 등 고려), ② 정부 R&D 우대 지원
8 (2016.11.22)	㈜우신에이펙	○ (필요성) 사업재편을 통한 알루미늄 제품·판넬 분야 과잉공급 해소에 기여하고 신성장 분야로 진출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 ○ (기간) 2016년 11월~2019년 10월 ○ (주요내용) ① 김해공장 알루미늄 제품 및 판넬 생산설비 매각 또는 폐기 ② 특수조명(선박용 LED 등) 분야의 신규 생산설비 투자 ○ (지원사항) 정부 R&D 우대 지원

자료: 기업활력법 종합포털(http://www.oneshot.or.kr)

4. 추정모형 검토

□ 한편 2016년 조세지출예산서상 추정곤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5년 신설항목의 감면방법은 직접감면과 간접방법이 혼합되어 있으며, 감면방법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 추정방식을 제시하고자 함

가. 직접감면

□ 국세청으로부터 2015년 신설된 제도들 중 납세자가 신고하여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금액 금액 자체가 조세지출규모이며, <부표 A.18~26-4>에 제시되어 있음

조세지출규모 = 신고서상 세액감면금액

<부표 A.18~26-4> 2015년 조세지출 신설제도 중 직접감면 항목

조문	조세지출 내역	주요 내용	감면방법	자료출처
조특97의7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개인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10% 감면	직접감면 (세액감면)	국세청
조특121의25 ⑦ ⑧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 VAT 면제	직접감면 (비과세)	수협중앙회
조특121의28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대금 중 여시 증여금액에 상당한 양도차익 100% 세액감면 또는 익금불산입	세액감면	국세청

□ 한편, 국세청으로부터 2015년 신설된 제도들 중 직접감면의 경우라도 손금산입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없으며, 실효세율을 이용하여 곱한 금액이 조세지출규모가 됨

조세지출규모 = 손금산입액 × 각 개별기업의 실효세율

○ 국세청에서는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에 대한 조세지출규모 산출에 필요한 실효세율의 경우,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개별 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이 아닌 기업규모별(중소법인, 일반법인) 실효세율을 기획재정부에 제공하고 있음

<부표 A.18~26-5> 2015년 조세지출 신설제도 감면방법

조문	조세지출 내역	주요 내용	감면방법
조특 39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모회사) 인수·변제 금액을 손금산입	손금산입
조특 121의27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모회사) 채무인수·변제액 손금산입	손금산입
조특 121의28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법인주주) 증여재산가액 손금산입 -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대금 증여 시 증여금액에 상당한 양도차익 100% 세액감면 또는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조특 121의2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손금산입

나. 과세이연

□ 국세청으로부터 2015년 신설된 제도들에 대한 실적치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간접감면의 경우에는 최종금액이 아니므로 동 금액을 그대로 조세지출 규모로 활용할 수는 없으며, 관련 항목은 <부표 A.18~26-6>에 제시되어 있음

<부표 A.18~26-6> 통계추출 가능서식: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④ 구 분		⑤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⑥ 결산 조정액	⑦ 세무 조정액	⑧ 합계 (⑥+⑦)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부표 A.18~26-7> 2015년 조세지출 신설제도 감면방법

조문	조세지출 내역	주요 내용	감면방법
조특 39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자회사) 채무면제이익을 4년 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청산하는 경우는 해산 시 익금산입)	과세이연
조특 121의25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할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과세이연
조특 121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4년 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과세이연
조특 121의27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자회사)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과세이연
조특 121의28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법인주주) 증여재산가액 손금산입	과세이연
조특 121의2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면제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과세이연
조특 121의30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	과세이연
조특 121의3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자산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과세이연

□ 과세이연과 같은 간접감면의 경우에는 조세지출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계세율, 환입기간, 이자율 등에 대한 가정이 필요함

○ 과세이연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시점을 연기하여 줌으로써 세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조세지원방식임

○ 과세이연으로 감면효과는 익금불산입되는 과세연도의 세부담은 감소하나, 익금으로 환입되는 과세연도의 세부담은 증가하게 되므로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함

○ 조세지출예산서상 과세이연으로 인한 조세지출규모를 간편법에 의해 익금불산입으로 인한 세부담의 감소로만 측정하는 것은 이후 익금환입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고려한 순감면효과가 아니므로 과대 추정되는 문제가 있음

(간편법) 조세지출규모 = 익금불산입액 × 각 개별기업의 실효세율

□ 과세이연을 목적으로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한 금액을 m년 거치한 후 n년에 걸쳐 균등하게 익금에 환입 시 익금불산입되는 과세연도의 한계세율이 t일 때, 익금불산입 1원으로 인한 세금 감소분은 t원임[103]

○ 그러나 익금불산입된 금액이 일정기간(m) 거치 후 균등하게 n년에 걸쳐 익금으로 환입 시에는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과세이연으로 인한 조세지출규모는 익금불산입된 연도와 이후 연도의 익금환입을 모두 고려한 순효과로 측정되어야 하며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음

$$t\left[1-\frac{1}{n}\left(\frac{1}{1+R}\right)^{m+n}\cdot\frac{(1+R)^{n}-1}{R}\right]$$

t = 익금불산입과 익금환입 시 한계세율
R = (1-t))i는 세후할인율
i는 이자율

5. 추정결과

□ 2016년 조세지출예산서상 추정 곤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5년 신설항목은 총 9개이며,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에 대한 통계 추출 가능 여부가 다음 연도에 확인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특 97의7)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국세청에서 통계가 추출 가능한 항목으로 파악되었음

○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특 97의7)는 국세청에서 통계 추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2017년에 확정되며, 통계 추출이 가능한 경우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특 97의7)는 2017년 8~9월에 파악 가능

○ 만약 통계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법인에 토지를 양도한 개인정보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되는 다음 연도 8~9월에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와 연계하여 파악해 보는 방안이 있음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에서는 개인이 법인에 토지를 양도 시 신고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으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한 정보 중 거래가액에 대한 내역만 있을 뿐 토지 취득가액을 비롯한 취득시점에 대한 정보는 파악이 불가능함
- 또한, 법인 중 기업형 임대사업자인지 여부도 파악이 불가능함

103) 박명호 · 김우철 · 전병힐(2008), p.53 참조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어 국세청으로부터의 실적치 파악은 2017년 이후 파악 가능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세제지원제도인 「조특법」 121의26~31을 적용받기 위한 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승인도 2016년 9월 이후 이루어져 국세청으로부터의 실적치 파악은 2017년 이후 파악 가능

- 한편 2015년 신설된 제도들 「조특법」 121의26~31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승인은 연말까지 4~5개 기업이 더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 시점에서는 실적치 파악에 한계가 있음

□ 다만, 2016년 12월 1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23)에 대한 조세지출규모에 지점 및 출장소 규모를 고려하였음

○ 수협은행의 지점 및 출장소 비중(해외포함)은 농협은행 대비 2016. 9월 기준으로 10.5%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은 2017년 조세지출 예산서상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상 수치를 이용함

- 부가가치세: (2016년) 408 × 10.5%/12 = 3.57억원(2017년) 427 × 10.5% = 44.9억원

○ 수협은행 분할 설립 이후 수협은행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의 범위 내에서 수협중앙회가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개정 「수협법」 제162조의2)

- 농협법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음

<부표 A.18~26-8> 2015년 조세지출 신설제도 조세지출규모 추정

(단위: 억원)

조문	조세지출 내역	2015년 (실적)	2016년 (전망)	2017년 (전망)
조특 39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추정곤란	추정곤란
조특 97의7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추정곤란	추정곤란
조특 121의25① 조특 121의25⑦ ⑧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3.57[1)]	44.9[2)]
조특 121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추정곤란	추정곤란
조특 121의27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추정곤란	추정곤란
조특 121의28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신설	추정곤란	추정곤란
조특 121의2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추정곤란	추정곤란
조특 121의30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추정곤란	추정곤란
조특 121의3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추정곤란	추정곤란

주: 1) 농협중앙회의 2016년 명칭사용료 및 전산용역에 대한 VAT 면제 규모(408억)에 2016년 9월 기준 농협중앙회 대비 10.5% 지점 및 출장소 수를 고려하고 12월 1일 분할되었으므로 1개월분

2) 농협중앙회의 2017년 전망치(명칭사용료 및 전산용역에 대한 VAT 면제) × 10.5%(2016.9 기준 지점 및 출장소 규모)

자료: 1)~2),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14.

6. 문제점

□ 과세이연과 같은 간접감면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로부터 익금불산입·손금산입 금액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세이연으로 인한 순감면효과는 익금불산입되는 과세연도의 세부담 감소분과 익금환입되는 시기의 세부담 증가분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

○ 특히 현재와 같이 개별기업의 실효세율이 아닌 기업규모별 실효세율을 이용할 뿐 아니라, 익금불산입되는 연도의 세부담 감소로만 측정하는 것은 조세지출규모를 과대추정하는 문제를 야기시킴

참고문헌

기획재정부,『조세지출예산서』, 2014.

박명호 · 김우철 · 전병힐,『조세지출규모의 추정방법 및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방법』, 한국조세연구원, 2008.

산업자원부 보도자료,「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탄생!」, 2016.9.8.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기업활력법 종합포털(http://www.oneshot.or.kr/sub/)

<A.18~26. 부록> 추정곤란 2015년 신설항목 주요 내용

18	[조특39] 자회사 매각을 위한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주요 내용	도입목적	부실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
	수 혜 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인수·변제하고 자회사의 지분을 양도 또는 청산한 모회사 및 자회사
	지원내용	모회사는 인수·변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자회사는 채무면제이익을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청산하는 경우는 해산 시 익금산입)
근거규정		조특 39
도입연도		2015년 신설
일몰연도		2018년 12월 31일
금액	2015(실적)	신설
	2016(전망)	추정곤란
	2016(전망)	추정곤란
관련 서식 및 파악 가능 정보 (조특령제36조⑰⑱⑲) - 별지 제27호서식 - 별지 제28호서식 - 별지 제29호서식 - 별지 제30호서식 - 별지 제31호서식 - 별지 제31호의2서식		**(1)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이행실적의 제출** -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별지 제27호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 [별지 제28호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2) 채무인수·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2)-1. (공통)법인양도·양수계획서 또는 법인청산계획서 • [별지 제29호서식] 법인 양도·양수(청산)계획서 (2)-2. (공통)채무인수·변제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 채무인수·변제명세서 (2)-3. (주주 등)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1호서식] 세액감면신청서 - (신청내용) ⑮채무인수변제액, ⑯감면세액 (2)-4. (양도등대상법인)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31호의2서식]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2)-4-2. 신청내용 · 익금불산입: ⑪사업연도, ⑫금액 · 분할익금산입(계획): (1차~3차) ⑬⑮⑰연도, ⑭⑯⑱금액

19	[조특97의7]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개인소유 토지 양도세 과세특례	
주요 내용	도입목적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 육성을 통한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수 혜 자	개인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자
	지원내용	개인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10% 감면 * 8년 이상 준공공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
근거규정		조특 97의7
도입연도		2015년 신설
일몰연도		2018년 12월 31일
금액	2015(실적)	신설
	2016(전망)	추정곤란
	2016(전망)	추정곤란
관련 서식 및 파악 가능 정보 (조특령제97의7②)		**1)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2)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구분: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 신청내용: 감면(면제)받으려는 세액 · ⑥ 과세연도, ⑦ 법인세, ⑧ 양도소득세 **3) 토지를 양수하는 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의 기업형 임대사업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0	[조특121의2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⑦⑧	
주요 내용	도입목적	수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개편 지원
	수 혜 자	수협중앙회
	지원내용	□ 수협중앙회에 대한 법인세 특례(제1항) ○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할 시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 시 과세하지 않음 - 적용기한: '16.12.31 □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제7항 및 제8항)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 - 수협은행이 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근거규정		조특 121의25
도입연도		- (법인세)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16.10.4.*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수협구조개편 관련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의 시행시기
일몰연도		- 제1항: 2016년 12월 31일 분할 시 - 제7항 및 제8항: 2017년 12월 31일 공급 시
금액	2015(실적)	신설
	2016(전망)	추정곤란
	2016(전망)	추정곤란
관련 서식 및 파악 가능 정보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⑫)		**(1)-1.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물적분할과세특례 신청서 **(1)-2.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 [별지 제46호의2서식]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을) **(2)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 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첨부서류〉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 18종

<table>
<tr>
<td>비고</td>
<td>
(조특121의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도입목적: 농협중앙회 고유목적사업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실익 증진
▪ 수혜내용: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칭 사용료, 전산용역 등에 대해 특례규정 적용
▪ 조세지출규모
(단위: 억원)
<table>
<tr><th></th><th>2015(실적)</th><th>2015(전망)</th><th>2016(전망)</th></tr>
<tr><td>계</td><td>760</td><td>891</td><td>934</td></tr>
<tr><td>법인세</td><td>384</td><td>483</td><td>507</td></tr>
<tr><td>부가가치세</td><td>376</td><td>408</td><td>427</td></tr>
</table>
</td>
</tr>
</table>

<table>
<tr><td colspan="2">21</td><td colspan="2">[조특121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td></tr>
<tr><td rowspan="3">주요
내용</td><td>도입목적</td><td colspan="2">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td></tr>
<tr><td>수 혜 자</td><td colspan="2">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상환자금으로 충당하는 내국법인</td></tr>
<tr><td>지원내용</td><td colspan="2">자산양도차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td></tr>
<tr><td colspan="2">근거규정</td><td colspan="2">조특 121의26</td></tr>
<tr><td colspan="2">도입연도</td><td colspan="2">2015년 신설</td></tr>
<tr><td colspan="2">일몰연도</td><td colspan="2">2018년 12월 31일</td></tr>
<tr><td rowspan="3">금액</td><td>2015(실적)</td><td colspan="2">신설</td></tr>
<tr><td>2016(전망)</td><td colspan="2">추정곤란</td></tr>
<tr><td>2016(전망)</td><td colspan="2">추정곤란</td></tr>
<tr><td colspan="2">관련 서식 및 파악 가능 정보
(조특령제116조의30⑲)
- 별지 제21호서식
- 별지 제22호의2서식
- 별지 제70호의8서식
- 별지 제70호의9서식
→ 제116조의29에서 이동 <2016.12.1.></td><td colspan="2">(1)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
- 사업재편계획서
• [별지 제70호의8서식] 사업재편계획서(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 [별지 제70호의9서식]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 주주등의 자산양도)

(2)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2)-1.1 채무상환(예정)명세서
• [별지 제21호서식] 채무상환(예정)명세서,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서
(2)-2.2.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납부조정명세서 (내국법인의 경우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22호의2서식]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1. 제출인 등 정보
▪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⑥사업연도, ⑦양도일자, ⑧양도차익, ⑨이월결손금, ⑩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 ⑪양도가액, ⑫ 양도차익상당액
- 2. (신청내용)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 익금불산입: ㉑사업연도, ㉒금액
▪ 분할익금산입(계획): (1차~3차) ㉓㉕㉗연도, ㉔㉖㉘금액

※ 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과세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별도로 제출</td></tr>
</table>

	→ 제116조의29에서 이동하였으므로 조특령 제116조의30으로 서식 수정 필요
비고	**(조특34)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도입목적: 기업 재무구조개선 지원 ▪ 수혜내용: ①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4년 거치 3년간 분할납부 ② (법인) 양도차익상당액 4년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조세지출규모: **2015년 실적 없음**

<table>
<tr><td colspan="2">22</td><td colspan="2">[조특121의27]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td></tr>
<tr><td rowspan="3">주요
내용</td><td>도입목적</td><td colspan="2">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td></tr>
<tr><td>수 혜 자</td><td colspan="2">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의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주, 내국법인</td></tr>
<tr><td>지원내용</td><td colspan="2">- (모회사) 채무인수·변제액 손금산입
- (자회사) 채무면제이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자회사 등 주주) 증여세 비과세(특수관계자 제외)</td></tr>
<tr><td colspan="2">근거규정</td><td colspan="2">조특 121의27</td></tr>
<tr><td colspan="2">도입연도</td><td colspan="2">2015년 신설</td></tr>
<tr><td colspan="2">일몰연도</td><td colspan="2">2018년 12월 31일</td></tr>
<tr><td rowspan="3">금액</td><td>2015(실적)</td><td colspan="2">신설</td></tr>
<tr><td>2016(전망)</td><td colspan="2">추정곤란</td></tr>
<tr><td>2016(전망)</td><td colspan="2">추정곤란</td></tr>
<tr><td colspan="2">관련 서식 및 파악 가능 정보
(조특령제116조의31⑱ ⑲ ⑳)
- 별지 제30호서식
- 별지 제31호의2서식
- 별지 제70호의10서식
- 별지 제70호의11서식
- 별지 제70호의12서식
→ 제116조의30에서 이동 <2016.12.1.></td><td colspan="2">(1)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
- 사업재편계획서
◆ [별지 제70호의10서식] 사업재편계획서(채무의 인수·변제)
-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 [별지 제70호의11서식]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채무의 인수·변제)

(2)-1. (주주등) 채무인수·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2)-1.1. 법인양도·양수계획서, 채무인수·변제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 채무인수·변제명세서
◆ [별지 제70호의12서식] 법인양도·양수 계획서
(2)-1-2.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1호서식] 세액감면신청서
- (신청내용) ⑮채무인수변제액, ⑯감면세액

(2)-2. (법인)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2)-2.1. 법인양도·양수계획서, 채무인수·변제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 채무인수·변제명세서
◆ [별지 제70호의12서식] 법인양도·양수 계획서
(2)-2-2.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31호의2서식]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2)-2-2-1. 신청내용
· 익금불산입: ⑪사업연도, ⑫금액</td></tr>
</table>

	· 분할익금산입(계획): (1차~3차) ⑬⑮⑰연도, ⑭⑯⑱ 금액 → 제116조의30에서 이동하였으므로 조특령 제116조의31로 서식 수정 필요
비고	**(조특39) 자회사 매각을 위한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신설)**

23	[조특121의28]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주요 내용	도입목적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수 혜 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무상증여시 수증법인 및 주주
	지원내용	- (수증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법인주주) 증여재산가액 손금산입 -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대금 증여시 증여금액에 상당한 양도차익 100% 세액감면 또는 익금불산입
근거규정		조특 121의28
도입연도		2015년 신설
일몰연도		2018년 12월 31일
금액	2015(실적)	신설
	2016(전망)	추정곤란
	2016(전망)	추정곤란
관련 서식 및 파악 가능 정보 (조특령제116조의32㉓ ㉔ ㉕ ㉖) - 별지 제33호서식 - 별지 제34호서식 - 별지 제35호서식 - 별지 제70호의9서식 - 별지 제70호의13서식 → 제116조의31에서 이동 <2016.12.1.>		**(1)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 - 사업재편계획서 • [별지 제70호의13서식] 사업재편계획서(주주등의 자산양도) -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 [별지 제70호의9서식]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 주주등의 자산양도) **(2)-1. (법인)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2)-1-1.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33호서식] 수증자산명세서,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4.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 익금불산입: ㉒사업연도, ㉓금액 ▪ 분할익금산입(계획): (1차~3차) ㉔㉖㉘연도, ㉕㉗㉙금액 ※ 자산증여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채무상환명세서를 함께 제출 **(3)-2. (주주등) 자산증여일(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3)-2-1. 자산증여계약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 [별지 제34호서식] 채무상환(예정)명세서 (3)-2-2.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5호서식] 세액감면신청서 - 4. 감면받을 세액 ㉘ 손금산입액, ㉙ 감면세액	

<table>
<tr><td></td><td>→ 제116조의31에서 이동하였으므로 조특령 제116조의32로 서식 수정 필요</td></tr>
<tr><td>비고</td><td>(조특40)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도입목적: 민간부문의 자발적 구조조정, 재무구조 개선 지원
▪ 수혜내용:
① (과세이연) 증여받은 자산가액 익금불산입 후 3년 균분익금 산입 (법인주주는 증여가액 손금산입)
②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대금 증여시 증여금액에 상당한 양도차익 100% 세액감면 또는 익금불산입
▪ 조세지출규모
(단위: 억원)
<table>
<tr><th></th><th>2015(실적)</th><th>2016(전망)</th><th>2016(전망)</th></tr>
<tr><td>계</td><td>10.58</td><td>0.06</td><td>0.01</td></tr>
<tr><td>소득세</td><td>10.58</td><td>0.06</td><td>0.01</td></tr>
<tr><td>법인세</td><td>-</td><td>-</td><td>-</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d>24</td><td colspan="2">[조특121의2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td></tr>
<tr><td rowspan="3">주요
내용</td><td>도입목적</td><td>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td></tr>
<tr><td>수 혜 자</td><td>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재무를 면제받은 법인 및 금융기관</td></tr>
<tr><td>지원내용</td><td>- (면제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td></tr>
<tr><td colspan="2">근거규정</td><td>조특 121의29</td></tr>
<tr><td colspan="2">도입연도</td><td>2015년 신설</td></tr>
<tr><td colspan="2">일몰연도</td><td>2018년 12월 31일</td></tr>
<tr><td rowspan="3">금액</td><td>2015(실적)</td><td>신설</td></tr>
<tr><td>2016(전망)</td><td>추정곤란</td></tr>
<tr><td>2016(전망)</td><td>추정곤란</td></tr>
<tr><td colspan="2">관련 서식 및 파악 가능 정보
(조특령제116조의33 ⑦ ⑧)
- 별지 제38호서식
- 별지 제70호의14서식
- 별지 제70호의15서식
→ 제116조의32에서 이동 <2016.12.1.></td><td>(1)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
- 사업재편계획서
◆ [별지 제70호의14서식] 사업재편계획서(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
-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 [별지 제70호의15서식]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

(2)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2)-1. 채무면제명세서
◆ [별지 제38호서식] 채무면제명세서
- 1.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 3. 채무면제 내역 ⑬ 채무면제일, ⑭ 채무면제금액
→ 제116조의32에서 이동하였으므로 조특령 제116조의33으로 서식 수정 필요</td></tr>
<tr><td colspan="2">비고</td><td>(조특4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도입목적: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 수혜내용:
① 채무면제익에 대해 4년거치 3년 분할익금
② 금융기관은 면제한 채무 상당액 손금산입
▪ 조세지출규모: 2015년 실적 없음</td></tr>
</table>

25	[조특121의30]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주요 내용	도입목적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수 혜 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식 등을 전부 양도하고 타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
	지원내용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
근거규정		조특 121의30
도입연도		2015년 신설
일몰연도		2018년 12월 31일
금액	2015(실적)	신설
	2016(전망)	추정곤란
	2016(전망)	추정곤란
관련 서식 및 파악 가능 정보 (조특령제116조의34 ⑦ ⑧) - 별지 제40호의3서식 - 별지 제40호의4서식 - 별지 제70호의16서식 - 별지 제70호의17서식 → 제116조의33에서 이동 <2016.12.1.>		**(1)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 - 사업재편계획서 • [별지 제70호의16서식] 사업재편계획서(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 -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 [별지 제70호의17서식]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 **(2) 주식 등을 양도·양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2)-1. 기업교환계약서 (2)-2. 주식등양도·양수명세서 • [별지 제40호의3서식] 주식등 양도·양수 명세서 (2)-3. 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40호의4서식] 과세이연신청서 - 과세이연 신청내용: ⑯ 과세이연금액, ⑰ 과세이연 세액 → 제116조의33에서 이동하였으므로 조특령 제116조의34로 서식 수정 필요
비고		**(조특 46)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도입목적: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 수혜내용: 양도차익에 대해 양수한 주식 등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 ▪ 조세지출규모: **2015년 실적 없음**

<table>
<tr><td colspan="2">26</td><td colspan="2">[조특121의3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td></tr>
<tr><td rowspan="3">주요
내용</td><td>도입목적</td><td colspan="2">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td></tr>
<tr><td>수 혜 자</td><td colspan="2">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합병법인</td></tr>
<tr><td>지원내용</td><td colspan="2">모든 같은 업종 간 합병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td></tr>
<tr><td colspan="2">근거규정</td><td colspan="2">조특 121의31</td></tr>
<tr><td colspan="2">도입연도</td><td colspan="2">2015년 신설</td></tr>
<tr><td colspan="2">일몰연도</td><td colspan="2">2018년 12월 31일</td></tr>
<tr><td rowspan="3">금액</td><td>2015(실적)</td><td colspan="2">신설</td></tr>
<tr><td>2016(전망)</td><td colspan="2">추정곤란</td></tr>
<tr><td>2016(전망)</td><td colspan="2">추정곤란</td></tr>
<tr><td colspan="2">관련 서식 및 파악 가능 정보
(조특령제116조의35 ⑨ ⑩)
- 별지 제12호의2서식
- 별지 제41호의2서식
- 별지 제41호의3서식
- 별지 제70호의18서식
- 별지 제70호의19서식
→ 제116조의34에서 이동 <2016.12.1.></td><td colspan="2">(1)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
- 사업재편계획서
• [별지 제70호의18서식] 사업재편계획서(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
-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 [별지 제70호의19서식]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

(2)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2)-1.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12호의2서식]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2)-1--1. 대상법인
(2)-1--2. 양도자산내역: ⑫ 양도차익
(2)-1--3.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 (2)-1-3-1. 익금불산입 ⑭ 사업연도, ⑮ 금액
- (2)-1-3-2. 분할익금산입 (계획): (1차~5차) ⑯연도, ⑰금액
(2)-2.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 [별지 제41호의2서식]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 중복자산 양도내역: ⑪ 양도차익

(3)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3)-1.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 [별지 제41호의3서식]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 중복자산 양도내역: ⑪ 양도차익</td></tr>
</table>

	→ 제116조의34에서 이동하였으므로 조특령 제116조의35로 서식 수정 필요
비고	**(조특47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도입목적: 기업 규모화 촉진을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제약업, 의료기기 등) ▪ 수혜내용: 양도차익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조세지출규모: **2015년 실적 없음**